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18호

2017. 7. 13.(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6532호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6
제653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7
제6534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653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제6536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6
제6537호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18
제6538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6539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6540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6541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6542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6543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654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654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제6546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6547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6548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9
제654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61
제6550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64
제6551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6552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6553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제6554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제6555호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655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6557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6558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	74
제6559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6560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제6561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6562호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6563호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82
제6564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6565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84
제6566호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6567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6568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6569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6570호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6571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93
제6572호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제6573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9
제657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101
제6575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04
제6576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0
제6577호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0
제6578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제6579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제6580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	115
제6581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6
제6582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6583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658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20
제6585호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22
제6586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제6587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6
제6588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8
제6589호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0
제65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제659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제6592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4
제6593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135
제6594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6
제6595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7
제659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138

제6597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0
제6598호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43
제6599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147
제6600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49
제6601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50
제6602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150
제660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51
제6604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2
제6605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154

[규 칙]

제356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8
제3570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60

[훈 령]

제100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166

◆ 고 시

제2017-24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73
제2017-246호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76
제2017-247호 송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6
제2017-2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3
제2017-249호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208
제2017-250호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광진구 공동주택) 정비 선도사업계획 고시 ...	210
제2017-2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10
제2017-252호 도시관리계획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 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16
제2017-253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28
제2017-254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38
제2017-255호 반포아파트지구(고밀)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252
제2017-256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53
제2017-259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65

◆ 공 고

제2017-1568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310

제2017-156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313
제2017-1574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313
제2017-1593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314
제2017-159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315
제2017-1599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폐기 공고	317
제2017-160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 업체 청문 공시송달 공고	317
제2017-1608호 도시계획시설(금천소방서)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 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321
제2017-160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324
제2017-1610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325
제2017-1612호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26
제2017-161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사항 공고	332
제2017-161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공고	336
제2017-1616호 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337
제2017-16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	339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7-13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협력사업비 공고	343
제2017-14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협력사업비 예산편성내역 공고	343

◆ 구 고 시

제2017-8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용산구)	345
제2017-89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정정고시(강북구) ...	346
제2017-10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마포구)	353
제2017-11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354
제2017-55호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356
제2017-78호 도시계획시설(말죽거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초구)	362
제2017-99호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정비구역(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363
제2017-120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동구)	371

◆ 구 공 고

제2017-6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호선, 주차장③)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대문구)	373

제2017-668호 용마도시자연공원(망우지구)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중랑구)	376
제2017-888호 도시계획시설(소방서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열람 공고(은평구)	395
제2017-738호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정정) 열람공고 (서대문구)	396

◆ 사업소고시

제2017-1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99
제2017-1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99
제2017-1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00
제2017-1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00

◆ 사업소공고

제2017-15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401
제2017-15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435

◆ 기 타

제2017-140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39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6532호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회 연 인

2017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유아모집·선발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선발”이란 제2호에 따라 모집된 유아 중 추천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선발인원) 유아 선발인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정원 내의 인원으로 한다.

제5조(모집·선발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모집·선발요강)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선발방법)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하고, 유아의 모집·선발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선발인원에 관한 사항(제3조 및 제4조)
다. 유아모집·선발계획에 관한 사항(제5조)
라. 유아모집·선발요강에 관한 사항(제6조)
마. 유아모집·선발 방법 및 교육감이 모집·선발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사항(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3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17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 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개인 등과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여야 한다.

1.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제6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협약 당사자와 교육기부 참여 및 그 운영·이용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정보시스템 활용)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회협력전문가)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민간 등의 교육기부를 위한 협력과 소통 증진을 담당할 사회협력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사회협력전문가는 교육청의 교육기부 체제 구축 및 사회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부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또는 지원단으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
2.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의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기부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교육청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기부에 관심 있는 전문가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체결한 교육기부 관련 협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1. 제정이유**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기부에 대한 정의 규정(제2조)

나.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술(제3조)

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규정(제4조)

라.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의 체결·취소 규정(제5조)

마. 사회협력전문가 신설 관련 내용 규정(제8조)

바. 교육기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제9조부터 제16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6534호**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회 연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로, “소속기관장”을 “소속 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서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별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⑨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휴업일을 활용하여 연간 4일 이내에서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청·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간의 업무연락체계 유지, 학교시설의 보안유지·관리 및 학생교육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인원을 고려하여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계발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2일 이내에서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1]

선서문(제3조제1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시기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교육감(임용권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교육감이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14조의2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별표 4]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제14조의3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복무선서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2017. 4. 25.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며,
나. 우리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경조사별휴가 및 자녀 군입영일 동반휴가, 자기계발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복무 선서문'과 선서의 시기·방법 등 개정 및 신설(제3조)

나. 특별휴가 확대·신설 등(제14조의2)

1) 경조사별 휴가 확대

2) 군 입영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에게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 부여

3)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휴업일 등을 활용한 연간 4일 이내 자기계발휴가 부여(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2일 이내 부여)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특별휴가(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조항 삭제

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14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653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담당관이 되며”를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연구정보원장”을 “교육행정국장,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2017. 5. 18. 개정되어 2017. 7. 1. 시행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이 기획조정실에서 교육행정국 소속으로 변경되어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행정국장을 추가하고,
- 나. 정보화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 부서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어, 조직 개편 등이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부서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화책임관 지정 사항을 현행 ‘정보화담당관’에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제8조제2항)
- 나.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 당연직 내부 위원에 ‘교육행정국장’ 추가(제10조제3항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536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

레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제7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습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강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강습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 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강습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을 초과하는 경우	강습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강습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 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강습을 할 수 없거나, 강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비 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강습일을 말한다. 2. “총강습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강습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을 2016. 8. 2. 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반환 사유 발생일을 “강습개시 1일 전”에서 “강습시작 전”으로, “총 강습시간의 1/2경과 전”을 “총강습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으로 변경(별표 3)

나. 그 밖에 ‘수강료 반환기준’의 용어와 표현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에 맞추어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별표 3)

◆ 서울특별시조례 제6537호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 2. 3. 제정되어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는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져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는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538호****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남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금나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다음에 “서울문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위례별유치원” 다음에 “서울거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남부 교육지원청	금천구	서울문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금천구 독산로54길 102 (독산동)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송파구	서울거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송파구 양산로2길 26 (거여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 확대 요구 및 수요에 부응하고, 부족한 공립 유아교육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 9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립 병설유치원 2개원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설유치원 신설(별표 7)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문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금천구 독산로54길 102 (독산동)]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거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송파구 양산로2길 26 (거여동)]

◆ 서울특별시조례 제6539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7호 중 “사용하는 경우.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학교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외국인학교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1조제2항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교환하는 쌍방의 재산을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제42조제1항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 중 “연 3퍼센트”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미 대부료의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대부료의 감면을 받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2016. 7. 12.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2016. 12. 29.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을 상위 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 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 등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1)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대부료 및 대부료율 산정기준 변경(제26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으로 옥상 대부료 산출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대부료 산출 기준 삭제
 -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현행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삭제(제27조)
 -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을 변경(제28조)
 - 4)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42조, 제46조)
- 나.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규정 정비 및 신설(제3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40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문적”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수”를 “위원 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단체에 대하여”를 “시정 각 분야에”로, “인물”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를 “안전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하나의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양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원인력풀로 관리
-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심의 안전의 각 분야를 고려하여 인력풀 내의 위촉된 위원들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운영

- 나. 위원회의 기능 추가 (안 제11조)
-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다. 회의개최 정족수(안 제12조)
- 안전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라.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 삭제 (제15조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6541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가운데 2명은 행정1부시장 및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 여성 3명과 장애인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2.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서기는 개인정보보호팀장이 담당한다.

⑦ 회의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심의·자문 기구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심의·자문 기능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거절시 이의신청(조례 제9조)에 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인원 :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당연직 : 행정1부시장(위원장), 정보기획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위촉직 :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 관련학회 추천

※ 위촉직 위원중 여성 3명, 장애인 1명 포함

- 위원임기 :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1회 연임 가능)

- 존속기한 : 5년(성과평가후 필요시 조례 개정으로 기한 연장)

○ 위원회 운영

- 회의시기

- 정기회 : 연 1회
-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의원 1/2 이상 요구, 조례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필요시

- 안건심의

-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심의
-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안건 등 위원에게 통보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수당 및 여비 지급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회의록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공개

◆ 서울특별시조례 제6542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한다”를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을 “상담, 교육, 일, 여가·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기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시립 시설로 건립·운영되는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기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
(안 제6조의2 제1호 및 제1호)
 - 나. 시립 시설로 건립·운영되는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안 제6조의2, 별표1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543호****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공통수수료의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통수수료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비 고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1건	400원	

같은 표 2. 분야별 수수료의 나. 의료유사업자 관리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야별 수수료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비 고
나. 의료유사업자 관리(1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1)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개정에 따른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가 삭제되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재

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등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였으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가 개정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가 2016. 12. 30. 삭제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1. 공통수수료) **화재증명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 (나)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을 **(가)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으로 고침.**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간호조무사가 신청하는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당해 규칙에서 직접 정하고 의료유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도록 2016.12.30. 개정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2. 분야별 수수료)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 (2)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1)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으로** 고침

◆ 서울특별시조례 제654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클린업시스템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 ③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인을 호선하며,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⑤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이 있거나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5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6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선정위원회 및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정,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제6호 중 “법 제48조제5항 및 제6항에”를 “법 제48조제5항에”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26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로, “같은 법 제28조에”를 “같은 법 제29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부동산공시법 제38조에”를 “감정평가법 제32조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3제1항에”를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로, “제47조에”를 “제52조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부동산공시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를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로, “정한다.다만,”을 “정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조합의 임원”을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 마련 및 교육대상 포함
 -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의 위원 대상을 확대
 - 선정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사유를 정함
 - 타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 제명 등 조문 정비

◆ 서울특별시조례 제654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3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3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제외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3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제5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3항 관련)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

가.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은 전체 연면적의 3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근린상업지역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포함)의 중심지체계 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에서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1)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5)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2.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제55조제1항7호부터 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과 같은 비율의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상의 중심지 육성방향에 부합하는 용도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 2) 그 밖에 지역의 전략적 육성, 시 정책목적 달성 등을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1호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4]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업부지 면적(기부채납 면적 포함)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나. 용도지역 변경 또는 층수완화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 시장이 처리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3항과 이와 관련한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 기준(용도용적제)을 재정비하고,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을 단순화하고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기준을 별표3에서 일괄 정리함.
- 1) 중심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별표3의 용도비율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

- 2)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별표3의 용도비율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 3) 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별표3의 용도비율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33조제1항제1호)
-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용적률 기준을 별표3에서 일괄 정리함(안 제55조제3항)
-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용도비율 및 제55조제3항 관련 용적률 기준을 별표 3에서 일괄 정리함. (안 별표 3)
 - 1)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용도 비율을 중심지 위계를 고려 차등 적용하여 중심상업지역, 지역중심 이상 일반상업지역은 비주거 의무비율을 현행(30%) 유지하고, 근린상업지역, 지구중심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비주거 의무비율을 10% 완화(30%→20%)함. 단, 비주거 의무비율에서 준주택은 제외함. (안 별표3 제1호 가목)
 - 2) 별표3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주거 의무비율(20%~30%)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시장정비사업 구역,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대하여 1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3 제1호 나목)
 - 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비주거 의무비율 확보시 400퍼센트까지 일괄 허용함.(안 별표3 제2호 가목)
 - 4)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용적률(400%)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지역 필요시설(육성용도 등) 도입시 제55조제1항7호부터 9호까지 정한 용적률 범위에서 도입량에 비례한 주거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 제2호 나목)
 - 5)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용적률(400%)에도 불구하고 제1호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주거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 제2호 다목)
- 자치구청장에게 다음의 사무를 권한 위임함 : 사업부지 면적(기부채납 면적포함)이 1만㎡ 미만인 경우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안 별표4 제14호)
 - 1)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2) 용도지역 변경 또는 층수완화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3) 시장이 처리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46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제8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를 “해당하면 1개를 추가하여 표시”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적용할 수 없다”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을 “다음”으로, “이를 간판으로 보지”를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1항제3호”로, “표시”를 “표시 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가로형”을 “벽면 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조의2”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7조제4호 후단에 따른 공연간판
 - 나.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또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제2조제3항제2호 중 “기체 또는 빛·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쏘는 방법으로”를 “기체를 사용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조제2호”를 “제4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구청장”을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가로형”을 “벽면 이용”으로 한다.

제7조를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네온류·전광류의 사용제한을 하려”를 “영 제14조제3항제2호·제4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로, “호의 1과”를 “호 중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광류를 이용하는”을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로, “호에 적합하여야”를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청장은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종전의 제7조)제3항 중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에 공공목적의 광고는”을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공공목적 광고내용을”로, “자치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5조에 따른 간판
 - 나. 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다.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의 표시면적 0.6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가.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제6호를 준용한다.
 - 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제곱미터 이내, 두께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 나. 간판의 크기는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에서 구 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이고,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7.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18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호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명칭표시는 세로 1.8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1.5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마. 표시 위치·수량·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당해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바. 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판의 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 한다.
-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벽면 이용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5층 이하 벽면의 공간이 총

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불구하고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중전의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지를 다음과 같이”를 “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제3조의 가로형”을 “제4조의 벽면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를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돌출간판을”을 “간판을”로, “된다.”(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제외한다)”를 “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2항 중 “돌출간판”을 “간판”으로,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를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이내여야”를 “이하여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이내로”를 “이하로”로, “있다”를 “있다. 이 경우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자사광고에 한하며, 18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를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네온류·전광류”를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사광고에 한하며,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단,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한다)
 - 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광고물”을 “따라 광고물등”으로,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공중전화안심부스”를 “공중전화부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를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구청장 또는 공공단체(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의 장 등은”을 “공공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신규로 지정되는”으로, “표시하려면”을 “최초로 표시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2호(중전의 제3호) 단서 중 “시·구의 심의위원회”를 “시·구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제4호의 시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가림막 이용 현수막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3. 바탕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빨강·노랑·파랑 또는 검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5.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조명 보조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를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을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를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를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를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 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를”로, “20센티미터”를 “30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전광판을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 구 심의위원회”를 “구 심의위원회”로, “창문의 안쪽에 다음과 같이”를 “유리벽 또는 창문 안쪽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를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층”을 “3층”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에 따른 광고물”로, “이상 표시할 수 없다”를 “이상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맨홀·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5. 도로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도로의 부속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신고의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청사

2. 별표 1로 정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시장이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제22조의 제목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 및 제10항”을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으로,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로, “참석시켜”를 “참석하도록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문서의”를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불가피한 사정이”를 “특별한 사유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심의하여도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을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대상·방법·절차”를 “대상·방법 또는 절차”로, “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3조의 제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시·구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또는 시·자치구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 가.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센티미터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한다)
 - 나.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규격확대, 위치·장소 변경, 사용 자재변경을 포함한다)
 - 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라.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표시기간 연장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옥상간판 또는 타사광고
 - 나.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 다.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 라.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9조제1항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제24조제2호 중 “것(입체형은 제외한다)”을 “간판과 전광류 광고물등·디지털광고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게시시설”을 “게시시설 또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수료는 허가신청·신고 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 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
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이행강제금) 법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
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2항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의2제1
항에 따른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
전점검, 위반에 대한 조치, 허가취소 등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부터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

고 또는 협의·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광고물등은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신설 2017. . . >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제21조제3항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산업· 교통 분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따른 공항 •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 「철도법」에 따른 역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관광· 휴양 분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 공용 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4호의 묘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 병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 물이 500㎡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별표 2] <개정 2017. . . >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허가 수수료(제27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수수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한시적 자유표시구역 포함)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5,000원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은 포함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은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게시시설을 포함)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한다.
3. 영 제9조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중 광고내용 변경은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5. 수수료의 적용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또는 3년 미만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3년을 기준으로 하는 월 단위 표시기간의 비율을 적용한다.
6.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이 1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는 1제곱미터로 본다.

[별표 3] <신설 2017. . . >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2항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수수료 ※시·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한시적 자유표시구역 포함)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3,000원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은 포함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20%를 가산하며,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40%를 가산한다.(게시시설을 포함한다).
 - 나.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한다.
3. 영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과 1년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또는 안전점검 불합격 광고물등에 대한 재점검은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4] <개정 2017. .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7조의2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이행강제금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30만원 • 0.5㎡ 이상 1.0㎡ 미만 35만원 • 1.0㎡ 이상 2.0㎡ 미만 40만원 • 2.0㎡ 이상 3.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미만 55만원 • 3.5㎡ 이상 4.0㎡ 미만 65만원 • 4.0㎡ 이상 4.5㎡ 미만 80만원 • 4.5㎡ 이상 5.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110만원 • 6.0㎡ 이상 7.0㎡ 미만 130만원 • 7.0㎡ 이상 8.0㎡ 미만 150만원 • 8.0㎡ 이상 9.0㎡ 미만하 170만원 • 9.0㎡ 이상 1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1.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비고를 따른다.
2. 법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등 중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광고물등의 이행강제금은 자치구청장이 부과한다.
3. 법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법 제3조의 허가·신고를 위반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풍수해 등을 대비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자치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2016. 7.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명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나.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는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지주 이용 간판 및 전자게시대,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로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점검 대상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벽면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설치·표시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1층 출입구 벽면에 건물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표시
- 나. 지주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및 전자게시대 설치·표시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제4호 및 제3항 신설)
- 상업지역 및 관광특구에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는 2미터 이하로 정지화면으로 표시
 - 공공목적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위하여 상업지역·지하철역·공항·버스터미널 등의 광장 또는 전통시장 주변에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으로 표시(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내에서 정지화면으로 표시)
- 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회의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회의로 변경(안 제22조)
- 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확대(안 제24조)
-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
 -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표시하는 공연간판 및 전자게시대

◆ 서울특별시조례 제6547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관이 된다”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의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문구오류 정정 및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명시(안 제3조제4항)
 나.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한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관이 된다”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안 제4조제1항 ~ 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548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로 7017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

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27부터 만리동 1가 62까지 조성된 고가보행로와 하부광장 등 그 부속물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서울로의 고가보행로를 제외한 하부광장·부속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서울로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로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로 이용 및 관리에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서울로 보행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로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서울로 활성화 사업추진) ① 시장은 서울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시, 공연, 자연체험, 캠페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공익적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 등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허가 신청) 행사,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서울로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울로 7017 이용허가 신청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이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서울로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행자 등의 자유로운 통행을 현저하게 저해하는지 여부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② 시장이 이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용허가 사항을 제8조의 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일 및 이용 장소가 중복되는 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청소년, 여성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행사

④ 시장은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변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이용행위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행위가 보행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②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이용료) ① 서울로를 이용할 경우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전일까지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제12조(원상회복) ① 이용자는 서울로 이용 종료 후 설치한 시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로 이용으로 인하여 서울로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울로 내부 또는 외부(도로, 철도 등)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주, 흡연을 하는 행위
3. 쓰레기 무단투기, 불장난, 취사, 노상방뇨, 낙서 및 각종 시설물 훼손 행위
4.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5.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및 이용질서 유지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관리차량, 유모차, 휠체어 이외에 바퀴가 달린 차량의 통행

제14조(행정지도) 시장은 제13조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5조(철거조치 등) ① 시장은 서울로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점용할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로 고가보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2. 서울로 고가보행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서울로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방향 정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서울로에 설치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울로 주요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서울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안전, 경영, 문화, 디자인, 도시계획, 조경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역 일대에 주소,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민 및 상공인 등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울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명칭 및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서울로의 상징물은 서울로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별표 2와 같다.

② 서울로 명칭 및 별표 2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칭 및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명칭 및 상징물의 사용승인 이후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명칭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명칭 및 상징물의 사용료)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서울로 명칭 및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 서울로 7017 이용료 기준(제11조 관련)

종 별	이용기준	금 액(원)	비 고
만리동광장 북측	1시간	30,000 ~ 50,000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행사인 경우 또는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 토, 공휴일은 이용료를 30% 가산한다. ◦ 야간(18:00시~익일 06:00시)에는 이용료를 30% 가산한다. ◦ 각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이용하는 경우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공공미술작품		20,000 ~ 30,000	
광장 일부, 교통섬 및 고가하부 (고가보행로 제외)	1㎡당, 1시간	20 ~ 30	

[별표 2] 서울로 7017 상징물 (제21조 관련)

1. 상징물

(1) 디자인

영문형(기본형)	한글형	중문형
		

(2) 비율규정



2. 상징물 의미

- (1) 서울로 7017은 서울역 고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서울로는 ‘서울을 대표하는 사람길’이자, ‘서울로 향하는 길’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Since 7017은 1970년 고도성장기 서울의 차량길에서 2017년 사람을 위한 초록보행길로 재탄생하는 서울역 고가의 두 번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 (2) 서울로 7017의 디자인은 기분 좋게 웃고 있는 곡선형 로고로 친근한 인상을 주고, 걷고 있는 사람의 발 모양을 형상화하여, 누구에게나 쉽게 서울로 7017의 용도와 목적을 이해시킵니다. 또한 하나의 고정된 로고가 아니라, 발 모양의 알파벳 L 두 개를 다양한 시민들의 발 모양으로 대체,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면모를 가진 확장성 높은 역동적 로고입니다.

3. 색상

Main Color



Pantone 7482 C
CMYK_C95 M5 Y100 K0
RGB_R0 G157 B78



Pantone Black C
CMYK_K100
RGB_R35 G31 B32



Metallic Color



Pantone 873 C



Pantone 877 C

[별지 제1호 서식] 서울로 7017 이용허가 신청서

서울로 7017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행 사 명 칭				
이용시설 및 면적		, m ²	이용요금	
이용목적 및 방법			이용인원	
이 용 일 시		년 월 일(: ~ :) (시간)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 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시)
4. 안전관리 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이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

[별지 제2호 서식] 서울로 7017 명칭 및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

서울로 7017 명칭 및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사용목적 및 방법	

사 용 기 간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구비서류

사용계획서(명칭 및 상징물 용도 자세히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서울로 7017 명칭 및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서울로 7017 명칭 및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 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변경사유 및 방법

사 용 기 간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변경계획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노후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활용하여 보행로 및 광장 등으로 조성하는 ‘서울로 7017’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로 이용신청, 이용허가 및 허가취소·변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나. 광장 및 부속물 등의 이용료 규정 (안 제11조, 별표1)

다. 물건투척, 음주·흡연행위, 쓰레기투기 및 시설물 훼손 등 금지

(안 제13조 ~ 제15조)

라.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

(안 제16조 ~ 제20조)

마. 서울로 명칭 및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안 제21조, 제22조, 별표2)

◆ 서울특별시조례 제654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물재생센터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대상구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시는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해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사용료
3.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라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할 경우, 관리자는 시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에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자금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계공무원을 두며,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재무상태표 상의 자본금 5,214,674,658,485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미 이행 상태를 해소하고자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방식을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지방직영기업 전환)하여 하수도재정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5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함

나. 「지방공기업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방식을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550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별”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기반시설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 운영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 재정 투자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 분야별 주요계획 수립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별 격차실태 등 여건을 분석하여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시책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하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간 격차실태 등 여건 분석
2.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 가. 자치구 재정 배분
 - 나. 산업·경제 활성화
 - 다. 문화·복지·교육·환경·보건 여건 개선
 - 라. 근린재생 및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마. 노후 주거지 정비

바. 기반시설 확충

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추진방안 및 점검·평가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 공청회와 제8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고시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역균형발전계획 점검 및 평가 실시)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현정도 및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후 매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3.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

4.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문화도시종합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9. 그 밖에 산업·경제, 환경, 교통,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 주요계획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3급(승진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시 공무원

3. 재경, 복지, 산업·경제, 환경, 교통, 교육·문화, 도시계획, 건축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등

④ 제3항제1호의 시의회 의원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전담조직)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전담 또는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역간 균형발전은 서울시정이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므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사회, 문화, 경제 분야 등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각종 계획수립과 주요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 운영과 투자 사업 등 예산과 재정분야에서의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4조)

- 다. 지역별 격차 해소 및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실현정도 및 시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 5조 및 제6조)
- 라.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을 포함해서 각종 시정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7조)
- 마.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조)
- 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 및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음(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51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서울디지털재단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제5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120다산콜재단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제6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6년 이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서울시 출연기관 중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반영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을 신설함(안 제33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
- 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으로 ‘120다산콜재단’을 신설함(안 제33조제1항제5호타목 신설)
- 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50플러스재단’을 신설함(안 제33조제1항제6호사목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552호****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장하기 위한 것”을 “보장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의원”을 “서울특별시회의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소속의원”을 “소속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속의원의”를 “소속 의원의”로, “의장에게 제출해야”를 “서울특별시회의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로, “소속의원의”를 “소속 의원의”로, “소속정당”을 “소속 정당”으로 한다.

제5조 중 “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의정운영공동경비의 범위”를 “의정운영공동경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음.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나. 인용 규정 오류 수정(안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53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별지서식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10조의2, 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54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제4조제3항제2호 중 “의회 운영위원장”을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임기로”를 “기간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그 의장이 된다”를 “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의 직무”를 “직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

-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55호**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개시 일부터”를 “시작일부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5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사무처”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 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무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의 필요사항은 따로 서울특별시규칙으로”를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어색한 문장구조 수정(안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57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58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을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하는”으로 한다.

제2조 중 “자로서 개인”을 “개인”으로,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4조 중 “의회 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의회발전”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 중 “행사에”를 각각 “행사에서”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봉사로서”를 “봉사로써”로 한다.

제9조 중 “행함을”을 “하는 것을”로, “단 표창권자”를 “표창권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포함 5~6인”을 “포함해 5~6명”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의회사무처”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로, “표창 대상자”를 “표창대상자”로, “포함 5~6인”을 “포함해 5~6명”으로, “사무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두며, 제1공적심사위원회에는 의정담당관, 제2 공적심사위원회에”를 “1명을 두며,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의정담당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전문위원(4급 상당)”을 “수석전문위원”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을 “표창대상자를 추천할”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14조 중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 서식”을 “표창권자는 표창수상자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59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를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별표5”를 “별표 5”로, “별표6”을 “별표 6”으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와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별표3 국외항공운임정액표, 별표4 국외여비정액표, 별표5 이전비지급기준표, 별표7 국외준비금지급액표”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와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로 한다.

별표 2 중 “<별표2>”를 “[별표 2]”로, “(제3조와 관련)”을 “(제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제5조 제1항 관련)”을 “(제5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중 “(제5조 제1항 관련)”을 “(제5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60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을 “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으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 포함”을 “「지방자치법」 제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를 포함한다”로, “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제33조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해로”를 “상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의 “사항””을 “호”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시의원 당해연도”를 “의원 해당연도”로, “상당한”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의원 당해연도”를 “의원 해당연도”로, “상당한”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전액”을 “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제3호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2항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망일로”를 “사망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따라 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을 “(심의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과 위원 4인”을 “1명과 위원 4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원 중 1명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회”를 “심의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심의한다.다만”을 “심의한다. 다만”으로, 단서 중 “심의회”를 “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회”를 “심의회의”로, “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음.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나.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61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회 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부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운영위원장”을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의회사무처”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귀국일로부터”를 “귀국일부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62호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장·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장
2.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3. 사무처장

제4조의 제목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를 “(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의장·특별위원회위원장”을 “의장·특별위원장”으로,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상임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부서의 장””을 ““공인관리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인의”를 “공인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모사전송기”를 “팩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등록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을 “등록하려는 공인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하고자 하는”을 “등록하려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4조의 공인 관리자”를 “공인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인등록기관”을 “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컴퓨터화일”을 “컴퓨터파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 “다음 사항”으로, “(“의회보””를 “(의회보”로 한다.

제12조 중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1일”을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로,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를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를 “공인의 공인관리자에게”로 한다.

제14조 중 “공인의 관리자”를 “공인관리자”로, “허위”를 “거짓”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5조 중 “이중캐비닛”을 “이중캐비닛”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음.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규정 오류 수정(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63호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서울특별시회의회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위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으로 하고”를 “호선하고”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회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자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위원과 서울특별시회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다만, 보궐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7일전까지”를 “7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필요로 할”을 “긴급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인용 법령의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음.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1조,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64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소송 수행”을 “소송수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보실장”을 “언론홍보실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5조,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65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제2항”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연구 활동계획”을 “연구활동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7조제4항”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7조제4항”으로, 같은 서식 중 “연구 활동 계획”을 “연구활동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66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후단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

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회 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의회의”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원

제3조제3항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대하여는 별지”를 “별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를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결원된 때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결산검사”를 “결산검사를”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 시행에 관”을 “조례의 시행에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인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67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해당 업무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의3).
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함(안 제4조의3)
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는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점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68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주민참여”를 “시민참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3조 중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참여예산제”로 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하며, “주민복지”를 “시민복지”로 한다.

제4조 중 “주민참여”를 “시민참여”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목 중 “주민참여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 부분 중 “주민의견”을 “시민의견”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 부분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의견수렴”을 각각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민의견수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0조 중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으로 한다.

제11조 중 “주민의견수렴”을 “시민의견수렴”으로 한다.

제12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주민참여방법”을 “시민참여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민참여예산제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주민참여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한다.

제13조 중 “주민의견수렴”을 “시민의견수렴”으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시민참여예산지역회의”로 한다.

제14조 중 “주민의견사업”을 “시민의견사업”으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주민참여”를 “시민참여”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를 “직무소홀, 품위손상이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장,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위원장, 간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② 위원장은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및 기능분과장 중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총회개최 때마다 선출하고, 총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간사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8조 제1호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참여”를 “시민참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분과위원회별”을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별”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참여예산”을 “참여예산사업”으로, 본문 중 “주민참여예산”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19조제2호 및 제5호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주민의견”을 “시민의견”으로 한다.

제19조의1제1항, 제3항 및 제7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일반주민”과 “주민”을 각각 “일반시민”과 “시민”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및 의결”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3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을”를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총괄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26조 중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참여예산제”로 한다.

제27조제1호 및 제5호 중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참여예산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민참여예산제도”로 한다.

제29조 중 “조례시행과 관련하여”을 “조례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행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촉진하였으며, 향후 시 재정분야에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나. 이에 따라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고, 주민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자치구 지역회의 추천권 폐지”, “위원 해촉사유 추가”, “임원제도 개선”, “사업심사 기준 강화”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변경
- 나. 기존 조례 상 “주민”으로 규정된 문구를 “시민”으로 변경
- 다. 위원회의 추천방법 및 해촉사유 변경(안 제15조 제4항 제2호 삭제, 제16조 제3항 제4호 신설)
 - 자치구 추천위원을 폐지하고 위원 해촉사유에 품위손상을 추가함
- 라. 참여예산 임원제도 개선(안 제17조)
 - 위원장을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및 분과위원장 중에서 매번 총회때마다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폐지
- 마.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의 강화(안 제18조의2제5호 신설)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하는 사업을 심사시 제외

◆ 서울특별시조례 제6569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9월 15일 이후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재 부모교육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직원의 책무를 규정하여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시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영유아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4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570호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4조 중 “시가”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우대) 시장은 가족여가문화의 촉진을 위하여 시립시설 가운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상의 문화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 제3호”를 “제9조제3호”로,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센터는”을 “② 센터는”으로 하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②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을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 가. 최근 여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가족중심의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기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립 문화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의 감면을 통해 가족단위의 여가활동 및 문화향유를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립 문화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571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보안관"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학교의 장이 학교보안관과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해고"란 학교의 장이 장래에 대하여 학교보안관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학교 내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보안관에게 적용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운영계획과 학교의 장이 수립하는 운영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학교보안관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의무) 모든 학교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4.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7. 직무를 수행할 때 학교의 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보안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학교보안관의 채용절차 및 학교별 배치기준
 2. 학교보안관의 복무표준 및 복리지원
 3. 학교보안관의 직무평가 방법 및 기준
 4. 학교보안관의 교육·연수
 5. 그 밖에 학교보안관과 관련한 주요 사항
- ②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보안관 운영비용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학교보안관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① 학교보안관의 자격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요건에 따른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보안관이 될 수 없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
 5.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른 체력 인증 기준이 3등급 미만으로 확정된 자
 6. 그 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학교보안관의 역할) 학교보안관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3.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4.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제9조(학생 생활지도 사항 인지 시 조치사항 등) ① 학교보안관은 활동 중에 학생 생활지도 사항 인지 시 자의적인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보안관은 학생의 생활지도 사항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위급상황 발견 시 현장에서 경고, 훈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한다.

제10조(채용) ① 학교보안관은 학교의 장이 채용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자를 학교보안관으로 채용한다.

③ 학교보안관은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되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학교의 장은 담당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교보안관을 채용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을 5일 이상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학교보안관의 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채용연령 및 근무상한연령) ① 학교보안관의 신규채용 최저연령은 채용일 현재 55세 이상으로 한다.

② 학교보안관의 근무상한연령은 70세이며, 7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제12조(해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보안관을 해고할 수 있다.

1. 학교보안관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현재의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과거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활동태도, 활동자세, 체력측정 결과 등이 불량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3. 채용관계서류 허위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4.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5.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교보안관의 해고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학교보안관의 교육·연수 등) ①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연수에는 직무교육과 함께 운영계획,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운영평가서 작성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학교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결과

2. 학교보안관,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결과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별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하고 학교보안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학교보안관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학생안전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에 공헌한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 8월 1일 이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94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7년 12월 31일, 1944년 1월 1일부터 1946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8년 12월 31일, 1947년 1월 1일부터 1949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9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보안관”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보안관의 복무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학교보안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학교보안관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학교보안관의 채용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72호**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을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 및 창의적 역량증진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영어마을”이란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가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울창의마을”이란 시가 청소년 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조, 제3조의 제목 및 본문,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 중 “서울영어마을”을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교육감·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제3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비고
<u>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u> (21세기 융합형 체험캠프)	송파구 <u>풍성로14길 45</u>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강북구 <u>삼각산로 43</u>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관악구 <u>낙성대로 70</u>	

[별표 2]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징수기준(제5조 관련)

구 분		기 간	이 용 료	비 고
숙 박	정 규 반	5박 6일	340,000원 이내	개인·단체
		4박 5일	16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2박 3일	96,000원 이내	개인·단체
	특 별 반	5박 6일	400,000원 이내	개인·단체
	방학캠프	12박 13일	800,000원 이내	개인·단체
		9박 10일	650,000원 이내	개인·단체
	주 말 반	1박 2일	120,000원 이내	개인·단체
비숙박	방 과 후	1개월	300,000원 이내	개인·단체
	당 일 반	1일	50,000원 이내	개인·단체
	정규반 (1일 6시간 기준)	5일	14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3일	9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2일	7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그동안 달라진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영어마을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따라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가 청소년 창의체험시설로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명칭이나 기능에 맞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 나.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등 청소년 창의체험시설의 다년간 운영 경험이 축적된 공공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탁기관의 범위를 넓혀 위탁·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함
- 나. “서울영어마을”을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로 시설 명칭 변경함
(제1조, 제3조의 제목 및 본문,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 별표1, 별표2)
- 다.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에서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 및 창의적 역량증진으로 시설 목적 변경(안 제1조)
- 라. “서울창의마을”이란 청소년 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용어 정의 추가함(안 제2조 제2호)
- 마. 위탁대상에 교육감도 포함하여 위탁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제1항)
- 바.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를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21세기 융합형 체험캠프)로 명칭 변경함(안 제3조 별표 1)

◆ 서울특별시조례 제6573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을 “성인 문자해득교육”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제10조제2항 중 “기간으로”를 “임기로”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위원이 금고”를 “금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련”을 “관련된”으로 한다.

제18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진흥원의 임원은”을 “진흥원에는 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별표 2 따른”을 “별표 2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게을리 하거나”를 “게을리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서로서”를 “문서로”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4160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 나. 종전의 본 조례 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5751호, 2014. 10. 20. 공포, 2014. 10. 2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 다. 자연스럽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을 정비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개정된 「평생교육법」(법률 제12339호, 2014. 1. 28. 공포·시행)에 따라 평생교육의 정의 중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을 ‘성인 문자해득교육’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 나.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회의 심의사항에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 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회의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제3호 신설)
- 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을 추가함.(안 제18조제10호 신설)
- 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관련 제출서류 및 고려사항 등을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57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제출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간식비
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나. 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75호****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33조, 「아동복지법」 제4조·제3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구매·소비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상생교류”란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어촌(이하 “도·농간”이라 한다)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문화·관광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 라. 타 지역의 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 바.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 4. “공공급식센터”란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 5.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농어촌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타 지역간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공공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4.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추진방법, 활성화 및 확대방안
5. 도·농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6.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체험·교류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③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대상 기관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도농상생 공공급식

제4조(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 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 출연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제5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하여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농간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 각 항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규모)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급식 지원경비(이하 “지원경비”라 한다)를 제4조 각 호의 대상 기관에 직접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대상 기관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에 맞게 목적대로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대상 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 기관의 장은 시장의 도농상생 공공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대상 기관의 장은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도·농간 상생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감독 등) ①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 기관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3장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제9조(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실행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관련 생산자 및 소비자간 협의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및 식생활 개선, 급식 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농간 상생교류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제4조 각 호의 대상 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급식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공공급식시설 협의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5.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학부모
 6. 식재료 유통 및 조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영양(교)사단체 및 조리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급식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제17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지역 생산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식재료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지원 업무
5.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지원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③ 시장 및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소비 저변 확대 등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 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센터의 장: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공공급식에 관한 물류·유통, 교육·홍보 지원, 재무관리 등 공공급식센터의 업무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농간 상생교류, 보조금의 지급, 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한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 실현 및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사회 기반마련하기 위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먹거리 취약계층의 급식 질을 향상시키고(안 제1조),
- 나.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하여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안 제17조),
- 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76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제8호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용자 또는 보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同 조례 4조에서 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한 용자 또는 보조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용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회투자기금의 용도에 '사회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한 용자 또는 보조'를 명시함[제4조(기금의 용도)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577호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하여 서울특별시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기로써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 비행장치를 말한다.
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운용과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인동력비행장치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8.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9.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을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종사자의 무인동력비행장치 개발·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무인동력비행장치 저변확대) 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무인동력비행장치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무인동력비행장치의 실증단지 조성)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조정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에 대해 정의(안 제2조)

나.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다.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실증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78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와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6. “청년상인의 육성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4호를 제4조제5호로 하고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상인의 육성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나.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마련과 함께 청년 상인에 대한 입법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상인의 육성사업’과 ‘청년상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3조제3항).
- 다.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에 청년상인의 육성사업을 추가함(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79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영상물 제작장소의 보존 등) 시장은 시 관내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관리할 필요 있음.

2. 주요내용

시장이 시 관내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의 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580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이 조에서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19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적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9월 15일 이후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노인학대 행위자에게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고자 함.

2. 주요내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19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581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공공질서유지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점 등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점 등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히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점 등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설치로 인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매점 등의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 시 지방공기업의 장의 철저한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매점 등의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공공질서유지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점 등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나.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점 등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582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5항”을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583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항”을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이 밖에”를 “그 밖에”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를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애인에”를 “시장은 장애인에”로 한다.

제6조를 제5조의2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전수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등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연령, 장애등급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전수조사의 응답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이 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③ 센터장은 상근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산 보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가 발생한 경우
 -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③ 센터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관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제9조의3(운영 위탁)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보상금을”을 “보상금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 가. 장애인 개인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 실시하고,
- 나.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3366호, 2015. 6. 22. 공포, 2017.1.1.시행)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신설됨. 이에 그동안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나. 장애인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신설)
- 다.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운영 경비 지원과 센터장 상근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라.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584호**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개발 및 홍보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운영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전체 유형의 장애를 포괄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장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 나.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다. 수행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 라. 장애인가족 지원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85호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센터 운영주체가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1.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2.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3. 센터의 개소 당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수화통역사 4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4조(사업내용)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개인 및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수화통역서비스와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각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제1호~제5호의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의 임원 및 시설장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가 명확한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 장애인 대표
3.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자치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예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
2. 종사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3.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4. 시장의 운영에 관한 합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수화통역센터는 위탁사업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보조사업 시설임에도 조례 전반적으로 서울시 수탁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아 운영현실에 맞게 재정비.
- 운영주체가 사단법인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 정관 개정 등이 필요하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시설장 자격 결격사유 등) 시장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 수화통역센터 내 농아인쉼터 설치 등 농아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확대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 운영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일반원칙(안 제2조)
- 나. 센터 이용대상(안 제3조)
- 다. 센터 사업내용(안 제4조)
- 라.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5조~제7조)
- 마. 예산 지원 및 보조금의 관리(안 제8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86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고발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고발한 경우
3. 신고·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고발한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신고·고발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고발은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고발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피고발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등
3. 피신고·피고발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신고·고발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고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고발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고발·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고발을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고발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고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의 제목을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위반행위별 신고·고발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 제51조의4(포상금의 지급)과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에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신고한 자’만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고발한 자’까지 확대하는 등 개정조례는 법에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조례 제6587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교육)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서울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이용편의시설의 점검정보) ①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계획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와 「철도건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철도의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 고장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정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부문 종사자 자질 향상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편의성 및 안전성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내용’과 ‘장애인 인권교육 내용’ 등을 보강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기여코자 함
- 나.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사전에 제공하고, 고장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여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안 제7조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9조 신설)
- 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의 고장 등으로 정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588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후변화”란 「기상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6. “배출권 매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그 초과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외부에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7. “배출권 매각”이란 시가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그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입

제5조제5호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

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9호에 따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매각·매입) 시기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제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 결과 발생하는 배출권 잉여 또는 부족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배출권 거래수입을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배출권의 매각수입과 매입비용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조성재원 및 사용용도에 포함시켜 관리하며, 배출권 거래 시기, 가격, 규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등 기후변화기금의 지속적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년 31일까지 연장 운용하도록 하며,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관련 용어(온실가스 배출권, 배출권 매입, 배출권 매각)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조의2)

- 다.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에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대금을 추가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에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을 추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 등을 기후변화 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6호 및 제5조제10호)
- 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매각·매입) 시기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89호**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신규·변경·이전 등록 신청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지정”을 각각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82조제1항제7호”를 “법 제82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85조제6호”를 “법 제85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94조제4항제1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관련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된 조문 내용들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함.
나.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5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적용범위에 구체적 대상으로 청원경찰을 명시(안 제3조 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59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의회사무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하고자 할”을 “허가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기계약하고자 할”을 “자기계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처분하고자 할”을 “처분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자기계약으로 하고자 하는)”을 “대부하려는 경우(자기계약으로 하려는)”으로 한다.

제3조의2 전단 중 “관리·처·분”을 “관리·처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작성·비치하여야”를 “작성·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회”를 “한 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시의회에서”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초래하거나”를 “주거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를 “재산에만 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6조 중 “얻”을 “받”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초래할”을 “줄”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

제20조 전단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거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한다.

제26조제4항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출”을 “계산”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산출”을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된”을 “계산된”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하고자 하는”을 “대부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산출되는”을 “계산되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뒤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

제38조제4호 후단 중 “부분에 한하여”를 “부분에만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시의회”로, “시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5장제3절에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46조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신축하고자 하는”을 “신축하려는”으로 한다.

제52조 중 “비치정리한다”를 “갖추어 놓고 정리한다”로 한다.

제56조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놓고”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매입하고자 하는”을 “매입하려는”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각하고자 하는”을 “매각하려는”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고”를 “갇추어 놓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치 하여야”를 “갇추어 놓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비치할”을 “갇추어 놓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비치하는”을 “갇추어 놓은”으로, “비치하지”를 “갇추어 놓지”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부과·징수하고자 할”을 “부과·징수하려는”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분할납부하고자 하는”을 “분할납부하려는”으로 한다.

제90조의2제2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한다.

제93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제·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함(제39조의3 신설).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9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92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심리부검) 시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시도자 또는”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살자”를 각각 “그 가족 또는 자살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심리부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 대응 각 단계에 따른 정책 수립·시행할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안 제4조 후단 신설)
- 나.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 신설)
- 다. 심리지원 대상을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외에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93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연재난”을 “ 자연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최근 서울시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고자 함. (안 제2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594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재 빈집 및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사회주택을 공급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연계·추진하고 있는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할 경우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회주택의 공급확대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의 용도 중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회주택의 건설·관리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신설함(안 제6조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595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제8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같은법 제9조”를 “같은 법 제9조”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2.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4.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제·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5조제8호)

나. 주요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다.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596호**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법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실태조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권한을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시장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8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5.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6.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8. 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
-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 등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7조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97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마.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제6조제4항 중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의2와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9조의2(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 0.35대/세대

2.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 0.4대/세대

제11조의2(공동사업 평가 등) ① 제11조에 따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상호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시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해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 등은 해당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임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회주택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자로부터 해당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기 위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투자기금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기금으로부터 용자
3. 해당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투자기금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기금으로부터 용자 또는 보조

제26조제1항 중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회주택 공급주체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범위를 확대 하고, 공유재산 토지를 대부할 수 있게 하며,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범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함

(안 제2조제3호)

나.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그 대부료 감면근거를 신설하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 (안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 신설)

다.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함 (안 제11조의2 신설)

라.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사회투자기금과 도시재생기금으로부터 용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제1호 및 제3호)

마.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추가하고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598호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체주택의 활성화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으로서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체공간”이란 입주자들이 회의실, 육아방, 공부방,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공동체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동목적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체규약”이란 공동체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체 생활 및 주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합의하여 정한 규약을 말한다.
4. “공동체주택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공동체주택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분양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마. 그 밖에 공동체주택의 분양 또는 자가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제3조(공동체주택의 유형) 공동체주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 공동체주택
 - 가.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
 - 나. 민관협력 임대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시장 또는 사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건물 임차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
 - 다. 민간임대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
2.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공동체주택을 입주자에게 분양하거나, 입주자가 공

공동주택을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소유하는 주택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업주체는 시장등으로부터 공공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시장등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주택에 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확산과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 주거문화 확산 및 지원정책의 방향,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3.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공동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
5. 그 밖에 공동주택 주거문화 확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시장은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장등은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건설 택지의 임대
2. 공동주택의 관리·위탁
3. 공동주택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4.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력 지원
5. 공동주택 건설 관련 택지 정보와 입주민들의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원) 시장등은 제3조제1호 가목·나목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관련 시민단체·협회·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사업주체가 공동체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 0.35대/세대
2.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 0.4대/세대

제3장 서울형공동체주택의 인증 및 지원 등

제11조(서울형공동체주택의 인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1호 나목·다목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체주택을 서울형공동체주택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공간계획 : 공동체주택 주거공간 및 공동체공간
2. 공간운영계획 : 공동체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3. 공간관리계획 : 공동체주택 운영 및 유지보수

②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절차) ①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심사 등을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취소) 시장은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은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업주체의 휴업·폐업·부도 발생 및 사업주체 변경으로 공동체주택 건축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서울형공동체주택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4조(이차보전의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서울형공동체주택의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대출금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대출금을 받은 때의 익월부터 공동체주택 준공(사용승인) 후 8년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대출금 상환만료가 이차보전 지원기간 내에 도래하면 이차보전 지원종료일은 대출금 상환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율은 2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에 대한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이 취소된 때
2. 사업주체가 공동체주택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다만, 지원기간 내에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업주체에게 이차보전 지원이 승계될 수 있다.
3. 그 밖에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15조(공동체공간의 활용) 제14조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사업주체는 공동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센터 등

제16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 및 사업주체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체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시장은 이 센터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수요조사 및 현황조사
3.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4. 사업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지원
5. 사업주체, 입주자, 지역거주자 간의 관계망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운영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도입한 공동체주택의 공급활성화 및 보급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체주택 및 사업주체, 유형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안 제6조)

다.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명시함(안 제7조 및 제10조)

라. 서울형공동체주택의 인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공동체공간 활용에 관해 명시함(안 제11조~제15조)

마. 공동체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6조~제2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599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주택법」 제38조의6제2항”을 각각 “「주택법」 제2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 및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경비

제5조제1항제10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융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회주택의 공급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출예산을 활용하여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4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 나.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출예산으로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제10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600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의 제목 “건축협정”을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한다.

제5장의2제35조의2를 제5장의3제35조의3으로 하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로) ①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2.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도로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의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도로 또는 구역에 접한 도로

② 영 제110조의2제2항제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
2. 옥외광고물의 설치계획

제35조의3 앞에 “제5장의3 건축협정”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미관지구 등에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도로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가로구역 지정이 가능한 도로 신설(안 제35조의2제1항)

나. 특별가로구역 지정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5조의2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601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개축하는 건축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신축·개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적극 취득하도록 규정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에 기여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신설(안 제8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602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등 시장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택 조례에 반영하여 화재안전 등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등 시장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제1항)
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60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 (사유지 공공하수관로의 현황조사 등) ① 관리청은 사유지에 매설된 공공하수관로의 실태파악이 필요하거나 관련 토지소유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유지에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현황조사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과거 지형적여건, 주민자력사업, 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등의 이유로 사유지내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바 사유지를 통과하는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지소유주에게 통보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및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리청은 사유지에 매설된 공공하수관로의 실태파악이 필요하거나 해당 토지소유주가 요청하는 경우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유지에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현황조사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604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사고 등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파수꾼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기대응교육”이란 재난 및 사고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위기상황판단 및 응급처치를 통해 자신은 물론 이웃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시민안전파수꾼”이란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제1호의 초기대응교육을 수료하고 시민안전파수꾼이 되기로 동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안전파수꾼 헌장) 시민안전파수꾼은 다음 각 호를 실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가정·직장·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관리 생활화
2. 이웃과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과 화합 도모
3. 위험요소 사전예방활동 참여
4. 재난 및 사고 초기대응활동 참여
5. 성숙한 시민 안전의식 선도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과수꾼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 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안전과수꾼 양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활동 현황
3.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계획
4. 시민안전과수꾼 강사 육성 및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초기대응교육) ① 시민안전과수꾼 양성을 위한 초기대응교육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초기대응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초기대응교육의 이수과목, 이수시간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평가) 매년 양성계획에 따른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양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민안전과수꾼 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단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안) 시장은 시민안전과수꾼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재난 및 사고 등의 발생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력은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난 및 사고 등의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시민안전과수꾼을 양성·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재난 및 사고 등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수꾼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시민안전과수꾼의 실천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다. 시장에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양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시민안전과수꾼 양성을 위한 초기대응교육을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강사 육성·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매년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함.(안 제7조)
- 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민안전과수꾼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 사. 시민안전과수꾼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누출 등이 안 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605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능력 배양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을 말한다.

2.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란 각종 재난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들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가 직접 조작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를 체험하거나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 교육생을 교육·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한 시설을 말한다.
4. “전문지휘관”이란 센터의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역량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게 매년 센터의 기능 향상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설치하고 현장대응단이 운영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지휘역량 강화 교육·훈련
2.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비훈련
3.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현장 초기대응 교육·훈련
4.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센터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교육·훈련

③ 센터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 평가결과를 해당 재난관련기관 및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교육·훈련 계획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상재난환경시스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타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의뢰한 수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전문지휘관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현장대응단장이 되며 간사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재난관련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교육·훈련 계획수립) ① 시장은 매년 10월까지 센터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2. 교육·훈련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3. 교육·훈련 예상수요 및 기본 일정계획
4. 교육·훈련 과정 및 평가방법
5.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가상재난환경시스템 개발 등) ① 시장은 다변하는 재난상황에 맞추어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개발된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 교육·훈련 실시) ① 센터는 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수탁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 교육·훈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의 교육·훈련 기본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본부장이 긴급을 요하는 수탁 교육·훈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에 투입된 실비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 교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과의 협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가상재난환경시스템 연구개발
2. 교육·훈련 과정의 설계
3.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분석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전문지휘관 양성) ① 시장은 센터의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현장에 특화된 전문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현장 전문지휘관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 마다 센터의 교육·훈련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되는 센터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재난이 발생하는 환경과 상황은 매우 다양하여 재난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현장지휘관과 관련 관계자들의 사전경험 여부에 따라 지휘가 용이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상의 재난현장을 상황별로 모사한 3차원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여 현장지휘관이나 관계자들을 교육·훈련함으로써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분산된 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재난관련기관의 개별 역할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아우를 수 있는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능력 배양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원활한 센터 운영과 기능향상을 위해 매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및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토록 함. (안 제3조)
- 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는 현장대응단이 운영하고 재난관련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훈련하고 평가를 실시함. (안 제4조)
- 라. (센터운영위원회) 시장에게 교육·훈련 계획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5조)
- 마. (교육·훈련계획 수립)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매년 센터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함. (안 제6조)
- 바. (가상재난환경시스템 개발) 시장에게 다변하는 재난상황에 맞추어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관리토록 함. (안 제7조)
- 사. (수탁 교육·훈련 실시) 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수탁교육을 실시하고, 실비 범위 내에서 교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아. (전문지휘관 양성) 시장에게 재난현장에 특화된 전문지휘관을 양성토록 하는 한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569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비상기획관·평생교육정책관·정보기획관”을 “비상기획관·정보기획관”으로 한다.

제6조제7항제8호 및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120다산콜재단 지원 및 지도감독

제9조제4항 중 “제1항의 정보기획관 및 제3항의 통계데이터담당관”을 “제3항의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하고,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중 “복지건강본부”를 “복지본부”로 한다.

제12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르신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단, 어르신전문병원에는 제외한다.

제12조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르신복지시설(여가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제13조제5항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한다.

9. 서울교통공사 지도감독

10. 서울교통공사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제8항제2호 중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을 “제3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3호 중 “서울식물원 조성 및 서울대공원 재조성”을 “서울대공원 재조성”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20호를 삭제한다.

별표2 성동소방서란 중 “성동구 행당동 92-6번지”를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로 한다.

같은 표 비고 중 “광진소방서 구의119안전센터, 용산소방서 한강로119안전센터”를 “광진소방서 구의119안전센터, 성동소방서 행당119안전센터, 용산소방서 한강로119안전센터”로 한다.

별표3 성동소방서 119구조대란 중 “성동구 행당동 92-6번지”를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청소년 정책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란, 청소년 시설 현황 및 이용률란 중 “청소년담당관”을 각각 “청소년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착한가게 지정, 운영현황란, 물가변동 추이 및 현황란, 소비자 지원현황란 중 “민생경제과”를 각각 “공정경제과”로 한다.

같은 표 환경교육종합계획란 중 “에너지시민협력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에코마일리지제 추진계획 및 현황란 중 “기후변화대응과”를 “에너지시민협력과”로 한다.

같은 표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ICLEI) 관련 현황자료란 중 “기후변화대응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대기질 개선 계획, 평가결과 등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현황란,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현황란 중 “대기관리과”를 각각 “대기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승용차요일제 운영현황란, 실내공기질 관리현황란, 에너지 절감(배출권 거래제) 계획란 중 “기후변화대응과”를 각각 “기후대기과”로 한다.

같은 표 식품안전 종합대책란, 가공식품 안전 종합대책란, 유해물질 수거검사 현황란, 축산 식품 안전 종합대책란, 축산 식품 안전 지도점검결과란, 어린이 식품안전 종합대책란, 어린이 식품 안전 지도점검결과란,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현황란, 농수산물 식품안전 종합대책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란, 원산지 지도점검 결과란,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제 실시란 중 “식품안전과”를 각각 “식품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보고서란 중 “민원해소담당관”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한다.

같은 표 교육지원 기본계획란, 장학사업 추진현황란, 학교보안관 지원계획 및 운영현황란, 학교보안관 여론조사 결과란 중 “교육정책담당관”을 각각 “교육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무상급식 지원계획 및 추진현황란 중 “친환경급식담당관”을 “친환경급식과”로 한다.

같은 표 평생교육 추진현황란, 영어마을 추진계획 및 지원현황란 중 “평생교육담당관”을 각각 “평생교육과”로 한다.

같은 표 가족 체험시설 현황란 중 “교육정책담당관”을 “교육정책과”로 한다.

- ②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황사란 중 “기후관리과”를 “대기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지하철공사장붕괴란 중 “도시철도설계부”를 “도시철도계획부”로 한다.
같은 표 농수산물 유통마비란 중 “민생경제과”를 “도시농업과”로 한다.
같은 표 생활필수품유통 마비란 중 “민생경제과”를 “공정경제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간 사무이관 및 조직 신설·산하기관 출범에 따른 관련 업무 재규정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가. 효율적 업무수행 등 지원을 위한 사무 및 직위 조정
 - 중장년·노년기 사회참여 지원 업무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 소관 조정(안 제12조)
 - 인력운용 현황 반영 정보기획관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안 제9조)
 - 나. 시 기구 및 공사·출연기관 변동사항 반영
 -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기존 서울로7017 관리(조경과) 및 서울식물원 조성(공원녹지정책과) 업무 삭제(안 제23조)
 - 120다산콜재단, 서울교통공사 출범에 따라 산하기관 지도감독 업무 신설 등 관련 업무 조정(안 제6조, 제13조)
 - 성동소방서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주소 변경(안 별표2, 별표3)
 - 다. 기구 명칭 및 관련 법규 현행화

◆ 서울특별시규칙 제3570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17,603	4,047	300	7,902	5,204	150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9,787	3,879	294	401	5,063	150

같은 표 4·5급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란, 기술서기관또는시설사무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서기관또는행정 사무관	5	5				
기술서기관또는시설 사무관	3	3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녹지란, 보건란, 시설란, 행정또는공업란, 행정또는녹지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방재안전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266	798	44	53	343	28
행정	559	381	42	22	91	23

녹지	22	13			9	

보건	8	8				
시설	175	104			70	1

행정또는공업	13	12			1	

행정또는녹지	12	7			5	

행정또는시설	64	54			7	3

행정·공업또는시설	76	67		1	8	

방재안전또는시설	5	5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시설란, 위생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또는전산란, 녹지또는시설란, 방재안전또는시설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112	1,577	89	102	1,264	80
행정	1,135	727	67	39	249	53

공업	322	94	6	4	216	2

시설	492	251	1	2	221	17

위생	18	10		1	7	

시설관리	37	8			29	
운전	34	19	1	1	13	

행정또는시설	37	35			2	

행정·공업또는시설	78	73			5	

행정또는전산	7	5			2	

녹지또는시설	2	1			1	
방재안전또는시설	15	13			2	
전기운영	53			1	52	
기계운영	82				82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전산란, 공업란, 녹지란, 수의란, 환경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위생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공업또는시설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085	1,064	88	145	1,752	36
행정	1,094	525	62	57	425	25
전산	110	65	2	8	34	1
공업	382	23	5	12	340	2
녹지	73	11		2	60	
수의	7	4			3	
환경	38	6		19	13	
시설	448	160	1	4	277	6
방송통신	55	23	3	12	17	
위생	20	10		5	5	

행정또는시설	37	34			2	1
행정·공업또는시설	39	38		1		
공업또는시설	11	4			7	
전기운영	60	3			57	
기계운영	91	5	1		85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방송통신란, 위생란, 조리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통신운영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754	224	48	84	1,397	1
행정	210	34	15	15	146	
공업	79	8	1	3	67	
방송통신	19	2		5	12	
위생	32	7	1	5	19	
조리	2	2				
시설관리	158	18			140	
운전	122	22	3	15	82	

통신운영	14	6		2	6	
전기운영	110	2	1	1	106	
기계운영	252	3	2	1	246	

같은 표 9급 소계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조리란 및 농림운영란을 삭제한다.

9급 소계	184	6	4	4	170	

전기운영	24	1			23	
기계운영	19			1	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 반영 인력 재배치 및 직무특성을 고려한 직급 조정
2. 주요내용
총 정원 변경 없이(17,603명 불변) 직렬·직급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 증대 분야 인력 보강 및 직무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 쇠퇴 분야 감축을 통한 직렬·직급 조정 및 정원 재배치
 - 부서 내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한 기존 정원 직급 조정
 - 실무사무관 직위 지정 및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정원 조정

[훈 령]**◆ 서울특별시훈령 제1006호****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총 2,196명”을 “총 2,198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훈령 제98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원 정원표(제7조 관련)

공무원 정원표(제7조 관련)

1. 250일 이상 고용 공무원의 정원

부 서 별	계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총계	1,695	112	501	75	366	409	160	72
분청	314	42	20	75	67	100	3	7
민방위담당관	4				2	2		
통계데이터담당관	4	4						
일자리정책담당관	22	22						
희망복지지원과	1	1						
인생이모작지원과	1	1						
택시물류과	2	2						
역사문화재과	4		4					
한양도성도감과	2		2					
총무과	138				52	86		
정보공개정책과	8	8						
건강증진과	1	1						
생활보건과	3	3						
동물보호과	6		6					
도로관리과	81		6	75				
교량안전과	6							6
역사도심재생과	3					1	2	
조경과	6		2		2	1		1
소방행정과	10				5	4	1	
안전지원과	12				6	6		
직속기관	229	6			109	89	25	
시립대학교	80				22	37	21	
보건환경연구원	14	2			10	2		
인재개발원	6					6		
소방학교	12				5	3	4	
소방서	113				72	41		
농업기술센터	4	4						
사업소	1,143	64	481		190	211	132	65
상수도사업본부	128	8	9		27	68	15	
한강사업본부	81		76		4		1	
데이터센터	8				3	2	3	
시립어린이병원	38	12			7	13	3	3
시립서북병원	36	5			12	10	9	
시립은평병원	26	3			7	8	6	2
역사박물관	94	24			18	23	29	
한성백제박물관	46				14	9	23	

부 서 별	계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교통방송	6							6
시립미술관	50	6			11	17	12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73		49					24
동부도로사업소	3					1	2	
서부도로사업소	2						2	
남부도로사업소	2						2	
북부도로사업소	1					1		
성동도로사업소	3					2	1	
강서도로사업소	2					2		
역사편찬원	4	4						
중량물재생센터	13		5		1	2	5	
난지물재생센터	8		8					
서울대공원	205	2	63		72	35	7	26
품질시험소	1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81		8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02		10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88		88					
아동복지센터	7				2	2	3	
공무원수련원	17				6	9	2	
차량정비센터	1					1		
시립과학관	17				6	5	6	
의회사무처	9					9		
의회사무처	9					9		

2. 청원경찰의 정원

부 서 별	합계
총계	503
본청	110
민방위담당관	2
총무과	69
교량안전과	39
직속기관	24
보건환경연구원	6
인재개발원	3
서울종합방재센터	9
소방학교	6
사업소	368
상수도사업본부	99
한 강 사 업 본 부	156
데이터센터	2
시립어린이병원	3
시립서북병원	4
시립은평병원	2
교 통 방 송	6
시 립 미 술 관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5
중 량 물 재 생 센 터	7
난 지 물 재 생 센 터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7
의회사무처	1
의 회 사 무 처	1

[별지 제4호서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사용자 서울특별시○○○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내용 :

○ 직 종 :

3. 근로 · 휴게시간

○ 근로시간 : 00:00 ~ 00:00(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4. 근로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공휴일 제외)

*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5. 휴 가

○ 연차 ·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6. 임금

- ①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③ 지급방법 : 을의 예금통장에 입금(계좌번호)

7. 기 타

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다.

나.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서울특별시 ○ ○ ○ 장 (인)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주 소 :

(서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서별 공무원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정원·복무 관리상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 조정 : 2,196명 → 2,198명(+2명)

- 신규 업무 발생에 따른 증원(+3명) 및 부서 간 정원조정(△1) 등 반영

나.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 개정민법 시행 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18. 7. 1. 이전까지 채용결격사유 유지하여, 채용결격사유 관리상의 공백 해소

다. 근로계약서 상의 갑을(甲乙) 용어를 '사용자 및 근로자'로 대체 사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4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4·5가, 인현동 1·2가, 을지로 3·4가 및 오장동 일대에 대하여 2017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7.6.2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	중구 충무로 3·4·5가, 인현동 1·2가, 을지로 3·4가 및 오장동 일대	303,240.59	권장업종 (별도기재)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 주 업 종 :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전문 디자인업
- 보조업종 : 서적출판업,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출판업, 기타인쇄물출판업, 광고대행업, 기타광고업, 종이·인쇄물 등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C18111	경 인쇄업	M71310	광고 대행업
C18112	스크린 인쇄업	M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C18113	오프셋 인쇄업	M71392	광고 매체 판매업
C18119	기타 인쇄업	M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C18121	제판 및 조판업	M71399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C18122	제책업	J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C18129	기타 인쇄관련산업	J58112	만화 출판업
G46451	생활용 포장 및 위생용품, 봉투 및 유사 제품 도매업	J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G46452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J58121	신문 발행업
G4645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J58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M73202	제품 디자인업	J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M73203	시각 디자인업	J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주)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2. 결정 취지

- 중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인쇄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도심특화산업인 인쇄업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전통인쇄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역사 문화유산 소실이 우려되는 바,
- 중구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인쇄 산업을 집적하고 인쇄 클러스터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핵심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함

3. 관계도면 : 붙임도면 참조 및 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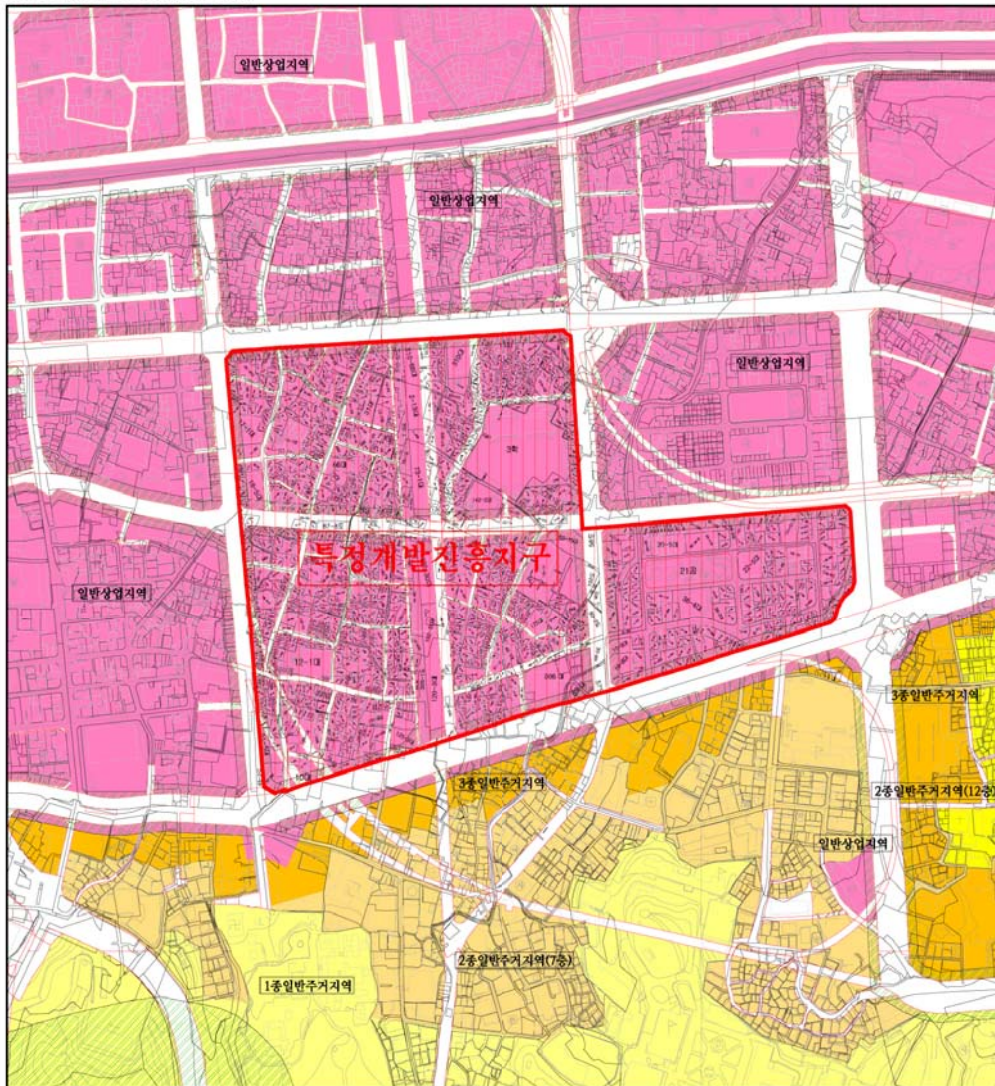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시민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02-2133-8333)
또는 중구 도심재생과(☎02-3396-575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도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45호



S = 1:5,000

범 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계선
 일반상업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12층)	 2종일반주거지역(7층)
 1종일반주거지역	

색 인 도	
375005001	3770007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적(㎡)	비고
신 설	중구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중구 충무로 3-4-5가, 인현동 1-2가, 을지로 3-4가 및 오정동 일대	303,240.59	권장업종 (별도기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46호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9번지 ~ 신정동 324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4.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I. 결정 취지

-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영, 관리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목동 909번지 ~ 신정동 324번지 일대	714,871.4	-	714,871.4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3	공공청사	우체국	목동 905-16	9,314.7	감)9,314.7	-	'94.12.27	

※ 기타 공공청사 결정조서 변경없음

■ 공공청사 폐지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공공청사	공공청사 폐지	우체국 창구 이용률 감소에 따른 공공청사 기능 축소 및 국유재산 종합계획('2016, 기획재정부)에 따른 국유지 개발유도 및 서울시내 타 우체국 개발(임대) 추세를 반영하여 공공청사를 폐지하고자 함

- 체육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서관 결정조서(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변경	변경		비고	
		획지번호	획지			획지번호	획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L6	45,602.7	6-5	목동 905-30	684.7	6-5	목동 905-30, 목동 905-31	1,184.6	획지합병	
		6-6	목동 905-31	499.9					

※ 기타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 2006년 재정비 시 동일소유 토지, 공동개발 필지 등 대부분 획지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나, 2006년 누락·미반영된 동일소유자 토지로 구체적 개발계획이 있는 획지를 합병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

(1)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불허용도		비고
기정	변경 (도면기호 U1)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변경없음	
•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제외), 집회장(예식장),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유사한 것), 동·식물원	•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예식장 : 다만 7~12BL은 제외)주1),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동·식물원	

불허용도		비고
기정	변경 (도면기호 U1)	
• 동물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 장례식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학원 중 입시 및 검정고시 학원	• 교육연구시설의 학원 중 입시학원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유자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변경없음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 창고시설 중 하역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	변경없음	
• 쓰레기 처리장		
• 교정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운수시설		

주1) 중심상업구역으로 설정한 BL 7 ~ BL 12의 경우 집회장(예식장) 불허용도 적용을 제외하되, 교통정체 및 주차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식장의 신축 혹은 용도변경 시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기준	상세사항
교통처리계획서의 제출	• 불법 주정차 문제 및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허가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함 • 교통처리계획서(조치계획서)의 내용 (예시) ① 셔틀버스의 운영 대수와 동선 ② 교통영향을 줄이기 위한 셔틀버스의 주정차 계획 ③ 인접 도로에서의 방문객 불법 주정차 방지계획 ④ 기타 원활한 교통 및 교통안전에 위한 계획

■ 불허용도 결정(변경)사유서

•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명칭에 맞도록 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예식장 : BL 7~BL 12)의 불허용도 해제 - 2006년 재정비시 예식장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판단하여 불허용도로 지정하였으나, 교통영향 검토 결과 교통체증 증가량이 크지 않아, 기존 계획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중심상업구역(현재 BL 7~BL 12)을 우선적으로 불허용도 해제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학원 불허용도 조정 - 학원밀집지역의 특수성 및 상업, 업무 중심기능 유도를 위하여 대형화 가능성이 있는 입시학원을 제외한 타 학원 허용

(2)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기호	권장용도	비고
		전층	
기정	I (목동 919-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중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기록매체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영상진흥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 공공용시설 중 촬영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II (신정동 324-11)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공연장 및 전시장	

※ 건축물 연면적의 80% 이상을 권장용도로 계획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특별계획구역(BL13) - 기결정

구분	도면기호	권장용도	비고
변경	1	BL 2	상업·주거 지원구역
		BL 3	
		BL 4	
		BL 19	
		BL 20	
	2	BL 6	문화복지 및 근린상업구역
		BL 18	
	3	BL 7	중심상업구역 (상업·업무)
		BL 8	
		BL 9	
		BL 11	
		BL 12	
	4	BL 10	중심상업구역 (지역경제)
	5	BL 15	행정·업무구 역
		BL 17	

※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상을 권장용도로 계획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특별계획구역(BL13) - 기결정

주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권장용도 결정(변경)사유서

- 주변 주거단지의 주거환경 및 현재 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블록별 권장용도 범위 확대
- 인센티브 기준 완화(80% → 30%)로 계획의 실효성 확보

(3)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비고
			도면 기호	지정용도	도면 기호	지정용도	
2-3	목동 909-2	1,676.1	A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S1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4-17	목동 907-2	1,838.2					
6-12	목동 905-3	3,025.1					
14-7	신정동 318	3,593.7					
14-9	신정동 318-9	1,404.0					
15-11	신정동 319-11	2,110.0					
18-4	신정동 322-1	742.0					
18-8	신정동 322-2	660.2					
19-16	신정동 323-29, 30, 31	2,243.2					
20-5	신정동 324-2	660.2					
20-8	신정동 324-1, 12	2,003.9					
4-6	목동 907-7	900.3	B	금융업소	-	-	해제
4-13	목동 907-16	972.0					
6-3	목동 905-28	500.0					
6-13	목동 905-20	570.3					
14-4	신정동 318-3	794.8					
15-10	신정동 319-26	1,076.4					
19-3	신정동 323-6	900.3					
11-1	목동 924, 924-3, 5	16,415.7	C1	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	-	해제
11-2	목동 924-4	6,530.2	C2	통신용시설	S2	통신용시설	
15-4	신정동 319-19	567.5	C3	집단에너지공급시설	S3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건축물 연면적의 80%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 지정용도 수용으로 간주

■ 지정용도 결정(변경)사유서

- 정보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기능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공실 등을 활용하고 상업·업무 중심기능 보완을 위해 지정용도 해제

나. 건축물 밀도

(1)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위치	계획내용	비고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60% 이하	

※ 특별계획구역(BL13) - 기결정 : 건폐율 50% 이하

(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500% 이하	800% 이하	-	
변경	500% 이하	800% 이하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 α)	

※ 1) 특별계획구역(BL13) - 기결정 :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633%

2)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비율,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용적률 결정조서(기정)

위치	계획내용									비고
	오피스텔 비율 (%)	80이상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20미만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	500 이하	550 이하	600 이하	650 이하	700 이하	75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5호

■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용적률 결정조서(변경)

위치	계획내용									비고
	오피스텔 연면적 비율(%) ^{주1)}	80이상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20미만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	500 이하	550 이하	600 이하	650 이하	700 이하	75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5호

※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시 본 지구단위계획의 밀도계획(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용적제)에 적합하여야 함

※ 용도변경 등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제3항에 의한 용적률 운용방식을 준용함

주1) 공동주택 용도를 도입할 경우 “오피스텔 비율(%)”을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합계 연면적 비율”로 봄

■ 결정(변경)사유서

- 상업지역 내 주거밀집 억제를 위한 용도용적제 적용 명확화

다. 용적률 인센티브

(1) 용적률 인센티브 결정조서(기정)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비고
기정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a	피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건축한계선	추가계획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a	
	대지 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지상형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a	피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부여)
			입체형 (공중/지하)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a	
	건축물형 태 및 외관	투시형 벽면	1층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처리	기준용적률 × 0.03	-
		투시형 셔터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사용	기준용적률 × 0.03	-
		아케이드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시	기준용적률 × 0.05 *부설주차장설치기준 20%완화 ^{주2)}	주1)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 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적용
	환경친화 건축물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3	서울시 옥상녹화기준 적용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서울시 기준 적용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 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 제외 건축면적) × 0.1	-
	건물 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시	기준용적률 × 0.2	건축물 연면적의 5%이상 제공시

※ 특별계획구역(BL13) - 기결정

주1)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기준용적률의 5% 완화 외에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 준수

(2) 용적률 인센티브 결정조서(변경)

■ 친환경 인센티브 - 전구역 공통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비고
변경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세 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 0.4이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 × 0.10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 × 0.06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별표 1)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 기준용적률 × 0.05 이내

※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해 총 인센티브 대비 30% 초과 달성 시 계획유도 인센티브를 대체 가능하나, 계획유도 인센티브의 초과 달성의 경우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는 적용 불가

■ 계획유도 인센티브(변경) - A구역(상업·주거지원구역, 행정·업무구역)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계수설명
변경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2.0
		전면공지 (건축선)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1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기준용적률 × (조성연면적-기준연면적)/연면적	× 0.5	-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조성연면적-기준연면적)/연면적	× 0.5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주1)}	기준용적률	× 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시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투시형 벽면	× 0.03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벽면 처리 시
			투시형 셔터	× 0.02	1층부 투시형 셔터 사용 시
			아케이드	× 0.05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 시 ^{주2), 주3)}
		야간경관조명		× 0.05	시공 전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행개선	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 0.1	준수 시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	× 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건물 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연면적)	× 0.5	준수 시

주1) 가로활성화용도 : 가로의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층 혹은 지상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본 목동중심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상업시설 집적화를 위하여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매점, 음식점, 기타 판매시설로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서 규정하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에서 규정하는 서점
아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자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음식점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3) 아케이드형 건축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 준수

※ 아케이드 : 벽면과 기둥, 지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 (필로티 구조 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조성된 연도형 아케이드에 한하며, 상세 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름)

■ 계획유도 인센티브(변경) - B구역(문화복지 및 근린상업구역, 주거복합구역)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계수설명	
변경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2.0	
		전면공지 (건축선)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1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0.5	-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0.5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주1)}	기준용적률	× 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시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면적)	× 0.5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투시형 벽면	기준용적률	× 0.03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벽면 처리 시
			투시형 셔터	기준용적률	× 0.02	1층부 투시형 셔터 사용 시
			아케이드	기준용적률	× 0.05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 시 ^{주2), 주3)}
		야간경관조명		기준용적률	× 0.05	시공 전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행개선	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 0.1	준수 시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	× 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건물 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 (구분지 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면적)	× 0.5	준수 시	

주1) 가로활성화용도 : 가로의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층 혹은 지상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본 목록중심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상업시설 집적화를 위하여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매점, 음식점, 기타 판매시설로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서 규정하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에서 규정하는 서점
아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자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음식점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3) 아케이드형 건축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 준수

※ 아케이드 : 벽면과 기둥, 지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 (필로티 구조 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조성된 연도형 아케이드에 한하며, 상세 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름)

■ 계획유도 인센티브(변경) - C구역(중심상업구역)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계수설명
변경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2.0
		전면공지 (건축선)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2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0.5	-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0.5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주1)}	기준용적률	× 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시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면적)	× 1.0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투시형 벽면	× 0.03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벽면 처리 시
			투시형 셔터	× 0.02	1층부 투시형 셔터 사용 시
			아케이드	× 0.05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 시 ^{주2), 주3)}
		야간경관조명		× 0.05	시공 전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행개선	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 0.1	준수 시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	× 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건물 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 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면적)	× 0.5	준수 시

주1) 가로활성화용도 : 가로의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층 혹은 지상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본 목동중심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상업시설 집적화를 위하여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매점, 음식점, 기타 판매시설로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서 규정하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에서 규정하는 서점

아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자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음식점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3) 아케이드형 건축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 준수

※ 아케이드 : 벽면과 기둥, 지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 (필로티 구조 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조성된 연도형 아케이드에 한하며, 상세 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름)

■ 용적률 인센티브 결정(변경)사유서

-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항목 제시 및 항목의 다양화를 통한 개발 활성화 여건 마련

라. 건축물 높이

(1)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기정

가구번호	최고높이(주)	비고
BL 2	50m 이하	
BL 3	100m 이하	
BL 4	100m 이하	
BL 6	120m 이하	
BL 7	170m 이하	
BL 8	260m 이하	
BL 9	170m 이하	
BL 10	120m 이하	
BL 11	130m 이하	
BL 12	130m 이하	
BL 13	180m 이하 (55층 이하)	
BL 14	130m 이하	
BL 15	80m 이하	
BL 17	80m 이하	
BL 18	80m 이하	
BL 19	80m 이하	
BL 20	80m 이하	

※ 특별계획구역(BL13) - 기결정

주) 최고높이 한도 내에서 건축법 규정에 의한 사선제한(H=1.5D) 적용

■ 변경

가구번호	최고높이(주)	비고
BL 2	50m 이하	
BL 3	100m 이하	
BL 4	100m 이하	
BL 6	120m 이하	
BL 7	170m 이하	
BL 8	260m 이하	
BL 9	170m 이하	
BL 10	120m 이하	
BL 11	130m 이하	
BL 12	130m 이하	
BL 13	180m 이하 (55층 이하)	
BL 14	130m 이하	
BL 15	80m 이하	
BL 17	80m 이하	
BL 18	80m 이하	
BL 19	80m 이하	
BL 20	80m 이하	

※ 특별계획구역(BL13) - 기결정

주) 최고높이 한도 내에서 건축법 규정에 의한 사선제한(H=1.5D) 기준 미적용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사유서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변경(2015.05.18)에 따른 도로사선제한 폐지 기준 반영

마. 건축물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대지 내 통로계획(변경없음)

다. 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차량출입 동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위 치	공공기여 용도	공공기여 내용	세부계획	공공기여량	관리청
도시계획 시설 (공공청사) 목동 905-6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박물관, 회의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에 따른 시설 조성 후 관리청에 관리위탁		• 부지면적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관리위탁(20년)(우체국 부속토지면적 제외) [계획 : 20%]	
지정용도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목동 924	-	• 지정용도(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해제에 따른 토지 또는 공공기여 건축물 건립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건축허가 전까지 공공기여 세부계획 (비용산정, 관리청 지원, 시설운영계획, 이행담보 방안 등)은 서울시 및 양천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부지면적의 최대 16%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기존 지정용도 연면적 유지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량 최대 10% 차감)	• 건축허가, 심의 등 개발계획 확정 시 결정(서울시, 양천구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결정)
지정용도 (금융업소) 목동 907-7 외 7필지	• 공개공지 또는 쌈지형공지	• 지정용도(금융업소) 해제에 따른 공적공간(공개공지 또는 쌈지형공지) 조성		• 공공성용도(공개공지 또는 쌈지형공지) 부지면적 10% 이상 조성(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 제외)	

※ 공공기여 용도 변경 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변경 가능

■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결정 사유	공공기여량 산정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목동 905-6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 사전협상제 운영기준(20% 내외) 준용 → 부지면적의 20% 이상으로 계획(우체국 부속토지 면적 제외) ※ 국유재산(행정, 일반재산)의 특수성(처분 제한 등)으로 양여, 무상임대 불가
지정용도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목동 924	● 지정용도(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	● 목동택지개발지구 계획 당시의 특수용도 지정취지, 규제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 협상제 운영기준의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기준(20% 내외) 준용하되, 지정용도 면적기준(80% 이상)을 감안하여 적용(최대16%) → 부지면적의 최대 16% 이상으로 계획하고, 기존 지정용도 연면적 유지 비율 에 따라 공공기여량 최대 10% 차감 예시) 기존 용도 연면적 유지 비율 0% → 공공기여 16% 기존 용도 연면적 유지 비율 50% → 공공기여 11% 기존 용도 연면적 유지 비율 100% → 공공기여 6%
지정용도 (금융업소) 목동 907-7 외 7필지	● 지정용도(금융업소) 해제 에 따른 공공기여	● 용도변경에 따른 가치상승은 없으며, 소규모 필지(평균 826.8㎡)로 인해 토지 또는 건축물 기부채납 시 활용성이 떨어지고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해 있는 특성 고려 → 공공성용도(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부지면적 10% 이상 조성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

- 현재 진행 중인 목동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구역계 통합을 추진하고 구역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높이계획 재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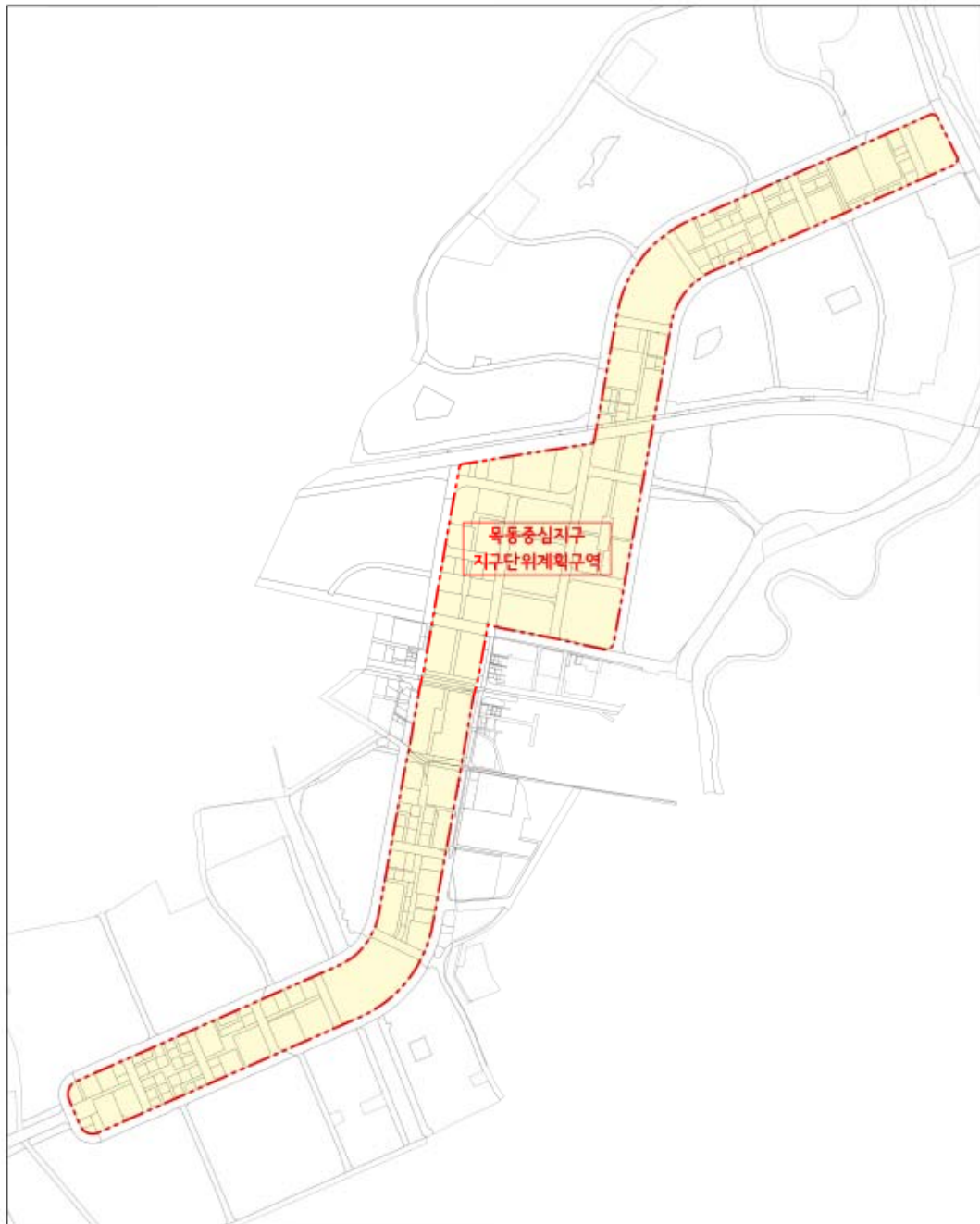
III. 관계도면 : 불임참조 (세부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 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열람장소 : 양천구 균형개발과(☎02-2620-3531) 및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9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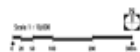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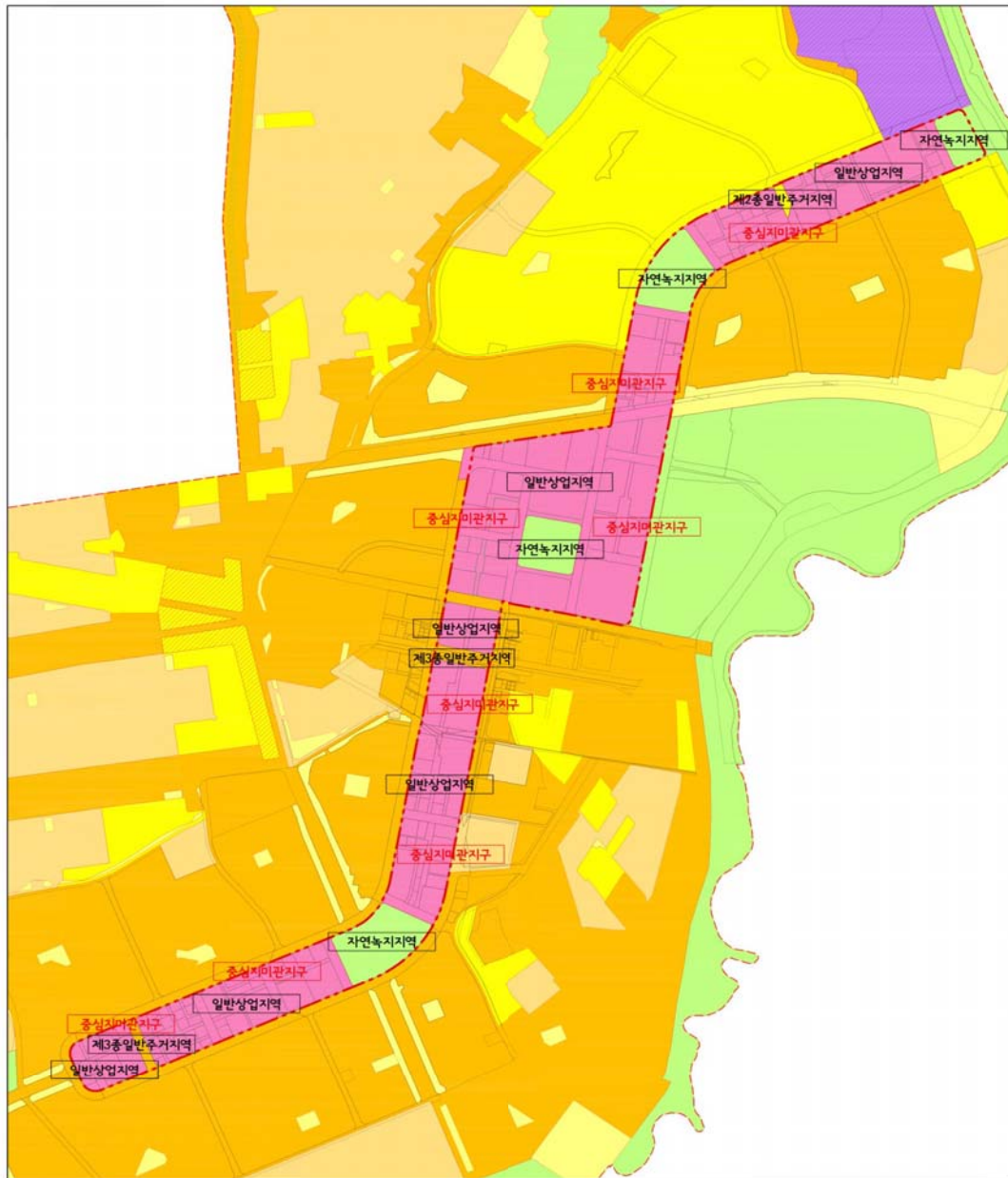
목 동 중 심 지 구
지 구 단 위 계 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목 동 중 심 지 구
지 구 단 위 계 획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종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중공업지역
- 중심지이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Scale 1:10,000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 근린공원
--- 도로 (광로)	■ 공공청사
--- 도로 (대로)	■ 학교
--- 도로 (중로)	■ 사회복지시설
--- 도로 (소로)	■ 도서관
--- 도로 (소로 : 특수도로)	■ 방송통신시설
--- 시설명	■ 전기공급설비
--- 주차장	■ 체육시설

Scale 1:10,000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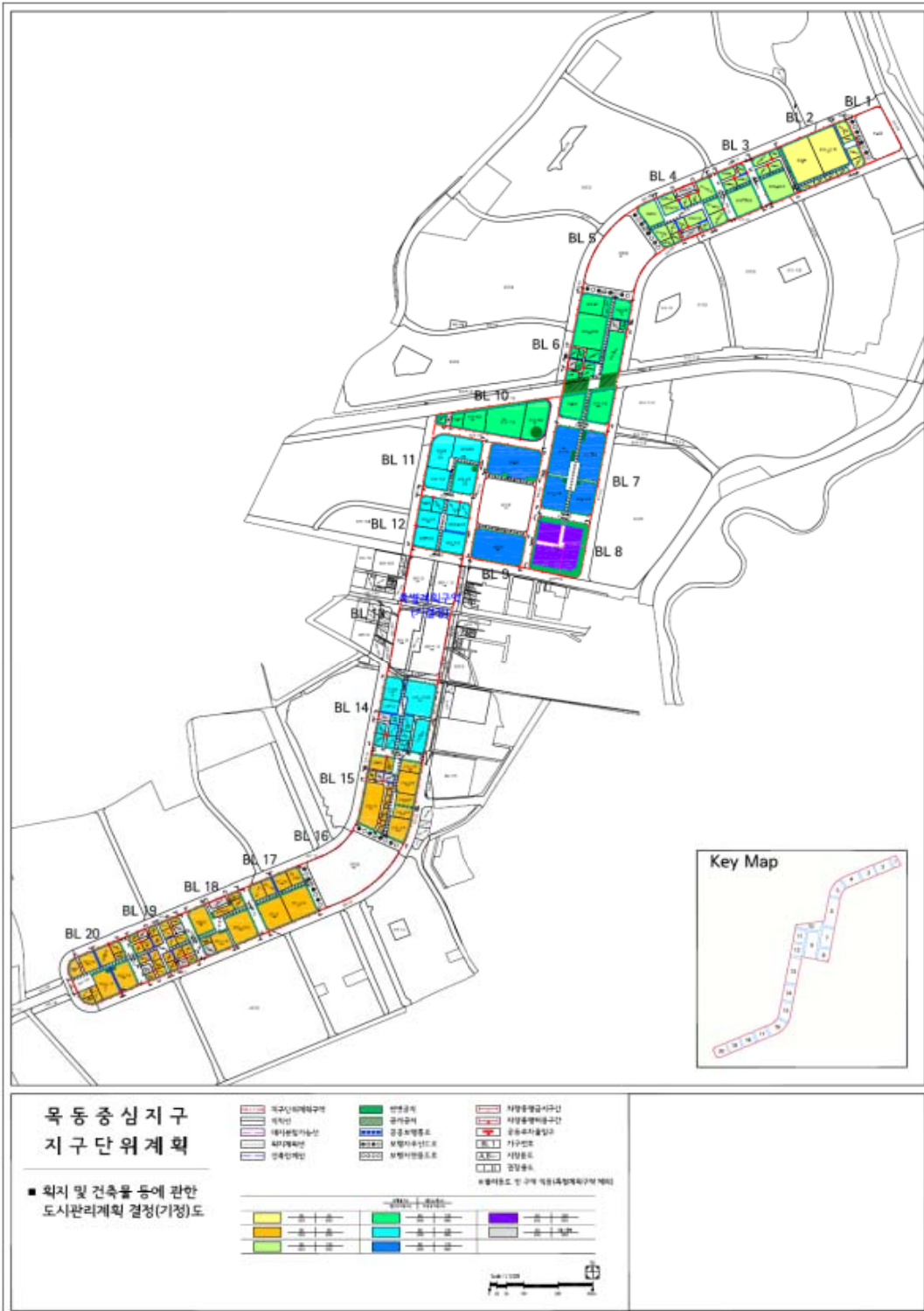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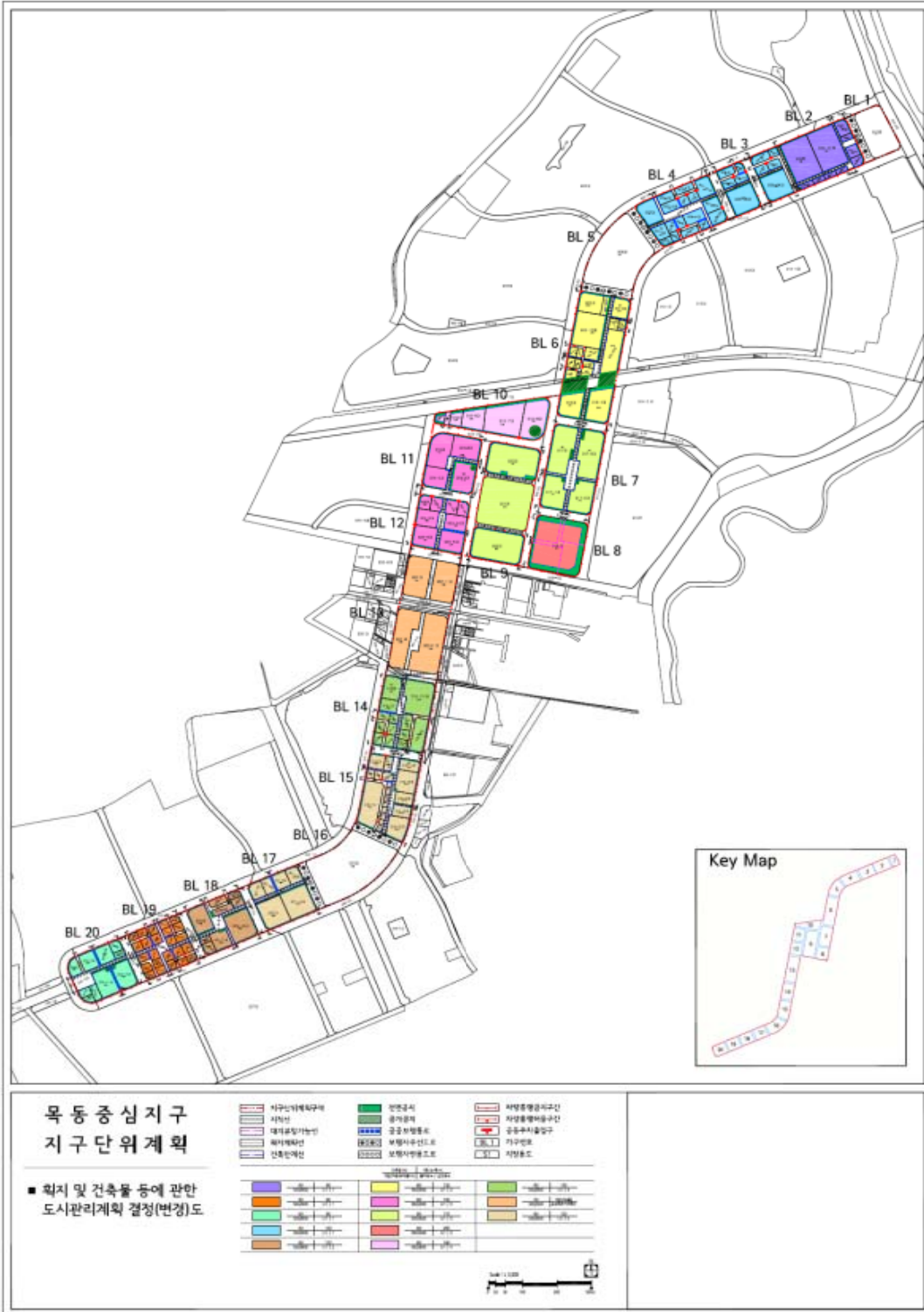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 근린공원
--- 도로 (광로)	■ 공공청사
--- 도로 (대로)	■ 학교
--- 도로 (중로)	■ 사회복지시설
--- 도로 (소로)	■ 도서관
--- 도로 (소로 : 특수도로)	■ 방송통신시설
--- 시설명	■ 전기공급설비
■ 주차장	■ 체육시설

Scale 1:10,000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47호
송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교부 고시 제188호(1977. 7. 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77호(1990. 11. 12.)로 조성계획이 결정된 종로구 송인동 58번지 일대 송인근린공원에 대하여, 2017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송인근린공원 내 노후된 기존 관리사무소를 증개축하여 공원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58번지 일대

3. 공원면적 : 45,400㎡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71), 종로구 공원녹지과(☎ 02-2148-2844)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송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종로구 송인동 58번지일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5,400	11,398.5		226	374		45,400	11,398.5	1동	331.15	619.80		
기반 시설	소 계	4,965	4,965					4,965	4,965					
	도 로	4,205	4,205					4,205	4,205					
	광 장	760	760					760	760					
조 경 시 설		458	458					458	458					
휴 양 시 설		586	586		76	130		586	586		76	130		
유 희 시 설		157	157					157	157					
운 동 시 설		4,651	4,651					4,651	4,651					
교 양 시 설		-	-					-	-					
편 의 시 설		13.5	13.5					13.5	13.5					
관 리 시 설		591	591		150	190		591	591	1동	255.15	489.80		
복 지 및 기타		33,978.5						33,978.5						
공원시설율 (법정40%)		(11,398.5㎡ / 45,400.0㎡) x 100% = 25.1%						(11,398.5㎡ / 45,400.0㎡) x 100% = 25.1%						
건폐율(15%)		(226.0㎡ / 45,400.0㎡) x 100% = 0.49%						(331.15㎡ / 45,400.0㎡) x 100% = 0.73%						

2. 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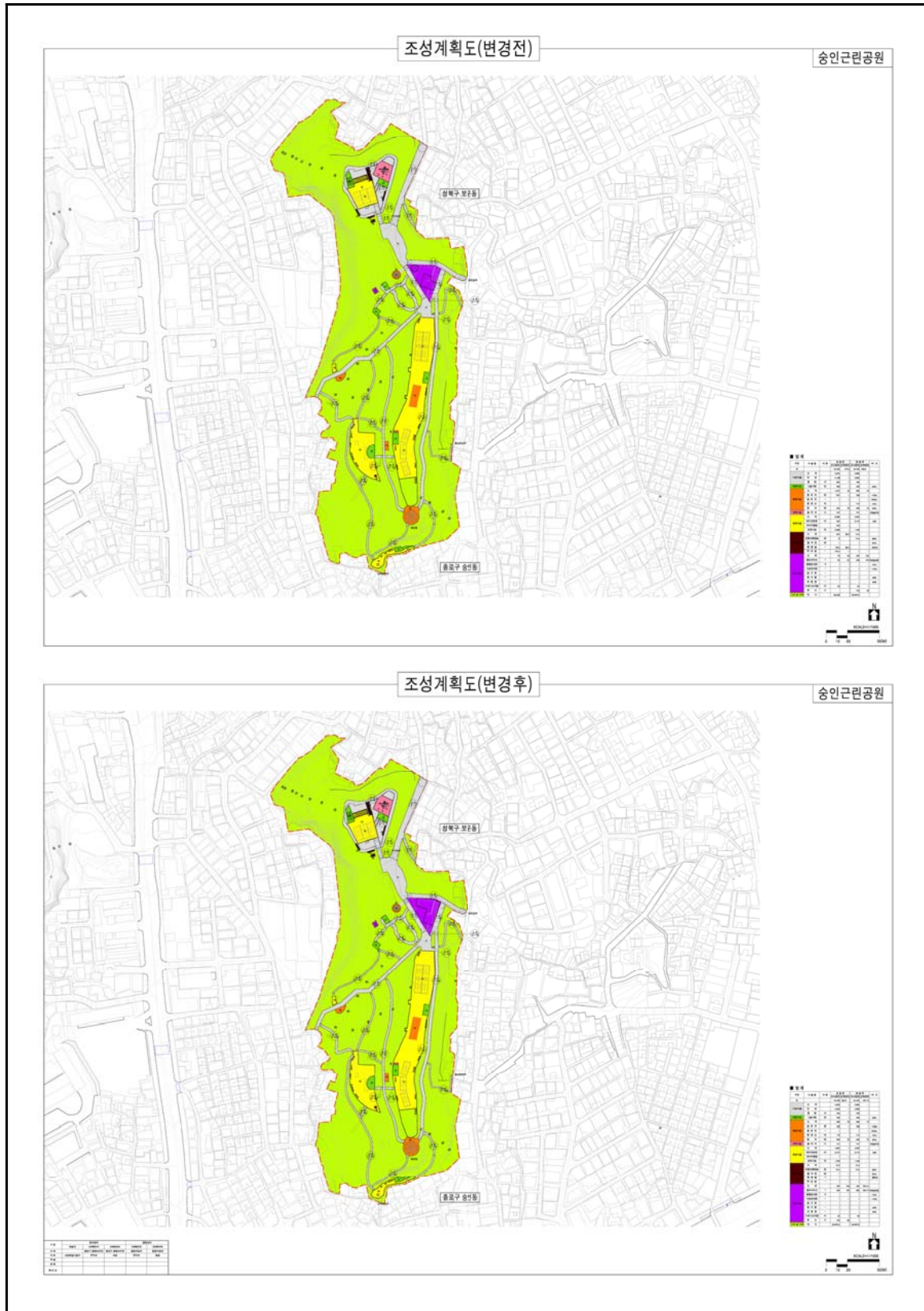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45,400	11,398.5			179.5	287.5				45,400	11,398.5		1	331.15	619.80	
	계		4,965	4,965								4,965	4,965					
도 로			4,205	4,205								4,205	4,205					(등의자13) (평원자6)
	소 계		760	760								760	760					
광장	가-1	58-14대일원	586	586							가-1	58-14대일원	586	586				
	가-2	58-60임일원	198	198							가-2	58-60임일원	198	198				
계			458	458		8개						458	458		8개			
소 계			458	458		(1개)						458	458		(1개)			
그늘시령	①-1	209-280임	(52)	(52)		(1개)				①-1	209-280임	(52)	(52)		(1개)			
그늘시령	①-2	산5-7도일원	(80)	(80)		(1개)				①-2	산5-7도일원	(80)	(80)		(1개)			
그늘시령	①-3	산58-122임	(52)	(52)		(1개)				①-3	산58-122임	(52)	(52)		(1개)			
그늘시령	①-4	58-182대일원	(55)	(55)		(1개)				①-4	58-182대일원	(55)	(55)		(1개)			
그늘시령	①-6	58-52임일원	(61)			(1개)				①-6	58-52임일원	(61)			(1개)			
그늘시령	①-9	산58-454임	(77)	(77)		(1개)				①-9	산58-454임	(77)	(77)		(1개)			
그늘시령	①-10	72-231임	(47)	(47)		(1개)				①-10	72-231임	(47)	(47)		(1개)			(등의자2)
그늘시령	①-11	58-70임	(34)	(34)		(1개)				①-11	58-70임	(34)	(34)		(1개)			
계			586	586			76	130				586	586			76	130	
소계			126	126		17						126	126		17			
등의자	②-1	산5-7도일원	(12)		(2개)					②-1	산5-7도일원	(12)	(12)		(2개)			
휴 양 시 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휴 양 시 설	등의자	②-2	산5-7도일원	(8)	(8)	(3개)			②-2	산5-7도일원	(8)	(8)	(3개)					
	등의자	②-3	209-280임	(7)	(7)	(3개)			②-3	209-280임	(7)	(7)	(3개)					
	등의자	②-14	58-348임	(33)	(33)	(3개)			②-14	58-348임	(33)	(33)	(3개)					
	등의자	②-16	산5-7	(17)	(17)	(2개)			②-16	산5-7	(17)	(17)	(2개)					
	등의자	②-17	58-299임	(49)	(49)	(4개)			②-17	58-299임	(49)	(49)	(4개)					
	휴게소	마	58-163임	172	172		등의자4, 평의자4 단식의자8		마	58-163임	172	172			등의자4, 평의자4 단식의자8			
	평의자		전지역			25개				전지역			25개					
	소계			288	288	2개	76 130				288	288	2개	76 130				
	정자	③-1	58-16임	44	44	(1개)	(38) (92)		③-1	58-16임	44	44	(1개)	(38) (92)				
	정자(등양정)	③-2	58-299임	244	244	(1개)	(38) (92)		③-2	58-299임	244	244	(1개)	(38) (92)			(등의자) (국기게양대1)	
유 의 시 설	계			157	157						157	157						
	놀이터	나	산4-3도	157	157				나	산4-3도	157	157					조합놀이대	
운동 시 설	계			4,651	4,651						4,651	4,651						
	소계			3,412	3,412	12면					3,412	3,412	12면					
	배드민턴장	다-1	58-122임일원	1,238	1,238	(4면)			다-1	58-122임일원	1,238	1,238	(4면)				(등의자15)	
	배드민턴장	다-2	58-182대일원	1,713	1,713	(5면)			다-2	58-182대일원	1,713	1,713	(5면)				(등의자4) (평의자4)	
	배드민턴장	다-3	산5-7	461	461	(3면)	단상1, 배드민턴결이1		다-3	산5-7	461	461	(3면)		단상1, 배드민턴결이1			
	소계			1,239	1,239						1,239	1,239						
	체육시설	라-2	산5-7도일원	(73)	(73)		평행봉1, 윗몸일으키기1, 하리돌리기2, 단상1		라-2	산5-7도일원	(73)	(73)			평행봉1, 윗몸일으키기1, 하리돌리기2, 단상1			
	체육시설	라-7	58-383임일원	(910)	(910)		오금퍼기2, 메달려몸퍼기1, 윗몸일 으키기1, 하리돌리기2, 가슴퍼기1, 그네1, 음수전1, 씨름장1		라-7	58-383임일원	(910)	(910)			오금퍼기2, 메달려몸퍼기1, 윗몸일 으키기1, 하리돌리기2, 가슴퍼기1, 그네 1, 음수전1, 씨름장1			
	체육시설	라-8	58-348임일원	(190)	(190)		평행봉1, 윗몸일으키기1, 하리돌리기1		라-8	58-348임일원	(190)	(190)			평행봉1, 윗몸일으키기1, 하리돌리기1		(등의자4)	
	체육시설	라-9	58-383임일원	(38)	(38)		체력단련기구		라-9	58-383임일원	(38)	(38)			체력단련기구			
체육시설	라-10	58-279임일원	(28)	(28)		윗몸일으키기1, 하리돌리기1		라-10	58-279임일원	(28)	(28)			윗몸일으키기1, 하리돌리기1		(등의자2)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 시설	계		13.5	13.5								13.5	13.5						
	소계			13.5	13.5		8개					13.5	13.5		8개				
	이동화장실	④-1	58-163임일원	(4.5)	(4.5)	(2개)				④-1	58-163임일원	(4.5)	(4.5)	(4.5)	(2개)				
	이동화장실	④-3		(4.5)	(4.5)	(2개)				④-3		(4.5)	(4.5)	(4.5)	(2개)				
	이동화장실	④-4		(4.5)	(4.5)	(2개)				④-4		(4.5)	(4.5)	(4.5)	(2개)				
	음수전		전지역				5개				전지역					5개			
관리 시설	계		591	591			150	190				591	591				255.15	489.80	증 바닥면적 105.15㎡ 증 연면적 299.80㎡
	관리사무소	1	58-6임	446	446	철근 콘크리트	1층	120	160	1	58-6임일원	566	566	철근 콘크리트	지상1층 지하1층		255.15	489.80	증 부지면적 120㎡ 증 시설면적 120㎡
	종합안내관	5	58-6임				1개			5	58-6임				1개				
	시설안내관		전지역				11개				전지역				11개				
	휴지통		전지역				35개				전지역				35개				
	조명등		전지역				65개				전지역				65개				
	쓰레기소각장	바	58-532임일원	25	25					바	58-532임일원	25	25						폐지 120㎡ 폐지 건축물 30.0㎡
	초소	2	58-14대일원	120	120	철근 콘크리트		30	30										
	계			33,978.5								33,978.5							
	녹지 및 기타			33,978.5								33,978.5							

3. 도로조서 -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121	3,362				
변경					1,121	3,362				
당초	소로	2	1	8	83	664	진입로	보문6가209-279임	광장1-1	
당초	소로	소 계			1,098	2,855.5				
당초	소로	3	1	2	27	54	진입로	보문6가209-18대	소로2-1	
당초	소로	3	2	4	61	244	진입로	송인동181-143대	광장1-1	
당초	소로	3	3	6	32	192	지구내도로	광장1-1	광장1-2	
당초	소로	3	4	3	130	390	진입로	송인동59-41대	광장1-2	
당초	소로	3	5	6	10	60	지구내도로	광장1-1	소로3-8	
당초	소로	3	6	2	154	308	지구내도로	소로3-8	소로3-8	
당초	소로	3	7	2	6	12	지구내도로	조경시설2-1	체력단련장6-3	
당초	소로	3	8	3	10	30	지구내도로	소로3-5	소로3-8	
당초	소로	3	16	3	26	78	지구내도로	소로3-2	소로3-18	
당초	소로	3	18	1.5	6	9	지구내도로	소로3-19	광장1-2	
당초	소로	3	20	3	185	555	지구내도로	소로3-16	동망정4-2	
당초	소로	3	22	1.5	8	12	지구내도로	소로3-20	배드민턴장6-2	
당초	소로	3	23	1.5	65	97.5	진입로	송인동179-71대	소로3-20	
당초	소로	3	24	1.5	56	84	지구내도로	운동시설8-8	소로3-20	
당초	소로	3	28	2	172	344	지구내도로	동망정4-2	소로3-4	
당초	소로	3	29	2	8	16	지구내도로	조경시설2-9	소로3-28	
당초	소로	3	37	2.5	22	55	지구내도로	조경시설2-11	소로3-4	
당초	소로	3	38	2.5	28	70	지구내도로	광장1-2	조경시설2-6	
당초	소로	3	40	2.5	27	67.5	지구내도로	광장1-2	소로3-42	
당초	소로	3	41	4	5	20	지구내도로	소로3-3	팔각정자4-1	
당초	소로	3	38	2.5	28	70	지구내도로	광장1-2	조경시설2-6	
당초	소로	3	40	2.5	27	67.5	지구내도로	광장1-2	3-42	
당초	소로	3	41	4	5	20	지구내도로	소로3-3	팔각정자4-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09호(2015. 10. 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7호(2017. 2. 9.)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38호(2017.4.2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강일삼거리 확장공사」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3. 변동된 저촉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인, 미 통지인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37-4 ~ 강일동 601-4

나.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강일삼거리 확장공사

라.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도로확장 폭 25 → 38m, 연장 300m

마.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바.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 따로 붙임

아.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변경없음)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차. 시민 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청 도로계획과(☎02-2133-8087) 및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5)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강일삼거리 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번	구분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권리	
1	고덕동 137	당초	9	9	전	9/2141	심*환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서로45 2203동 22*호 (풍산동, 미사강변동원로얄듀크)				
						2132/2141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 (개포동)				
		변경	9	9	전		심*환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서로45 2203동 22*호 (풍산동, 미사강변동원로얄듀크)				
2	고덕동 신18	당초	944	944	임	236/2057	이*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203 그렌델 시에이 콩코드스트리트 3**				
						236/2057	이*영	서울 노원구 삼발로 196, 615동 1**호(하계동, 장미아파트)				
						236/2057	이*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25, 10*동 12**호(풍납동)				
						236/2057	이*영	서울 강남구 선릉로126길 22 10*-3** (롯데캐슬프레미어)				
						1113/2057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 (개포동)				

연번	소재지번	구분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2	고덕동 산18	변경	944	944	임	1/4	이*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203 그렌델 시에이 콩코드스트리트 3**				
						1/4	이*영	서울 노원구 성발로 196, 615동 1**호(하계동, 장미아파트)				
						1/4	이*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25, 10*동 12**호(풍납동)				
						1/4	이*영	서울 강남구 선릉로126길 22 10*-3**(롯데캐슬프레미어)				
3	강일동 600-6	당초	205	205	임	51.25/214	이*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203 그렌델 시에이 콩코드스트리트 3**				
						51.25/214	이*영	서울 노원구 성발로 196, 615동 1**호(하계동, 장미아파트)				
						51.25/214	이*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25, 10*동 12**호(풍납동)				
						51.25/214	이*영	서울 강남구 선릉로126길 22 10*-3**(롯데캐슬프레미어)				
						9/214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 (개포동)				
						1/4	이*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203 그렌델 시에이 콩코드스트리트 3**				
		변경	205	205	임	1/4	이*영	서울 노원구 성발로 196, 615동 1**호(하계동, 장미아파트)				
						1/4	이*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25, 10*동 12**호(풍납동)				
						1/4	이*영	서울 강남구 선릉로126길 22 10*-3**(롯데캐슬프레미어)				
						1/4	이*영					

연번	소재지번	구분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4	강일동 600-14	당초	23	23	임	이*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25, 10*동 12**호(풍납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 (개포동)				
		변경	23	23	임	이*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25, 10*동 12**호(풍납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 (개포동)				
5	강일동 606	당초	45	45	답	김*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27, *0*동 *0*호 (중동, 어울림타운하우스)	강동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암사동) (강일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평촌지점)	근저당권	
6	강일동 607-1	당초	200	200	답	김*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27, *0*동 *0*호 (중동, 어울림타운하우스)	강동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암사동) (강일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평촌지점)	근저당권	
		변경									
7	강일동 605	당초	84	84	답	최*진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16, *2*동 *0*호 (묵동, 신내두산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 (개포동)				
		변경	84	84	답	최*진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16, *2*동 *0*호 (묵동, 신내두산아파트)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

- ☐ 사업명 : 강일삼거리 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번	구분	물건의 종류	용도	구조 및 규격	평면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 의존관리	성명	주소	소유권이 의존관리	
1	강일동 605	당초	지장물	검나무	R10cm × H5m	1주		최*진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16, *2*동 *0*호 (묵동, 신내두신아파트)					
		변경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49호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2단지)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2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변창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4. 사업기간 : 불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불임

6.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화번호 : 02-3410-79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2단지) 사업계획변경(3차) 승인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변 경 내 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② 대 지 면 적 (㎡)		33,406	33,255	
③ 건 축 면 적 (㎡)		5,427.09		
④ 건축 연면적 (㎡)		96,119.15		
⑤ 건 폐 율 (%)		16.25	16.32	
⑥ 용 적 률 (%)		215.18	216.16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아파트 7동 (지하1층, 지상15 ~ 25층)	
	주택 형별	국민임대	39㎡A형 : 248세대 39㎡A-S형 : 17세대 총 265세대	39㎡A형 : 248세대 39㎡A-S형 : 17세대 49㎡A형 : 148세대 49㎡A-S형 : 16세대 59㎡A형 : 86세대 59㎡A-S형 : 3세대 59㎡B형 : 56세대 59㎡B-S형 : 6세대 총 580세대
		장기전세	49㎡A형 : 148세대 49㎡A-S형 : 16세대 59㎡A형 : 86세대 59㎡A-S형 : 3세대 59㎡B형 : 56세대 59㎡B-S형 : 6세대 총 315세대	총 0세대
		공공분양	59㎡B형 : 18세대 84㎡A형 : 16세대 84㎡B형 : 134세대 84㎡C형 : 70세대 총 238세대	59㎡B형 : 18세대 84㎡A형 : 16세대 84㎡B형 : 134세대 84㎡C형 : 70세대 총 238세대
	계		818 세대	818 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4. 08. ~ 2018. 01.	2014. 08. ~ 2018. 06.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주차장		자주식 옥내(지하) 740대 / 옥외(지상) 146대	
	어린이놀이터		1,170.23㎡	
	주민운동시설		666.93㎡	
	경로당		228.70㎡	
	보육시설		479.29㎡	
	작은도서관		395.02㎡	
	주민공동시설		485.35㎡	
	근린생활시설		251.34㎡	
	조경시설		12,069.17㎡	11,918.17㎡
	관리사무소		313.02㎡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	
	경비실		2개소	
	난방방식		개별난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0호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광진구 공동주택) 정비 선도사업계획 고시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광진구 공동주택) 정비 선도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 계획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02-2133-7114, 팩스 02-2133-0750), 광진구 주택과(☎ 02-450-7653, 팩스 02-450-1749)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광진구 공동주택) 정비 선도사업
2. 사업기간
 - 2017년 7월 ~ 2019년 7월
3. 기본방향 및 목표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재개 지원을 통한 도시의 위해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4. 정비방법 및 내용
 - 정비방법 결정 조서

관리 번호	위치	중단 시점	정비방법	정비후 용도	사업기간	목표 연도	사업비 (백만원)	비고
선도-2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4-15 일원	2010.7	공사재개 지원	공동주택	2017.7 ~2019.7	2019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4호(2017. 6. 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성동구공고 제2017-554호(2017. 6. 22.)로 열람공고 한 「금호로 확장공사(금호동2가 220-1~222-2간)」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4), 성동구청 토목과(02-2286-5764)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220-1~222-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금호로 확장공사(금호동2가 220-1~222-2)

다. 사업의 규모: 도로확장 폭19→25m, 연장 41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8.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금호동2가 220-1	대	137.2	42.9	김귀임	성동구 옥수동 539-9				
2	금호동2가 220-2	대	59.5	19.1	이하자	성동구 금호로166 601호				5/9
					조혜영	성동구 금호로166 601호				4/9
3	금호동2가 221-2	대	118.3	40.6	농협은행주식회사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4	금호동2가 222-1	대	232.7	67.0	농협은행주식회사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지상권	
5	금호동2가 222-2	대	59.2	8.1	이승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 106동106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지상권	

별첨 2

연번	소재지 ·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1	금호동2가 220-1	건물(지하)	철근 콘크리트	28.5	김귀임	성동구 옥수동 539-9				
		건물(1층)		33.8						
		건물(2층)		33.8						
		건물(3층)		33.8						
2	금호동2가 220-2	건물(지하)	블럭조, 조적조	21.7	이하자(5/9) 조혜영(4/9)	성동구 금호로166 601호				
		건물(1층)		21.7						
		건물(2층)		21.7						
		건물(3층)		21.7						
3	금호동2가 221-2 외 1필지	건물(1층)	철근 콘크리트	116.4	농협은행주식회사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금호동2가 221-2, 222-1
		건물(2층)		116.4						
		건물(3층)		116.4						
		건물(4층)		56.9						
		건물(5층)		8.5						
4	금호동2가 222-2	건물(1층)	철근 콘크리트	12.5	이승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 106동106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건물(2층)		12.5						
		건물(3층)		12.5						
		건물(4층)		12.5						

영업권조사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세부 구분	물건의 종 류	상 호	수량	영업권의 종 류 (사업자등록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금호동2가220-1	지하 1층	음식	#&b 라이브카페	1식	간이주점	중구 퇴계로62길3-7 오른쪽1층	조정연	
2	금호동2가220-1	지상 1층	부동산업	거성부동산	1식	부동산중개업	송파구 한기람로 478 써티크동APT101동203호	이재신	
3	금호동2가220-1	지상 1층	부동산업	금호부동산	1식	부동산중개업	고양시 일신동구 중앙로 1275번길 86-23 청원레이크빌 401호	정현수	
4	금호동2가220-1	지상 2층	기타	그린이노베이션 희망도시건설주식회사	1식	건설업	금호동2가220-1	임채호	
5	금호동2가220-2	지상1층	제조	신금호떡집	1식	떡집	성동구 금호로16길19 201호	김창용	
6	금호동2가222-1	지상1층~ 지상2층	금융 및 보험업	NH농협은행 금호동지점	1식	은행	중구 통일로 120	한상민	
7	금호동2가222-2	지상 1층	소매업	광석당	1식	귀금속	성동구 금호동 금호산9 가길12-19 금산빌라 204	정평택	
8	금호동2가222-2	지상 1층	소매업	금형철물상회	1식	철물	성동구 금호산9가길 59-7	임생빈	
9	금호동2가222-2	지상 2층	서비스	머리끈 이오시	1식	미용실	강북구 슬샘로 159 벽산라이브파크APT115동1701호	오명근	
10	금호동2가222-2	지상 3층	금융	대성사	1식	전담포 대부업	성동구 금호로155	김충웅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2호

**도시관리계획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2010.12.2.)호 및 제2013-333(2013.10.10.)호로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42(2014.4.17)호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된 한강로3가 40-969번지 일원 용산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취지

- 기 결정('14.4.17)된 용산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의해 결정된 공공기여 시설중 원효전자상가 공익시설에 대하여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공간 재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함.

II.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	3,248,137	-	3,248,137	1995.3.8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번지	3,791	서고 제182호 1987.3.20	

나. 공간시설

- 1) 광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 3)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 4)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⑧	공공공지	한강로3가 40-992번지	200.0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1) 시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유통업무설비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 1) 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3)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보건위생시설

- 1) 종합의료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구모 결정(변경)조서

- 1)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 6) 신계지구 : 변경없음
- 7) 전자상가지구 : 변경없음

■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 변경없음

구분	동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한강로3가	40-969대, 40-970대 40-990대, 40-1003대	18,953.7	-	특별계획구역 (18,953.7㎡)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8) 한강로 지구 ~ 9) 아세아아파트 주변지구 :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 1) 불허용도 : 변경없음
 2) 권장용도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1)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2) 용적률 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물 높이계획
 1) 높이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해당지구		높이계획	비고	
기정	- 서울역 역사지구(서울역 특별계획구역) - 동자동 업무지구(동자동 특별계획구역) - 후암동 주거지구 -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 남영동 상업·업무지구 - 문배동 업무 지구 - 문배지구 - 한강로 지구 - 신계지구		변 경 없 음		
기정	전자상가 지구	유통업무설비시설		• 100m이하	
		주거지역		• 40, 80, 100m이하	
기정		특별계획구역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 150m이하(획지) • 120m이하(자동차정류장)	
기정	- 국제빌딩 주변지구 - 용산공원 남측지구 - 용산역사 지구 - 정비창 전면지구 - 아세아 아파트 주변지구		변 경 없 음		
주1) ~ 주5) 변경없음					

- 라. 건축물 배치계획 : 변경없음
 마. 건축물 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계획 : 변경없음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1) 차량출입 불허구간 : 변경없음
 2) 차량출입구간 : 변경없음
 다. 친환경요소에 관한 계획
 1) 친환경요소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 친환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인센티브(의무형 인센티브) : 변경없음

라. 인센티브 항목

1) 인센티브 계획용적률 산정을 위한 계획 공통기준 : 변경없음

2) 일반필지의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① ~ 2001년에 기결정된 특별계획구역 : 변경없음

■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항 목	세 분	세부계획 기준	산정식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본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3					
	섬지형, 침상형 공지	기본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기본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본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4	• 입체조성은 지하철, 지하 광장·보도와 연계시 부여				
건축물 용 도	지정 또는 권장	기본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1	• 20% 이상 설치를 기준하여 계수 적용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본용적률×(설치면적÷해당층바닥면적) ×1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 에 한함				
도시 경관 개선	지하철 및 지중화 시설 건축물내 설치	기본용적률×0.5	• 지하철 및 지중화 관련 시설물을 건물 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건축물 등 형태	기본용적률×0.2	• 우수디자인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 한함				
주차 계획	대형버스 주·정차장 확보 5대 이상	기본용적률×0.2	• 대지내 버스주·정차장 5대 이상 확보시				
	공동주차장	기본용적률×0.2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기본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 녹화	기본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기본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본용적률×0.05 이내					
	중수도시설 설치	기본용적률×0.04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설치 (저류·침투·이용)	기본용적률×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및 빗물 침 투시설 설계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 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 상이 되도록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본용적률×0.05	•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 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 절감률	에너지 성능지표	친환경 건축물인증	완화기준
				1등급	33.5%이상	81점이상	85점이상
			2등급	23.5~33.5%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본용적률 × 0.05

※ 자연지반 보존 등 환경친화 항목의 인센티브는 계획유도 항목 인센티브의 2/10 이상 계획한다.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서울역 특별계획구역(1) ~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38) : 변경없음

□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 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기정	39	용산관광버스터미널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40-969외 3필지	18,953.7		

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 250%이하, 기본 : 580%이하, 허용 : 800%, 상한 : 960%이하 단, 상한용적률은 지상부 연면적 중 관광숙박시설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높이		• 150m이하(획지)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장, 장례식장, 교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부대시설포함) 지상부 90% 이상
건축선		• 15m 도로변 3m • 8m 도로변 2m
건축물 형태		• 각 동의 입면형태는 서로 다르게 계획하고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절 • 고층부(높이 8층 초과) 동간 거리 최소 30m 이상 이격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서측 :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공공공지(200㎡)와 연계하여 조성 • 동측 : 용산역 연결통로,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조성 • 조성 방법 등은 서울시 건축조례 준수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 대지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2개소 • 용산역~대상지 및 대상지~나진상가 연결통로는 현재의 연결성 확보 및 상시개방 - 사업시행시 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이행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따름
기타		자동차정류장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건축물의 범위 기준에 따름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 구청장) : 변경없음

Ⅲ.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기 정	39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40-969외 3필지	18,953.7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953.7	-	18,953.7	1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8,953.7	-	18,953.7	100%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14	15	집산 도로	340 (5)	한강로3가 23-1	한강로3가 23-1	일반도로	-	서고제177호 (87.03.19)	

※ 도로연장에서 ()는 특별계획구역내 연장으로 유보지에 포함됨

2)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번지	3,791	서고 제182호 1987.3.20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①	한강로3가 40-970외 3필지	14,797.7	획지
		②	한강로3가 40-969	3,791.0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③	한강로3가 40-969	365.0	유보지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 : 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 개발계획(안)	비고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장, 장례식장, 교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변경없음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부대시설포함) 지상부 90% 이상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 : 변경없음

1) 건폐율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 개발계획(안)	비고
획지	60% 이하	변경없음	
자동차정류장	60% 이하		

2) 용적률 계획

구분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 개발계획(안)	비고
획지	기준용적률	250% 이하	변경없음	
	기본용적률	580% 이하	변경없음	
	허용용적률	800% 이하	변경없음	
	상한용적률	960% 이하	변경없음	단, 상한용적률은 지상부 연면적 중 관광숙박시설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자동차정류장	800% 이하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기준

항 목	세 분	세부계획 기준	산정식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본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3	
	쌈지형, 침상형 공지	기본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3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기본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3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본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4	• 입체조성은 지하철, 지하 광장·보도와 연계 시 부여

항 목	세 분	세부계획 기준	산정식														
건축물 용 도	지정 또는 권장	기본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1	• 20% 이상 설치를 기준하여 계수 적용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본용적률×(설치면적÷해당층 바닥면적)×1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 함														
도시 경관 개선	지하철 및 지중화 시설 건축물내 설치	기본용적률×0.5	• 지하철 및 지중화 관련 시설물을 건물 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건축물 등 형태	기본용적률×0.2	• 우수디자인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 한함														
주차 계획	대형버스 주·정차장 확보 5대 이상	기본용적률×0.2	• 대지내 버스주·정차장 5대 이상 확보시														
	공동주차장	기본용적률×0.2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기본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 ×0.2															
	옥상 녹화	기본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 ×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기본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 서 기본용적률×0.05 이내															
	중수도시설 설치	기본용적률×0.04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설치 (저류·침투·이용)	기본용적률×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및 빗물침투시설 설계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본용적률×0.05	•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 량의 1% 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 계획 도입	<table><tr><td>구분</td><td>에너지 절감률</td><td>에너지 성능지표</td><td>친환경 건축물인증</td><td>완화기준</td></tr><tr><td>1등급</td><td>33.5%이상</td><td>81점이상</td><td>85점이상</td><td>기본용적률 × 0.08</td></tr><tr><td>2등급</td><td>23.5~33.5%미만</td><td>74~81점 미만</td><td>75~85점 미만</td><td>기본용적률 × 0.05</td></tr></table>		구분	에너지 절감률	에너지 성능지표	친환경 건축물인증	완화기준	1등급	33.5%이상	81점이상	85점이상	기본용적률 × 0.08	2등급	23.5~33.5%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구분	에너지 절감률	에너지 성능지표	친환경 건축물인증	완화기준													
1등급	33.5%이상	81점이상	85점이상	기본용적률 × 0.08													
2등급	23.5~33.5%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본용적률 × 0.05													

※ 자연지반 보존 등 환경친화 항목의 인센티브는 계획유도 항목 인센티브의 2/10 이상 계획한다.

다. 높이에 관한 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 개발계획(안)	비고
획지	최고높이 : 150m 이하	변경없음	•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 적용
자동차정류장	120m 이하		

라.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 개발계획(안)	비고
건축 한계선	• 15m 도로변 3m • 8m 도로변 2m	변경없음	
건축물 형태	• 각 동의 입면형태는 서로 다르게 계획하고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절 • 고층부(높이 8층 초과) 동간 거리 최소 30m 이상 이격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다.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구분	시설	규모	용도	비고
기정	공공공지	200㎡	주민휴식공간	• 부지면적의 1.05% • 한강로3가 40-992 •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정	자동차 정류장	3,791㎡	공영차고지	• 부지면적의 20% •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정	공공청사	소계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산업지원센터 등	• 부지면적의 13.95%이상 • 인근 원효상가(한강로3가 16-20 일원) 1,2,3층에 제공 • 부속토지(2,599.93㎡) 포함 제공
		(1층)		
		(2층)		
		(3층)		
변경	공공청사	소계	교육, 연구시설 및 편익시설 등	• 부지면적의 13.95%이상 • 인근 원효상가(한강로3가 16-20 일원) 2,3층에 제공 • 부속토지(2,599.93㎡) 포함 제공
		(1층)		
		(2층)		
		(3층)		

주 : 1) 공공청사의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다.

2) 제공하는 공공시설등은 세부적인 용도, 배치, 조성형태, 성능수준, 설비 등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준공전까지 기부채납한다.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원효전자상가(한강로3가 16-20일원) • 1,2,3층(6,003.08㎡)→2,3층(6,001.67㎡) 〈건축물 공간배치 조정으로 면적감소 (감1.41㎡)〉	-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배치 • 부속토지 : 2,599.93㎡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종합)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 250%이하, 기본 : 580%이하, 허용 : 800%, 상한 : 960%이하 단, 상한용적률은 지상부 연면적 중 관광숙박시설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높이		• 150m이하(획지)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장, 장례식장, 교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부대시설포함) 지상부 90% 이상																															
건축선		• 15m 도로변 3m • 8m 도로변 2m																															
건축물 형태		• 각 동의 입면형태는 서로 다르게 계획하고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절 • 고층부(높이 8층 초과) 동간 거리 최소 30m 이상 이격																															
대지내 공지	공개 공지	• 서측 :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공공공지(200㎡)와 연계하여 조성 • 동측 : 용산역 연결통로,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조성 • 조성 방법 등은 서울시 건축조례 준수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 통로	• 대지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2개소 • 용산역~대상지 및 대상지~나진상가 연결 통로의 연결성 확보 및 상시개방 – 사업시행시 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이행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table><tr><th>구분</th><th>시설</th><th>규모</th><th>용도</th><th>비 고</th></tr><tr><td>기정</td><td>공공 공지</td><td>200㎡</td><td>주민휴식공간</td><td>• 부지면적의 1.05% • 한강로3가 40-992 • 도시계획시설 결정</td></tr><tr><td>기정</td><td>자동차 정류장</td><td>3,791㎡</td><td>공영차고지</td><td>• 부지면적의 20% • 도시계획시설 결정</td></tr><tr><td rowspan="4">기정</td><td rowspan="4">공공 청사</td><td>소 계 연면적 6,003.08㎡</td><td rowspan="4">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산업지원센터 등</td><td rowspan="4">• 부지면적의 13.95%이상 • 인근 원효상가(한강로3가 16-20 일원) 1,2,3층에 제공 • 부속토지(2,599.93㎡) 포함 제공</td></tr><tr><td>(1층) 연면적 1,371.16㎡</td></tr><tr><td>(2층) 연면적 2,007.36㎡</td></tr><tr><td>(3층) 연면적 2,624.56㎡</td></tr><tr><td rowspan="4">변경</td><td rowspan="4">공공 청사</td><td>소 계 연면적 6,001.67㎡</td><td rowspan="4">교육, 연구시설 및 편익시설 등</td><td rowspan="4">• 부지면적의 13.95%이상 • 인근 원효상가(한강로3가 16-20 일원) 2,3층에 제공 • 부속토지(2,599.93㎡) 포함 제공</td></tr><tr><td>(1층) -</td></tr><tr><td>(2층) 연면적 2,276.67㎡</td></tr><tr><td>(3층) 연면적 3,725.00㎡</td></tr></table>	구분	시설	규모	용도	비 고	기정	공공 공지	200㎡	주민휴식공간	• 부지면적의 1.05% • 한강로3가 40-992 •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정	자동차 정류장	3,791㎡	공영차고지	• 부지면적의 20% •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정	공공 청사	소 계 연면적 6,003.08㎡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산업지원센터 등	• 부지면적의 13.95%이상 • 인근 원효상가(한강로3가 16-20 일원) 1,2,3층에 제공 • 부속토지(2,599.93㎡) 포함 제공	(1층) 연면적 1,371.16㎡	(2층) 연면적 2,007.36㎡	(3층) 연면적 2,624.56㎡	변경	공공 청사	소 계 연면적 6,001.67㎡	교육, 연구시설 및 편익시설 등	• 부지면적의 13.95%이상 • 인근 원효상가(한강로3가 16-20 일원) 2,3층에 제공 • 부속토지(2,599.93㎡) 포함 제공	(1층) -	(2층) 연면적 2,276.67㎡	(3층) 연면적 3,725.00㎡
		구분	시설	규모	용도	비 고																											
		기정	공공 공지	200㎡	주민휴식공간	• 부지면적의 1.05% • 한강로3가 40-992 •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정	자동차 정류장	3,791㎡	공영차고지	• 부지면적의 20% •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정	공공 청사	소 계 연면적 6,003.08㎡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산업지원센터 등	• 부지면적의 13.95%이상 • 인근 원효상가(한강로3가 16-20 일원) 1,2,3층에 제공 • 부속토지(2,599.93㎡) 포함 제공																											
				(1층) 연면적 1,371.16㎡																													
				(2층) 연면적 2,007.36㎡																													
				(3층) 연면적 2,624.56㎡																													
		변경	공공 청사	소 계 연면적 6,001.67㎡	교육, 연구시설 및 편익시설 등	• 부지면적의 13.95%이상 • 인근 원효상가(한강로3가 16-20 일원) 2,3층에 제공 • 부속토지(2,599.93㎡) 포함 제공																											
				(1층) -																													
(2층) 연면적 2,276.67㎡																																	
(3층) 연면적 3,725.00㎡																																	
주 : 1) 공공청사의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다. 2) 제공하는 공공시설등은 세부적인 용도, 배치, 조성형태, 성능수준, 설비 등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준공전까지 기부채납 한다.																																	
<table><tr><th>구분</th><th>변경내용</th><th>변경사유</th></tr><tr><td>변경</td><td>- 원효전자상가(한강로3가 16-20일원) • 1,2,3층(6,003.08㎡)→2,3층(6,001.67㎡) 〈건축물 공간배치 조정으로 면적감소 (감1.41㎡)〉</td><td>-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배치 • 부속토지 : 2,599.93㎡ 변경없음</td></tr></table>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원효전자상가(한강로3가 16-20일원) • 1,2,3층(6,003.08㎡)→2,3층(6,001.67㎡) 〈건축물 공간배치 조정으로 면적감소 (감1.41㎡)〉	-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배치 • 부속토지 : 2,599.93㎡ 변경없음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원효전자상가(한강로3가 16-20일원) • 1,2,3층(6,003.08㎡)→2,3층(6,001.67㎡) 〈건축물 공간배치 조정으로 면적감소 (감1.41㎡)〉	-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배치 • 부속토지 : 2,599.93㎡ 변경없음																															
기 타		자동차정류장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건축물의 범위 기준에 따름																														

IV.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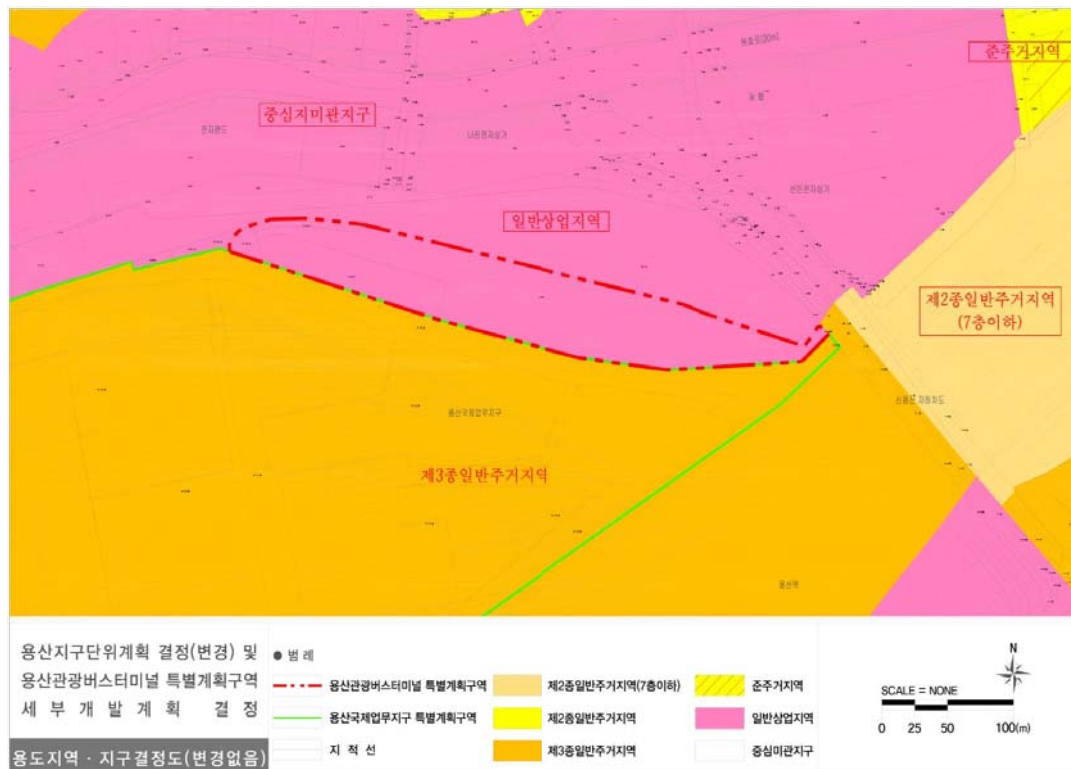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V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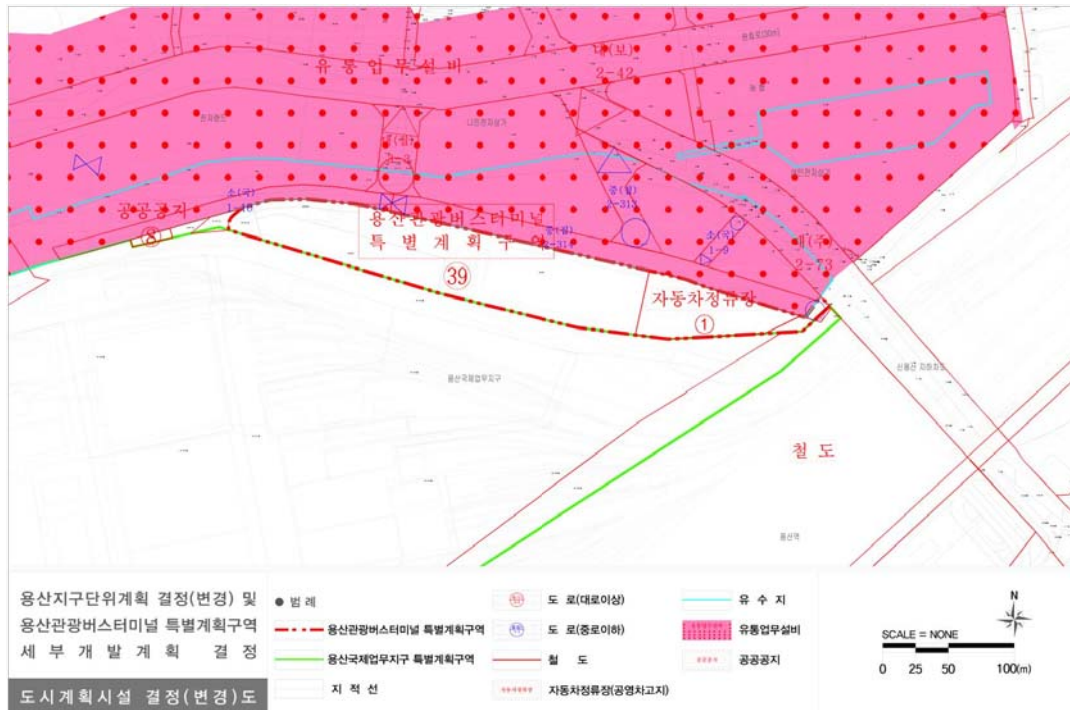
VII. 열람장소 : 민원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센터(☎02-2133-8361)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393)에 관계서류를 비치합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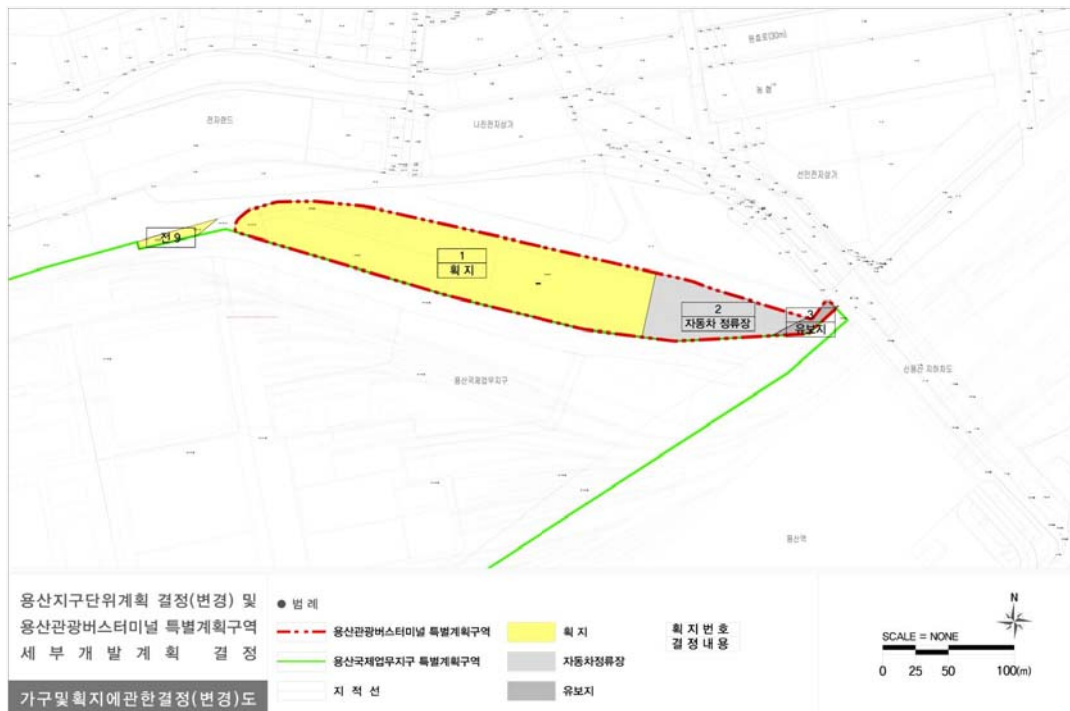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 결정도(변경없음)>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변경없음)>



※ 첨부된 결정(변경)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로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지구(구의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구의3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I.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증감	변경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680번지 일대	385,344.6	증)12.1	385,356.7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 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II.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III.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IV.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44.6	증)12.1	385,356.7	100	
개발용지	소계	239,926.1	증)1.4	239,927.5	62.3	
	첨단업무복합	74,259	—	74,259	19.3	
	첨단업무지원	38,551	—	38,551	10.0	
	상업업무복합	94,995	—	94,995	24.7	
	주거복합	32,121.1	증)1.4	32,122.5	8.3	
공공용지	소계	145,418.5	증)10.7	145,429.2	37.7	
	공공문화복합	14,411	—	14,411	3.7	광진구청
	공원	15,000.7	—	15,000.7	3.9	
	광장	1,897.5	감)0.4	1,897.1	0.5	구의3재정비 촉진구역
	공공공지	540	증)3.4	543.4	0.1	
	주차장	1,037	—	1,037	0.3	
	입체공공시설	4,250	—	4,250	1.1	복합문화시설
	도로	108,282.3	증)7.7	108,290	28.1	

-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3) 기반시설 설치계획(문화 및 복지시설 등)(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

구 분	명칭	개 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	－	17,438.2	증)3.0	17,441.2	－
공원	소계	6	－	15,000.7	－	15,000.7	－
	소공원	3	－	1,861	－	1,861	－
	주제공원	3	－	13,139.7	－	13,139.7	－
광장		2	－	1,897.5	감)0.4	1,897.1	－
공공공지		2	－	540	증)3.4	543.4	－

- 5) 교통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교통계획)에 명시」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경관계획)에 명시」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변경)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구명	구분	구 역 명	동명	지번	면 적(㎡)			정비유형	비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 일대	78,147	-	78,147	전면개발	
	기정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 일대	10,816.4	-	10,816.4	전면개발	
	기정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 일대	9,859.5	증)12.1	9,871.6	전면개발	확정측량에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 구역별 계획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최고 높이 (m)	사업 방식
		기정	변경	변경후			기준	최대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78,147	-	78,147	업무 주거	60 이하	173	492	150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대	10,816.4	-	10,816.4	주거	60 이하	320	500	100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 일대	9,859.5	증)12.1	9,871.6	주거	60 이하	250	400	100	도시환경 정비사업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 구역별 계획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44.6	증)12.1	385,356.7	-	
재정비 촉진 구역	소계		114,088.9	증)12.1	114,101.0	-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78,147.0	-	78,147.0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7번지 일대	15,266.0	-	15,266.0	도시계획 시설사업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대	10,816.4	-	10,816.4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 일대	9,859.5	증)12.1	9,871.6	도시환경 정비사업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존치 정비 구역	소계		55,151.0	-	55,151.0	-	
	자양1 존치정비구역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5,151.0	-	55,151.0	도시환경 정비사업	
존치 관리 구역	소계		151,091.0	-	151,091.0	-	
	자양1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69-10번지 일대	1,133.0	-	1,133.0	개별건축사업	
	자양2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79-11번지 일대	1,805.0	-	1,805.0	개별건축사업	
	자양3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79-5번지 일대	9,506.0	-	9,506.0	개별건축사업	
	자양4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35번지 일대	5,823.0	-	5,823.0	개별건축사업	
존치 관리 구역	자양5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2번지 일대	1,098.0	-	1,098.0	개별건축사업	
	자양6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26-4번지 일대	2,024.0	-	2,024.0	개별건축사업	
	자양7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27-3번지 일대	6,100.0	-	6,100.0	개별건축사업	
	자양8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68번지 일대	3,491.0	-	3,491.0	개별건축사업	
	자양9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65번지 일대	47,824.7	-	47,824.7	개별건축사업	
	자양10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25번지 일대	2,649.0	-	2,649.0	개별건축사업	
	자양11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6-11번지 일대	7,821.9	-	7,821.9	개별건축사업	
	자양12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88번지 일대	7,331.4	-	7,331.4	개별건축사업	
	구의1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52-14번지 일대	7,718.0	-	7,718.0	개별건축사업	
	구의2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52-16번지 일대	7,593.0	-	7,593.0	개별건축사업	
	구의3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6-14번지 일대	10,611.0	-	10,611.0	개별건축사업	
	구의4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6-36번지 일대	8,379.0	-	8,379.0	개별건축사업	
	구의5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3-4번지 일대	17,706.0	-	17,706.0	개별건축사업	
	구의6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4-15번지 일대	2,068.0	-	2,068.0	개별건축사업	
	구의7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4-6번지 일대	409.0	-	409.0	개별건축사업	
기타존치구역(도로)		-	65,013.7	-	65,013.7	-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859.5	증)12.1	9,871.6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	1,169.5	증)10.7	1,180.2	12.0
	준주거	8,690	증)1.4	8,691.4	88.0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기준	최대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재정비 촉진구역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업무,주거	60이하	173	492	- / -	150
	자양2재정비촉진구역	업무	60이하	365	491	- / -	120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업무	60이하	400이하		- / -	100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주거	60이하	321	500(444)	- / -	100
	구의1재정비촉진구역	업무	60이하	409	552	- / -	100
	구의2재정비촉진구역	업무	60이하	419	546	- / -	100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주거	60이하	250	400	- / -	100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변경)

- 기 정

구역명		구역면적 (㎡)	획지면적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순 부담 률 (%)
				합계	도로	공원, 광장	공공 공지	공공 청사	입체 공공 시설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기반 시설내		
합계		169,239.9	109,126.4	60,113.5	31,146	9,859.5	540	14,318	4,250 [12,416]	972.6 (18,860)	14,482.4 (58,079)	44,658.5 (-10,379)	26.4 (-6.1)
촉진 구역	소계	114,088.9	70,575.4	43,513.5	19,570	6,335.5	540	14,318	2,750 [8,388]	972.6 (5,394)	14,482.4 (27,664)	28,058.5 (10,462)	26.6 (9.2)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78,147.0	54,368.0	23,779.0	16,074	4,955.0	-	-	2,750 [8,388]	- (4,112)	- (12,394)	23,779.0 (7,272)	30.4 (9.3)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15,266.0	-	15,266.0	855	-	-	14,411	-	948.0	14,318.0	-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10,816.4	8,315.4	2,501.0	1,566	862	73	-	-	24.6	164.4	2,312.0	21.4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9,859.5	7,892.0	1,967.5	982	518.5	467	-	-	-	-	1,967.5	20.0
존치 정비 구역	소계	55,151.0	38,551.0	16,600.0	11,576	3,524.0	-	-	1,500 [4,028]	- (13,466)	- (30,415)	16,600.0 (-27,281)	30.1 (-49.5)
	자양1 존치정비구역	55,151.0	38,551.0	16,600.0	11,576	3,524.0	-	-	1,500 [4,028]	- (13,466)	- (30,415)	16,600.0 (-27,281)	30.1 (-49.5)

○ 변 경

구역명		구역면적 (㎡)	획지면적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순 부담 률 (%)
				합계	도로	공원, 광장	공공 공지	공공 청사	입체 공공 시설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기반 시설내		
합계		169,252	109,127.8	60,124.2	31,060.7	9,859.1	543.4	14,318	4,250 [12,416]	972.6 (18,860)	14,482.4 (58,079)	44,669.2 (-10,379)	26.4 (-6.1)
촉진 구역	소계	114,101.0	70,576.8	43,524.2	19,570	6,335.5	540	14,318	2,750 [8,388]	972.6 (5,394)	14,482.4 (27,664)	28,058.5 (10,462)	26.6 (9.2)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78,147.0	54,368.0	23,779.0	16,074	4,955.0	-	-	2,750 [8,388]	- (4,112)	- (12,394)	23,779.0 (7,272)	30.4 (9.3)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15,266.0	-	15,266.0	855	-	-	14,411	-	948.0	14,318.0	-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10,816.4	8,315.4	2,501.0	1,566	862	73	-	-	24.6	164.4	2,312.0	21.4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9,871.6	7,893.4	1,978.2	989.7	518.1	470.4	-	-	-	-	1,978.2	20.04
존치 정비 구역	소계	55,151.0	38,551.0	16,600.0	11,576	3,524.0	-	-	1,500 [4,028]	- (13,466)	- (30,415)	16,600.0 (-27,281)	30.1 (-49.5)
	자양1 존치정비구역	55,151.0	38,551.0	16,600.0	11,576	3,524.0	-	-	1,500 [4,028]	- (13,466)	- (30,415)	16,600.0 (-27,281)	30.1 (-49.5)

※ () : 공공청사(동부지원, 우편집중국, 지식정보센터)를 기존 국공유지로 간주하여 산정한 순부담률

※ [] : 입체공공시설 연면적

○ 구역별 기반시설분담계획 : 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반시설은 해당 구역별 사업시행자가 설치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광고물 관리계획: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I.19 광고물관리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I.20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6) 방재계획: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I.21 방재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7) 정보화계획: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I.22 정보화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8) 에너지 순환계획: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I.23 에너지 순환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나) 자양3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다) 자양4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라) 구의3재정비촉진구역(변경) - ② 구의3구역 정비계획 참조

20)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44.6	증)12.1	385,356.7	서울시고시 제2006-357호 (2006.10.19)

(2)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56.7	재정비촉진지구내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오차에 따른 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44.6	증)12.1	385,356.7	100.0
소 계		314,120.6	증)12.1	314,132.7	81.5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9,732	-	89,732	23.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953	-	2,953	0.8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22,933	-	22,933	5.9
	제3종일반주거지역	53,348.5	증)10.7	53,359.2	13.8
	준주거지역	145,154.1	증)1.4	145,155.5	37.7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1,224	-	71,224	18.5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 역: 53,348.5㎡ 준주거지역: 145,154.1㎡	제3종일반주거지 역: 53,359.2㎡ 준주거지역: 145,155.5㎡	385,356.7	재정비촉진지구내 구의3재정비촉진구 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확정측량에 의 한 면적오차에 따른 변경

다)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6-1일대	181,187.9	증)12.1	181,200	서울시고시 제1996-154호 (1996.6.7)

(2)구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광진구 구의동246-1일대	181,200	재정비촉진지구내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 비사업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오차에 따른 변경

마)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광장(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광장	교통 광장	구의동 245-7일대	518.5	감)0.4	518.1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①	광장	교통 광장	구의동 245-7일대	518.1	재정비촉진지구내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오차에 따른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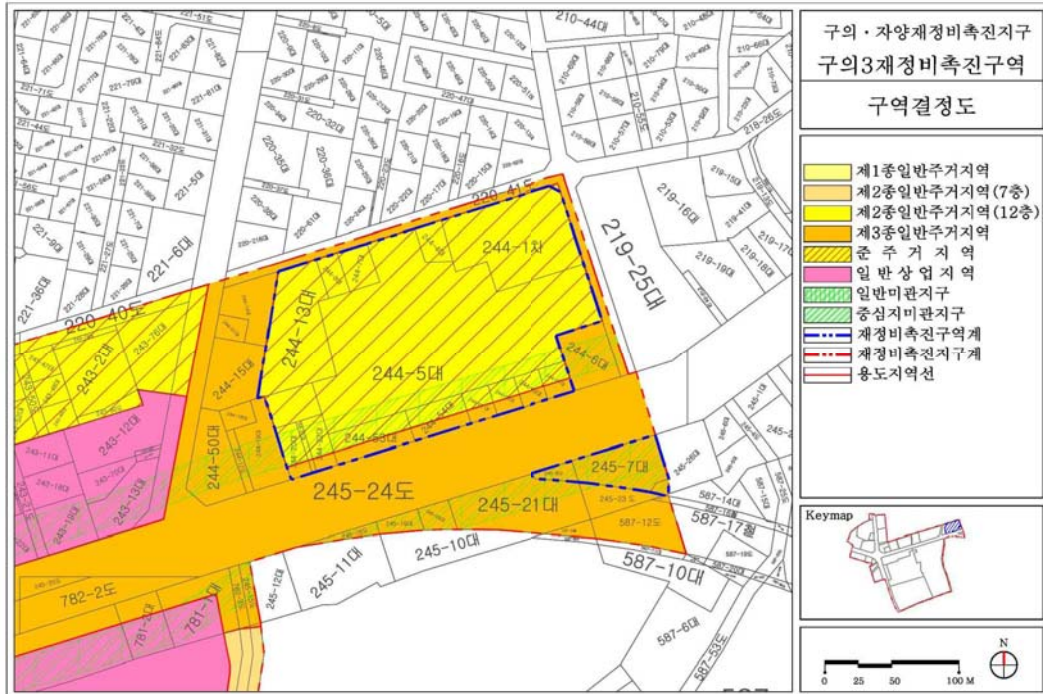
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지형도면(첨부된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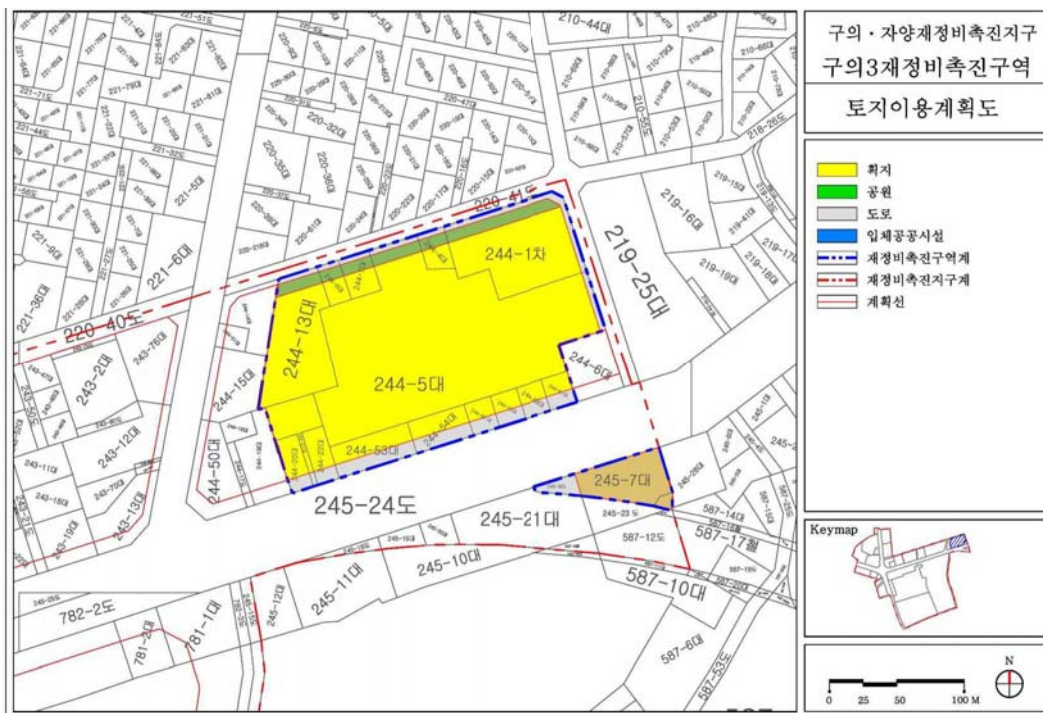
바.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2) 및 광진구 도시디자인과(☎02-450-769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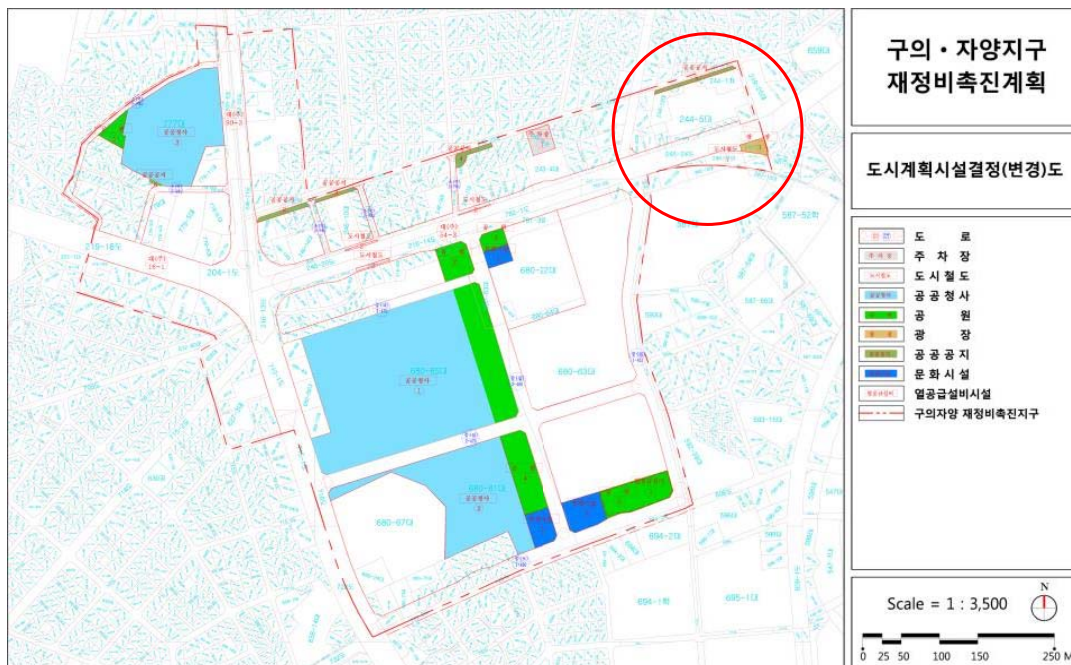
<용도지역결정도(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4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14(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06.23)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 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14(일원개포한신아파트-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7.06.07)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계획구역14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취지

- 2011년 10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결정(변경)되고, 2014년 6월 주민제안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계획 수

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14)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54	26,384	696,146.9	16	10,234	439,531.1	17	7,835	169,593.7	21	8,315	87,022.1
	변경	54	26,384	697,506.8	16	10,234	439,531.1	17	7,835	170,821.5	21	8,315	87,154.2
광로	기정	4	7,957	359,769.4	2	3,470	282,497.0	1	1,639	65,880.4	1	2,848	11,392.0
	변경	4	7,957	359,769.4	2	3,470	282,497.0	1	1,639	65,880.4	1	2,848	11,392.0
대로	기정	4	4,223	128,622.9	1	1,464	51,487.0	1	612	18,360.0	2	2,147	58,775.9
	변경	4	4,223	128,755.0	1	1,464	51,487.0	1	612	18,360.0	2	2,147	58,908.0
중로	기정	18	9,254	175,694.1	7	4,208	94,604.7	10	4,881	79,213.2	1	165	1,876.2
	변경	18	9,254	176,921.9	7	4,208	94,604.7	10	4,881	80,441.0	1	165	1,876.2
소로	기정	28	4,950	32,060.5	6	1,092	10,942.4	5	703	6,140.1	17	3,155	14,978.0
	변경	28	4,950	32,060.5	6	1,092	10,942.4	5	703	6,140.1	17	3,155	14,978.0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08	25~28	보조 간선	526	광로1-28	대로2-68	일반 도로	-	-	일원로
변경	대로	3	108	25~28	보조 간선	526 (49)	광로1-28	대로2-68	일반 도로	-	-	가감속차로 폭3m 확보
기정	중로	2	407	15~24	국지 도로	620	광로1-72	대로3-108	일반 도로	-	-	개원길
변경	중로	2	407	15~24	국지 도로	620 (205)	광로1-72	대로3-108	일반 도로	-	-	가감속차로 폭3m, 4-9m확폭

※ ()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의 해당사항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08	대로 3-108	- 가감속차로 확보 B=25~28m, L=49m	- 특별계획구역14 세부지침을 반영하여 가 감속차로 확보
중로 2-407	중로 2-407	- 가감속차로 확보 및 도로 확폭 B=15~24m, L=205m	- 특별계획구역14 세부지침을 반영하여 가 감속차로 확보 및 도로 확폭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도로시설의 변경없음

2) 공간시설

①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총괄표

구 분		기 정	
		개 소	면 적(㎡)
합 계		18	476,315.0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14	467,192.2
	어린이공원	3	4,650.9
주제공원	문화공원	1	4,471.9

②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녹지	연결 녹지	일원동 615-1일대	-	증) 1,016.7	1,016.7	-	일원로변, 폭12m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연결녹지	- 신설 A=1,016.7㎡	- 특별계획구역14 세부지침을 반영하여 연결녹 지 신설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공간시설의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단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

- 특별계획구역 12,13,14(우성7차,현대4차,일원개포한신아파트)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특별계획구역 12,13,14	특별계획구역 12,13	특별계획구역 14	
위치	• 강남구 일원동 614, 일원동 615, 일원동 615-1	• 강남구 일원동 614, 일원동 615	• 강남구 일원동 615-1	
특별계획구역 면적	• 76,593.6㎡ (우성7차-48,983.6㎡ 현대4차-6,734.0㎡ 개포한신-20,876.0㎡)	• 55,717.6㎡ (우성7차-48,983.6㎡ 현대4차-6,734.0㎡)	• 20,876.0㎡	
획지(계획대지) 면적	• 69,966.3㎡	• 51,466.9㎡	• 18,499.4㎡	
공공시설 면적	• 6,627.3㎡	• 4,250.7㎡	• 2,376.6㎡	
공공시설 비율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6.8% 내외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5.1% 내외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11.4% 내외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기반시설 계획	• 기존 공공·기반시설(공원) 면적 : 1,500.3㎡ (연결녹지 대체)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5,127㎡ - 연결녹지 폭12m(영희초교변)(면적 : 1,230㎡) 계획 - 광장 1개소(대청역)(면적 : 812㎡) 계획 - 폭3m 도로(공무원 8단지변) 및 폭4-9m 도로(개원길) 계획 및 개원길·개포동길·일원로변가감속차로 설치(면적 : 3,085㎡)	기존 공공·기반시설(공원) 면적 : 1,500.3㎡ (연결녹지 대체)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2,750.4㎡ - 연결녹지 폭12m(영희초교변)(면적 : 212.7㎡) 계획 - 광장 1개소(대청역)(면적 : 812㎡) 계획 - 폭3m 도로(공무원 8단지변) 및 폭8-9m 도로(개원길) 계획 및 개원길·개포동길·일원로변가감속차로 설치(면적 : 1,725.7㎡)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2,376.6㎡ - 연결녹지 폭12m(영희초교변)(면적 : 1,016.7㎡) 계획 - 폭4-9m 도로(개원길) 계획 및 개원길·일원로변가감속차로 설치(면적 : 1,359.9㎡)	지침도에 따름 : 향후 세부 개발계획(주 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 도 시계획 시 설 결정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특별계획구역 12,13,14	특별계획구역 12,13	
건축물 의 용도· 밀도에 관한 계획	용 도	불허 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허용 용도 a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용 적 률	기준 용적률	• 210% 이하	• 210% 이하	• 210% 이하	
		허용 용적률	• 230% 이하	• 230% 이하	• 230% 이하	
		상한 용적률	• 250% 이하	• 250% 이하	•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35층 이하 • 저층구간(10층 이하) : 공무원8단지변 폭30m • 저층구간(7층 이하) : 개원길변 폭25m	• 최고층수 35층 이하 • 저층구간(10층 이하) : 공무원8단지변 폭30m • 저층구간(7층 이하) : 개원길변 폭25m	• 최고층수 35층 이하 • 저층구간(7층 이하) : 개원길변 폭25m	
배치	건축한계선	• 개원길 및 개포동길변 : 6m • 공무원 8단지변 : 3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 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 민편의시설 (상가, 부대복 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 지정선 3m	• 개원길 및 개포동길변 : 6m • 공무원 8단지변 : 3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 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 민편의시설 (상가, 부대복 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 지정선 3m	• 개원길변 : 6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 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 민편의시설 (상가, 부대복 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 지정선 3m	지 침 도 에 따름 : 공공 · 기반 시설의 도 시계획시설 결정에 따 라 계획결 정	
기타에 관한 사항	경관	• 경관채크리스트 준용	• 경관채크리스트 준용	• 경관채크리스트 준용		
	보행동선	• 대청역, 중앙광장, 단지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보 행동선 조성	• 대청역, 중앙광장, 단지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보 행동선 조성	• 대청역, 중앙광장, 단지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보 행동선 조성		
	자전거도로	• 개포동길, 개원길, 일원로 변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 용도로 조성 (폭1.5m이상)	• 개포동길, 개원길, 일원로 변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 용도로 조성 (폭1.5m이상)	• 개원길, 일원로변으로 자 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조 성 (폭1.5m이상)		
	근린광장	• 단지중심부 근린광장 조성	• 단지중심부 근린광장 조성	—		

※ 법정 상한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및 관련법령과 기준을 우선 적용함

※ 공동개발추진이 무산되어 개별구역별로 개발을 진행할 때에는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및 지침 등을 각 개별구

역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 공동개발추진이 무산되어 개별구역별로 개발을 진행할 때에는 현대4차단지의 저층구간 중 7층이하 구간은 10층 이하로 10층이하 구간은 15층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
- ※ 보행동선·근린광장·섬지형공지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할 수 있음
- ※ 소형주택(임대주택)은 정비계획 수립시 규모를 다양하게 계획(예시 : 주거전용면적 40㎡~59㎡)
- ※ 부분임대아파트 확보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입하여야 하며, 비율은 60~85㎡, 85㎡이상 세대수의 20%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
- ※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함
- ※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에 따름
- ※ 특별계획구역 12,13구역내 공공기반시설(순부담) 등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상기 변경 내용을 제외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은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II.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대	-	증) 20,876.0	20,876.0	

3. 정비계획 수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876.0	-	20,876.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0,876.0	-	20,876.0	100.0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0,876.0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2,376.6	11.4	기반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2,376.6㎡(순부담 11.4%)
	녹 지	1,016.7	4.9	
	도 로	1,359.9	6.5	
획 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499.4	88.6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08	25 ~28	보조 간선	526	광로1-28	대로2-68	일반 도로	-	-	일원로
변경	대로	3	108	25 ~28	보조 간선	526 (49)	광로1-28	대로2-68	일반 도로	-	-	가감속차로 폭3m확보
기정	중로	2	407	15 ~24	국지 도로	620	광로1-72	대로3-108	일반 도로	-	-	개원길
변경	중로	2	407	15 ~24	국지 도로	620 (205)	광로1-72	대로3-108	일반 도로	-	-	가감속차로 폭3m, 4-9m 확폭

2)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녹지	연결녹지	일원동 615-1 일대	-	증) 1,016.7	1,016.7	-	일원로변, 폭 12m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계		-	증) 1,700	1,700	
	경로당	획지1 (공동주택용지)	-	증) 180	180	
	관리사무소		-	증) 110	110	
	어린이놀이터		-	증) 1,100	1,100	
	주민운동시설		-	-	-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	증) 200	200	
	작은도서관		-	증) 110	110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20,876.0	일원동 615-1 일대	5	-	-	5	-	

2) 건축물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 정 법적상한	
신 설	일원개포한신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876.0	획지1	18,499.4	일원동 615-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50 이하	299.78 이하	105m이하/ 최고35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구 분		세 대 수		비 고			
			합 계		489 (100.0%)					
			전용 60㎡이하		158 (32.31%)		재건축 소형임대주택 77세대 포함			
			전용 60~85㎡		205 (41.92%)					
			전용 85㎡초과		126 (25.77%)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74.23%							

심의를 통하여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총 5% 완화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 4%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10-15%) : 1% •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50%)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7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 준용) - 개원길변 : 6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3)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 획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20,876.0㎡	18,499.4㎡	2,376.6㎡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2,376.6㎡ - 0㎡ - 0㎡ = 2,376.6㎡				
계획용적률	•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계획(기준)용적률 : 210.0%이하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210% + 5% = 215%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총 5% 완화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 4%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10-15%) : 1% ※ 위에서 적용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 될 수 있음				
정비계획 용적률	• 상한용적률(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α) = 215% × (1 + 1.3 × 0.12847) = 250.9%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376.6㎡ / (20,876.0㎡ - 2,376.6㎡) = 0.12847 • 정비계획용적률 : 250%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78%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도시경관	• 인공적인 녹지공간을 설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며, 이용객 편의 및 휴식공간이 되도록 계획 • 사업대상지 경계부의 녹지대는 외부에서의 시각적 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된 수림대 형성 • 시각적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조정 및 구조물 선정은 형태, 색채, 질감 등이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재료와 구성의 변화로 시각적 경험을 다양화
환경보전	• 토양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최대한 틈새투수포장 활용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태면적을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2007. 12,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제시된 건축 유형에 따른 생태면적을 기준인 30%(공동주택기준) 이상 확보하되, 개포택지(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생태면적률40%, 자연지반을 10% 확보 • 조경계획 수립시 다층구조의 식생대를 조성하여 조류를 유인하고, 소규모 비오터를 조성하여 새로운 녹지축을 형성 • 단지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장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 조경녹지 및 가로변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정화능력 및 적응력이 우수한 환경정화 수종을 우선 식재토록 계획 • 주변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공사시 정온시설 주변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차음성능이 우수한 창호 사용 등을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재난방지	• 사업대상지내 전면공지 등은 우수침투가 가능한 투수성 바닥포장을 사용하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이용 • 지구내 자연지반을 최대화하고 표면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침투율이 높은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 공사는 원칙적으로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유실 방지 • 터파기 공사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 시행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세대수 : 364 • 계획세대수 : 489 • 증)125세대	이상없음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8,499.4	-	18,499.4	도로, 녹지 제외
획 지	1	18,499.4	일원동 615-1번지 일대	18,499.4	공동주택용지

자.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250%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78%			
	용적률 차이의 50%	●(299.78% - 250%) × 50% = 24.89%			
소형주택 공급기준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24.89% = 18,499.4㎡ × 24.89% = 4,604.5㎡ 이상				
소형주택 건설계획	건립위치	세대수	주택규모	연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획 지	38세대	39.42㎡	53.42㎡	● 계획 = 53.42㎡ × 38세대 + 66.27㎡ × 39세대 = 4,614.49㎡ > 4,604.5㎡
		39세대	49.32㎡	66.27㎡	

IV.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2017년06월07일)

[수정사항]

- 예정법적상한용적률(299.78%), 건폐율(38.55%), 세대수(489세대, 소형임대 77세대 포함) 등 정비계획은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하고, 건축계획(주동 및 공동이용시설 배치 등)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면밀히 검토할 것.
- 지정 지구단위계획상의 특별계획구역12·13·14 관련 ‘공동개발(권장) 변경(특별계획구역 12·13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14 단독개발)’, ‘구역분할가능선 삭제’, ‘단지내 보행축 및 근린광장(권장) 위치 및 선형 변경’ 등은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

[권고사항]

- 지정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12·13·14의 공동개발(권장) 해제와 관련하여 특별계획 구역12·13(우성7차, 현대4차)은 현재 재정비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마련 검토.
- 특별계획구역12·13의 공동개발 추진이 무산되어 개별 구역별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정 지구단위계획(공공시설계획, 저층배치구간 등)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단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회 상정안의 검토대안과 같이 구역분할가능선, 순부담률 등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 첨부(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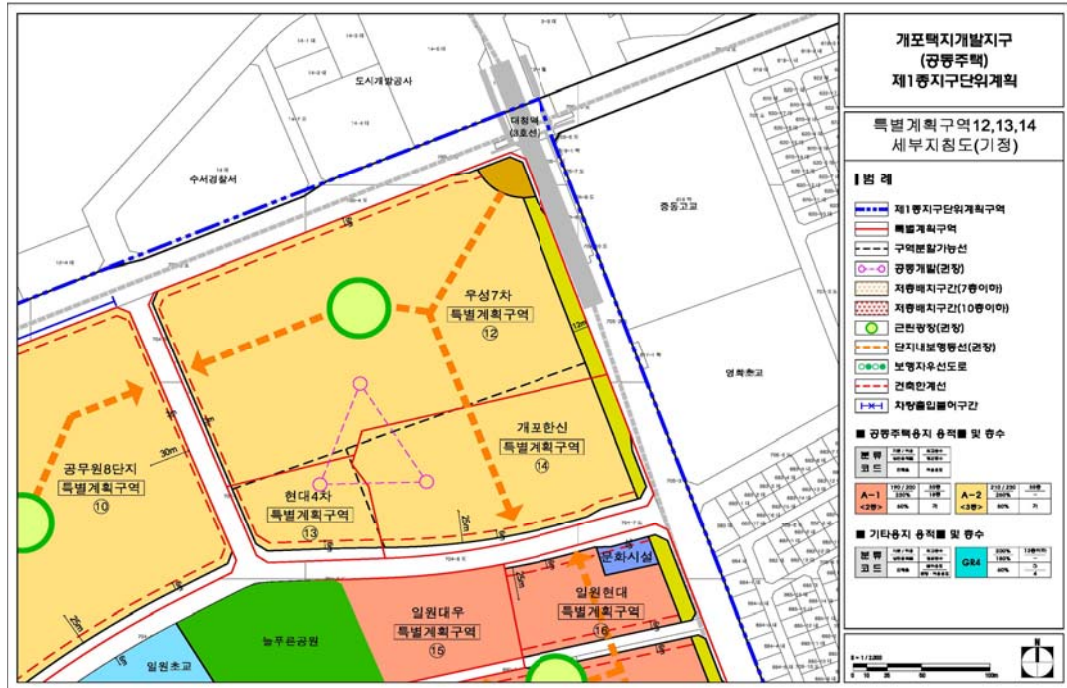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I.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2133-7141) 및 강남구청 주택과 (☎ 3423-606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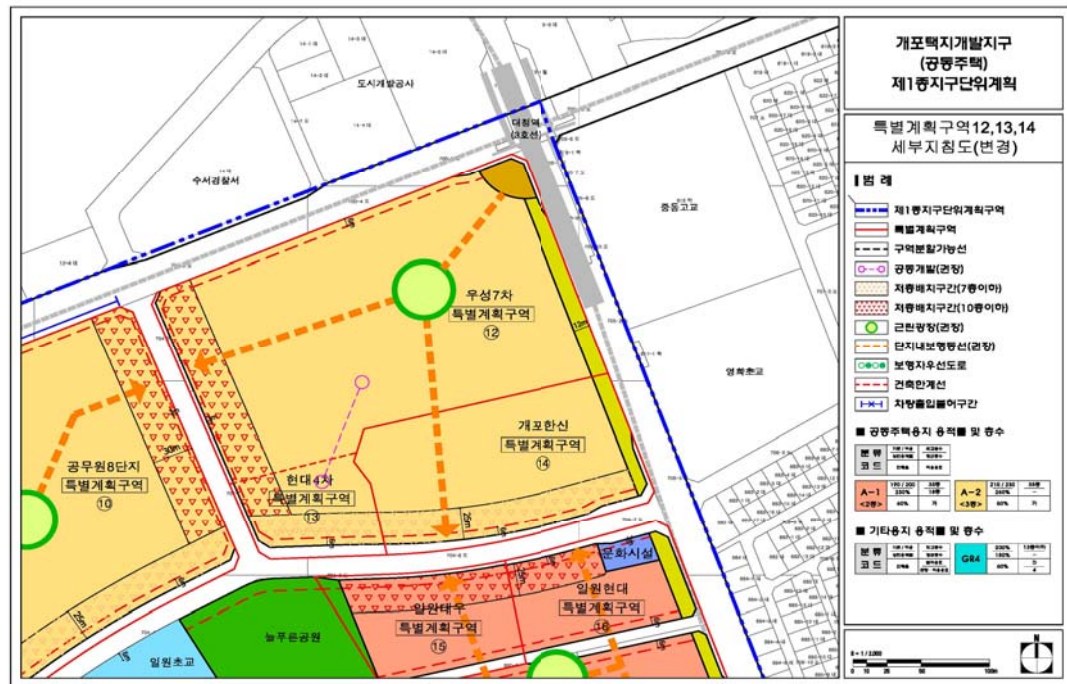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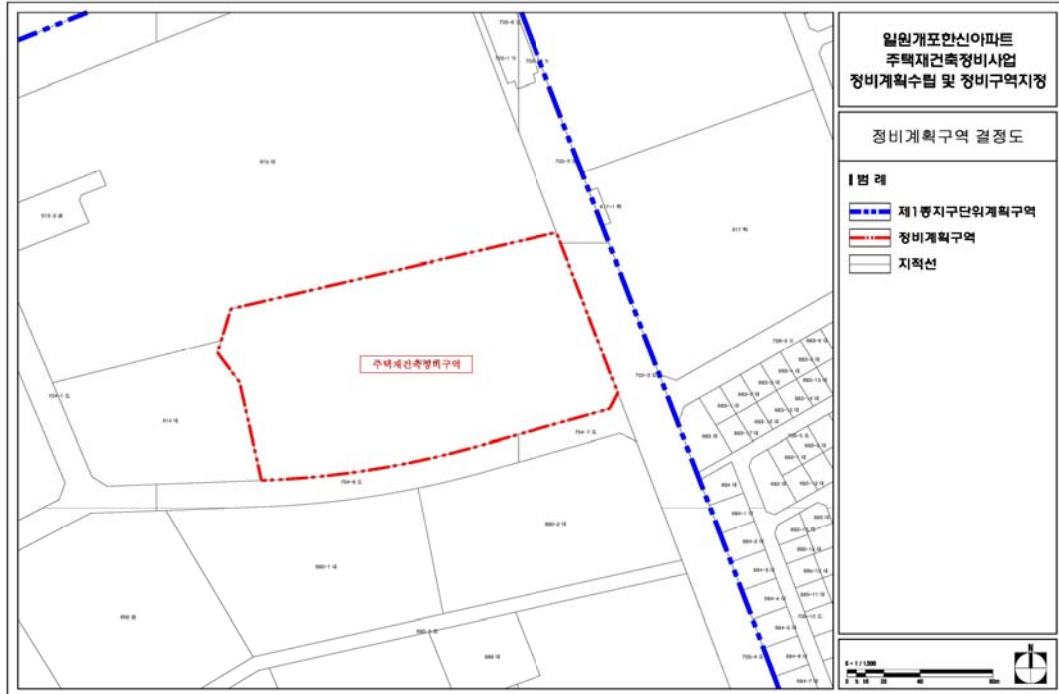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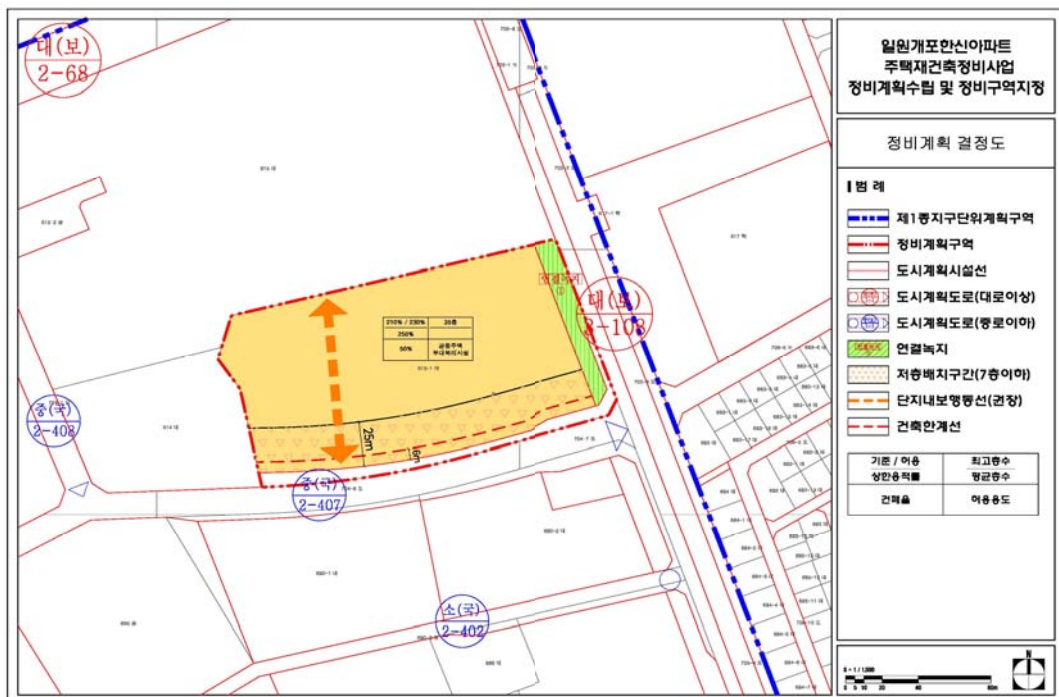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 변경



정비계획구역 결정도



정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5호
반포아파트지구(고밀)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반포아파트지구(1주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1. 지정 목적

-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나. 한강변 접근 보행환경 개선 및 수변경관의 공유 등 한강변 주거지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지구명	위치	범위	대지면적
반포아파트지구 (1주구)	서초구 반포동 1-1 일대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68,467.6㎡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용도	대지면적	최고층수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주택용지	119,230.8㎡	35층(110m) 이하 [한강연접 첫 주동 높이 10-15층(48m)이하] (필로티포함)
	분구중심	7,370.4㎡	5층 이하
	주구중심	1,053.7㎡	5층 이하
	공공청사용지	3,535.4㎡	5층 이하

나. 특례적용사항

구역명	특례적용사항	적용취지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배제 ※ 단, 대상지 외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상지 내부에만 적용함	- 특례적용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로 고층과 중·저층이 배치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동형태 구현 및 통경축 확보 가능 - 특례적용 시 단지 내 주거성능 및 거주민 프라이버시를 저해하지 않고 주거성능기준을 만족하게 하며, 다양한 주동 및 휴먼스케일의 외부 공간 계획 및 통경축 확보 가능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전화 : 02-2133-7137), 서
초구 주거개선과 (전화 : 02-2155-7342)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6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45호(2009.9.10)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36호(2010.09.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76호(2013.06.0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66호(2016.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6호(2017.2.23.) 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
은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동대문구 용두전농동 일대	370,844㎡	최초지정일 : 2009.9.10 (서고 2009-345호)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년도

- 가. 기준년도 : 2010년
나. 목표년도 : 2018년

3.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 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부도심 기능 회복도모
나. 청량리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균형발전 도모(청량리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울 동북권의 관문역할
수행)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함

4.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분	사업 방식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70,844.0	－	370,844.0	－
	소 계			147,951.9	－	147,951.9	－
촉진 구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청량리1 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10－12일대	1,819.2	－	1,819.2	－
		청량리2 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786일대	1,938.3	－	1,938.3	－
		청량리3 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11－1일대	7,025.0	－	7,025.0	－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620－51일대	41,602.5	－	41,602.5	－
		용두1 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26일대	51,706.5	－	51,706.5	－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494일대	27,623.4	－	27,623.4	－
		전농12 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643일대	16,237.0	－	16,237.0	－
존치 지역	소 계		－	222,892.1	－	222,892.1	－
	존치관리구역		－	222,892.1	－	222,892.1	－

5.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결정(변경) : 청량리1~3, 용두1, 전농, 전농12구역은 변경없음.

6.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동대문구 전농동 620-51일대	41,602.5	-	41,602.5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1,602.5	-	41,602.5	100.0	-
주거지역	소 계	1,509.7	-	1,509.7	3.6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75.9	-	475.9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1,033.8	-	1,033.8	2.5	
상업지역	소 계	40,092.8	-	40,092.8	96.4	
	일반상업지역	40,092.8	-	40,092.8	96.4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왕산로	중심지 미관지구	동대문~청량리 동 80-1	100,800	4,200	양측12	-	-
기정	답십리로	일반 미관지구	전농동 621-2~ 답십리 2-146	63,000	2,100	양측15	-	-

(2) 방화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지구	청량리동 176일대	26,995 (57.4)	-	-
기정	-	방화지구	동대문~청량리간	84,720 (3,452.8)	-	-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라.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1,602.5	-	41,602.5	100.0	-
획 지	소 계	26,330.2	-	26,330.2	63.3	-
	업무, 판매, 주거, 숙박, 문화,복합용지	26,330.2	-	26,330.2	63.3	-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5,272.3	-	15,272.3	36.7	-
	도 로	9,874.0	-	9,874.0	23.7	-
	공 원	3,522.0	-	3,522.0	8.5	가로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광 장	495.0	-	495.0	1.2	-
	녹 지	842.7	-	842.7	2.0	경관녹지
	보행자전용도로	538.6	-	538.6	1.3	-

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51	35~38	주 간선	1,980 (229)	신설동 101-7	청량리 11호광장 청량리동749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2	1	3~34	보조 간선	276	전농동 625-3	전농동 588-49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3	130	25~47	보조 간선	2,100 (262)	오스카 극장동측	전농동 광장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379	15	집산 도로	92 (6)	용두동 9-7	용두동 47-7	일반 도로	-	서고 제359호 (’96.12.31)	-
기정	중로	2	380	12~15	집산 도로	303	전농동 622-8	전농동 620-67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	6	특수 도로	90	전농동 620-88	전농동 620-51	보행자 전용 도로	-	-	-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 원	가로공원	전농동 620-51일원	2,343.1	-	2,343.1	-	-
기정	④	공 원	소공원	용두동 7일원	497.2	-	497.2	서고제336호 (‘10.9.30)	-
기정	㉓	공 원	어린이 공원	용두동 9-11일원	1,581.5 (681.7)	-	1,581.5 (681.7)	서고제359호 (‘96.12.31)	-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3)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전농동 623-4일원	842.7	-	842.7	-	-

(4)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㉔	광 장	일반광장	전농동 588-1일원	24,360.7 (495.0)	-	24,360.7 (495.0)	서고 제1093호 (‘66.11.26)	-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5) 지하도로 결정(변경)조서

■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폭 (m)	연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도로	지하 도로	전농동 620-69일원	5.7~ 22.0	36.3	304.5	-	304.5	-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 (4번출구)
기정	②	도로	지하 도로	청량리동 819일원	6.1~ 15.8	52.3	685.8	-	685.8	-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 (5번출구)

■ 입체적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폭 (m)	연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도로	지하 도로	전농동 620-69일원	5.9	7.5	44.25	-	44.25	-	지하1층 (H=4.23m)
기정	②	도로	지하 도로	청량리동 819도일원	15.0	3.1~8.2	84.45	-	84.45	-	지하1층 (H=4.5m)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의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시 반영

사.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 주	
기정	청량리4 재정비 촉진구역	41,602.5	복합용지	26,330.2	전농동 620-47일원	132	-	-	-	132	-

(2)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지상/지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청량리4 재정비 촉진구역	41,602.5	복합 용지	26,330.2	전농동 620-47 일원	업무, 판매, 주거, 숙박, 문화	60 이하	990 이하	200m이하
변경	청량리4 재정비 촉진구역	41,602.5	복합 용지	26,330.2	전농동 620-47 일원	업무, 판매, 주거, 숙박, 문화	60 이하	996 이하	200m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대로 2-1호선변 : 3m •중로 2-380호선변 : 3m •대상지 북측 민자역사 연결지역 : 5m						

(3) 공공시설제공에 따른 용적률계획 : 변경없음

■ 공공시설부담률(%) = $\{(15,272.3 - 5,291.7 - 4,819.0) / 41,602.5\} \times 100 = 12.41\%$

구분	촉진구역 계획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촉진구역 총면적(㎡)	순부담률 (%)
기정	15,272.3	5,291.7	4,819.0	41,602.5	12.41

(4) 용적률계획 : 변경

■ 기준용적률

용도지역	획지면적(㎡)	용적률 적용기준(%)	비 고
계	26,330.2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47.7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일반상업지역	26,082.5	800	

※ 기준용적률 : $(247.7\text{㎡} \times 200\% + 26,082.5\text{㎡} \times 800\%) / 26,330.2\text{㎡} = 794.4\%$

■ 상한용적률

구 분	산정내용	비 고
기정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times (1 + 1.3\alpha)$ $= 794.4\% \times (1 + 1.3 \times 0.197) = 996.8\%$ ※ α값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비율 $= \{15,272.3 - (5,291.7 + 4,819.0)\} / 26,330.2 = 0.196$ - 상한용적률 = 99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변경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times (1 + 1.3\alpha)$ $= 794.4\% \times (1 + 1.3 \times 0.197) = 996.8\%$ ※ α값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비율 $= \{15,272.3 - (5,291.7 + 4,819.0)\} / 26,330.2 = 0.196$ - 상한용적률 = 996%이하	

아. 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 변경

주택연면적 비 율	65%이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문화시설 확보	기정	○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기여의 50%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기여 잔여분은 문화시설로 공급 ▷ 장기전세주택 공급량 = $26,330.2\text{㎡} \times 32.5\% = 8,557.3\text{㎡}$이상 ○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 기준 : $8,557.3\text{㎡} \times 50\% = 4,278.6\text{㎡}$이상 ▷ 계획 : 4,388.6㎡ [전용면적 60㎡이하 64세대(100%)] ○ 문화시설 공급계획 : 건축연면적 1,709.4㎡ (토지 + 건축물)

주택연면적 비율		65%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주택 전체 연면적의 80%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 ○ 건설비율(장기전세주택 포함 전체 세대수 1,436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64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1,252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120세대
	변경	○ 주택 전체 연면적의 80%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 ○ 전체 세대수 : 1,425세대 (장기전세주택 64세대 포함) ▷ 전용면적 60㎡이하 : 64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1,232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129세대

■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구분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85㎡ 초과	합계
		60㎡이하	60~85㎡		
기정	세대수 (장기전세주택)	64 (64)	1,252 (-)	120 (-)	1,436 (64)
	비율	4.4%	87.2%	8.4%	100.0%
변경	세대수 (장기전세주택)	64 (64)	1,232 (-)	129 (-)	1,425 (64)
	비율	4.5%	86.4%	9.1%	100.0%

자.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 경관	· 경관계획 -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계획 - 도로변의 정연한 가로경관과 상호 연속성을 확보하되 주요부 통경축 및 개방감 확보 - 건축물 전면면 유효한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가로망 확보, 보행자의 쾌적성 등을 제공함	-
환경 보전	· 토양오염방지 - 불투수 포장면 최소화 · 녹지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재난 방지	·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함 · 터파기 공사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시행 · 건설소음 - 가설방음 판넬 설치 - 저소음 건설 기계 등을 선택하여 주간(08:00~18:00)에만 작업실시 · 먼지 - 방진망 설치 : 부지경계상에서 가설방음 판넬과 연계된 방진망(H=1.5m)설치 -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사업대상지 진출입부분) - 주기적인 살수 실시(하계기준 1일 6회 이상)	-

차.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 본 사업지는 상업지역 밀집지로 자연적인 지형 및 식재, 식물상이 빈약하여 보호수 또는 양호한 수목이 전무한 상태이나 사업시행시 양호한 수목은 사업시 구역내 나대지 지역에 이식 후 재식토록 함

카.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기정	1,304세대 증가	해당사항없음	-
			변경	1,293세대 증가		

※ 증가예상 세대수 = 계획세대수(1,425세대) - 기존세대수(132세대) = 증)1,293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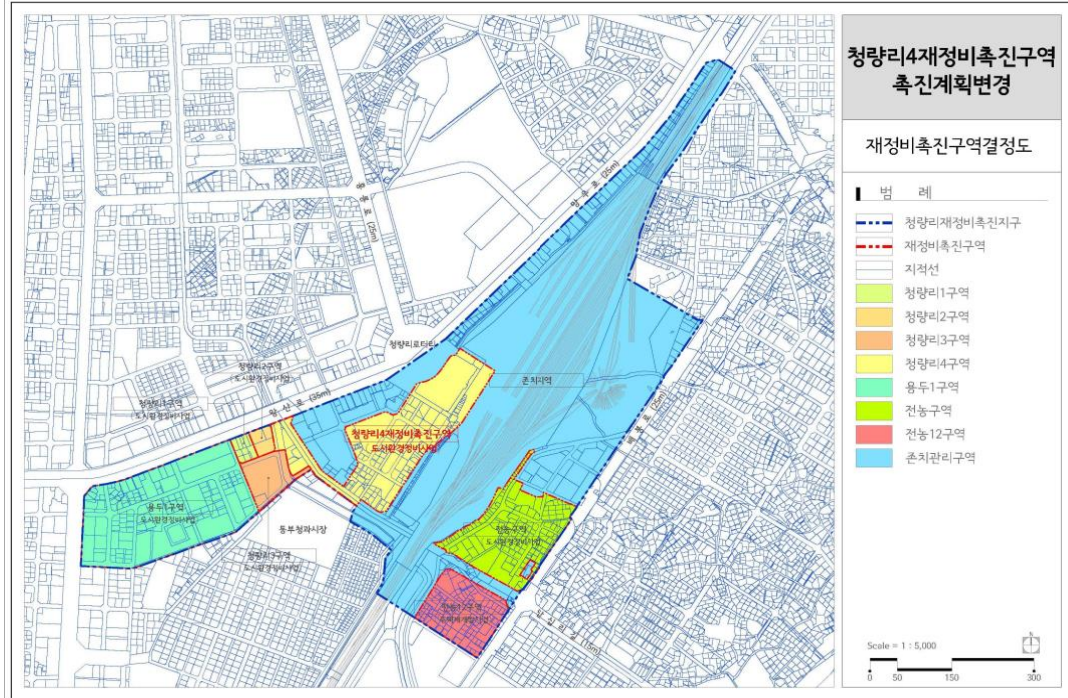
7. 기타사항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에서는 가로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 제안하고 동대문구에서는 입안절차를 이행 할 것
- 사업시행자는 문화시설내에 청량리 620 역사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할 것
- 청량리620 역사생활문화공간은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부담금 증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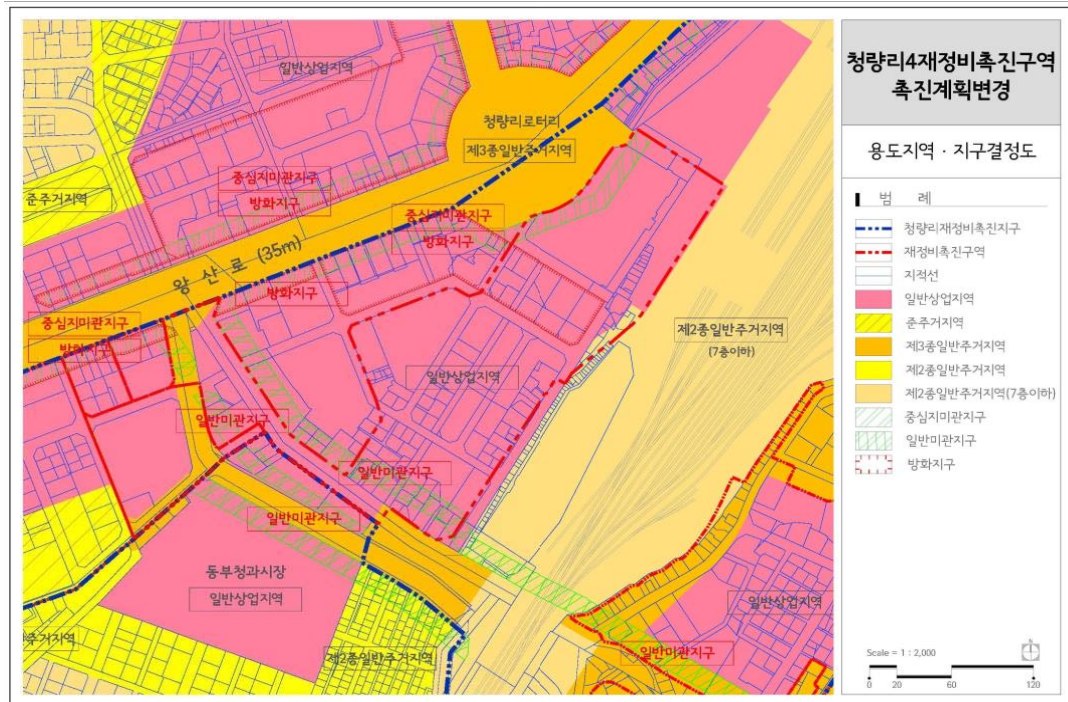
8.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9.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6) 및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2127-429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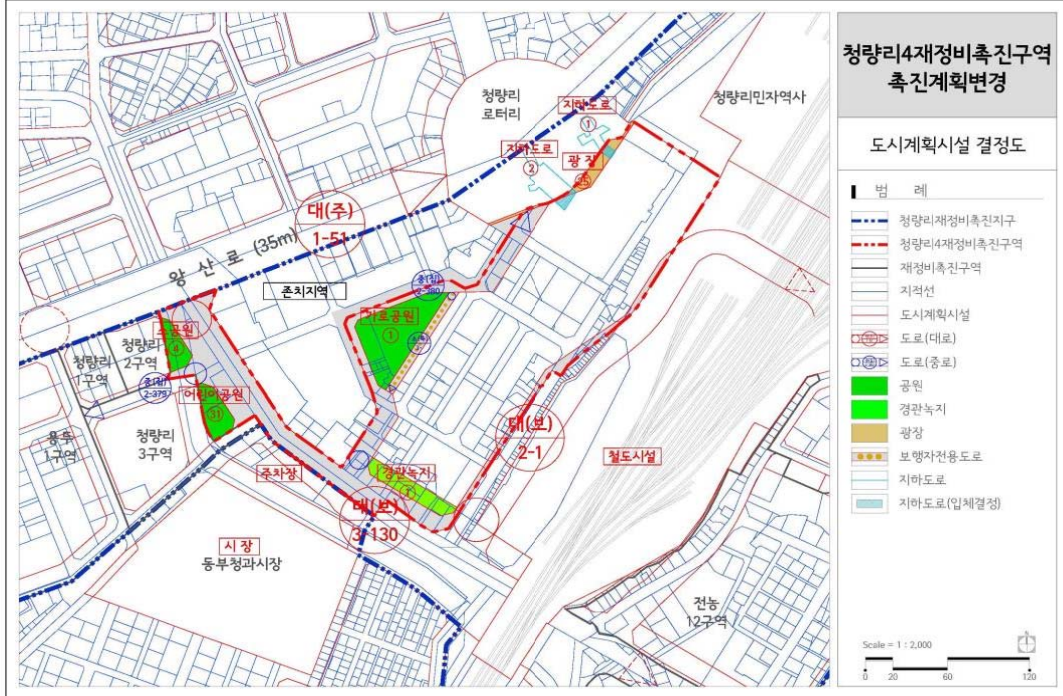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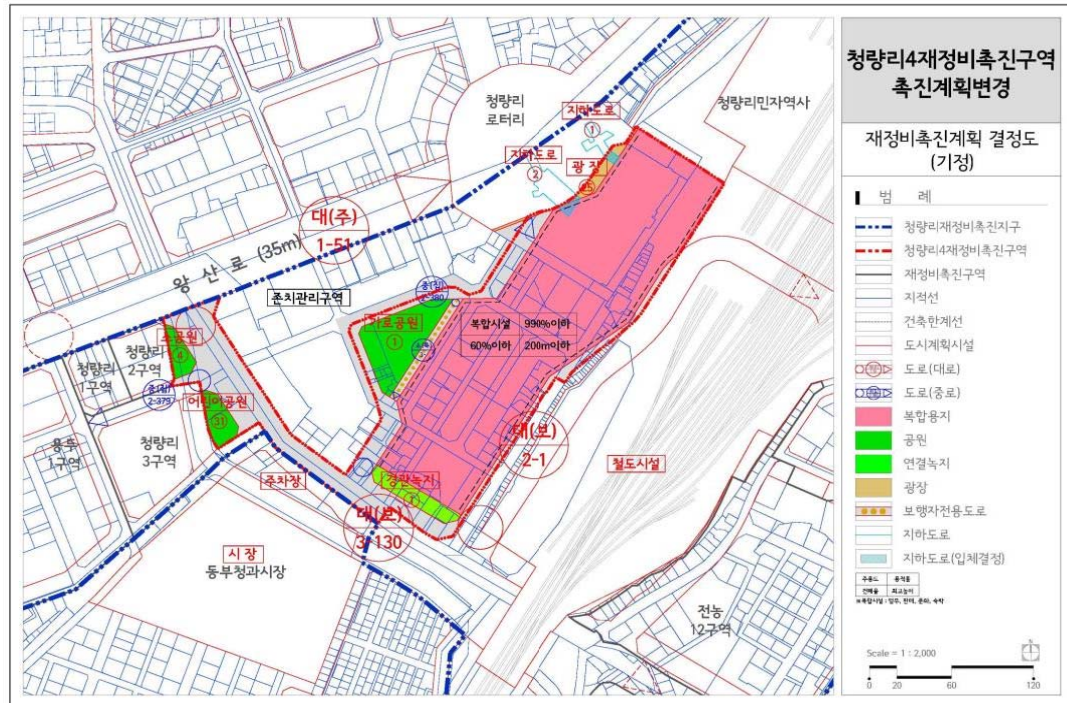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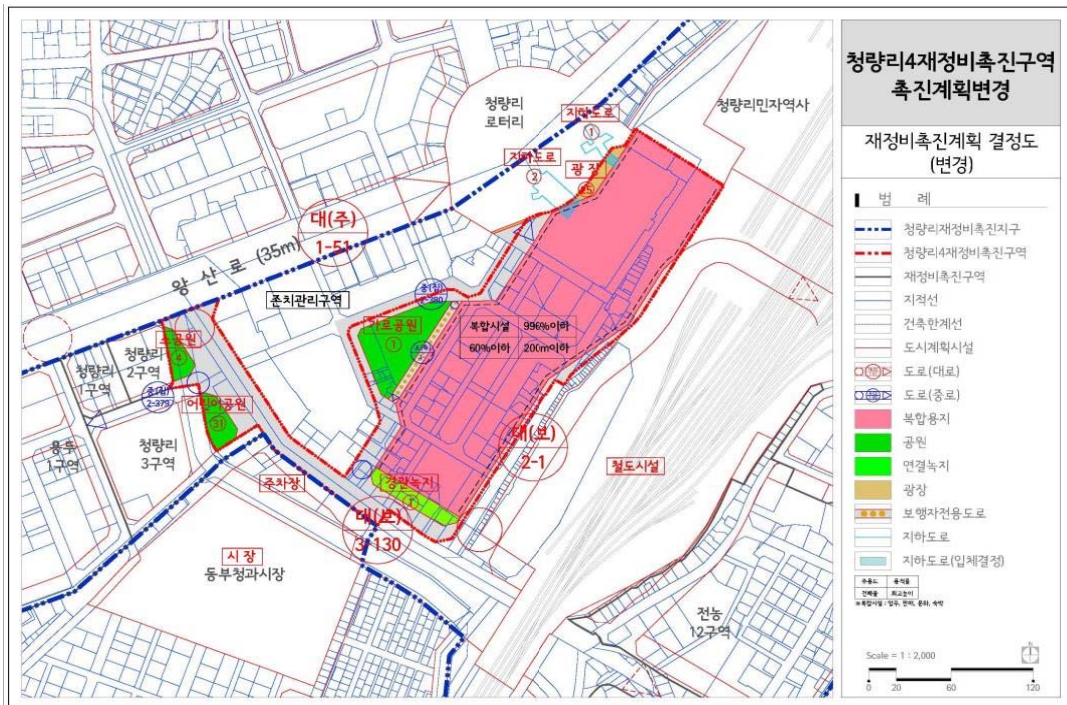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9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6호(2009.04.30)로 결정(변경)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 4. 26.)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I. 결정(변경) 취지

동작구 장승배기 일대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서부경전철 등 주변지역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구중심의 위상제고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83,001	감) 16	82,985	서울시고시 1997-14호 (1997.2.14)	구역 경계 조정

※ 장승배기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상도동 182-13 일대는 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토록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82,985 [감) 16]	- 주변 개발현황을 고려하여 상도10주택재개발구역 및 지적 경계를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정 - 상도동 363-302 제척(감 67㎡) - 상도동 363-303 일부 편입(증 51㎡)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2,985	—	82,985	100.0	
일반주거지역	42,271	—	42,271	51.0	
제1종일반주거지역	1	—	1	0.0	도로 및 광장
제2종일반주거지역	23,686	—	23,686	28.6	도로 및 광장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18,584	—	18,584	22.4	
준주거지역	28,400	—	28,400	34.2	
근린상업지역	12,314	—	12,314	14.8	

주) 면적은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조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나. 용도지구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 구	일반 미관지구	노량진동 240-1 ~ 대방동 400-5 (동측 : 노량진동 328-1 ~ 상도동370-12 북측 : 상도동 371-4 ~ 상도동 366-38 남측 : 상도동 183-3 ~ 상도동 364-36)	65,280 (5,112)	2,720 (동측 : 64 북측 : 152 남측 : 210)	양측 12	서고시 제164호 (’82.4.22)	장승배기로 상도로
기정	②	미관지 구	일반 미관지구	상도동 170-2 ~ 상도동 691-1 (북측 : 상도동 370-12 ~ 상도동 25-40 남측 : 상도동 170-33 ~ 상도동 373-71)	23,400 (4,800)	780 (북측 : 128 남측 : 192)	양측 15	서고시 제194호 (’84.4.17)	상도로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1,419	27,843	3	170	3,724	3	351	4,464	7	898	19,655
광로	-	-	-	-	-	-	-	-	-	-	-	-
대로	2	404	16,410	-	-	-	-	-	-	2	404	16,410
중로	5	386	7,001	3	170	3,724	2	216	3,277	-	-	-
소로	6	629	4,432	-	-	-	1	135	1,187	5	494	3,245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	25~40 (25~35)	주간선 도로	6,490 (279)	노량진역앞 (상도동 371-13)	구로동 (상도동 183-26)	일반 도로	상도로	총고시 제722호 (‘36.12.26)	장승배기 광장 중복 (172m)
기정	대로	3	184	25~28 (25)	주간선 도로	750 (125)	상도동370-14 (상도동 370-12)	상도1동706 (상도동 25-40)	일반 도로	-	총고시 제722호 (‘36.12.26)	상도로
변경	대로	3	184	25~28 (25~28)	주간선 도로	750 (125)	상도동 370-12 (상도동 370-12)	상도1동706 (상도동 25-40)	일반 도로			기점 정정 폭원 확장
기정	중로	1	184	20 (20)	보조 간선 도로	2,850 (100)	상도동 장승배기광장 (상도동 179-2)	봉천동 남부순환로 (상도동 181-2)	일반 도로	-	서고시 제191호 (‘78.5.4)	
변경	중로	1	184	20~25 (20~25)	보조 간선 도로	2,850 (85)	상도동 장승배기광장 (상도동 179-2)	봉천동 남부순환로 (상도동 181-2)	일반 도로			연장 정정 폭원 확장
신설	중로	1	320	21 (21)	국지 도로	35 (35)	상도동 181-15	상도동 175-9	일반 도로	-		

- 표계속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20	23 (20)	집산 도로	50 (50)	상도동 25-28	상도동 25-22	일반 도로	-	동고시 제42호 (‘96.10.31)	
기정	중로	2	32	15 (15)	국지 도로	850 (201)	대방동 (상도동 363-190)	상도동 (대3-18)	일반 도로	-	총고시 제722호 (‘36.12.26)	
변경	중로	2	32	15 (15)	국지 도로	850 (201)	대방동 (상도동 363-190)	대3-18 (상도동 367-14)	일반 도로			종점 위치 정정
기정	중로	3	150	12 (12)	국지 도로	16 (16)	상도동 170-2	상도동 170-8	일반 도로	-	서고시 제354호 (‘90.10.31)	
변경	중로	2	315	15 (15)	국지 도로	15 (15)	상도동 170-2	상도동 170-8	일반 도로			폭원 확장 연장 축소
기정	소로	2	153	8 (8)	국지 도로	135 (135)	상도동 180-2	상도동 364-23	일반 도로	-	서고시 제6호 (‘72.1.7)	
변경	소로	2	153	8 (8)	국지 도로	135 (135)	상도동 180-2	상도동 364-23	보행자 우선도 로			사용형태 변경
기정	소로	3	140	6 (6)	국지 도로	153	상도동 373-64 (상도동 177-6)	소로3-6호선 (상도동 175-23)	일반 도로	-	서고시 제354호 (‘90.10.31)	
변경	소로	3	140	6 (6)	국지 도로	90 (90)	상도동 177-6	상도동 175-23	일반 도로			연장 정정 가각 확보
기정	소로	3	151	6~10 (6)	국지 도로	626 (170)	상도동 179-3 (상도동 179-2)	상도동 34-9 (상도동 177-6)	일반 도로	-	서고시 제44호 (‘71.6.4)	
변경	소로	3	151	6~10	국지 도로	454 (-)	상도동 170-26	상도동 34-9	일반 도로			노선분리에 따른 기점 변경
	소로	3	270	7~9 (7~9)	국지 도로	172 (172)	상도동 179-2	상도동 170-13	보행자 우선도 로			폭원 확장 및 사용 형태 변경
기정	소로	3	152	6 (6)	국지 도로	260 (98)	상도동184-10 (상도동 181-2)	상도동 179-2 (상도동 179-2)	일반 도로	-	서고시 제673호 (‘86.9.17)	
변경	소로	3	152	6 (6)	국지 도로	181 (19)	상도동 184-10 (상도동 181-2)	상도동 181-9 (상도동 181-9)	일반 도로			연장 축소 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154	6 (6)	국지 도로	48	상도동181-18	상도동 182-35	일반 도로	-	서고시 제528호 (‘87.8.1)	
변경	소로	3	154	6 (6)	국지 도로	45 (45)	상도동 181-18	상도동 182-35	일반 도로			연장 오기 정정
기정	소로	3	155	4 (4)	국지 도로	140	상도동183-3	상도동 183-39	일반 도로	-	서고시 제354호 (‘90.10.31)	
변경	소로	3	155	4 (4)	국지 도로	168 (168)	상도동 183-3	상도동 183-39	일반 도로			연장 오기 정정

주1) 동작구 고시 제2013-51호(대로3-184, 중로1-320) 및 동작구 고시 제2012-4호(소로3-140, 소로3-151)를 반영한 사항임

주2)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 3-184	대로 3-184	•폭원 3m 확장 - B=25 → 28m •기점 오기 정정 - 상도동370-14 → 상도동370-12	•상도로 및 공공청사(종합행정타운)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폭원 확장 •기점 오기 정정
중로 1-184	중로 1-184	•폭원 5m 확장 - B=20→25m •연장 오기 정정 - L=100→85m	•공공청사(종합행정타운)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폭원 확장 •연장 오기 정정
-	중로 1-320	•도로 신설 - L=35m, B=21m	•공공청사(종합행정타운)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도로 신설
중로 2-32	중로 2-32	•종점 정정 - 상도동(대3-18)→대3-18(상도동 367-14)	•종점 오기 정정
중로 3-150	중로 2-315	•폭원 3m 확장 - B=12→15m •연장 축소 및 기점 변경 - L=16→15m	•공공청사(종합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도로 신설 •대로3-184호선 폭원 확장에 따른 연장 축소 및 기점 변경
소로 2-153	소로 2-153	•도로 사용형태 변경 - 일반도로→보행자우선도로	•가로활성화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도로 사용형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변경
소로 3-140	소로 3-140	•기점 및 연장 오기 정정 - 상도동 373-64→상도동 177-6 - L=153→90m •선형 일부 변경(도로 가각)	•기점 및 연장 오기 정정 •도로모퉁이 길이 준수에 따른 가각 확보
소로 3-151	소로 3-151	•기점 변경 및 연장 축소 - 기점 : 상도동 179-2→상도동 170-26 - L=626→454m	•일부구간의 사용형태 변경에 따른 노선분리로 기점 변경 및 연장 축소
	소로 3-270	•폭원 1~3m 확장 - B=6→7~9m •종점 변경 및 연장 축소 - 종점 : 상도동 34-9→상도동 170-13 - L=626→172m	•공공청사(동작문화복지센터)의 원활한 교통처리 및 가로활성화를 위해 폭원 확장 및 도로 사용형태 변경 •종점 변경 및 연장 축소
소로 3-152	소로 3-152	•연장 축소 및 종점 위치 변경 - L=260(98)→181(19)m - 상도동 179-2→상도동 181-9	•공공청사(종합행정타운) 결정에 따른 연장 축소 및 종점 위치 변경
소로 3-154	소로 3-154	•연장 오기 정정 - L=48→45m	•연장 오기 정정
소로 3-155	소로 3-155	•연장 오기 정정 - L=140→168m	•연장 오기 정정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노외주차장	상도동 179-1	430	감) 430	-	구고시 제2002-57호 ('02.11.6)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폐지	●공공청사(종합행정타운) 결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폐지

3) 철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7호선)	도봉구 도봉동 16일대 (상도동26-74)	구로구 온수동 산2-1일대 (상도동183-2)	-	43.76 (0.436)	-	건고시 제91-399호 ('91. 7.24)	지하철 7호선 2단계
기정	②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7호선 장승배기정거장)	동작구 상도동 366일대			-	5,804	서고시 제93-77호 ('93. 3.24)	장승배기역

나. 공간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광장	교통광장	상도동 370 일대	10,460 (9,519)	증) 203	10,663 (9,750)	서고시 제603호 ('78.11.5)	장승배기 광장
신설	②	광장	일반광장 (근린광장)	상도동 373-33 일대	-	증) 288	288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광장	●면적 증가(203㎡) - 10,460㎡→ 10,66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로 3-18의 폭원확장에 따라 장승배기 교통광장 면적 증가
②	광장	●광장 신설 - 면적 : 288㎡	●가로경관 개선 및 종합행정타운의 열린공간 확보를 위해 일반 (근린)광장 신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 청사	공공업무· 근린공공시설 (종합행정타운)	상도동 176-3 일대	3,046	증) 11,000	14,046	서고시 제338호 (’94.10.15)	공간적 범위 결정

■ 건축규모 범위 결정(변경)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60% 이하	60% 이하	360% 이하	360% 이하	40m 이하	75m 이하	준주거지역

■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공간적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 청사	상도동 176-3 일대	면적 (㎡)	-	증) 1,500	1,500		일부 구간 (지상1층 1,500㎡, 지하1층 1,000㎡)을 제외한 공간적 범위 결정
				층	-	지상1층 1,500㎡, 지하1층 1,000㎡를 제외한 모든 구간	지상1층 1,500㎡, 지하1층 1,000㎡를 제외한 모든 구간		

※ 비도시계획시설(지상1층, 지하1층 일부)의 건축물 용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름[공공청사 내 비도시계획시설은 근린 상업(교차로) 저층 권장용도 외 불허]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공청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업무· 근린공공시설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시설의 세분 변경 - 근린공공시설 → 공공업무·근린 공공시설 •면적 증가 - 3,046→14,046㎡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시설의 세분 변경 및 면적 증가 •기존 영도시장 일원 상인의 생계보호대책 일환으로 일부 비도시계획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도입을 위해 공간적 범위 결정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계획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 조서(기정)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위 치	계획내용		비고
A	①	1,216	●상도동 365-1일부, 366-26, 370-2일부	공동개발 권장		
	②	197	●상도동 366-24, 366-38, 366-41	공동개발 지정		
	③	665	●상도동 365-4, 365-6, 365-33	공동개발 권장		
B	①	556	●상도동 364-23일부, 367-12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상도동 365-9, 365-23, 366-29일부, 367-4			
	②	420	●상도동 365-2, 365-11	공동개발 지정		
	③	1,097	●상도동 368-8, 368-10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상도동 366-22, 368-11, 368-13, 368-14			
	④	131	●상도동 368-5	-		
⑤	1,191	●상도동 364-36일부, 367-1, 367-6, 367-7, 367-8, 367-11	공동개발 권장			
⑥	192	●상도동 365-18	-			
C	①	370	●상도동 368-50	-		
	②	819	●상도동 368-40	-		
	③	741	●상도동 368-19, 368-45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상도동 368-22			
	④	993	●상도동 372-4, 373-17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상도동 372-1			
			●상도동 373-11, 373-13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73-10, 373-14, 373-34일부, 373-36, 373-44, 373-46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73-25			
	⑤	409	●상도동 373-30, 373-31, 373-32, 373-33, 373-45, 373-74, 373-75, 373-77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상도동 373-72일부			
	⑥	143	●상도동 373-20일부	-		
	⑦	271	●상도동 369-6일부, 369-13일부	공동개발 지정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위 치	계획내용		비고
a	①	185	●상도동 363-190	-		
	②	87	●상도동 363-180	-		
	③	218	●상도동 363-116	-		
	④	473	●상도동 363-87, 363-88, 363-228, 363-273	공동개발 권장		
	⑤	86	●상도동 363	-		
	⑥	235	●상도동 363-143	-		
	⑦	222	●상도동 363-94	-		
	⑧	387	●상도동 363-5	-		
	⑨	310	●상도동 363-135, 363-265	공동개발 지정		
	⑩	479	●상도동 363-117, 363-235	공동개발 지정		
	⑪	195	●상도동 363-92, 363-152	공동개발 권장		
	⑫	304	●상도동 363-9, 363-125	공동개발 권장		
	⑬	328	●상도동 363-10	-		
	⑭	120	●상도동 363-224, 363-268	공동개발 지정		
	⑮	299	●상도동 364-1	-		
	⑯	344	●상도동 363-168, 363-169	공동개발 지정		
	⑰	676	●상도동 363-243	-		
	⑱	1,949	●상도동 363-164, 363-204	공동개발 지정		
	⑲	1,095	●상도동 363-142일부, 산13-12일부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상도동 363-205						
b	①	952	●상도동 183-17, 183-26	공동개발 권장		
	②	631	●상도동 183-16, 183-64	공동개발 권장		
	③	281	●상도동 183-14	-		
	④	231	●상도동 183-15	-		
	⑤	469	●상도동 183-7, 183-13	공동개발 권장		
	⑥	258	●상도동 183-28	-		
	⑦	165	●상도동 183-51	-		
	⑧	204	●상도동 183-61	-		
	⑨	185	●상도동 183-12	-		
	⑩	685	●상도동 183-5, 183-60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상도동 183-29, 180-2일부			
	⑪	364	●상도동 183-31, 183-32	공동개발 권장		
	⑫	149	●상도동 183-1	-		
⑬	185	●상도동 181-13, 181-20	공동개발 권장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위 치	계획내용		비고
b	⑭	85	●상도동 181-14, 181-22	공동개발 권장		
	⑮	231	●상도동 183-9	-		
	⑯	331	●상도동 183-10, 183-58	공동개발 권장		
	⑰	463	●상도동 183-34, 183-35	공동개발 권장		
	⑱	235	●상도동 183-36	-		
	㉑	235	●상도동 183-37	-		
	㉒	268	●상도동 183-18, 183-41	공동개발 권장		
	㉓	347	●상도동 183-19, 183-53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상도동 183-57			
	㉔	559	●상도동 183-21, 183-22, 183-48, 183-52	공동개발 권장		
	㉕	281	●상도동 184-225	-		
	㉖	331	●상도동 183-23	-		
	㉗	552	●상도동 184-227	-		
	㉘	562	●상도동 183-24, 183-25, 183-54	공동개발 권장		
	㉙	208	●상도동 184-230	-		
c	①	527	●상도동 181-2	-		
d	①	229	●상도동 370-27, 373-83	공동개발 권장		
	②	453	●상도동 370-12, 370-14	공동개발 권장		
	③	512	●상도동 373-55, 373-86	공동개발 권장		
	④	1,756	●상도동 25-34, 산15-16, 산15-20, 산15-26, 산15-2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상도동 산15-42			
	⑤	329	●상도동 373-80	-		
	⑥	322	●상도동 373-61	-		
	⑦	334	●상도동 373-1	-		
	⑧	297	●상도동 373-52	-		
	⑨	4,467	●노량진동 328	-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계획내용	비고	
A	2,149.0	●상도동 365-1, 366-26, 370-2	1,287.0	공동개발 지정	장승배기2 특별계획가능구역	
		●상도동 366-24, 366-38, 366-41	197.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5-4, 365-6, 365-33	665.0	공동개발 지정		
B	3,625.0	●상도동 364-23, 366-29, 367-4, 367-12	303.0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상도동 365-23	93.0			
		●상도동 365-9	162.0	-		
		●상도동 365-2, 365-11	420.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8-8, 368-10, 368-11	286.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8-13, 368-14	339.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6-22	472.0	-		
		●상도동 364-36, 367-1, 368-5	326.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7-6, 367-11	817.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7-7, 367-8	215.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5-18	192.0	-		
C	3,385.0	●상도동 368-50	394.0	-		장승배기1 특별계획가능구역
		●상도동 368-40	819.0	-		
		●상도동 368-19, 368-22, 368-45	741.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72-4, 373-17	155.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72-1	240.0	-		
		●상도동 373-10, 373-11, 373-13, 373-14, 373-34, 373-36, 373-44, 373-46	506.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73-20, 373-25	249.0	공동개발 권장		
		●상도동 369-6, 369-13	281.0	공동개발 권장		
a	7,984.0	●상도동 363-190	185.0	-		
		●상도동 363-116, 363-180	305.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273	240.0	-		
		●상도동 363-87, 363-88, 363-228	233.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	86.0	-		
		●상도동 363-143	235.0	-		
		●상도동 363-94	222.0	-		
		●상도동 363-5	387.0	-		
		●상도동 363-10	328.0	-		
		●상도동 363-268	120.0	-		363-224와 합병
		●상도동 363-135	310.0	-		363-265와 합병
		●상도동 363-117, 363-235	479.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92, 363-152, 363-231	202.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9	152.0	-		
		●상도동 363-125	152.0	-		
		●상도동 364-1	299.0	-		
		●상도동 363-168, 363-169	344.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243	676.0	-		
		●상도동 363-164	1,876.0	-		363-204와 합필
		●상도동 363-142, 363-205, 363-303	1,153.0	공동개발 지정		장승배기2 특별계획가능구역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계획내용	비고
b	9,454.0	•상도동 183-26	621.0	-	
		•상도동 183-17	331.0	-	
		•상도동 183-16	331.0	-	
		•상도동 183-64	300.0	-	
		•상도동 183-14	281.0	-	
		•상도동 183-15	231.0	-	
		•상도동 183-7	205.0	-	
		•상도동 183-13	264.0	-	
		•상도동 183-28	258.0	-	
		•상도동 183-51	165.0	-	
		•상도동 183-61	204.0	-	
		•상도동 183-12	185.0	-	
		•상도동 183-60	172.0	-	
		•상도동 183-29	246.0	-	
		•상도동 180-2, 183-5	274.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183-32	179.0	-	
		•상도동 183-31	185.0	-	
		•상도동 181-13, 183-1, 181-20	334.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181-14, 181-22, 183-9	316.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183-58	129.0	-	
		•상도동 183-10	202.0	-	
		•상도동 183-35	238.0	-	
		•상도동 183-34	225.0	-	
		•상도동 183-36	235.0	-	
		•상도동 183-37	235.0	-	
		•상도동 183-18, 183-41	268.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183-19, 183-53, 183-57	347.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183-22	142.0	-	
		•상도동 183-48	142.0	-	
		•상도동 183-52	136.0	-	
		•상도동 183-21	139.0	-	
		•상도동 184-225	281.0	-	
		•상도동 183-23	331.0	-	
		•상도동 184-227	552.0	-	
		•상도동 183-24	152.0	-	
		•상도동 183-54	182.0	-	
		•상도동 183-25	228.0	-	
		•상도동 184-230	208.0	-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계획내용	비고
c	527.0	●상도동 181-2	527.0	-	
d	8,699.2	●상도동 370-27, 373-83	229.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70-12, 370-14	453.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73-55	239.0	-	
		●상도동 373-86	273.0	-	
		●상도동 산15-16, 산15-20	948.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산15-29, 산15-26	364.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25-34	163.0	-	
		●상도동 산15-42	281.0	-	
		●상도동 373-80	329.0	-	
		●상도동 373-61	322.0	-	
		●상도동 373-1	334.0	-	
		●상도동 373-52	297.0	-	
		●노량진동 328	4,467.2	-	

나. 필지의 교환에 관한 계획

■ 필지교환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적용대상		비고
	기정	변경	
필지교환 가능선	●가구 C번 ②과 ③ (상도동 368-40 과 368-19)	●가구 B번 상도동 367-4와 365-9, 365-23 ●가구 C번 상도동 368-40과 368-19 ●가구 b번 상도동 180-2와 181-13	권장

다.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적용 대상	최대개발규모		비 고
		기정	변경	
간선변	상도로, 장승배기로	2,000㎡ 이하	2,000㎡ 이하	간선변과 이면부 공동개발시 간선변 기준 적용
이면부	구역내부	1,500㎡ 이하	1,500㎡ 이하	

주1)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개발지는 예외

주2) 기정 양영로는 도로명주소를 적용하여 장승배기로 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불허용도

구분		불허용도(전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기 정	공통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 ●제17호 공장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A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장례식장 ●제15호 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근린상업지역
	B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장례식장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준주거지역
	C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 경	공통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 ●제17호 공장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A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제15호 숙박시설 ●제16호 위락시설 / ●제28호 장례식장	근린상업지역
	B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 ●제28호 장례식장	준주거지역
	C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제3종일반주거지역

※ 해당 용도지역·지구 및 학교환경위생(상대/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우선 준수

※ 상이한 용도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공동개발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용도제한규정 적용

■ 건축물의 권장용도

구 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기정	1	전층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2	전층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제11호 노유자시설	
	3	전층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주1)을 포함)	
변경	1	전층 (1층 제외)	•제3·4호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금융업소, 사무소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근린상업지역 (교차로)
		저층 (1층)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라목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아, 자목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2	전층 (1층 제외)	•제3·4호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금융업소, 사무소, 학원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저층 (1층)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라목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아, 자목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3	전층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목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보호전문기관이 있음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라목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녀목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제17호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아, 자목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제17호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 상이한 권장용도가 계획된 둘이상의 대지를 공동개발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권장용도를 적용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1) 건폐율 계획(변경 없음)

■ 건폐율 계획

구 분	건폐율	비고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2) 용적률 계획

■ 용적률 계획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주1)	상한용적률주2)	비 고
기정	근린상업지역		300% 이하	500% 이하	6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준주거	간선변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이면부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		230% 이하	250% 이하	—	
변경	근린상업지역		300% 이하	500% 이하	6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준주거	간선변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이면부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		23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용적률 적용기준(공통사항)을 따름

주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주2) 상한용적률 = 산정된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이내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 용적률 적용기준(공통사항)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91.5.11이후 변경)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중 주거부분(주1)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 이하 적용	

주1)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을 말함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 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beta - \alpha)/\beta$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7/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3/10$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률 적용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용도지역 혼재시 가중평균)〉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지 또는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주택연면적 비율(%)									
60이상 ~ 70미만	280%	470%	800%	280%	400%	600%	250%	380%	600%
50이상 ~ 60미만	300%	510%	800%	300%	420%	600%	250%	400%	600%
40이상 ~ 50미만	300%	550%	800%	300%	450%	600%	250%	430%	600%
30이상 ~ 40미만	300%	590%	800%	300%	470%	600%	250%	450%	600%
30 미만	300%	630%	800%	300%	500%	600%	250%	480%	600%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

- 기준용도지역 또는 용도지역이 상향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는 용적률의 10% 이상을 지상에 계획하여야 한다.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포함)에서 인정한 경우 제외한다.

※ 본 기준은 특별계획가능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3) 용적률 인센티브계획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기정)

- 근린상업지역(기정)

항 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 고
획지계획	필지교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2$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5\alpha$	●2필지 : $\alpha=0.1$ ●3~4필지 : $\alpha=0.15$ ●5필지 이상 : $\alpha=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div$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times 0.2$	●건축면적의 20%이상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 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의무면적}, \text{의무 면적 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 5\%)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구조 : $\alpha=0.5$ ●개방형구조 : $\alpha=1.2$
	쌈지형, 침상형 공지	위치 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div$ 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구조 : $\alpha=0.5$ ●침상형구조 : $\alpha=1.0$ ●개방형구조 : $\alpha=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 보행통로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div$ 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구조 : $\alpha=0.5$ ●개방형구조 : $\alpha=1.0$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하철 관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5$	●지하철출입구, 연결통로를 건물내 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times$ (자연지반 보존면적 $\div$ 대 지면적) $\times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 $\div$ 대지면적) $\times$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이내 적용(법정 조경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시 미적용
	빗물이용 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times 0.05$ 또는 대지면적 $\times 0.02$ 이상 설치시 적용

(표 계속)

항 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 고
환경 친화적 건축물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기준용적률 × 0.05이내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 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	1등급 (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8	●에너지절감율 33.5%이상 ●에너지성능지표 81점이상 ●친환경건축물인증 85점이상
		2등급 (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에너지절감율 23.5% ~ 33.5% 미만 ●에너지성능지표 74~81점미만 ●친환경건축물인증 75~85점미만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 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5	●지침에 결정된 대지에 적용
최고높이계획		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주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sum$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주2)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 대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공개공지 위치준수, 씬지형·침상형 공지 위치준수, 건축한계선, 최고높이계획)을 모두 준수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150%를 말함. 계획된 기본항목이 4가지 이하일 경우에도 당해 대지에 계획된 기본항목을 모두 준수할 경우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음

주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조례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민간부문 시행 지침 참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주4)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음

주5)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

주6) 에너지절감율 :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주7)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주8) 친환경건축물인증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주9) 특정위치에 둘 이상의 완화요소가 해당(중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 하나의 용적률 완화만 적용

- 준주거지역(기정)

항 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5\alpha$	•2필지 : $\alpha=0.1$ •3~4필지 : $\alpha=0.15$ •5필지 이상 : $\alpha=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div$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times 0.2$	•건축연면적의 20%이상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의무면적}, \text{의무면적 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 5\%)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구조 : $\alpha=0.5$ •개방형구조 : $\alpha=1.2$
	쌈지형, 침상형 공지	위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구조 : $\alpha=0.5$ •침상형구조 : $\alpha=1.0$ •개방형구조 : $\alpha=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구조 : $\alpha=0.5$ •개방형구조 : $\alpha=1.2$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구조 : $\alpha=0.5$ •개방형구조 : $\alpha=1.0$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하철 관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5$	•지하철출입구, 연결통로를 건물 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자연지반 보존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녹화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이내 적용(법정 조경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시 미적용
	빗물이용 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times 0.05$ 또는 대지면적 $\times 0.02$ 이상 설치시 적용

(표 계속)

항 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 고
환경 친화적 건축물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 면적)	●기준용적률×0.05이내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	1등급 (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기준용적률× 0.08	●에너지절감율 33.5%이상 ●에너지성능지표 81점이상 ●친환경건축물인증 85점이상
		2등급 (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에너지절감율 23.5% ~ 33.5%미만 ●에너지성능지표 74~81점미만 ●친환경건축물인증 75~85점미만

주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sum$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주2)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
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음

주3)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

주4) 에너지절감율 :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주5)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주6) 친환경건축물인증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주7) 특정위치에 둘 이상의 완화요소가 해당(중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 하나의 용적률 완화만 적용

- 제3종일반주거지역(기정)

항 목		완화조건	완화기준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5\alpha$	●2필지 : $\alpha = 0.05$ ●3~4필지 : $\alpha = 0.08$ ●5필지 이상 : $\alpha = 0.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상 도 입시 5% 완화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div$ 대지 면적) $\times \alpha$	●개방형 구조 : $\alpha = 0.8$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 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div$ 대지 면적) $\times \alpha$	●개방형 구조 : $\alpha = 0.8$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times$ (자연지반 보존면 적 $\div$ 대지면적) $\times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 $\div$ 대지 면적) $\times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이내 적용 (법 정 조경면적은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 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시 미적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times 0.05$ 또는 대지면적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div$ 대지 면적)	
	신재생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에너지절약	1등급 (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8$	
		2등급 (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8$	

주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Σ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leq$ 허용용적률

주2) 특정위치에 둘 이상의 완화요소가 해당(충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 하나의 용적률 완화만 적용

주3)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변경)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공통사항)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과 각 완화항목 준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의 합은 허용용적률 이하로 한다. 즉, 기준용적률 + Σ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leq$ 허용용적률을 적용한다.

-친환경 인센티브는 30%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70% 이내로 한다.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건축연면적이 500㎡ 이하(주차장 제외)인 소규모 건축물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3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하다.

● 그 외 각 항목별 용적률 완화 여부 및 산정기준 등은 결정조서 및 해당 지침을 참조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양을 산정토록 한다.

● 미관지구 내 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포함) 후퇴부분 등 관련규정상 의무사항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유사항목으로 상한용적률 적용시 허용용적률에서는 제외한다.

● 공동개발 이행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시, 기 공동개발 필지는 단독건축으로 보아 공동개발 이행필지 수에서 제외한다.

● 지하철 및 지중화관련 시설물을 건축물내부 또는 대지내에 설치할 경우‘지하철 및 지중화 시설 건축물 내 설치’와 ‘건축한계선 등(전면공지)’ 인센티브 항목을 중복하여 계상할 수 있다.

● 친환경건축물 항목 중 법적 의무설치대상은 인센티브 산정시 제외한다.

● 기타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인허가권자와 협의 하에 결정한다.

※ 본 기준은 특별계획가능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 근린상업지역(변경)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 $\alpha=0.100$ 3~4필지 : $\alpha=0.150$ 5필지 이상 : $\alpha=0.200$
	필지교환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 $\alpha=0.100$ 3~4필지 : $\alpha=0.150$ 5필지 이상 : $\alpha=0.200$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 : $\alpha=0.500$ 침상형 : $\alpha=1.000$ 개방형 : $\alpha=1.200$
	쌈지형(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 : $\alpha=0.500$ 침상형 : $\alpha=1.000$ 개방형 : $\alpha=1.20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1.2$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대지면적}) \times 1.0$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또는 1층 제외 전층)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text{연면적}) \times 1.0$	20% 이상 설치시 (주차장 제외)
	가로활성화를 위한 저층부(1층)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시
보행개선	지장물 지중화,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 $\times 0.2$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 자율형(선택적) 공동개발 시 공동개발(지정, 권장) 인센티브 계수(α)의 80% 적용

※ 저층부(1층) 권장용도 인센티브 적용할 경우 전층 권장용도 인센티브 계산에서는 1층 연면적 제외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60$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40$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40$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30$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20$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60$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50$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40$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30$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20$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 1)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04$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건축면적 $\times 0.05$ 또는 대지면적 $\times 0.02$ 이상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times (\text{녹화면적}/\text{대지면적}) \times 0.1$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times (\text{보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0.2$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대지면적}) \times 0.2$	•기준용적률 $\times 0.05$ 이내

- 준주거지역(변경)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 $\alpha=0.050$ 3~4필지 : $\alpha=0.075$ 5필지 이상 : $\alpha=0.100$
	필지교환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 $\alpha=0.050$ 3~4필지 : $\alpha=0.075$ 5필지 이상 : $\alpha=0.100$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 : $\alpha=0.500$ 침상형 : $\alpha=1.000$ 개방형 : $\alpha=1.200$
	쌈지형(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 : $\alpha=0.500$ 침상형 : $\alpha=1.000$ 개방형 : $\alpha=1.20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1.2$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대지면적) $\times 1.0$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또는 1층 제외 전층)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연면적) $\times 1.0$	20% 이상 설치시 (주차장 제외)
	가로활성화를 위한 저층부(1층)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시

※ 자율형(선택적) 공동개발 시 공동개발(지정, 권장) 인센티브 계수(α)의 80% 적용

※ 저층부(1층) 권장용도 인센티브 적용할 경우 전층 권장용도 인센티브 계산에서는 1층 연면적 제외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환경친화 에너지 회생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60$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40$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40$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30$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20$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60$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50$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40$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30$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20$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 1)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04$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건축면적 $\times 0.05$ 또는 대지면적 $\times 0.02$ 이상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대지면적) $\times 0.1$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times$ (보존면적/대지면적) $\times 0.2$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대지면적) $\times 0.2$	●기준용적률 $\times 0.05$ 이내

- 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 $\alpha=0.025$ 3~4필지 : $\alpha=0.040$ 5필지 이상 : $\alpha=0.050$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 : $\alpha=0.250$ 침상형 : $\alpha=0.500$ 개방형 : $\alpha=0.6$
	쌈지형(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 : $\alpha=0.250$ 침상형 : $\alpha=0.500$ 개방형 : $\alpha=0.60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0.8$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대지면적) $\times 0.8$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전층)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연면적) $\times 0.5$	20% 이상 설치시 (주차장 제외)

※ 자율형(선택적) 공동개발 시 공동개발(지정, 권장) 인센티브 계수(α)의 80% 적용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환경친화 에너지 이용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30$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20$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20$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15$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10$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30$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25$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20$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15$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 $\times 0.010$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 1)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02$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02$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건축면적 $\times 0.05$ 또는 대지면적 $\times 0.02$ 이상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대지면적) $\times 0.1$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times$ (보존면적/대지면적) $\times 0.2$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대지면적) $\times 0.2$	•기준용적률 $\times 0.05$ 이내

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

■ 높이계획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기정	근린상업지역		80m 이하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 제한 배제
	준주거지역	상도로변	72m 이하	
		양녕로변/이면부	50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도로변	72m 이하	
		장승배기로변	50m 이하	
		양녕로변/이면부	30m 이하	
변경	근린상업지역		80m 이하	
	준주거지역	상도로변	72m 이하	
		장승배기로변/이면부	50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 기정 양녕로는 도로명주소를 적용하여 장승배기로로 변경

라. 건축물 배치 및 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건축선에 관한 사항

구분		적용 지역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건축 한계선	●간선도로변 (상도로, 장승배기로)	●3m	●보도형 조성 (가로변 보행공간 확보)
		●이면도로변	●2m 이하	●보도 및 차도형 조성 (이면부 보행공간 확보)
		●특별계획구역 서측 (양녕로변)	●3m	
		●공공청사 북측 도로변	●6m	
		●공공보행통로변 지정	●3개소(1~2m)	●보도형 조성
변경	건축 한계선	●간선도로변 (상도로, 장승배기로)	●3m	●보도부속형 조성 (가로변 보행공간 확보)
		●이면도로변	●2m 이하	●차도부속형 조성 (이면부 보행공간 확보)
		●공공청사(종합행정타운)	●북측 : 7~10m ●서측 : 5m ●동측남측 : 3m	●북측서측 : 보도부속형 조성 (보행활성화를 위한 특화가로 연계) ●동측남측 : 차도부속형 조성
		●공공보행통로변 지정	●2개소(1~2m)	●대지내 보행공간 확보
		●보차혼용통로변 지정	●1개소(2m)	●대지내 차량통행 및 보행공간 확보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적용 지역	계획 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투시형 서터 및 투시벽(벽면적 50%이상) 설치 •1층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건축물 색채 및 외관	재료/색채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색의 사용은 금하도록 함	
	야간조명	•간선변 10층 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투시형 벽면설치시 내·외부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함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대규모 개발지 및 전면도로변, 도로 가각부에 대하여 권장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외부에 노출이 심하거나, 건축물과의 이질감이 심한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제 •통합간판 설치 유도	

※ 구체적 조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구분	위 치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변경	
전면 공지	•간선도로, 이면도로변의 건축한 계선으로 확보	•인도/차도 부속	•인도/차도 부속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조
공개 공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행통로 및 가각부에 지정	•4개소 (위치지정)	•4개소 (위치지정)	•상도1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공개공지 폐지 •종합행정타운과 연계된 가로활성화를 위해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추가

■ 교통차리에 관한 사항

구 분	적용 지역	계획 내용	기정	변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상도로변 •장승배기로변	•주요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불허 •교차로에 면한 획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m 이내에 주차출입구 설치 불허	폭원 25m이상 간선도로변	폭원 20m이상 간선도로변 (불허구간 확대)
공동주차 통로	•이면부 진출입이 불가능한 간선변 대지	•보차혼용통로로 변경 및 폭원 변경(B=4→6m)	1개소 (B=4m)	-
공공보행 통로	•주요가로 및 이면 주거지와 보행흐름 연계 필요 구간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기정(상도1)특별계획구역 서측 경계부에 결정된 공공보행통로(B=4m) 폐지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는 보행공간으로 지정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상도동 183-61, -54, -25 : 1m -상도동 183-26, -17, -29 : 2m ※ 필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임	4개소 (B=3, 4m)	2개소 (B=3m)

구 분	적용 지역	계획 내용	기정	변경
보차혼용 통로	●보행연결 필요 구간 및 차량통행 필요 구 간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기정(상도1)특별계획구역 남측 경계부에 결정된 보차혼용통로(B=10m) 폐지 ●간선가로에서 차량출입이 금지된 대지의 이면부 차량출입을 위하여 설치토록 한 공동주차통로를 보차혼용통로로 변경 및 폭원 변경(B=4→6m) ●비상 및 응급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1개소를 보차혼용통로로 변경 및 폭원 변경(B=3→4m, 해당 필지경계선에서 각 2m 이격)	1개소 (B=10m)	2개소 (B=4, 6m)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제공 구간	●보행자우선이 아닌 일반도로로 유지관리되어 폐지	일부 이면도로	-

※ 결정(변경)사항의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4.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해제	-	상도1(영도시장 일대) 특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176-1 일대	12,122	감) 12,122	-	서고시 제2002-30호 (' 02. 2.15)
신설	①	장승배기1 특별계획가능구역	동작구 상도동 368-19 일대	-	증) 3,839	3,839	
신설	②	장승배기2 특별계획가능구역	동작구 상도동 365-1 일대	-	증) 2,987	2,987	

※ 특별계획가능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며, 이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별 건축행위는 가능함

※ 다만, 주민요청(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 동의) 및 입안권자(구청장 등)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년 이내(총 5년 범위 이내)에서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 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	변경사유
해제	-	상도1(영도시장 일대) 특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176-1 일대	-	●공공청사(종합행정타운) 결정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해제
신설	①	장승배기1 특별계획가능구역	동작구 상도동 368-19 일대	3,839	●노후불량 건축물과 소규모필지 밀집지역으로 종합행정타운 조성 및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 및 조화로운 경관 형성이 필요하고, 지구중심지로서 지역정비 필요성 증대에 따라 사업유도·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지구중심지로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개발거점 활용 및 역세권 기능강화의 견인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신설	②	장승배기2 특별계획가능구역	동작구 상도동 365-1 일대	2,987	●건축 제약여건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지역발전 및 역세권 활성화 유도를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시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

1) 장승배기1 특별계획가능구역(신설)

■ 구역개요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장승배기1 특별계획가능구역	동작구 상도동 368-19 일대	3,839	

■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기반시설확보		●기부채납 순부담 15% 이상 □- 전면부 도로(대로3-18, 대로3-184) 3m 확폭 - 이면부(소로3-151) 1~2m 확폭(도로폭원 9m 확보)
용도	불허	
	권장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15호 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8호 장례식장
		저층 (1층)
	전층 (1층 제외)	●제3·4호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금융업소, 사무소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기준/허용/상한)		●300% 이하 / 630% 이하 / 800% 이하
높이		●최고높이 90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간선변 3m
	벽면한계선	●이면변 3m
교통처리계획		●전면부 차량출입 불허
기타	공개공지	●위치지정 ⁰ 설치 및 조성
	공공보행통로	●중앙부 폭원15m 이상 공공보행통로 조성 (필로티 형태 금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3m) 조성

- ※ 획지분할을 불허함
-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
-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건축물 용도는 비주거(주거 및 오피스텔 제외)로 한정하며, 주거 및 오피스텔은 현재 용도지역의 용적률 기준 이하의 연면적만 허용함
- ※ 용적률 산정시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내 용적률 적용기준(공통사항)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공통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라목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제17호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아, 자목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제17호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자. 일반음식점
- ※ 해당 용도지역 · 지구 및 학교환경위생(상대/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우선 준수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계획유도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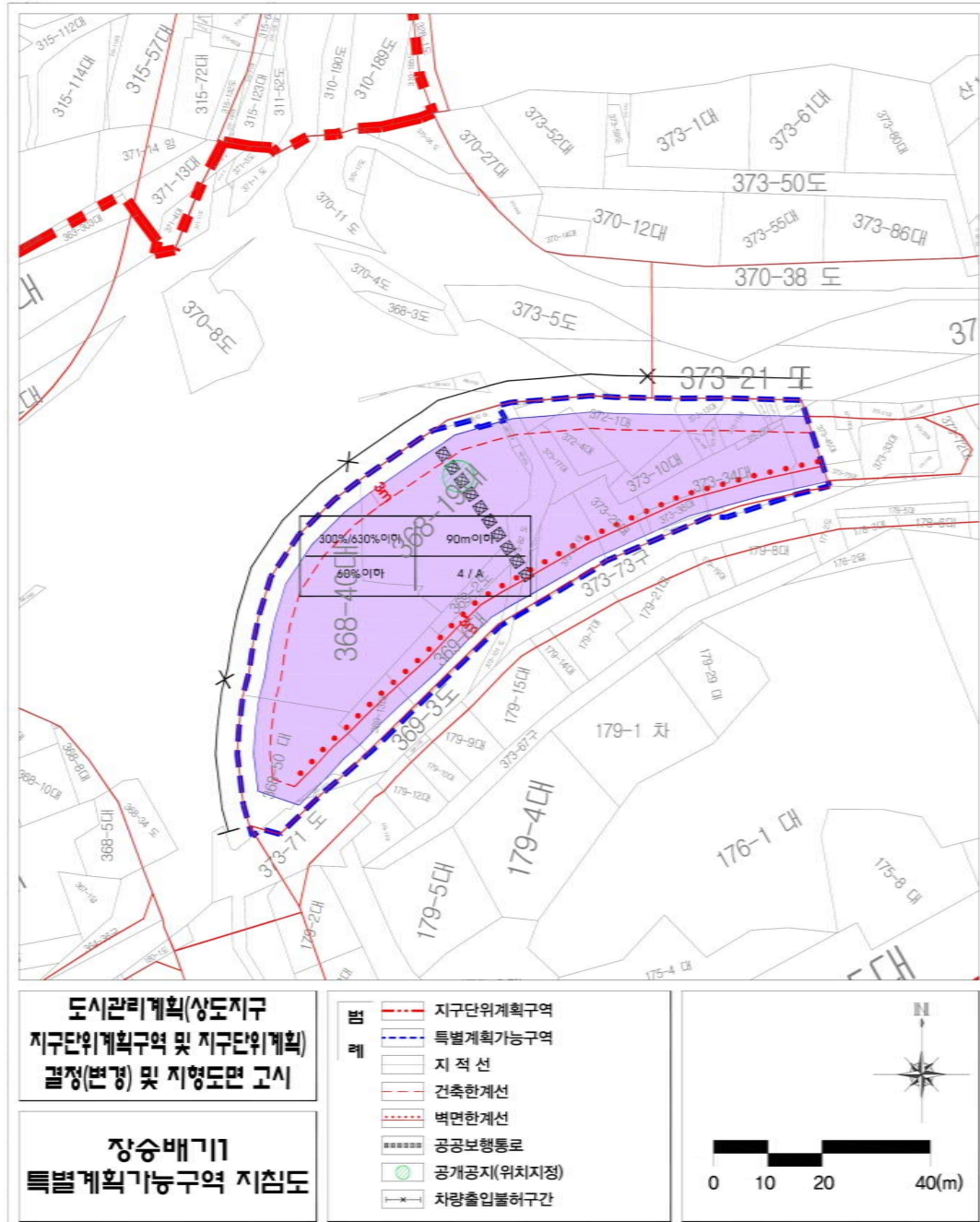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획지 계획	획지단위 개발	기준용적률×0.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 : α=0.500 침상형 : α=1.000 개방형 : α=1.200
	쌈지형(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 : α=0.500 침상형 : α=1.000 개방형 : α=1.200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 : α=0.500 개방형 : α=1.200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α	피로티 : α=0.500 개방형 : α=1.000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또는 1층 제외 전층)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면적) ×1.0	20% 이상 설치시 (주차장 제외)
	가로활성화를 위한 저층부(1층) 권장용도	기준용적률×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시
보행 개선	지장물 지중화,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0.4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 저층부(1층) 권장용도 인센티브 적용할 경우 전층 권장용도 인센티브 계산에서는 1층 연면적 제외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환경친화 에너지 에너지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0.120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0.080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0.04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0.080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0.060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0.040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0.120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0.100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0.080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0.060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0.040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 1)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 시설설치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0.2	기준용적률 × 0.05 이내

계획지침도



2) 장승배기2 특별계획가능구역(신설)

■ 구역개요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장승배기2 특별계획가능구역	동작구 상도동 365-1 일대	2,987	

■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기반시설확보			●기부채납 순부담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30% 이상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15% 이상 ●전면부 도로(대로3-18) 3m 확폭
용도	불허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제15호 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8호 장례식장
	권장	저층 (1층)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라목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아, 자목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전층	●제3·4호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금융업소, 사무소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기준/허용/상한)			●3종일반주거 → 근린상업 : 250% / 480% / 600% ●준주거 → 근린상업 : 300% / 500% / 600% ●근린상업지역 : 300% / 500% / 600%
높이			●최고높이 80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간선변 3m, 이면변 3m
교통처리계획			●전면부 차량출입 불허
기타	공개공지	●위치지정 ¹ 설치 및 조성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3m) 조성	

- ※ 획지분할을 불허함
-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간 변경 절차 별도 이행
- ※ 용적률 산정시 용도지역 별 가중평균(국토계획법 제84조) 적용
-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건축물 용도는 비주거(주거 및 오피스텔 제외)로 한정하며, 주거 및 오피스텔은 현재 용도지역의 용적률 기준 이하의 연면적만 허용함
- ※ 용적률 산정시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내 용적률 적용기준(공통사항)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공통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라목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제17호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아, 자목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제17호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자. 일반음식점
- ※ 해당 용도지역 · 지구 및 학교환경위생(상대/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우선 준수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계획유도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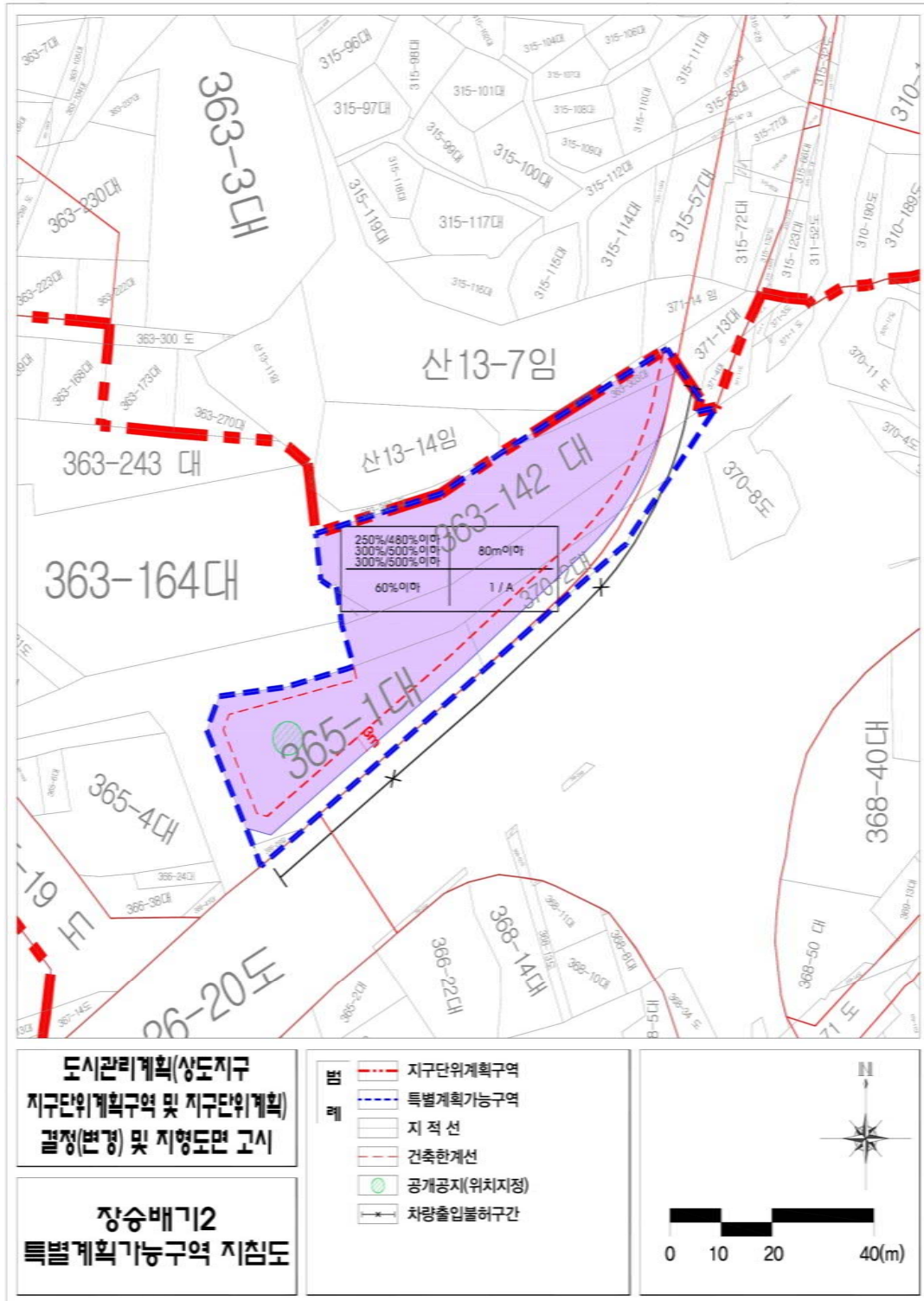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	기준용적률×0.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 : α=0.500 침상형 : α=1.000 개방형 : α=1.200
	쌈지형(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 : α=0.500 침상형 : α=1.000 개방형 : α=1.20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2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 : α=0.500 개방형 : α=1.000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또는 1층 제외 전층)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 ×1.0	20% 이상 설치시 (주차장 제외)
	가로활성화를 위한 저층부(1층) 권장용도	기준용적률×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시
보행개선	지장물 지중화,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0.4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 저층부(1층) 권장용도 인센티브 적용할 경우 전층 권장용도 인센티브 계산에서는 1층 연면적 제외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0.060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0.040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0.0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0.040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0.030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0.020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0.060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0.050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0.040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0.030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0.020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 1)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 시설설치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0.1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0.2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0.2	•기준용적률 × 0.05 이내

계획지침도



③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 제7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 영 제25조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썸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④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

■ 다음사항을 반영

- 특별계획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은 주거 및 오피스텔 이외의 용도로만 가능하도록 명시(주거 및 오피스텔 용도는 현재의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연면적 기준 이하로만 허용)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 획지 분할 금지
- 공공청사 결정사항은 상정안대로 결정하되, 현상설계 공모 전에 공모지침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추후 그 결과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IV. 관계도면 : 첨부 지형도면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2133-8388) 및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9734), 행정타운조성과(☎820-9342)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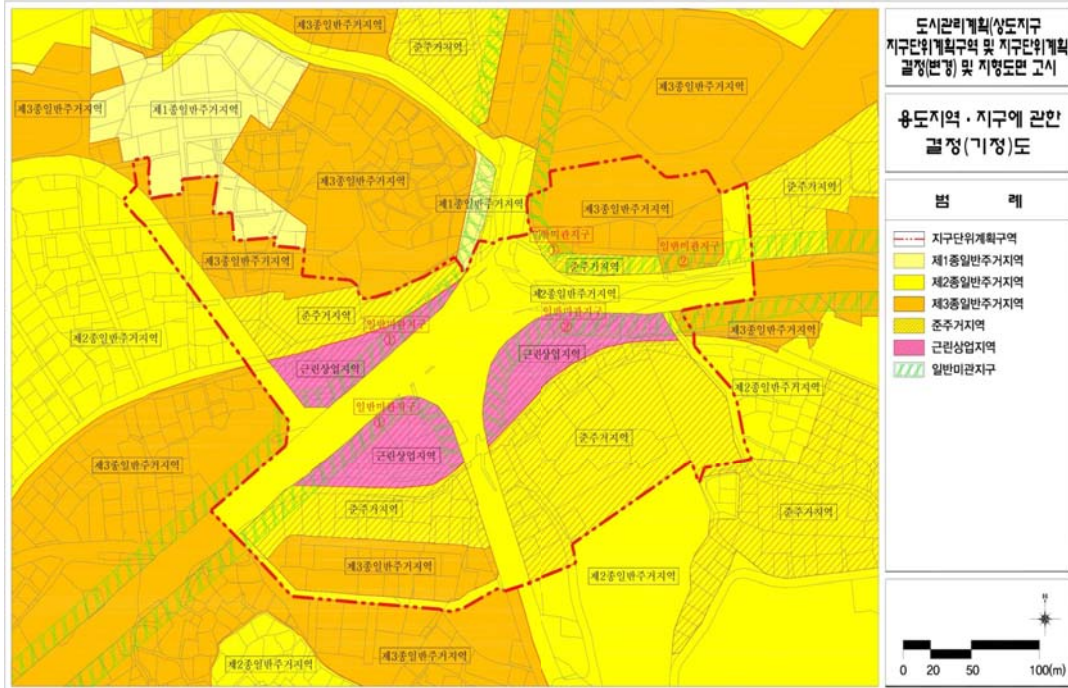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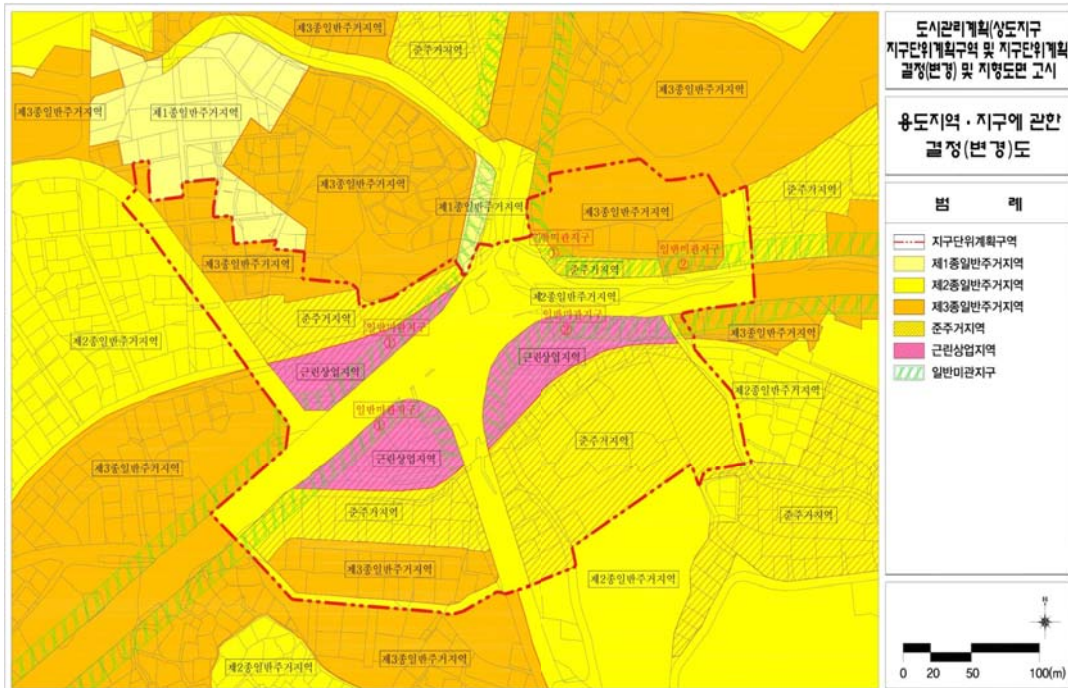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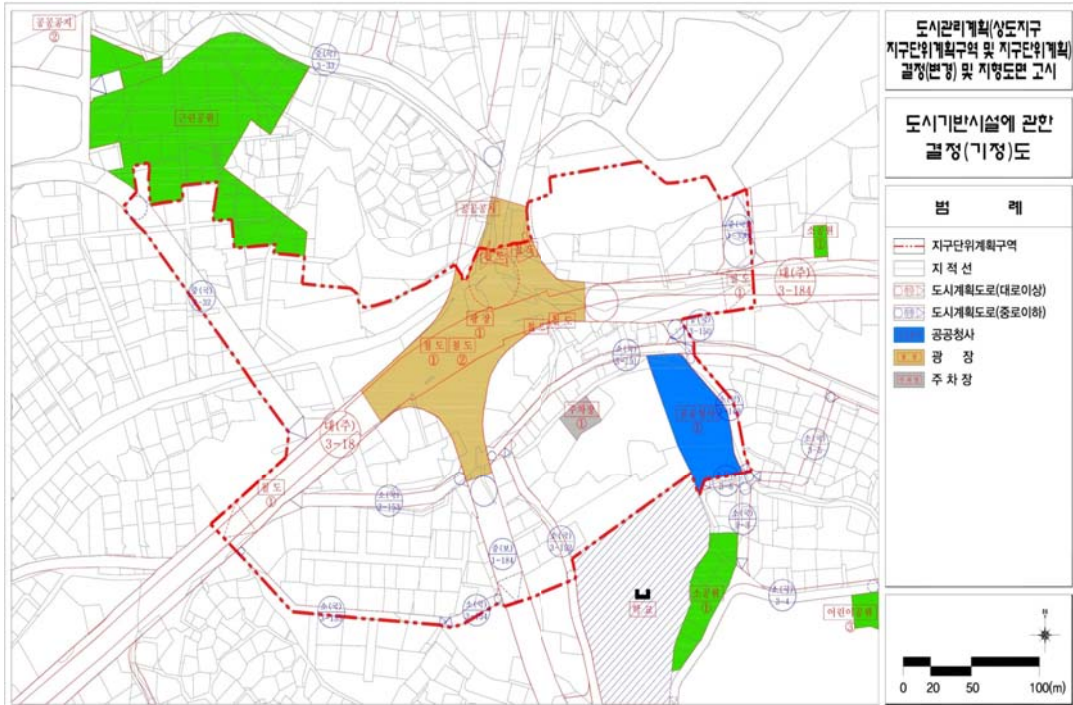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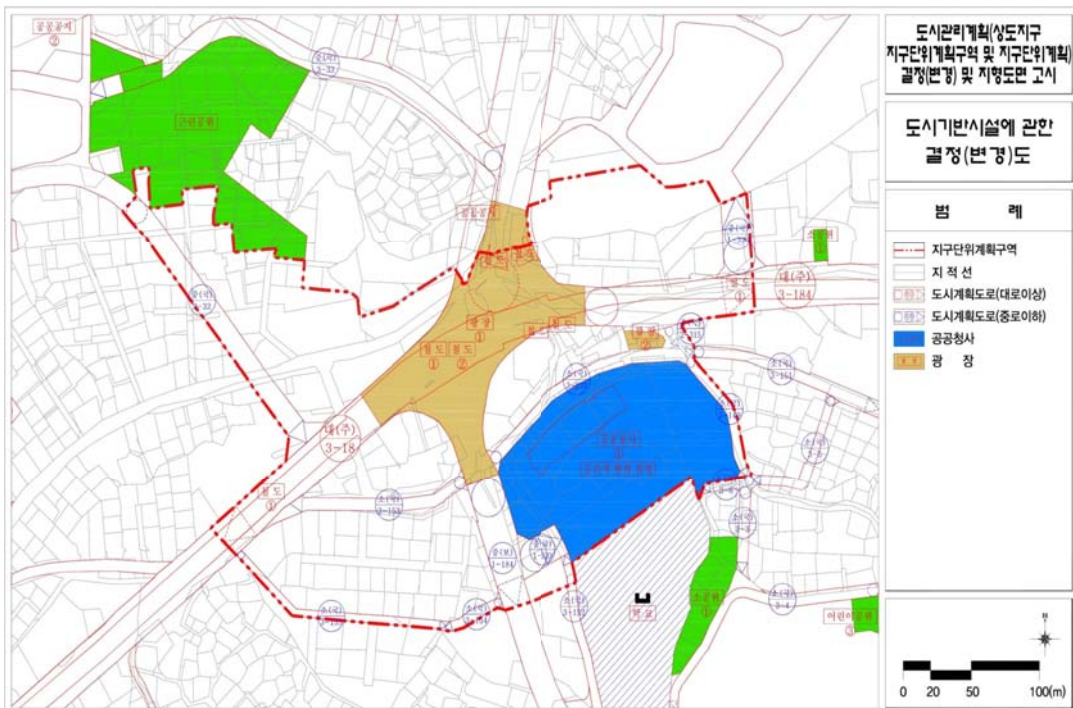


주) 금회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조정을 반영한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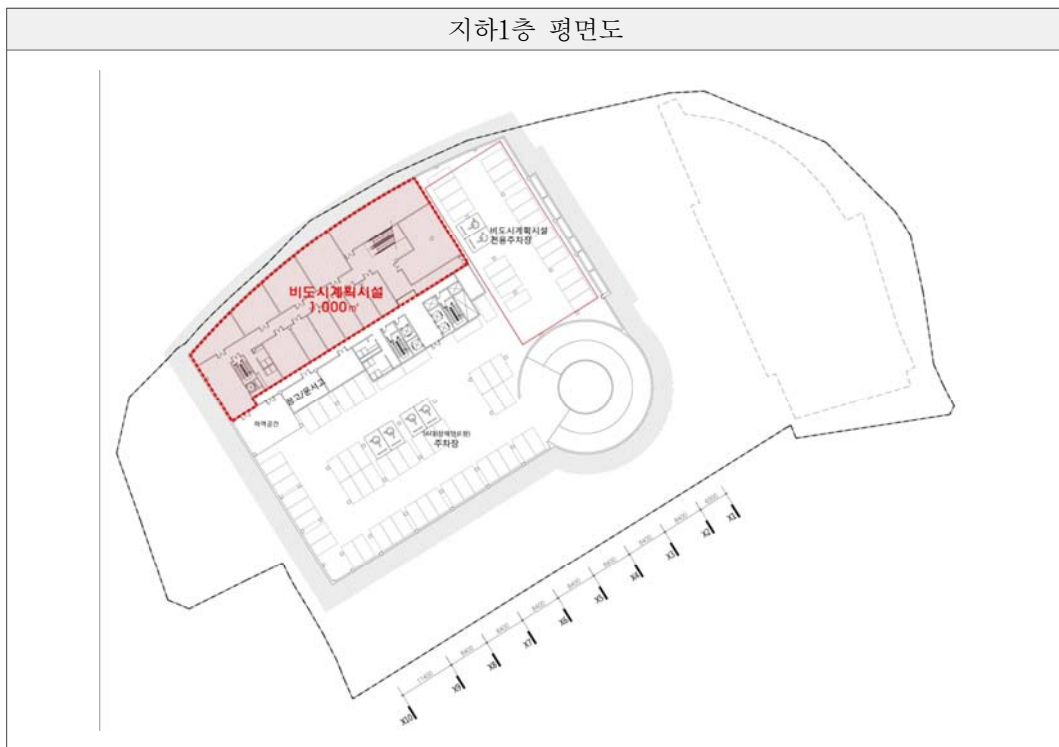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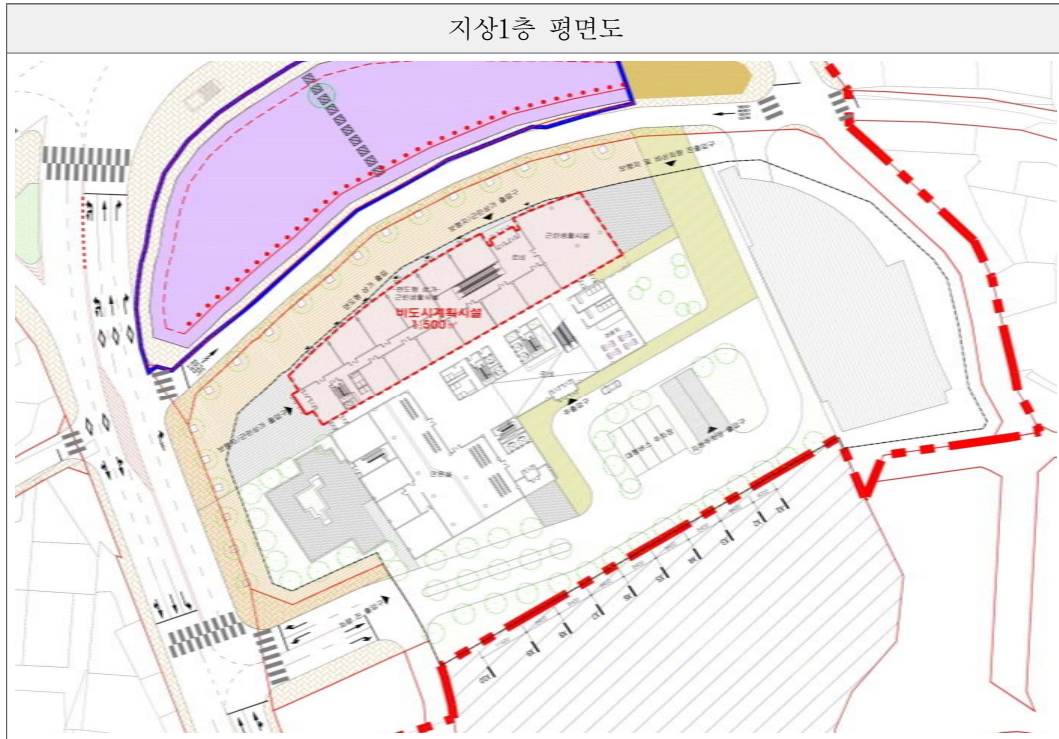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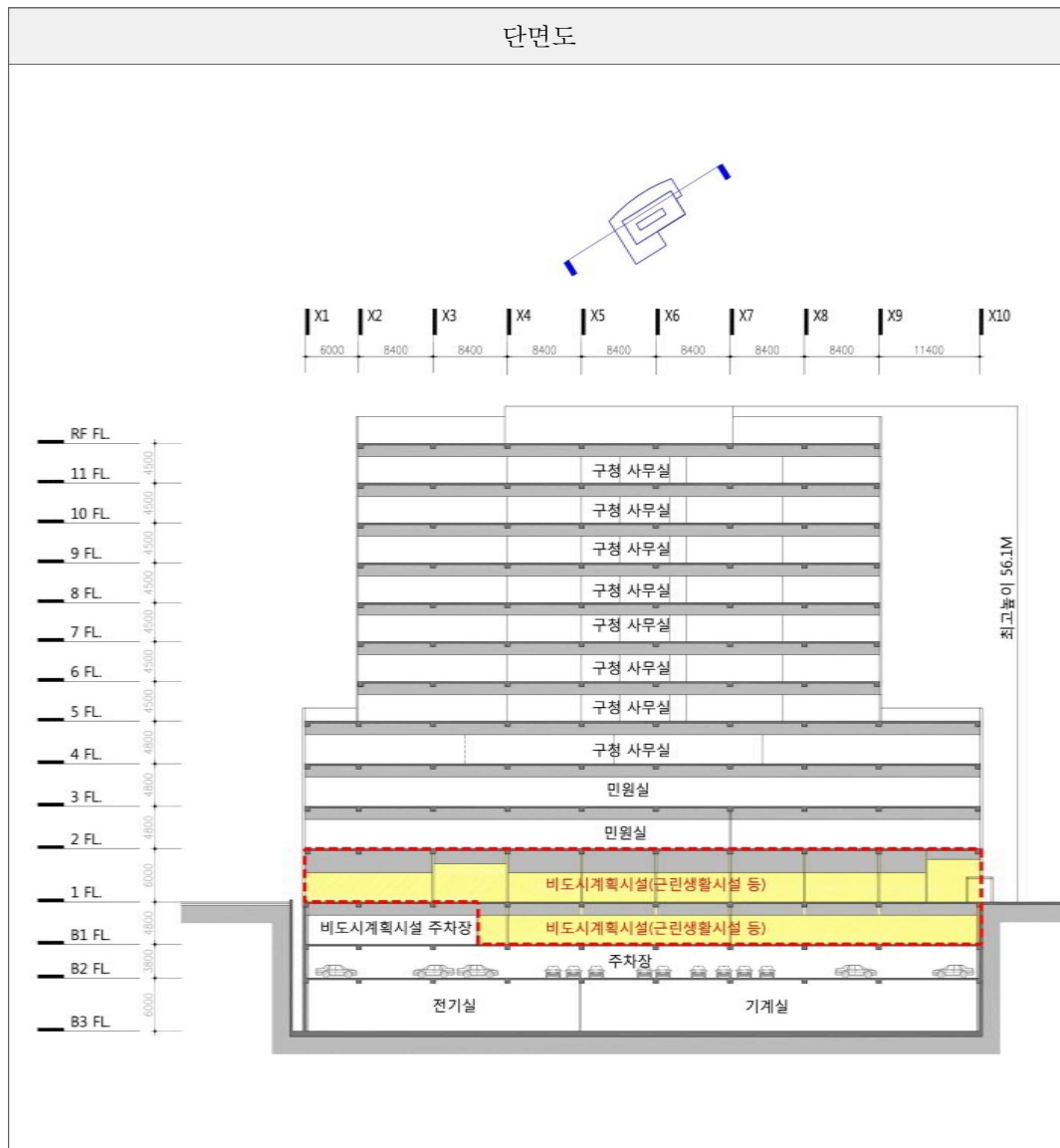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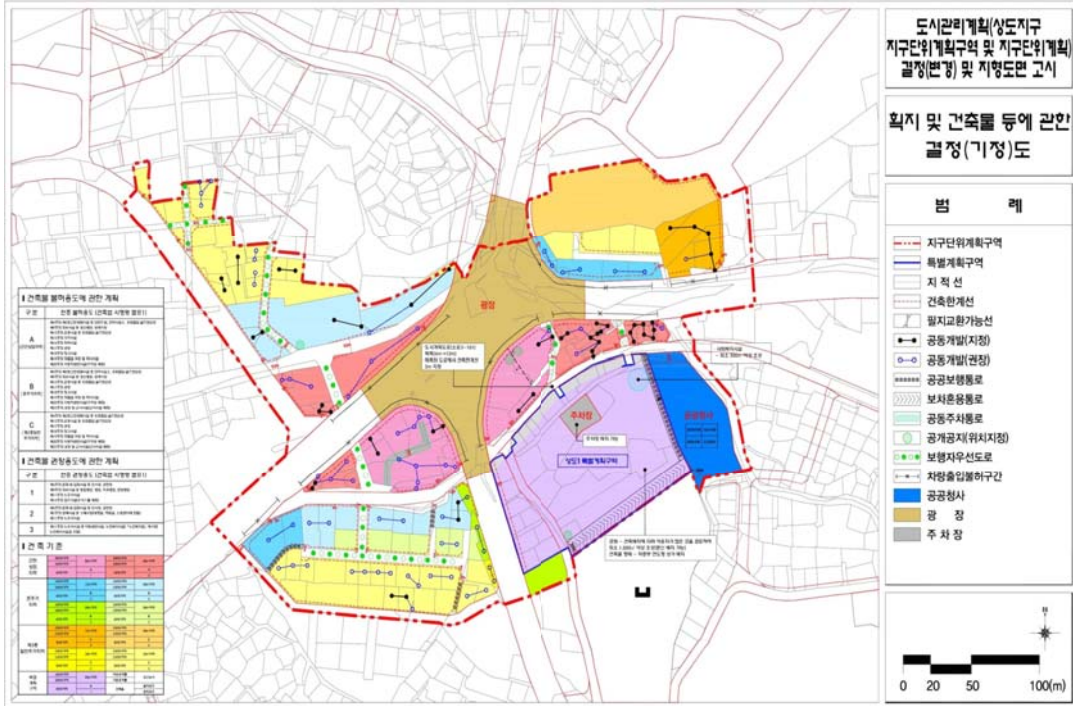


■ 공간적 범위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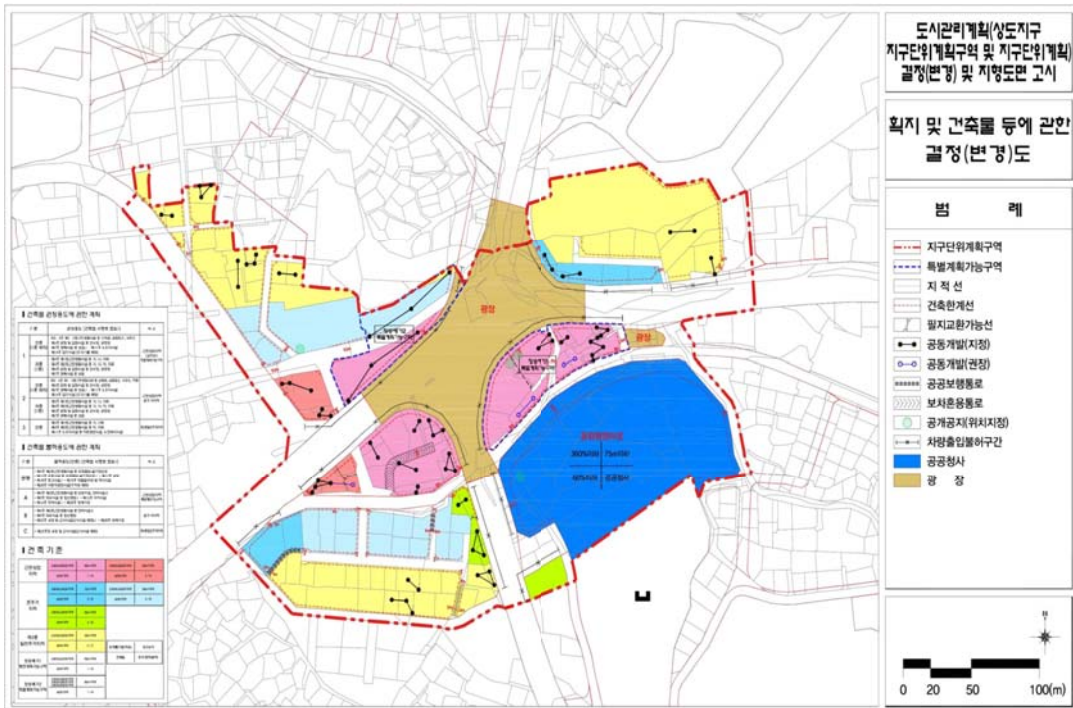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68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1회차 위반 경고안내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7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75가5401	여*엽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7-05-02 12:39:22	동일로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0,000
2	80구8785	이*녕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7-04-02 08:27:06	동일로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0,000
3	80뉴9290	오*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04-20 22:03:08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0,000
4	80더2846	(주)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7-05-31 07:41:48	경인고속도로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0,000
5	80려2599	송*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7-04-20 19:43:56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0,000
6	80로5560	최*욱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7-05-26 17:42:53	송파대로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0,000
7	84라8641	(주)을***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05-24 14:28:12	경인고속도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0,000

4. 공고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17.7.28(금)
 - 나. 본 경고조치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김효동(Tel 02-2133-3659, Fax 02-2133-1025)
-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6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62	한부모가족행복지원 시민연대 (대표 : 이태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및 식료의류 지원	100 (현금및물 품)	전국	'17.6.30~ '18.5.31
						'17.6.30 ~ '19.5.31
2017-63	(재)함께일하는재단 (대표 : 송현섭)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	-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속가 능한 성장 지원	100 (현금)	전국	'17.6.30 ~ '18.6.16
						'17.6.30 ~ '19.6.16
2017-64	(사)미래경제포럼 (대표 : 변재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박람회, 콘 퍼런스 등 개최	70 (현금)	전국	'17.6.30 ~ '18.5.31
						'17.6.30 ~ '18.5.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74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푸른
도시국 서울로운영단 회계관계 공무원의 등록 및 폐기 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 등록 및 폐기 직인 (사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구분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등록·폐기 일자
등록	서울로운영단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7. 7. 3.
등록	서울로운영단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7. 7. 3.
폐기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 단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7. 7. 3.
폐기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 단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7. 7. 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93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폐기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17.7.1.	'17.7.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17.7.1..	'17.7.1. 조직개편

○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17.7.1.	'17.7.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17.7.1..	'17.7.1. 조직개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9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	동신종합건설(주)	송덕배	2017.06.01	서울170062	강남구 선릉로 531, 202호(역삼동)	1,500,000	신규등록
2	진건종합건설(주)	유선종	2017.06.01	서울170063	강남구 연주로85길 29,2층 (역삼동,한국빌딩)	1,200,000	신규등록
3	(주)제이에스 미래산업	채훈	2017.06.07	서울170064	서초구 강남대로 381,610호 (서초동,두산베어스텔)	300,000	신규등록
4	(주)상지산업개발	남영윤	2017.06.08	서울170065	서초구 동산로19길 53, 3층(양재동)	300,000	신규등록
5	(주)신우지앤씨	신인식	2017.06.14	서울170066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11층 (여의도동,교보증권빌딩)	300,000	신규등록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6	(주)엘림피엠씨	이용주	2017.06.15	서울170067	동대문구 전농로 151, 4층(전농동)	300,000	신규등록
7	(주)코람코가치부가형 리테일제3호위탁관리 자부동산투자회사	(주)코람코 자산신탁	2017.06.16	서울170068	강남구 삼성로 511,1층 (삼성동,골든타워)	908,335	신규등록
8	에이치에스랜드(주)	윤성건	2017.06.20	서울170069	강남구 학동로 311, 타호비즈니스센터 113호(논현동, 미성빌딩)	300,000	신규등록
9	(주)어반브로스	강인오	2017.06.26	서울170070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302호(여의도동,하남빌딩)	500,000	신규등록
10	케이케이엘피베어 피에프브이(주)	정욱재	2017.06.27	서울170071	강남구 테헤란로 302,4층 (역삼동,피씨에이라이프타워)	10,000,000	신규등록
11	이지스아이스퀘어 피에프브이(주)	조경호	2017.06.27	서울170072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14층(여의도동)	20,000,000	신규등록
12	(주)건원건설	이방우	2017.06.27	서울170073	송파구 백제고분로 401,701호 (송파동,골재회관)	1,800,000	신규등록
13	다산건설 엔지니어링㈜	김성식	2017.06.30	서울120113	강남구 도산대로 207,4층 (신사동,성도빌딩)	전문인력부족	폐업
14	한국경우에이엠씨 (주)	김은호	2017.06.28	서울150019	마포구 마포대로 92, 에이동 7층 (도화동,효성해링턴스퀘어)	사업실적없음	폐업
15	(주)씨피엠씨	김천섭	2017.06.27	서울160065	강남구 테헤란로38길 43, 3층 (역삼동,청록빌딩)	기타	폐업
16	구일산업건설(주)	장욱	2017.06.13	서울090107	서초구 효령로 256(서초동)	사업실적없음	폐업
17	청호건설(주)	김호진	2017.06.05	서울150084	강동구 천호대로 1170(둔촌동)	사업종료	폐업
18	(주)퍼시픽이엔지	권민서	2017.06.26	서울150088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9층 (역삼동,허바허바빌딩)	500,000	전출 (부산)
19	(주)미르씨앤씨	최두영	2017.06.14	서울170006	송파구 위례성대로 38,3층301호 (방이동,해태그린피아빌라트)	300,000	전출 (강원도)
20	(주)덕현종합건설	유진숙, 이강남	2017.06.09	서울160083	서초구 논현로 79, 1009호 (양재동,원드스톤오피스텔)	500,000	전출 (인천)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99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11조(공고)에 의거 직인을 폐기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송정119안전센터) 폐지로 사용한 회계직인을 폐기
2. 직인 폐기 일자 : 2017. 6. 30.
3. 직인 폐기 내용
○ 폐기직인 : 2개

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인 폐기일자	비고
송정119 안전센터	광진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2017.06.30.	
	송정119안전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2017.06.3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0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 업체 청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별표4]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행정처분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의견진술의 기회)을 실시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및 기술인력), 소재불명, 자료 미제출 등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취소·영업정지 1년
4. 법적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동법시행령 제66조 [별표5]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5. 청문기간: 2017. 7. 28(금) ~ 7. 31(월), *토·일 제외
6. 청문장소: 재생협력과 회의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11층)
7. 청문주재자: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담당 주무관
이용수(2133-7197)
8. 진술자: 법인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9. 진술내용: 행정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 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
10. 참석자 지참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대리인 참석 시 대리인 선임통지서, 기타 소명자료
11. 등록취소 해당 청문대상 업체

번호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처분내용	사 유	적용법규
1	2006-02	(주)알파프로젝트	김대기	중랑구 봉우재로71길 18 용마프라자 405호(망우동)	등록취소	최근 3년내 2회이상 업무정지 합산12개월 초과	도정법 제73조 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66조[별표5] 2.개별기준 사목
2	2006-12	(주)창선이앤씨	정의철	용산구 청파로89길 34-5 서계제일빌딩1층102호(서계동)			
3	2007-25	티지에스(주)	김오숙	서대문구 증가로 259, 701호(북가좌동)			

12. 행정처분 前 의견제출 대상업체

번호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주 소	의견제출 기한 2017.7.6(목)		
					처분내용	사 유	적용법규
1	2013-03	두현이앤지(주)	이기엽	송파구 충민로 66, Y5111호(문정동)	업무정지1년	등록기준 미달(기술인 력) 및 기한내 자료 미제출	도정법 제73조 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66조[별표5]2.개별기준 나목 및 마목1항

13.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 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1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 ☎2133-71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통지서
☒ 대리인선임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연
도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08호

도시계획시설(금천소방서)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 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41호(2017.07.06.)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독산2동 1054-8외 15필지에 신설되는 금천소방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 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금천구 독산2동 1054-8외 1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2) 명 칭 :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 3,192㎡
- 내 용 : 공공청사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따로 붙임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중구 퇴계로 26길 52 5층)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따로 붙임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02-3706-1328) 및 금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7-1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 업 명 : 금천소방서 건립 공사
 - 서울시 금천구 독산2동 -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1054-8	대	1,196.6	1,196.6	윤종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길12, 113동901호(문래동3가, 문래자이아파트)		농협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	
2	1054-13	대	132.8	132.8	강동숙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길12, 113동901호(문래동3가, 문래자이아파트)					
3	1054-15	대	118.2	118.2	홍정숙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02길15					
4	1054-16	대	170.6	170.6	박찬호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02길11					
5	1054-17	도	1.4	1.4	권동진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덕고마을길 16 (정암리 508)					
6	1054-18	대	97.3	97.3	윤경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1번길66 용인수지벽산타운 2단지 208-503					
7	1054-19	대	109.7	109.7	전장진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02길 11-1					
8	1054-20	대	104.4	104.4	김영호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02길11-3					
9	1054-21	대	121.9	121.9	김무기 유정애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02길11-5	60.95\121.9 60.95\121.9	서울축산협 동조합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4	근저당	
10	1054-22	대	808.2	808.2	임병모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5, 14동 81호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11	1054-23	대	254.6	254.6	이영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221, 407동1004호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12	1054-30	도	8.4	8.4	김재열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857-1					
13	1054-32	도	32.8	32.8							
14	1054-33	도	23.3	23.3							
15	1054-34	도	11.8	11.8							

○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 업 명 : 금천소방서 건립 공사
 - 서울시 금천구 독산2동 -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건축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외 권리	
1	1054-8	근생시설	철근콘크리트, 세멘부력조	518.6	윤중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길12, 113동901호(문래동3가, 문래자이아파트)		농협	서울시 중구 동일로 120	근저당	9개 점포
2	1054-13	단독주택	연와조	65.52	강동숙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길12, 113동901호(문래동3가, 문래자이아파트)					
3	1054-15	단독주택	연와조	58.77	홍정숙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02길15					
4	1054-16	다세대	연와조	83.07	박찬호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02길11					
5	1054-18	단독주택	연와조, 세멘부력조	60.10	윤경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1번길 66 용인수지벽산타운 2단지 208-503					
6	1054-19	단독주택	조적조	53.8	전장진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02길 11-1					
7	1054-20	단독주택	연와조	49.44	김영호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02길11-3					
8	1054-21	단독주택	벽돌구조	58.72	김무기 유정애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02길11-5		서울축산 협동조합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4	근저당	
9	1054-22	근생시설	철근콘크리트조	331.24	임병모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5, 14동 81호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1\2 1\2				9개 점포
10	1054-23	근생시설	철근콘크리트조	116	이영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221, 407동1004호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2개 점포

○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0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2722	2017.6.9.	(주)큐브인 황순기 110111-4517326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1212호(가산동,대릉테크노타운8차)
2	202723	2017.6.13.	(주)앤커웨이브 최민석 110111-434133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로 67, 605호(여의도동, 신송빌딩)
3	202724	2017.6.16.	(주)코난테크놀로지 김영섭 110111-1682932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7, 5층,6층,7층(서초동, 대릉서초타워)
4	202725	2017.6.16.	(주)휴튼 김영상 134111-0093893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505호(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 에스텐)
5	202726	2017.6.20.	(주)지디네트웍스 김두수 110111-4606377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95길 48-4, 2층(잠원동)
6	202727	2017.6.23.	홈앤서비스(주) 유지창 110111-6420460	서울 중구 퇴계로 10, 16층(남대문로5가, 메트로타워)
7	202728	2017.6.23.	(주)씨씨티비네오텍 최영근 110111-4047513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806호(가산동, 대릉포스트타워5차)
8	202729	2017.6.23.	네오프랜드(주) 배용대 110111-2619471	서울 영등포구 63로 40, 612호(여의도동, 라이프오피스텔)
9	202730	2017.6.28.	(주)케이믹글로벌 강정구 110111-292656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909호(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 타워6차)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0	202731	2017.6.28.	(주)케이엔제이정보통신 김성태 110111-6407004	서울 서초구 방배로27길 30, 4층(방배동)
11	202732	2017.6.30.	대주정보통신(주) 박진숙 110111-6400735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6길 9-3, 4층(당산동4가)
12	202733	2017.6.30.	대신인포시스(주) 최혜경 110111-507231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3층 306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3차)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10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등록 내역

연번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17.6.13.	200270	(주)에스에이텍 박순영 110111-640962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603호,604호,605호(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동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02-2133-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12호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61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70가1605	김*목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7-05-06 11:03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70머1935	박*성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2017-05-13 15:56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2차로	"	"
3	75너9820	최*혁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7-05-13 17:34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4	75부3180	P**O K****I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7-05-30 17:01	올림픽대로 공랑방향 2차로	"	"
5	76노9024	이*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05-16 11:12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6	80거5112	황*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7-04-18 10:22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7	80거5312	이*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7-05-24 13:55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	"
8	80구1443	채*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05-22 17:45	강변북로 일산방향 1차로	"	"
9	80구2293	최*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05-28 12:04	송파대로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0	80구6511	전*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04-06 12:29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	"
11	80나1460	김*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04-13 15:19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1차로	"	"
12	80나1520	(주)태**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04-10 12:17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2차로	"	"
13	80나2909	김*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7-05-21 23:37	강변북로 서울방향 1차로	"	"
14	80너3514	김*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7-05-26 17:54	강변북로 서울방향 3차로	"	"
15	80너4020	황*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05-15 17:20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3차로	"	"
16	80너4030	주*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05-31 9:20	통일로 1차로	"	"
17	80누5864	(주)대**** 건설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7-05-22 14:26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1차로	"	"
18	80로6994	박*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7-05-28 10:39	강변북로 서울방향 5차로	"	"
19	80마3083	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7-05-29 13:53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1차로	"	"
20	80모4720	조*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7-05-30 12:00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	"
21	80버2245	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05-26 11:39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2차로	"	"
22	80버3074	박*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7-05-30 7:54	북부간선도로 3차로	"	"
23	80버6030	김*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7-04-08 13:37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	"	"
24	80보3021	김*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7-05-30 20:14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5차로	"	"
25	80서2311	박*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7-05-20 19:13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5차로	"	"
26	80여2491	최*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7-04-21 17:13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	"
27	80오1720	오*홍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04-14 10:31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8	80저4107	김*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7-05-31 7:30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3차로	"	"
29	80저5017	백*천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7-05-17 16:01	송파대로 4차로	"	"
30	81나8776	박*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7-05-06 14:41	경인고속도로 2차로	"	"
31	81부6064	이*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05-23 21:52	경인고속도로 2차로	"	"
32	82구2035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7-05-31 15:53	북부간선도로 2차로	"	"
33	82마1603	유*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7-05-28 7:54	북부간선도로 2차로	"	"
34	84부7366	최*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05-23 17:22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2차로	"	"
35	86마5072	채*석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7-05-27 18:05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	"
36	86주3074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04-03 11:43	송파대로 3차로		
37	88버9243	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7-05-27 15:19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3차로		
38	89나3051	박*하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7-05-25 9:56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5차로		
39	89마6541	박*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05-31 18:08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40	89버2149	김*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7-04-15 9:50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41	89조1811	김*홍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7-05-22 17:23	강변북로 일산방향 1차로		
42	90두5596	L*U Z****O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7-04-28 18:02	통일로 1차로		
43	90러5445	김*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7-05-29 16:56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2차로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44	90루3756	김*범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7-05-22 16:27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		
45	90부8305	유*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05-23 12:14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2차로		
46	90소4943	박*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05-28 8:39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47	90소7547	윤*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7-05-19 23:33	경인고속도로 2차로		
48	91머1386	정*봉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7-05-27 22:44	북부간선도로 2차로		
49	91저4889	정*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05-12 0:48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2차로		
50	92가6037	한*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7-05-22 9:00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51	93가7028	김*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7-05-08 16:45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5차로		
52	95가6145	선*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7-05-22 14:44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53	95거6128	김*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7-05-29 22:58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54	서울72바4654	(주)우***관 광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7-05-14 18:16	북부간선도로 2차로		
55	서울72바4662	(주)우***관 광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7-05-05 7:56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56	서울83머1515	(주)대**연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7-04-14 10:10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57	서울85구4864	(주)에**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05-23 17:15	강변북로 서울방향 4차로		
58	서울85노8558	신*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2017-05-31 12:05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3차로		
59	서울85누3091	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7-05-27 18:31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2차로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60	서울85다1356	강*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7-05-11 14:44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2차로		
61	서울85로4735	한*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7-05-30 6:27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7.7.28(금)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
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김효동(Tel 02-2133-3659, Fax 02-2133-1025)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161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대상 기간 : 2017.04.01. ~ 2017.06.30. 24개 단체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135	유니시드 통일 봉사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46-12 (성수동1가)	엄에스 더	2017-04- 03	○남북 청년들이 함께 서울역 노숙인 도시락 배달 사업 ○남북 사회통합 차원의 문화교류 네트워크 형성 및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탈북민 2세 자녀들이 대안학교 학 용품 및 의류 지원 사업 ○제3국 체 류중인 탈북민들에게 의류 및 생필품 지원 사업 ○통일한국 리더로서의 꿈 을 가진 탈북민 대학원생 장학금 지 원 사업	행정국 자치행정과
2134	태평양전쟁희 생자유족회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5-1 5층 (당주동)	이영웅	2017-04- 03	○유족 실태조사와 상호 협조교류 ○유해 발굴 봉안 추진 및 위령제 봉 행 ○불우유족 생활지원 및 손자녀 장학 사업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 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136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1(신 길동)	이호	2017-04- 04	○우리사회 민주적 감수성 촉진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사업 ○우리 사회 민주적 감수 성 촉진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등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2138	더체인지마인 드인성교육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길 69 (동선동1가, 창천프라자) B1층	이준기	2017-04- 06	○국내외 인성 마인드, 마인드 레크리 에이션 교육 ○초·중·고·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인성교육 참여 및 지원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 소 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마인드교육 ○ 본원을 후원하고자 하는 곳과의 업무 협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137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송길 25 (동송동) 유리빌딩 4층	이상엽	2017-04- 06	○매년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개최 ○장애인 미디어 교육 ○전국 장애 인권영화제 지원 ○전국 장애인인 권영화 배급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140	한국시낭송예 술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34-1 (대방동) 501호	이경화	2017-04- 10	○국민 1인1애송시 갖기 운동 ○전 문 시낭송가 배출 및 행복한 시낭송 회 개최 ○시낭송교육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139	아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8길 20 (삼성동) 지산빌딩 2층	김병주	2017-04- 10	○인권실태조사 ○여성아동 인권응 호 ○현장활동가 지원 ○분쟁재난재 해 피해자 지원 ○분쟁재난재해 피 해마을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단체 와 활동가 교류 및 연대 사업 등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141	키움상담봉사 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5-15 (창동) 508호	김미라	2017-04- 11	○상담봉사활동 이론 및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상담봉사자 및 지도 자, 사회, 조직내·외, 안전, 재난갈 등 관련 상담교육사업 ○상담봉사활 동을 지지하는 네트워크 운용 ○상 담봉사활동 민·관 파트너십 인프라 모형개발 및 컨설팅 ○상담봉사활동 관련 출판 및 홍보사업 ○상담봉사 활동 관련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교류 사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144	국제엔젤봉사 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봉천동, 관악센츄리티워) 1314호	최정범	2017-04- 13	○국내외 나눔의 실천을 위한사업 ○문화 교류를 위한 교육출판사업 ○이웃사랑과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 봉사 ○생명문화의 실현을 위한 공동 체사업 ○국제 시니어가요제 및 재 미있는 가요제 개최 ○구성원들의 봉사활동을 위한 소모임 활동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142	서울시민정원 사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40 (상암동, 상암근린상가) 301호	정춘미	2017-04- 14	○도시녹화, 정원조성, 공원조성 및 활성화 사업 등에 관련된 협력이 지 원 및 봉사 ○회원의 역량강화 및 실력향상을 위한 회원교육과 연수, 친 목활동 ○도시정원, 실내정원, 조경 의 기술 및 정보 나눔을 위한 대외적 홍보, 교육, 마케팅 ○시민의 여가활 동 및 정서함양을 위한 답사,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푸른도시국 조경과
2143	흡연제로네트 워크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70길 27 (효창동) 3층	황선옥	2017-04- 16	○금연 및 담배 관련 조사연구 및 정 책개발 ○흡연 및 비흡연 관련 교육, 강연, 캠페인, 자료발간 등 사업 ○ 공익목적의 용역, 수익사업과 국내, 국제단체와 협력교류 등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145	한국청소년동아리서울연맹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1동 507호	류형선	2017-04-21	○청소년 및 청년동아리 활동 육성 및 지원사업 ○청소년 및 청년 동아리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 사업 ○청소년 및 청년 동아리 관련 홍보 및 출판·보급 사업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2146	사단법인 스쿨임팩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816 (시흥동) 501동204호	라영환	2017-04-24	○국내외 지역사회 리더쉽 훈련센터 운영사업 등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148	자원봉사 국제협력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7길 14 (삼성동) 402호	윤정경	2017-05-02	○시민교육 및 공익컨설팅 ○국내외 비영리 공익활동 연계 및 운영 ○비영리단체 해외연수 운영 ○비영리 정보 및 콘텐츠 개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147	봉사단체 사계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5길 41 (방배동) 2층	서정학	2017-05-10	○새터민(탈북자)돌봄 및 후원사업 ○장애인 후원사업 ○ 양로(불우이웃) 후원사업 ○군복무장병 격려 사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149	인성다레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8길91 (망우동)	김용춘	2017-05-16	○대한민국 다도예문화 계승발전 활동 ○정서심리안정과 건강한 인성형성 지원 활동 ○사회복지 기부모금 행사 후원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150	코리아코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7길 51 (역삼동) 543호	조주희	2017-05-25	○항일무명열사 발굴 및 홍보사업 ○수화봉사 교육 및 홍보 사업 ○한국 및 세계 서적 번역, 출판 사업 등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151	정치교육연구 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434호	김희민	2017-05-26	○"민주주의와 리더십"시민교육프로그램 진행 ○시민교육을 위한 캠프 개최 ○정치,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시 특강 및 토론회 개최 등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2152	스포츠 인성교육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방이동,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동 229호	김진한	2017-06-02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과 장애 학생을 위한 스포츠 나눔 교육봉사 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부모 와 자녀가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함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나눔 교육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현직 교사를 위한 연수 및 학술활동 사업 ○아시아 후진국 지역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 ○스포츠를 통한 인성함양 캠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사업 등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154	장애여성자립 생활센터 파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 (신정동, 남부빌딩) 지층 107호	박지주	2017-06- 07	○동료상담 ○체험홈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ILP)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장애여성 엄마의 생활향상운동 및 정책제시 ○장애인 가족의 사회참여의 활성화 및 질 향 상 운동 ○장애여성 엄마의 독특한 생활문화연구 ○장애여성 역량강화 사업 ○탈시설 지원 및 주거 사업 ○활동보조 파견 및 관련 사업 ○이 동지원 사업 ○장비의 유지보수와 수리알선 사업 ○자립생활에 필요한 조사, 정책 제도 연구 및 모니터링 사 업 등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153	대한무예태권 도연맹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54 (암사동) 201호	김정기	2017-06- 08	○세계무예체육 국제교류 협력 ○폭 력예방활동 설치운영 및 호신술 강좌 ○세계무예체육학문의 연구, 분석 및 신문, 책자 발간 ○지도자, 시범단 해외파견 및 무예원 운영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급 ○세계무예체육체험장 운영 및 행사유치 ○세계무예체육 교육 및 승단 심사 각종 자격증 부여 ○세계무예 경기종목 및 생활체육종 목 개발 육성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과 장애학생을 위한 스포츠 나 눔 교육봉사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155	그림책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9-3 (청운동) 404호	한성옥	2017-06- 15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 인 식개선 사업 ○전 연령이 함께 즐기 는 그림책 향유문화 구축을 위한 사 업 ○어린이, 학생 대상 그림책 만들 기 대회 개최 ○소외계층 어린이들 을 위한 문화지원 재능기부 사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156	국제문화예술 교류진흥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68 (와룡동) 301호	서정태	2017-06- 27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문화진흥을 위한 인재발굴 및 인적 인프라 구축 사업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육성사업 ○남북문화교류,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지원하고 보존시 켜가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157	착한 엄마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길 60-2 (금호동2가) 1층 좌측	박순락	2017-06- 30	○다문화가정 여성대상 취업 및 창업 을 위한 교육후원 사업 ○다문화 가 정 사회복지활동 및 신규후원을 위한 기부금 모금행사와 후원사업 등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 관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161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장

대상 기간 : 2017.04.01. ~ 2017.06.30. 13개 단체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부서
61	서울YMCA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9 (종로2가)	이석하	2017-05-25	대표자 변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915	(사)한일미래포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2325호 (신문로1가)	추규호	2017-05-15	대표자 변경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1078	동자동사랑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91-5 (동자동)1층	김호태	2017-04-17	대표자 변경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1220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7길 14 8층(구로동)	이동수	2017-05-24	주된사무소 변경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290	솔이자연사랑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3길 52-12 (가락동, 현대빌라) 307호	임홍순	2017-05-18	주된사무소 변경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1426	마더하우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불광천길 278 (북가좌동) 201호	최영아	2017-04-28	주된사무소 변경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1617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4길27-17, 3층(장충동2가, 우리함께빌딩)	류상태	2017-04-14	대표자 변경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1654	구로민중의집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19길 12, 3층 (오류동, 은하수빌딩) 3층	박지영	2017-06-09	대표자 변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1670	초록바람 (구, 수영산생태문화공동체)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00 (둔촌동) 4층	문영란	2017-05-18	단체명칭 변경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1746	레인메이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14길38, 202호(신정동, 서강GS아파트) 상가 202호	정백	2017-05-25	대표자 변경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부서
2030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7길 10 (봉천동) 지층	신석철	2017-04-25	주된사무소 변경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101	서초나비마을넷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2길 17-19 (방배동) 지층 B02호	오영숙	2017-06-27	대표자 및 주된사무소 변경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111	통일경제포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9길 24-1 (영등포동, 제이엠빌딩) 301호	최승제	2017-06-19	대표자 변경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16호

**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및 장안동 일대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장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장한평(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232-6일원	120,7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5호 (2007.08.16.)	성동구
기정	장한평(동대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장안동 415,436번지 일대	174,38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53호 (2007.10.11.)	동대문구
변경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장안동 일원	523,805	-	성동구, 동대문구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내용	지정사유
변경	장한평(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장한평(동대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장안동 일원 - 면적: 523,805㎡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28호, 2016.08.04.)”을 반영하여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재생을 지원하는 공간관리계획 수립(2개 자치구 통합 및 확장)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구역명칭 변경 (장한평→장안평)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523,805	—	523,80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7,369	—	17,369	3.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0,613	—	40,613	7.8	
제2종일반주거지역	67,838	—	67,838	13.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4,054	감)3,915	110,139	21.0	
준주거지역	92,048	증)3,915	95,963	18.3	
일반상업지역	119,478	—	119,478	22.8	
유통상업지역	72,405	—	72,405	13.8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용답동 231일대 특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231번지 일대	—	증)6,398.7	6,398.7	
신설	미래자동차 혁신센터부지 특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248-14번지 일대	—	증)5,790	5,790	
신설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	증)17,914	17,914	

※ 장안평 일대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3개소 지정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생략(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라.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 울 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02-2133-4641)
 성 동 구 도시계획과(☎02-2286-5560)
 동대문구 도시계획과(☎02-2127-4948)

마.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도서로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68호(2014.2.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8호(2015.5.21.)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제2014-210호(2014.6.5.)로 최초 실시계획 고시되어 제2015-276호(2015.9.17.) 및 제2015-370호(2015.11.26.), 제2016-143호(2016.5.19.), 제2016-238호(2016.8.11.)로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건설공사 (금천구 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 개설)”에 대하여 추가 편입되는 “시흥동 963, 963-34” 도로용지 수용재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준공예정일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3.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시흥동 962-16~시흥동 963-3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건설공사 (시흥3동 남북간연결도로 개설)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 12.2m ~ 25.3m, 연장 182m
- 도로개설 폭 4.0m, 연장 31m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무교동)
 마. 사업의 기간

기정	변경
착수일로부터 2017.5.19.일 까지	착수일로부터 2018.3.31.일까지

- 바. 변경사유 : 시흥동 963, 963-34에 대한 수용재결절차를 거치기 위한 당초 준공예정일 변경(2017.5.19. → 2018.3.31)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도로과(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②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2층)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도 협의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3708-86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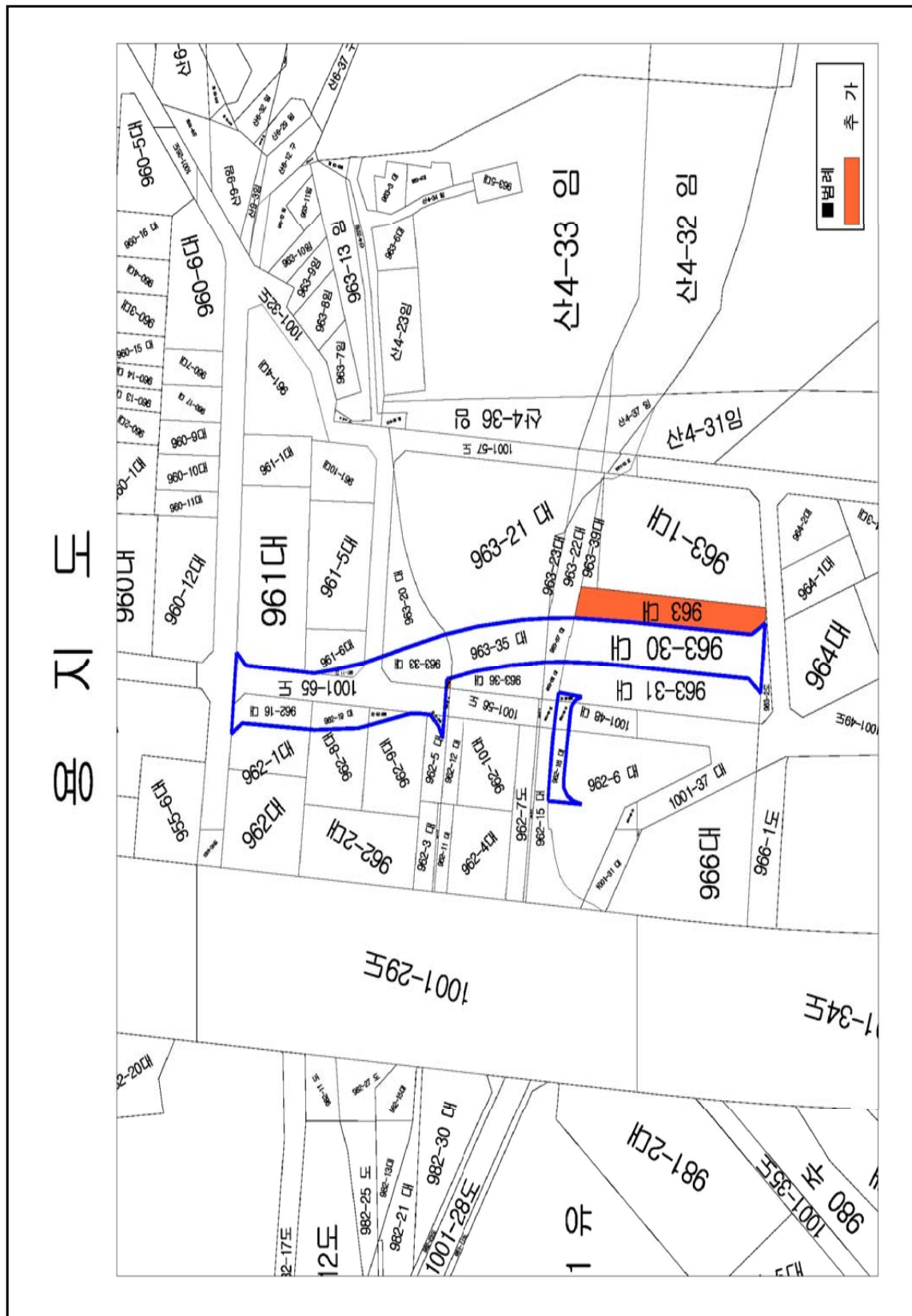
토 지 조 서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사업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 개설)

일련 번호	동명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13	변경사항 없음											
14	시흥동	963	대	535.4	535.4	강병철 외 209	서울 동작구 상도로47아길 50 (상도동)					
15	시흥동	963-34	대	4.1	4.1	강병철 209	서울 동작구 상도로47아길 50 (상도동)					

물 건 조 서 (변경없음)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서울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7-13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협력사업비 공고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2016-28호) 3.-[3]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협력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출연기관(금고은행) : 농협은행(주)
2. 출연기간(약정기간) : 2017.1.1. ~ 2020.12.31.(4년)
3. 협력사업비 : 금28억원
-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금 50억원은 별도(사용량에 따라 증감됨)
4. 출연방법 : 4년간 매년 7억원을 2월말까지 현금으로 출연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7-14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협력사업비 예산편성내역 공고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2016-28호) 3.-[3]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2017년도 금고 협력사업비 : 금700,000,000원
-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금 1,498,048,000원은 별도
2.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약정 내용			2017 예산 편성 결과			비 고
사 업 명	지원대상	금액 (A) (2017~2020)	본예산 (B)	추경예산 (C)	합계 (D)= (B)+(C)	
학교운동부 동계강화훈련비	서울시 관내학교	500	-	500	500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단지원	전국출전 선수단	30	-	30	30	

약정 내용			2017 예산 편성 결과			비 고
사 업 명	지원대상	금액 (A) (2017~2020)	본예산 (B)	추경예산 (C)	합계 (D)= (B)+(C)	
학술교류관련 장학금지원	상록과학 학술재단	30	-	30	30	
미래학교 기반조성	서울시 학교	150	150	-	150	
마을공동체 운영	서울시 학교	100	100	-	100	
정책·소통 지원	교육청, 각기관	100	100	-	100	
갈등 치유 지원	지역사회, 교육청	50	50	-	50	
명사초청 대화	교육청	30	30	-	30	
각종 행사 지원	교육청, 학교	250	250	-	250	
지방의회와의 협업	지방의회, 교육청	50	50	-	50	
학교안전공제회지원	학교안전공제회	60	60	-	60	
도심 속 농촌학교 운영	서울시 학교	50	50	-	50	
도농교육 교류사업	서울시 학교	100	-	100	100	
지구촌마을 탐험대회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	100	100	-	100	
선진 기관(농업 등) 방문	교직원	250	150	100	250	
찾아가는 테마연수	교직원	50	50	-	50	
사랑의 쌀 나눔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	50	0	50	50	
합 계		1,950	1,140	810	1,950	

※ 총 협력사업 지원금(2,198,048천원)중 세출예산 편성액(1,950,000천원)과의 차액(248,048천원)은 전체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편성됨.

구 고 시

◆ 용산구고시 제2017-8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42호(2014.4.17.)로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 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7-533호(2017.6.22.)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2호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0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99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2) 명 칭 : 용산지구단위계획 공공공지 조성공사

다. 사업 규모 : 공공공지 조성 20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주)서부티엔디
- 2)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20길 83 (한강로3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개월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1	한강로3가	40-992	대	200	200	(주)서부티엔디	용산구 청파로20길 83 (한강로3가)	-	

사. 게재방법 : 시보게재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2199-7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고시 제2017-89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정정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7.)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561호(1987.8.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결정으로 공원결정 및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55호(2004.8.10.)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231호(2017.3.2.)로 도시계획시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7-45(2017.3.30.)호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의거 토지조서를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푸른도시과(☎901-69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 업 시 행 지: 강북구 미아동 산108-5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017년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다. 사업의 내용: 공원 조성(토지보상)

라. 규 모: 토지보상 4,529㎡

마. 사업의 시행자: 강북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년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별첨 조서

※ 정정사유: 토지조서 지분 착오

아.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조서

자. 열 략 장 소: 강북구청 푸른도시과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푸른도시과(☎901-6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2017년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변경전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주 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미아동 산108-54	임야	4,529	4,529	1필지							
					강남구 서초동 20-1 삼익아파트 1-307	김순자						
					서초구 서초동 20-1 삼익아파트 1-307	김본기						
					동대문구 장안동 322-1 삼성연립 나-205	전병희						
					동대문구 장안동 322-1 삼성연립 나-205	박정준						
					서초구 원지동 402-1	김창례						
					서대문구 연희동 351-1 미도빌라 3-203	이숙현						
					성북구 석관동 340-393	남궁춘화						
					송파구 풍납동 326-4 태양연립 다-2	양문복						
					강남구 일원동 688 공동주택아파트 906-502	이삼량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미아동 산108-54	임야	4,529	4,529	4529분의 231.39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 진흥아파트 127-1205	백임순					
					4529분의 108.16	종로구 명륜4가 127-21	채규성					
					4529분의 99.17	도봉구 창4동 주공아파트 1902-702	남궁유나					
					4529분의 99.14	강남구 삼성동 38-9 501호	김진영					
					4529분의 105.78	성북구 정릉동 239 정릉풍림아이원아파트 116-1402	윤숙자					
					4529분의 125.62	중랑구 양원역로12길37(망우동)	최성자					
					4529분의 214.94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5 선경아파트 103-205	이원영					
					4529분의 107.9	송파구 오금동 2 대림아파트 1-404	강정민					
					4529분의 33.06	영등포구 신길동 339 신미아파트 라-504	우종인	2016.4.18압류(38세금정수과-9328)	서울특별시	압류		
					4529분의 185.11	원주시 개운동 581-1 휴먼시아원주개운1단지 102-201	엄상욱	2012.7.17압류(주치문화과-15924)	영등포구	압류		
					4529분의 105.79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48, 506-1001(강변마을 월드메르디앙)	최지연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지번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미아동 산108-54	임야	4,529	4,529	4529본의 109.09		구로구 시흥동 911-16	우정석				
					4529본의 216.06		구리시 교문동 220-4	장정숙				
					4529본의 115.7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 528-207	백재영				
					4529본의 323.96		강남구 대치동 902 동아아파트 가-506	정우택				
					4529본의 215.8		도봉구 쌍문동 525	박명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4	(주)동아상 호신용금고	근저당	공동담보
									2007.5.18압류(세무과-11226)	서울특별시 강북구	압류	
									2006.9.28가압류 결정(2006카단6035)	의정부농업 협동조합	압류	
					4529본의 96		중랑구 면목동 181-20	신철성				
				4529본의 115.7		광명시 너부대로45번안길1, 비01호(광명동 신진빌라)	박신현					

변경후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역	
1	미아동 산108-54	임야	4,529	4,529							
					4529분의 323.96	강남구 서초동 20-1 삼익아파트 1-307	김순자				
					4529분의 323.96	서초구 서초동 20-1 삼익아파트 1-307	김본기				
					22645분의 624.78	동대문구 장안동 322-1 삼성연립 나-205	전병희				
					22645분의 416.52	동대문구 장안동 322-1 삼성연립 나-205	박정준				
					4529분의 115.7	서초구 원지동 402-1	김창례				
					4529분의 323.96	서대문구 연희동 351-1 미도빌라 3-203	이숙현				
					4529분의 99.17	성북구 석관동 340-383	남궁춘화				
					4529분의 109.09	송파구 풍납동 326-4 태양연립 다-2	양은복				
					4529분의 109.09	강남구 일원동 688 공무원아파트 906-502	이심랑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미아동 산108-54	임야	4,529	4,529		종로구 명륜4가 127-21	채규성					
					4529분의 108.16		도봉구 청4동 주공아파트 1902-702	남궁유나				
					4529분의 99.17		강남구 삼성동 38-9 501호	김진영				
					4529분의 99.14		성북구 정릉동 239 정릉풍림아파트 116-1402	윤숙자				
					4529분의 105.78		종랑구 양원역로12길37(망우동)	최성자				
					4529분의 125.62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5 선경아파트 103-205	이원영				
					4529분의 214.94		송파구 오금동 2 대림아파트 1-404	강정민				
					4529분의 107.9		영등포구 신길동 339 신미아파트 라-504	우종인	2016.4.18입류 (38세금정수과-9328)	서울특별시	입류	
					4529분의 33.06		원주시 개운동 581-1 휴먼시아원주개운1단지 102-201	임상욱	2012.7.17입류 (주차문화과-15924)	영등포구	입류	
					4529분의 185.11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48, 506-1001(강변마을 월드메르디앙)	최지연				
					4529분의 105.79		구로구 시흥동 911-16	우정석				
					4529분의 109.09		구리시 교문동 220-4	장정숙				
					4529분의 216.06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 528-207	백재영				
		4529분의 115.7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필지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1	미아동 산108-54	임야	4,529	4,529	4529분의 323.96		강남구 대치동 902 동아아파트 가-506	정우택					
					4529분의 215.8		도봉구 쌍문동 525	박명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4	(주)동아상 호신용금고		근저당	공동담보
					4529분의 96		종량구 면목동 181-20	신철성	2007.5.18압류(세무과-11226) 2006.9.28가압류 결정(2006카단603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부농업 협동조합	임류		
					4529분의 115.7		광명시 너부대로45번안길1, 비01호(광명동 신진빌라)	박신현					

◆ 마포구고시 제2017-10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1994-139(1994.04.28.)호로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4-116(2004.11.10.)호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3-3(2013.01.03.)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 인가,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4-82(2014.05.08.)호 및 마포구 고시 제2015-151(2015.08.27.)호, 마포구 고시 제2016-117(2016.9.8.)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마포구 토정로 56(당인동 1번지 외 68필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마포구 토정로 56(당인동 1번지외 68필지)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2) 명칭 : 서울복합화력 1·2호기 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일부변경)

1) 면적 : 118,779㎡(변경없음)

2) 규모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물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99,621.40㎡	건축물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104,029.60㎡	연면적 증 4,408.20㎡ (증 4.42%)
발전설비 800MW급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 보일러)	발전설비 800MW급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 보일러)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상호) :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정창길

2)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보령북로 160

마.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변 경	비 고
2013.01.03. ~ 2017.12.31.	2013.01.03. ~ 2018.11.30.	산업통산자원부의 공사계획 변경인가(2016.10.24.) 반영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변경없음)

- 마포구 당인동 1번지 외 68필지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 구로구고시 제2017-11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6-1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도로)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구로구청장

가. 결정취지

- 도시가스 공급원이 과거 나프타 분해 및 LPG에서 수입천연가스로 변화됨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사업 허가” 부지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소유자의 제안으로 한국가스공사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과 한국가스공사 시설로부터 안전거리(30m) 및 고척정압기 점유부분을 남기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제) 하고자 하며,
- 고척동 66-12번지 일대에 15m계획도로가 있으나 장기 미집행 상태로 당분간 집행이 어려워 소유자가 인근 주민의 구일역 접근성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체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제안되어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도로)을 변경결정 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가스공급 설비	-	고척동 66-12일대	10,148	감)8,682	1,466	서울특별시 고시 제652호 (84.11.16)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	3.0	특수 도로	125.0	고척동 66-31	고척동 66-30	보행자 전용도로	-	구로구고시 제2015-39호 2015.3.12	
변경	소로	3	1	6.0	특수 도로	198.0	고척동 66-31	고척동 66-30	보행자 전용도로	-	구로구고시 제2015-39호 2015.3.12	폭원확폭 및 도로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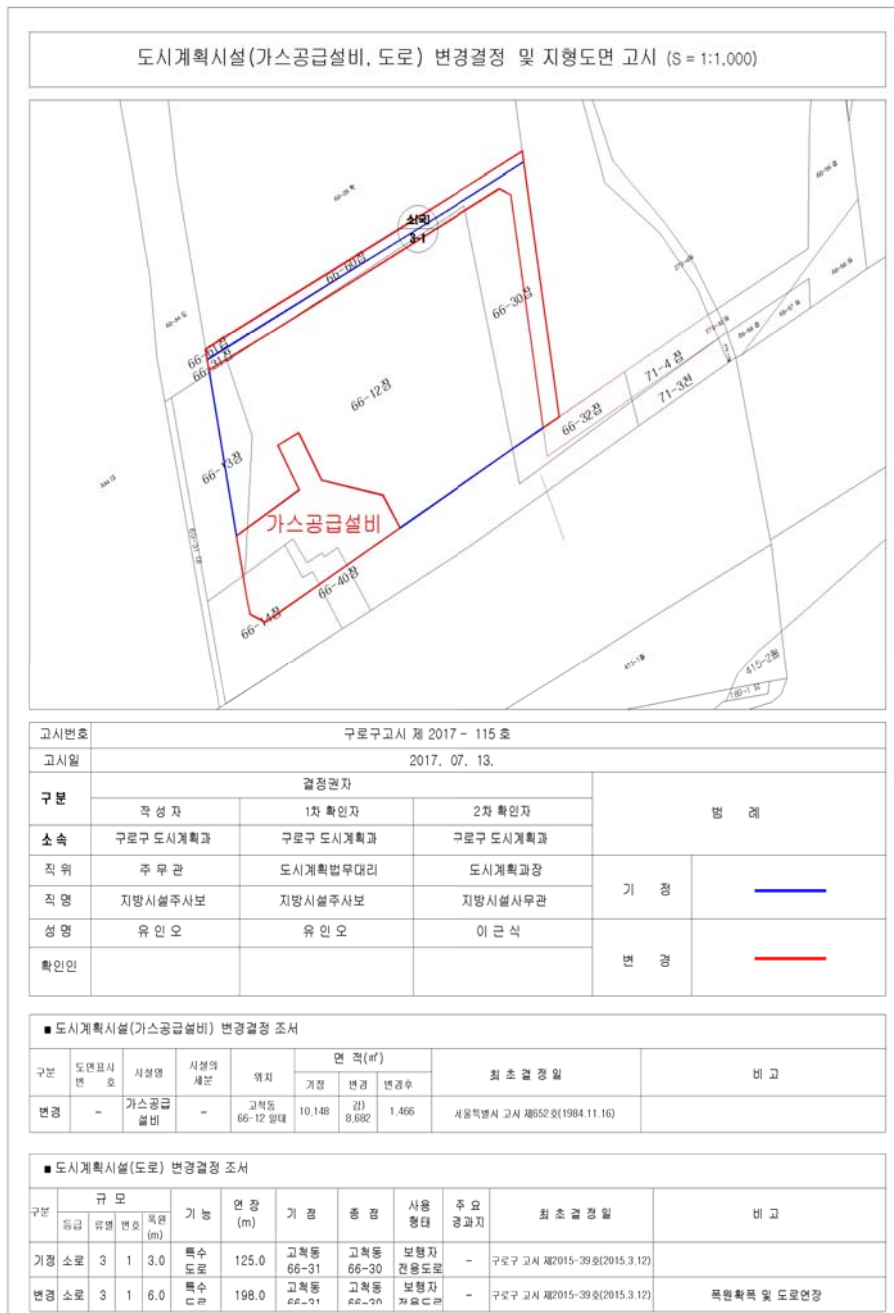
다.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9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17-55호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3호(2009.2.5)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3호(2011.5.6.)로 정비구역지정 변경고시 및 동작구 고시 제2015-44(2015.6.18.)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7호(2017.7.6.)로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사당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동 작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33,693.8	-	33,693.8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3,693.8	-	33,693.8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3,693.8	-	33,693.8	100.0	-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합 계			33,693.8	－	33,693.8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9,636.0	－	9,636.0	28.6		
	도 로	7,946.5	－	7,946.5	23.6		
	공 원	1,689.5	－	1,689.5	5.0	소공원	
	체육시설 (수영장)	1,446.05 (2,540.34)	감117.96 (감207.23)	1,328.09 (2,333.11)	－	소공원 지하에 설치 환산부지면적(연면적)	
획 지(공동주택용지)			24,057.8	－	24,057.8	71.4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	6~11	국지 도로	690	사당동 150-5	사당동 176-50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15	국지 도로	74	사당동 170-25	사당동 170-3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	8~25	집산도 로	1,040	사당동 323-1	사당동 22-21	일반 도로	-	-	구역내폭원확장 (폭10~20m→ 25m, 연장= 363m)
기정	대로	3		22~27	국지 도로	192	사당동 164-641	사당동 162-61	일반 도로	-	-	-

나) 공원 결정조서 (변경있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원	소공원	사당동 164-1 일원	1,689.5	-	1,689.5	· 구역면적(33,693.8㎡)의 5% · 계획세대수(668세대)*2㎡ =1,336㎡
변경	-	공원	소공원	사당동 164-1 일원	1,689.5	-	1,689.5	소공원지하에 설치 · 부지환산면적 : 1,328.09㎡ · 체육시설(수영장): 2,333.11㎡
			체육시설 (수영장)		1,446.05 (2,540.34)	감117.96 (감207.23)	1,328.09 (2,333.11)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법 정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관리사무소	획지①	40.9이상	190.07	-	190.07	지하
	경로당		90.90이상	122.48	-	122.48	지상
	어린이집		171.60이상	187.38	-	187.38	지상
	주민공동시설		53.59이상	7,435.04	-	7,435.04	지하
	작은도서관		33이상	135.03	-	135.03	지하
	주민운동시설		426이상	589.62	-	589.62	지상
	근린생활시설		4,008이하	1,412.24	-	1,412.24	지상/지하
	어린이놀이터		868이상	946.15	-	946.15	지상(3개소)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사당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33,693.8	사당동 167-19번 지일대	181	-	-	181	-	신축:8동 주거동:6동 근생시설:2동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있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건축물의높이(m)/ 최고층수/ 평균층수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법정 상한																				
기정	사당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33,693.8	사당동 167-19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 설	40 이하	249.99	299	25층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table><tr><td>구분</td><td>세대수 (소형주택)</td><td>비율(%)</td><td>비고</td></tr><tr><td>계</td><td>668 (70)</td><td>100.00</td><td></td></tr><tr><td>60㎡ 이하</td><td>158 (70)</td><td>23.65</td><td></td></tr><tr><td>60~85㎡이하</td><td>486</td><td>72.76</td><td></td></tr><tr><td>85㎡ 초과</td><td>24</td><td>3.59</td><td></td></tr></table>						구분	세대수 (소형주택)	비율(%)	비고	계	668 (70)	100.00		60㎡ 이하	158 (70)	23.65		60~85㎡이하	486	72.76		85㎡ 초과	24	3.59			
구분			세대수 (소형주택)	비율(%)	비고																						
계			668 (70)	100.00																							
60㎡ 이하			158 (70)	23.65																							
60~85㎡이하			486	72.76																							
85㎡ 초과	24	3.59																									
●건설비율(소형주택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96.41%																											
변경	●주택공급계획																										
	<table><tr><td>구분</td><td>세대수 (소형주택)</td><td>비율(%)</td><td>비고</td></tr><tr><td>계</td><td>668 (58)</td><td>100.00</td><td></td></tr><tr><td>60㎡ 이하</td><td>158 (58)</td><td>23.65</td><td></td></tr><tr><td>60~85㎡이하</td><td>486</td><td>72.76</td><td></td></tr><tr><td>85㎡ 초과</td><td>24</td><td>3.59</td><td></td></tr></table>						구분	세대수 (소형주택)	비율(%)	비고	계	668 (58)	100.00		60㎡ 이하	158 (58)	23.65		60~85㎡이하	486	72.76		85㎡ 초과	24	3.59		
	구분	세대수 (소형주택)	비율(%)	비고																							
	계	668 (58)	100.00																								
	60㎡ 이하	158 (58)	23.65																								
	60~85㎡이하	486	72.76																								
85㎡ 초과	24	3.59																									
●건설비율(소형주택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96.41%																											
기정	건축물 높이완화에 대한 계획		●건축법시행령 제 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일조 확보 관련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소공원에 인접한 아파트) ●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등 업무처리지침 규정에 의해 수평 거리의 1.8배까지 사선 제한 완화																								

다)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변경없음)

구분		산정내용		
기정	토지이용 계획	계(구역면적)	획지	계획 정비기반 시설
		33,693.8㎡	24,057.8㎡	9,636㎡(무상양여 토지 3,132㎡ 포함)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9,636\text{㎡} - 3,132\text{㎡} = 6,504\text{㎡}$ ※ 무상양도면적 = 3,132㎡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49.99% 이하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times (1+1.3 \times \alpha)$ $= 190\% \times (1+1.3 \times 0.2704) = 256.78\%$ ※ 계획(기준)용적률 = 190%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및 무상양여 국·공유지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 6,504\text{㎡} / 24,057.8\text{㎡} = 0.2704$		
법적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99%		

5)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구분	건립위치	구역면적	획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기정	정비구역 내	33,693.8㎡	24,057.8㎡	5,943.7㎡	70세대	59.98㎡	
변경	정비구역 내	33,693.8㎡	24,057.8㎡	4,687.45㎡	58세대	59.98㎡	

■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변경있음)

구분		적용산식		비고
기정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법적상한 용적률	299%	
		정비계획 용적률	249.99%	
	증가된 용적률 50%	$(\text{법적상한용적률} - \text{정비계획용적률}) \times 50\% = 24.5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
	연면적 환산	• 증가된 용적률의 50% $\times$ 순사업부지 면적 $= 24.51\% \times 24,057.8\text{㎡} = 5,896.57\text{㎡}$		
변경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법적상한 용적률	288.32%	
		정비계획 용적률	249.99%	
	증가된 용적률 50%	$(\text{법적상한용적률} - \text{정비계획용적률}) \times 50\% = 19.16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
	연면적 환산	• 증가된 용적률의 50% $\times$ 순사업부지 면적 $= 19.165\% \times 24,057.8\text{㎡} = 4,610.67\text{㎡}$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연면적(공급면적)	• 연면적(공급면적) : 5,943.7㎡ • 세대수 : 70세대 - 전용 59.98㎡ - 공급 59A(35세대)84.21㎡/59B(35세대)85.61㎡		기준 이상 확보
		• 연면적(공급면적) : 4,687.45㎡ • 세대수 : 58세대 - 전용 59.98㎡ - 공급 59A(35세대)84.21㎡/59B(23세대)85.61㎡		기준 이상 확보

6)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있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정	주택재건축 사업에 의한 관리처분 방법에 의한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473세대 계획:668세대 (소형주택70세대포함) 증) 195세대	
변경	주택재건축 사업에 의한 관리처분 방법에 의한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473세대 계획:668세대 (소형주택58세대포함) 증) 195세대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 참조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청 주택과(☎ 02-820-138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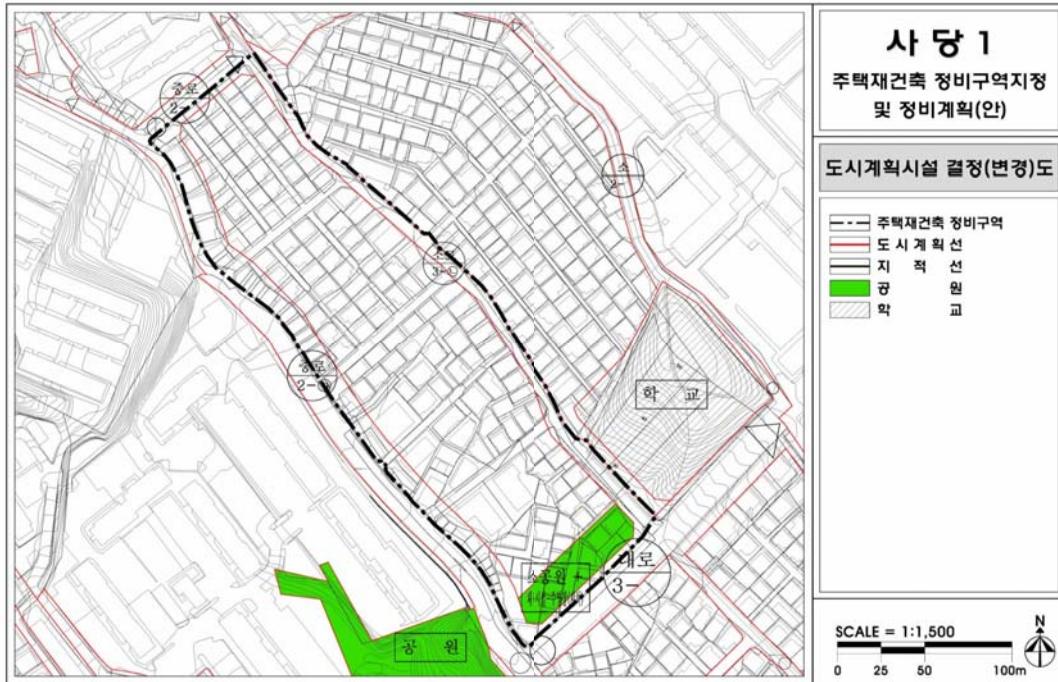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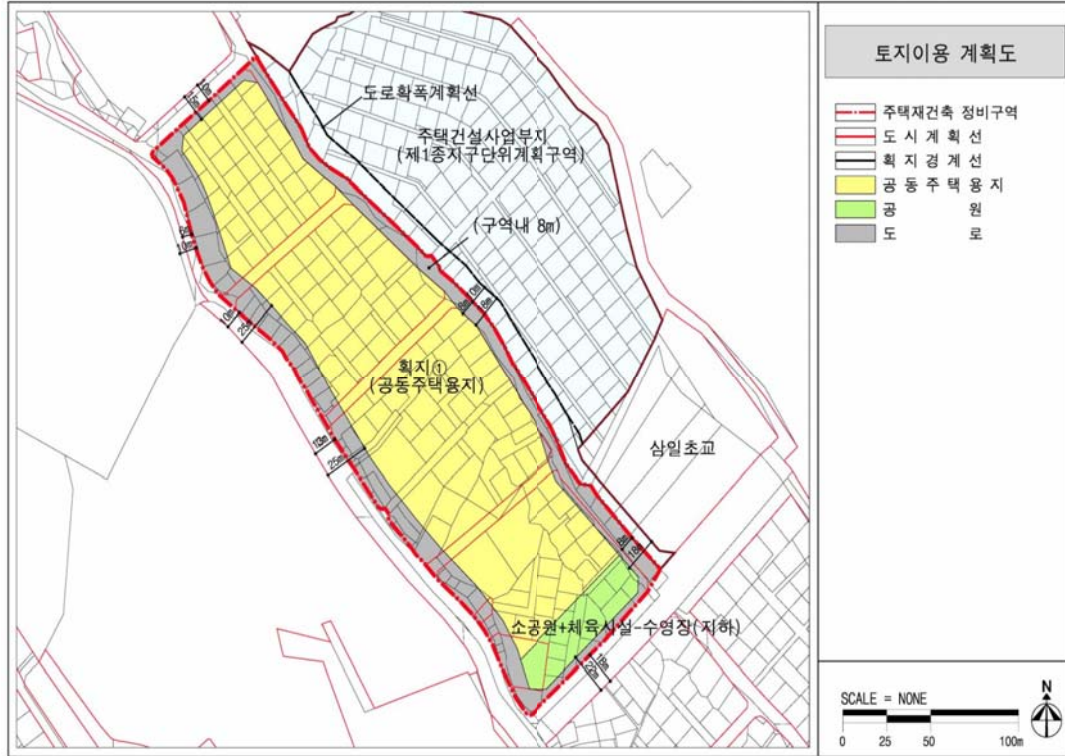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현황도(변경없음)



3)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 서초구고시 제2017-78호

도시계획시설(말죽거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16호(2005.07.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말죽거리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13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57-1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내용
 가) 면적 : 2,290㎡
 나) 내용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 나. 열람기간 :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 다. 열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
-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17,380	2,290							
1	양재동 산57-1	임야	17,380	2,29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14 1층(양재동, 옥천빌딩)	주식회사 호주건설					

◆ 강남구고시 제2017-99호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정비구역(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6호(2013.10.4.)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6-69호(2016.5.26.)로 변경(경미한 사항)지정된 강남구 대치동 65번지 대치쌍용2차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강남구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남구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5번지 일대	24,416.0	증)68.4	24,484.4	예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24,416.0	증)68.4	24,484.4	100.0	예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용도지역 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416.0	증)68.4	24,484.40	100.0	
공동주택용지	획 지1	22,290.0	증)61.8	22,351.8	91.3	
기부채납용지	소 계	2,126.0	증)6.6	2,132.6	8.7	
	도 로	856.0	증)3.4	859.4	3.5	
	공 원	1,270.0	증)3.2	1,273.2	5.2	

3)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3	70~73	주간선 도로	3,630 (55)	청담동 (영동교남단)	광장86호	일반 도로	-	'71.4.7 (건고 198)	영동대로
기정	대로	3	70	25~28	-	1,875 (56)	청담동 중로1-136	대치동 대로1-22	-	-	'74.9.27 (건고1974-324)	유수지주차장 진입도로
기정	중로	2	(1)	15~18	집산 도로	264 (264)	광로3-13	대로3-70	일반 도로	-	'13.10.4 (서고 2013-326)	

※ 연장항목의 () 안은 대상지 연접부 수치임

나) 공원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공원	소공원	대치동 65번지	1,270.0	증)3.2	1,273.2	'13.10.4 (서고 2013-326)	예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24,416.0	대치동 65번지 일대	4	-	-	4	-	-
변경	"	24,484.4	"	"	-	-	"	-	-

나)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층/m)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정상한																																																																														
기정	대치쌍용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4,416.0	획지1	22,290.0	대치동 65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0 이하	299.82 이하	최고35층 /110m이하	-																																																																												
변경	"	24,484.4	"	22,351.8	"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기정 • 주택공급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국토부고시 제4-3)적용 <table><tr><th>구 분</th><th>세 대 수</th><th>비 율(%)</th><th>비 고</th></tr><tr><td>합 계</td><td>566</td><td>100.0</td><td></td></tr><tr><td>60㎡이하</td><td>110</td><td>19.4</td><td>임대70세대포함</td></tr><tr><td>60~85㎡이하</td><td>236</td><td>41.7</td><td></td></tr><tr><td>85㎡초과</td><td>220</td><td>38.9</td><td></td></tr></table> • 건설면적 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용: 세대수의 61.1% 변경 • 주택공급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국토부고시 4-3)적용 <table><tr><th>구 분</th><th>세 대 수</th><th>비 율(%)</th><th>비 고</th></tr><tr><td>합 계</td><td>560</td><td>100.0</td><td></td></tr><tr><td>60㎡이하</td><td>112</td><td>20.0</td><td>임대70세대포함</td></tr><tr><td>60~85㎡이하</td><td>241</td><td>43.0</td><td></td></tr><tr><td>85㎡초과</td><td>207</td><td>37.0</td><td></td></tr></table> • 건설면적 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용: 세대수의 63.0% <tr><td colspan="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영동대로변 : 건축한계선 3m • 영동대로50길변 : 건축한계선 3m • 구역계 동측 : 건축한계선 3m </td></tr> <tr><td colspan="12"> 심의완화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7%, 우수디자인: 5%,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 •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50%) → 예정법정상한용적률 (299.82%) </td></tr> <tr><td colspan="1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영동대로50길에서 대치우성1차아파트로 일반인이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으로 조성하며, 대치쌍용1차아파트,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계획과 연계하여 광역의 커뮤니티가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 상세위치 및 조성방법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토록 함 </td></tr>												구 분	세 대 수	비 율(%)	비 고	합 계	566	100.0		60㎡이하	110	19.4	임대70세대포함	60~85㎡이하	236	41.7		85㎡초과	220	38.9		구 분	세 대 수	비 율(%)	비 고	합 계	560	100.0		60㎡이하	112	20.0	임대70세대포함	60~85㎡이하	241	43.0		85㎡초과	207	37.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영동대로변 : 건축한계선 3m • 영동대로50길변 : 건축한계선 3m • 구역계 동측 : 건축한계선 3m												심의완화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7%, 우수디자인: 5%,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 •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50%) → 예정법정상한용적률 (299.8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영동대로50길에서 대치우성1차아파트로 일반인이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으로 조성하며, 대치쌍용1차아파트,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계획과 연계하여 광역의 커뮤니티가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 상세위치 및 조성방법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토록 함											
구 분	세 대 수	비 율(%)	비 고																																																																																				
합 계	566	100.0																																																																																					
60㎡이하	110	19.4	임대70세대포함																																																																																				
60~85㎡이하	236	41.7																																																																																					
85㎡초과	220	38.9																																																																																					
구 분	세 대 수	비 율(%)	비 고																																																																																				
합 계	560	100.0																																																																																					
60㎡이하	112	20.0	임대70세대포함																																																																																				
60~85㎡이하	241	43.0																																																																																					
85㎡초과	207	37.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영동대로변 : 건축한계선 3m • 영동대로50길변 : 건축한계선 3m • 구역계 동측 : 건축한계선 3m																																																																																							
심의완화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7%, 우수디자인: 5%,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 •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50%) → 예정법정상한용적률 (299.8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영동대로50길에서 대치우성1차아파트로 일반인이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으로 조성하며, 대치쌍용1차아파트,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계획과 연계하여 광역의 커뮤니티가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 상세위치 및 조성방법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토록 함																																																																																							

다)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변경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기정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비 고
		24,416.0㎡	22,290.0㎡	2,126.0㎡	0㎡	-
	변경	24,484.4㎡	22,351.8㎡	2,132.6㎡	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기정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2,126㎡ - 0㎡ = 2,126㎡				
	변경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2,132.6㎡ - 0㎡ = 2,132.6㎡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비 고	
		우수디자인		5%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무량판구조	7%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2%		
		합 계		14%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210%) + 인센티브(14%) = 224%				
정비계획 용적률	기정	• 정비계획용적률 250.0% 이하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224 + 210 × 1.3 × 0.0954 = 250.04 (250%적용) ※ α = 총 제공면적 / '총 제공면적' 을 제외한 대지면적 = 2,126 / (24,416-2,126) = 0.0954 ▷ 총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				
	변경	• 정비계획용적률 250.0% 이하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224 + 210 × 1.3 × 0.0954 = 250.04 (250%적용) ※ α = 총 제공면적 / '총 제공면적' 을 제외한 대지면적 = 2,132.6 / (24,484.4 - 2,132.6) = 0.0954 ▷ 총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				
법적상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99.82%				

5)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 수 (동)	연면적 (㎡)	세대수 (세대)	세대규모 (전용)	비고
기 정	대치동 65번지	22,290.0	4	5,646.94	70	59.84㎡ : 70세대	재건축 소형주택
변 경	"	22,351.8	"	5,754.05	70	59.61㎡ : 45세대 59.93㎡ : 25세대	"

■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적 용 산 식		비 고
기정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법적상한용적률	299.82%	—
		정비계획용적률	250.00%	—
	증가된 용적률의 50%	$(\text{법적상한용적률} - \text{정비계획용적률}) \times 50\% = 24.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
	연면적 환산	$\text{증가된 용적률의 } 50\% \times \text{순 사업부지 면적}$ $= 24.91\% \times 22,290\text{㎡} = 5,552.43\text{㎡}$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공급면적) : 5,646.94㎡ - 세대수 : 70세대 - 전용 59.84㎡(공급 80.67㎡) : 70세대		기준이상 확보
변경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법적상한용적률	299.82%	—
		정비계획용적률	250.00%	—
	증가된 용적률의 50%	$(\text{법적상한용적률} - \text{정비계획용적률}) \times 50\% = 24.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
	연면적 환산	$\text{증가된 용적률의 } 50\% \times \text{순 사업부지 면적}$ $= 24.91\% \times 22,351.8\text{㎡} = 5,576.83\text{㎡}$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공급면적) : 5,754.05㎡ - 세대수 : 70세대 - 전용 59.61㎡(공급 82.09㎡) : 45세대 - 전용 59.93㎡(공급 82.40㎡) : 25세대		기준이상 확보

6)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비 고
기 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364세대 계획 : 566세대 (증 202세대)	해당사항 없음	-
변 경	"	"	"	현황 : 364세대 계획 : 560세대 (증 196세대)		

2.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련서류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강남구 주택과(☎02-3423-607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 강동구고시 제2017-120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동구고시 제2017-91호(2017. 6. 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고시 제2017-806호(2017. 6.22.)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암사 도시재생앵커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암사동 495-72호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3. 사업의 명칭 : 암사 도시재생앵커시설 조성사업
4.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 285.9㎡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48㎡
5.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7.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42)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및 건축물 조서

- ☐ 사업명 : 암사 도지재생애커시설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 토지현황 : 1필지

연번	소재지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의 내용	
1	암사동 495-72	285.9	285.9	대	강동구청					-

○ 건축물현황 : 1동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의 내용	
1	암사동 495-72	점포 (부동산중개소)	콘크리트	점포 (연지부동산)	강동구청		이주영	강동구 암사동 4**-3*	세입자 (점포)	
		점포 (학원)	콘크리트	점포 (숙명음악학원)			백효정	강동구 천호3동 ***아파트 *01호	세입자 (점포)	

○ 영업권 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상 호	실제이용상황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1	암사동 495-72	영업권	연지부동산	점포 (부동산중개소)	이주영	강동구 암사동 4**-3*	
2		영업권	숙명음악학원	점포 (학원)	백효정	강동구 천호3동 ***아파트 *01호	

구 공 고

◆ 동대문구공고 제2017-6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호선, 주차장③)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79호(2016.11.17)로 이문·회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7-38호(2017.05.1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시 의제처리사항으로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호선, 주차장③)사업 실시계획인가(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의 고시)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등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경동 165-1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호선, 주차장③)사업 실시계획(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의 고시)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명 칭 : 도로 : 소로1-3호선, 주차장③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 로 : 333.8㎡
- 주차장 : 69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에이치앤에이 (대표 최춘길)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경로60, 2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 ~ 고시일로부터 24개월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건축과(TEL: 02-2127-4758)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별 첨

토 지 조 서

연번	위치	지번		면 적(㎡)		소유구분			비고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기타권리	
합 계				1,517.0	1,025.8				
1	휘경동	161-11	도로	281.0	281.0	송미령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15길 5, 401호(서초동, 로얄스위트서초빌라)		도로
2	휘경동	146-134	도로	362.0	19.2	서울시			
3	휘경동	154-52	대지	53.0	30.3	김신애	27린 디알 624, 토론토 온, 캐나다 엠2케이 오에이6		
4	휘경동	154-23	대지	128.0	3.3	차성일	서울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63-1(휘경동)	근저당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5	휘경동	165-9	대지	26.0	25.0	김일성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94		주차장
6	휘경동	165-12	대지	82.0	82.0	김동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16-29		
7	휘경동	165-13	대지	79.0	79.0	이병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3-1 건영아파트 4-605		
8	휘경동	165-14	대지	83.0	83.0	김정수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로 14가길 9(휘경동)		
9	휘경동	165-15	대지	82.0	82.0	오형문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65-15		
10	휘경동	165-18	대지	40.0	40.0	김일성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94		
11	휘경동	165-19	대지	96.0	96.0	주혜림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68-67		
12	휘경동	166-4	도로	26.0	26.0	정이동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94		
13	휘경동	166-6	대지	50.0	50.0	정상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42-2		
14	휘경동	166-7	대지	60.0	60.0	문재원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94길 37-17(면목동)		
15	휘경동	166-8	대지	69.0	69.0	이정덕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66-8		

건 축 물 조 서

연번	위치	지번		건축물		소유구분		비고
		지번	지목	주용도	연면적(㎡)	성명	주소	
합 계					802.01			
1	휘경동	154-23	대지	근린생활시설 주택	246.24	차성일	서울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63-1(휘경동)	도로
2	휘경동	165-12	대지	주택	35.17	김동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16-29	주차장
3	휘경동	165-13	대지	주택	35.5	이병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03-1 건영아파트 4-605	
4	휘경동	165-14	대지	단독주택	49.56	김정수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로 14가길 9 (휘경동)	
5	휘경동	165-15	대지	다가구용 단독주택	120.12	오형문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65-15	
6	휘경동	165-19 166-8	대지	다가구용단독 주택	249.96	주혜림 (1/2)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68-67	
						이정덕 (1/2)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66-8	
7	휘경동	166-6	대지	단독주택	33.06	정상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42-2	
8	휘경동	166-7	대지	주택	32.4	문재원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94길 37-17 (면목동)	

◆ 중랑구공고 제2017-668호

용마도시자연공원(망우지구)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내무부고시 제413호(1958.2.15)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이 최초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18호(2003.10.30)로 최종 지정되어, 건설부고시 제491호(1982.12.30.)로 조성계획이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호(2016.01.14)로 최종 변경 결정된 용마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시민의 시설수요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망우지구) 변경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더 쾌적하고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산림생태를 복원하여 공원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중 랑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69-1 일대

나. 공원면적 : 5,107,709㎡

다.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 변경계획(안)

1) 변경대상 : 망우지구(161,152㎡)

2) 시설면적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부지면적(㎡)	시설면적(㎡)	
계		161,152.00	62,236.24	161,152.00	57,782.10	
기반시설	소 계	19,216.96	19,216.96	18,956.50	18,956.50	
	도 로	14,923.92	14,923.92	13,573.22	13,573.22	
	광 장	4,293.04	4,293.04	5,383.28	5,383.28	
조 경 시 설		9,984.30	9,984.30	5,504.25	5,504.25	
휴 양 시 설		8491.91	8491.91	6,571.83	6,571.83	
유 희 시 설		276.18	276.18	3,197.55	3,197.55	
운 동 시 설		6,981.62	6,981.62	7,424.51	7,424.51	
교 양 시 설		4,126.97	4,126.97	4,221.45	4,221.45	
편 익 시 설		12,340.30	12,340.30	11,311.86	11,311.86	
관 리 시 설		818.00	818.00	594.15	594.15	
녹지 및 기타		98,915.76		103,369.90		
시 설 율 (법정40%)		(62,236.24/161,152)X100 =38.6%		(57,782.10/161,152)X100 =35.9%		
건 폐 율 (법정 8%)		(7,497.00/161,152)X100 =4.7%		(10,278.22/161,152)X100 =6.4%		

3) 주요시설

<신설>

- 조경시설 : · 잔디스탠드 2,932.20㎡
· 연못정원 892.20㎡
- 유희시설 : · 테마파크 3,197.55㎡
- 운동시설 : · 롤러스케이트장 565.91㎡
- 교양시설 : · 야외공연장 495.00㎡
· 실내공연장(극장) 323.10㎡
- 편익시설 : · 복층주차장 2,167.63㎡
· 대형주차장 505.49㎡
· 컨테이너빌리지 1,584.00㎡

<변경>

- 기반시설 : · (감) 260.46㎡ (19,216.96㎡→18,956.50㎡)
· 도로 (감)1,350.7㎡, 광장 (감)1,090.24㎡
- 조경시설 : · (감) 4,480.05㎡ (9,984.30㎡→5,504.25㎡)
· 캐스캐이드, 허브가든 1개소
- 휴양시설 : · (감) 1,920.08㎡ (8,491.91㎡→6,571.83㎡)
· 캠핑장 면적 변경
- 유희시설 : · (증) 2,921.37㎡ (276.18㎡→3,197.55㎡)
· 테마파크 3,197.55㎡
- 운동시설 : · (증) 442.89㎡ (6,981.62㎡→7,424.51㎡)
· 배드민턴장 면적 변경
- 교양시설 : · (증) 94.48㎡ (4,126.97㎡→4,221.45㎡)
· 허브체험관 면적 변경
· 야외공연장 495.00㎡,
· 실내공연장(극장) 323.10㎡
- 편익시설 : · (감) 1,028.44㎡ (12,340.30㎡→11,311.86㎡)
· 복층주차장 2,167.63㎡
· 대형주차장 505.49㎡,
· 컨테이너빌리지 1,584.00㎡
- 관리시설 : · (감) 223.85㎡ (818.00㎡→594.15㎡)
· 관리사무소 면적 변경 및 9-1 폐지
- 녹 지 : · (증) 4,454.14㎡ (98,915.76㎡ → 103,369.90㎡)

<폐지>

- 조경시설 : · 계류원 815.30㎡
· 캐스캐이드 2,749.11㎡
· 돌담 79.86㎡,

- 허브가든 1개소 3,869.83m²
- 잔디광장 1,575.00m²

- 휴양시설 : · 쉼터 3개소 346.13m²
- 유희시설 : · 모험의숲 276.18m²
- 교양시설 : · 온실 812.00m²
- 편의시설 : · 주차장 파-4~6 4,840.66m²
 - 화장실 72.90m²,
 - 휴게음식점 2개소 305.00m²
- 관리시설 : · 관리사무소 9-1 131.00m²

라. 관계도서 : 따로 붙임(세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중랑구청(공원녹지과 ☎ 2094-2402 담당 주무관 김재환)

사. 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69-1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5,107,709	186,161.44	37	10,194.84	22,637.22	(567)	5,107,709	181,707.30	67	12,976.06	33,315.03	(594)		
공원 시설 구역	소계	793,051.0	186,091.44	35	10,129.65	22,572.03	(567)	793,051.0	181,707.30	65	12,910.87	33,294.84	(594)	
	구보육원지구	90,739.0	14,892.5		32.00	32.00	(9)	90,739.0	14,892.5		32.00	32.00	(9)	증감없음
	면목약수터지구	81,038.0	13,540.2	3	1,516.00	4,940.00	(12)	81,038.0	13,540.2	3	1,516.00	4,940.00	(12)	증감없음
	긴골지구	35,141.0	3,081.0	4	84.00	84.00	(54)	35,141.0	3,081.0	4	84.00	84.00	(54)	증감없음
	구의지구	182,194.0	27,074	10	695.65	1,717.03	(110)	182,194.0	27,074	10	695.65	1,717.03	(110)	증감없음
	망우지구	161,152.0	62,236.27	14	7,497.00	15,494.00	(8)	161,152.0	57,782.10	44	10,278.22	26,171.81	(19)	감 4,454.14㎡
	채석장지구	151,322.0	38,193.0	3	295.00	295.00	(239)	151,322.0	38,193.0	3	295.00	295.00	(239)	증감없음
	배발지구	15,184.0	4,922.0				(47)	15,184.0	4,922.0				(47)	증감없음
아차산배수지지구	49,107.0	16,131.5				(68)	49,107.0	16,131.5				(68)	증감없음	
중곡지구	8,195.0	2,606.0	1	10.00	10.00	(25)	8,195.0	2,606.0	1	10.00	10.00	(25)	증감없음	
서일대지구	18,979.0	3,415.0				(11)	18,979.0	3,415.0				(11)	증감없음	
시설지구외	4,314,658	70	2	65.19	65.19		4,314,658	70	2	65.19	65.19		증감없음	
공원시설지구율	(793,051㎡/5,107,709㎡)*100%=15.5%						(793,051㎡/5,107,709㎡)*100%=15.53%						법정20%이하	
공원시설율	(186,161.44㎡/5,107,709㎡)*100%=3.6%						(181,707.30㎡/5,107,709㎡)*100%=3.56%						법정20%이하	
공원건폐율	(10,129.65㎡/793,051.00㎡)*100%=1.3%						(12,910.87㎡/793,051.00㎡)*100%=1.63%						법정 4%이하	

용마도시자연공원(망우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중랑구 망우동 산69-1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	간 시	계	161,152.00	62,236.24	14	7,497.00	15,494.00	8	161,152.00	57,782.10	44	10,278.22	26,171.81	19	시설면적 감소 4,454.14㎡ (증 11기)			
		소 계	19,216.96	19,216.96				18,956.50	18,956.50						감 260.46㎡			
		도 로	14,923.92	14,923.92				13,573.22	13,573.22							감 1,350.7㎡		
		광 장	4,293.04	4,293.04				5,383.28	5,383.28							증 1,090.24㎡		
	조 경 시 설		9,984.30	9,984.30				5,504.25	5,504.25						감 4,480.05㎡			
		휴 양 시 설	8,491.91	8,491.91	1	120.00	120.00	3	6,571.83	6,571.83	1	120.00	120.00	13	감 1,920.08㎡ (증 10기)			
	유 회 시 설	276.18	276.18					5	3,197.55	3,197.55				6	증 2,921.37㎡ (증 1기)			
	운 동 시 설	6,981.62	6,981.62	1	375.00	450.00			7,424.51	7,424.51	1	375.00	450.00		증 442.89㎡			
	교 양 시 설	4,126.97	4,126.97	3	3,969.00	11,358.00			4,221.45	4,221.45	4	3,974.95	11,182.95		증 94.48㎡			
	편 의 시 설	12,340.30	12,340.30	5	2,286.00	2,448.00			11,311.86	11,311.86	35	6,196.93	18,239.53		감 1,028.44㎡			
	관 리 시 설	818.00	818.00	4	747.00	1,118.00			594.15	594.15	3	570.80	751.80		감 223.85㎡			
	녹지 및 기타	98,915.76							103,369.90						증 4,454.14㎡			
	시 설 율 (법정 40%)	(62,236.24/161,152)X100=38.6%							(57,782.10/161,152)X100=35.9%						감 2.7%			
	건 폐 율 (법정 8%)	(7,497.00/161,152)X100=4.7%							(10,278.22/161,152)X100=6.4%						증 1.7%			

2. 시설조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61,152.00	62,236.24		14동	7,497.00	15,494.00	8			161,152.00	57,782.10		44동	10,278.22	26,171.81	19	시설면적 감소 4,454.14㎡ (증 11기)	
	소계		19,216.96	19,216.96		-	-	-	-			18,956.50	18,956.50		-	-	-	-	감 260.46㎡	
	도로	산69-1임 일대	14,923.92	14,923.92						산69-1임 일대	13,573.22	13,573.22	13,573.22	13,573.22						감 1,350.70㎡
		가	4,293.04	4,293.04		-	-	-	-	가		5,383.28	5,383.28	5,383.28		-	-	-	증 1,090.24㎡	
		가-1	산69-1임	(777.91)	(777.91)					가-1	산69-1임	(369.37)	(369.37)	(369.37)						감 408.54㎡
		가-2	"	(491.18)	(491.18)					가-2	"	(291.00)	(291.00)	(291.00)						감 200.18㎡
		가-3	"	(391.23)	(391.23)					가-3	"	(142.89)	(142.89)	(142.89)						감 248.34㎡
		가-4	산69-485 임	(641.44)	(641.44)					가-4	산69-485 임	(570.67)	(570.67)	(570.67)						감 70.77㎡
		가-5	산69-1임	(1077.80)	(1077.80)					가-5	산69-1임	(1065.08)	(1065.08)	(1065.08)						감 12.72㎡
		가-6	산69-485 임	(59.78)	(59.78)					가-6	"	(131.29)	(131.29)	(131.29)						증 71.51㎡
		가-7	산69-1임	(82.31)	(82.31)					가-7	"	(94.12)	(94.12)	(94.12)						증 11.81㎡
		가-8	산69-482 임	(532.34)	(532.34)					가-8	산69-485 임	(1449.75)	(1449.75)	(1449.75)						증 917.41㎡
		가-9	"	(239.05)	(239.05)					가-9	산69-482 임	(358.21)	(358.21)	(358.21)						증 119.16㎡
										가-10	산69-1임	(441.77)	(441.77)	(441.77)						증 441.77㎡
									가-11	"	(104.10)	(104.10)	(104.10)						증 104.10㎡	
									가-12	"	(204.48)	(204.48)	(204.48)						증 204.48㎡	
									가-13	"	(79.12)	(79.12)	(79.12)						증 79.12㎡	
									가-14	산69-486 임	(81.43)	(81.43)	(81.43)						증 81.43㎡	
기반시설																				
광장																				

	번			경			전			번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 경 시 설	소계		9,984.30	9,984.30		-	-	-	-			5,504.25	5,504.25		-	-	-	감 4,480.05㎡	
	계류원	나	산69-1임	815.30	815.30													삭제	
	케스 케이드	다	"	2,749.11	2,749.11													삭제	
	하브원	라	2개소	4,640.77	4,640.77		-	-	-	라	1개소	1,634.35	1,634.35		-	-	-	감 3,006.42㎡	
		라-1	"	(770.94)	(770.94)					라-1	산69-486 임	(1634.35)	(1634.35)					(하브기든)	
		라-2	"	(3869.83)	(3869.83)													삭제	
		마	3개소	124.26	124.26		-	-	-	마	1개소	45.50	28.46		-	-	-	감 78.76㎡	
	미당	마-1	"	(45.00)	(45.00)													삭제	
		마-2	"	(30.76)	(30.76)					마-2	산69-1임	(45.50)	(45.50)					증 14.74㎡	
		마-3	산69-482 임	(48.50)	(48.50)													삭제	
돌담	바	산69-1임	79.86	79.86													삭제		
잔디광장	사	산69-482 임	1,575.00	1,575.00													삭제		
휴 양 시 설	잔디 스탠드																	증 2,932.20㎡	
	연못정원																	증 892.20㎡	
	소계			8,491.91	8,491.91		1동	120.00	120.00	3			6,571.83	6,571.83		120.00	120.00	13	감 1,920.08㎡ (증 107)
	노인정	1	산69-1임	168.00	168.00	연외조	1동	120.00	120.00	1	산69-1임	168.00	168.00	연외조	1동 (1층)	120.00	120.00		-
캠핑장 (카라반)	아	"	6,477.03	6,477.03		-	-	-	나	"	4,170.51	4,170.51		-	-	-	13	감 2,306.52㎡	

	경 변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사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사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게쉼터	자	10개소	1,500.75	1,500.75		-	-	-	-	자	16개소	2,233.32	2,233.32		-	-	-	-	증 732.57㎡
	자-1	"	(73.20)	(73.20)						자-1	"	(98.27)	(98.27)						증 25.07㎡
	자-2	"	(82.20)	(82.20)						자-2	"	(33.95)	(33.95)						감 48.25㎡
	자-3	"	(150.00)	(150.00)						자-3	산69-485 임	(48.73)	(48.73)						감 101.27㎡
	자-4	"	(127.26)	(127.26)						자-4	산69-1임	(181.23)	(181.23)						증 53.97㎡
	자-5	"	(203.78)	(203.78)						자-5	"	(48.73)	(48.73)						감 155.05㎡
	자-6	"	(12.00)	(12.00)						자-6	"	(178.67)	(178.67)						증 166.67㎡
	자-7	"	(12.00)	(12.00)						자-7	"	(141.03)	(141.03)						증 129.03㎡
	자-8	"	(22.50)	(22.50)						자-8	산69-482 임	(158.07)	(158.07)						증 135.57㎡
	자-9	"	(730.50)	(730.50)						자-9	산69-1임	(116.79)	(116.79)						감 613.71㎡
	자-10	"	(87.31)	(87.31)						자-10	"	(62.29)	(62.29)						감 25.02㎡
										자-11	"	(41.22)	(41.22)						증 41.22㎡
										자-12	"	(172.99)	(172.99)						증 172.99㎡
										자-13	산69-486 임	(147.40)	(147.40)						증 147.40㎡
										자-14	산69-482 임	(255.80)	(255.80)						증 255.80㎡
										자-15	"	(435.87)	(435.87)						증 435.87㎡
										자-16	"	(74.10)	(74.10)						증 74.10㎡
									자-17	"	(38.18)	(38.18)						증 38.18㎡	
쉼터	①	3개소	346.13	346.13		-	-	-	3						-	-	-	-	삭제
	①-1	"	(94.50)	(94.50)					1										삭제
	②-2	"	(188.52)	(188.52)					1										삭제
	③-3	"	(63.11)	(63.11)					1										삭제

중앙시설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 희 시 설	소계		276.18	276.18		-	-	-	5			3,197.55	3,197.55					6	증 2,921.37㎡ (증 1기)	
	모험의숲	차	"	276.18					5							-	-	-	식재	
	테마파크									차	산69-482 임	3,197.55	3,197.55					6	증 3,656.10㎡	
	순환발전차-1 (해피스영)									차-1	"	(387.01)	(387.01)						증 387.01㎡	
	순환발전차-2 (크레이지버스)									차-2	"	(547.22)	(547.22)						증 547.22㎡	
	순환발전차-3 (만성터워)									차-3	"	(547.22)	(547.22)						증 547.22㎡	
	순환발전차-4 (미니제트)									차-4	"	(579.42)	(579.42)						증 579.42㎡	
	순환발전차-5 (미니페리활)									차-5	"	(488.14)	(488.14)						증 488.14㎡	
	순환발전차-6 (타카제이)									차-6	"	(648.54)	(648.54)						증 648.54㎡	
	소계		6,981.62	6,981.62		1동	375.00	450.00	-			7,424.51	7,424.51		1동	375.00	450.00	-	증 442.89㎡	
온 료 시 설	골프 연습장	2	"	6,350.00	6,350.00	철골조	1동	375.00	450.00		2	산69-1임	6,350.00	6,350.00	철골조	1동 (2층)	375.00	450.00		-
	베드민턴장	카	"	631.62	631.62			-			"	508.60	508.60						감 123.02㎡	
	롤러스케이팅장										"	565.91	565.91						증 565.91㎡	
관 양 시 설	소계		4,126.97	4,126.97		3동	3,969.00	11,358.00	-			4,221.45	4,221.45		4동	3,974.95	11,182.95	-	증 94.48㎡	
	디자인 전시관	3	"	3,077.00	3,077.00	철골조	1동	2,988.00	10,196.00		3	산69-1임	3,077.00	3,077.00	철골조	1동 (3층)	2,988.00	10,196.00		-
	온실	4	"	812.00	812.00	철골조	1동	800.00	800.00										감 812.00㎡	

	변경						경변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허브 체합관	5	"	187.00	187.00	경량 철골조	1동	181.00	362.00								(11-2 관리사무소로 변경)		
										4	산69-486 임	275.38	275.38	철근 콘크리트조	1동 (1층)	220.42	220.42	증 275.38㎡	
	신도비	타	"	50.97	50.97					하	산69-1임	50.97	50.97					-	
	아외 공연장									5	"	495.00	495.00	철골조	1동 (1층)	495.00	495.00	증 495.00㎡	
	실내공연장 (극장)									6	산69-482 임	323.10	323.10	철골조	1동 (1층)	271.53	271.53	증 323.10㎡	
편의시설	소계			12,340.30	12,340.30		5동	2,286.00	2,448.00	-							감 1,028.44㎡		
	주차장	파	8개소	9,949.40	9,949.40		-	-	-	-	파	6개소	6,061.74	6,061.74		1동	2,140.99	8,623.38	감 3,887.66㎡
		파-1	산69-482 임	(1094.02)	(1094.02)					파-1	산69-482 임	(472.26)	(472.26)					감 621.76㎡	
		파-2	산69-482 임	(1056.12)	(1056.12)					7	산69-1임	(2167.63)	(2167.63)	철골조	1동 (4층)	2,140.99	8,623.38	증 1,111.51㎡ 복합주차장, 4층	
		파-3	산69-1임	(507.31)	(507.31)					파-3	산69-482 임	(465.07)	(465.07)					감 42.24㎡	
		파-4	"	(1025.96)	(1025.96)													삭제	
		파-5	"	(655.05)	(655.05)													삭제	
		파-6	"	(3159.65)	(3159.65)													삭제	
		파-7	산69-486 임	(1101.55)	(1101.55)					파-7	산69-486 임	(1101.55)	(1101.55)					-	
	파-8	산69-485 임	(1349.74)	(1349.74)					파-8	산69-1임	(1349.74)	(1349.74)					-		
									파-9	"	(505.49)	(505.49)					증 505.49㎡ 대형주차장		

	경 전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일반 음식점	6	2개소	2,013.00	2,013.00		2동	1,966.00	2,128.00	-	8	3개소	3,435.72	3,435.72		3동	1,372.08	2,320.64	-	증 1,422.72㎡
	6-1	산69-482 임	(1838.00)	(1838.00)	철골조	1동	(1804.00)	(1804.00)		8-1	산69-482 임	(2180.35)	(2180.35)	철근 콘크리트조	1동 (2층)	(779.31)	(1496.87)		증 342.35㎡
	6-2	산69-1임	(175.00)	(175.00)	철골조	1동	(162.00)	(324.00)											삭제
										8-2	산69-1임	(878.75)	(878.75)	라멘조	1동 (2층)	(309.00)	(540.00)		증 878.75㎡ (기존 9-3 관리사무소에서 변경)
화장실	8	산69-482 임	72.90	72.90	철골조	1동	65.00	65.00		8-3	"	(376.62)	(376.62)	철근 콘크리트조	1동 (1층)	(283.77)	(283.77)		증 376.62㎡
	7	1개소	305.00	305.00		1동	305.00	305.00	-	9	1개소	230.40	230.40		1동	140.40	280.80	-	감 74.60㎡ (11-1로 변경)
	7-1	산69-1임	(79.00)	(79.00)	연외조	1동	(45.00)	(45.00)											증 230.40㎡ (기존 9-2 관리사무소에서 변경)
휴게 음식점										9-1	산69-1임	(230.40)	(230.40)	라멘조	1동 (2층)	(140.40)	(280.80)		
	7-2	"	(226.00)	(226.00)	철골조	1동	(210.00)	(210.00)											삭제
컨테이너빌리지	10									10		1,584.00	1,584.00		30동	1,584.00	2,413.44		증 1,584.00㎡
컨테이너빌리지 -A-1 (일반음식점)	10-1									10-1	산69-1임	(144.00)	(144.00)	철골조	1동 (2층)	(144.00)	(230.40)		증 144.00㎡

편 의 시 설

편의시설

	경 변						경 변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편 의 시 설	컨테이너빌리지 -A-2 (일반음식점)	10-2							10-2	산69-482 임	(144.00)	(144.00)	"	1동 (2층)	(144.00) (230.40)		증 144.00㎡
	컨테이너빌리지 -B-1 (일반음식점)	10-3							산69-1임	(57.60)	(57.60)	철골조	1동 (2층)	(57.60) (86.40)		증 57.60㎡	
	컨테이너빌리지 -B-2 (일반음식점)	10-4							"	(57.60)	(57.60)	"	1동 (2층)	(57.60) (86.40)		증 57.60㎡	
	컨테이너빌리지 -B-3 (일반음식점)	10-5						산69-482 임	(57.60)	(57.60)	(57.60)	"	1동 (2층)	(57.60) (86.40)		증 57.60㎡	
	컨테이너빌리지 -B-4 (일반음식점)	10-6						"	(57.60)	(57.60)	(57.60)	"	1동 (2층)	(57.60) (86.40)		증 57.60㎡	
	컨테이너빌리지 -C-1 (일반음식점)	10-7						산69-1임	(57.60)	(57.60)	(57.60)	"	1동 (2층)	(57.60) (86.40)		증 57.60㎡	
	컨테이너빌리지 -C-2 (일반음식점)	10-8						산69-482 임	(57.60)	(57.60)	(57.60)	"	1동 (2층)	(57.60) (86.40)		증 57.60㎡	
	컨테이너빌리지 -D-1 (일반음식점)	10-9						산69-1임	(63.36)	(63.36)	(63.36)	"	1동 (2층)	(63.36) (97.92)		증 63.36㎡	
	컨테이너빌리지 -D-2 (일반음식점)	10-10						산69-482 임	(63.36)	(63.36)	(63.36)	"	1동 (2층)	(63.36) (97.92)		증 63.36㎡	
	컨테이너빌리지 -E-1 (매점)	10-11						산69-1임	(57.60)	(57.60)	(57.60)	"	1동 (1층)	(57.60) (57.60)		증 57.60㎡	
	컨테이너빌리지 -E-2 (매점)	10-12						산69-482 임	(57.60)	(57.60)	(57.60)	"	1동 (1층)	(57.60) (57.60)		증 57.60㎡	

	변경						변경						비고																																																																																																																																																																																																																																																																																																																																																																																																																																																																																																																																																																																																																																																																																																																																																																																																																																																																																																																																																																																																																																																																																																																																																																																																																																																																																																																																																																			
	전			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변경						전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컨테이너빌리지 -MINI-5 (매점)	10-24									산69-482 임	(5.76)	(5.76)	"	1동 (1층)	(5.76)	(5.76)		증 5.76㎡	
	컨테이너빌리지 -MINI-6 (매점)	10-25								"	"	(5.76)	(5.76)	"	1동 (1층)	(5.76)	(5.76)		증 5.76㎡	
	컨테이너빌리지 -MINI-7 (매점)	10-26								"	"	(5.76)	(5.76)	"	1동 (1층)	(5.76)	(5.76)		증 5.76㎡	
	컨테이너빌리지 -MINI-8 (매점)	10-27								"	"	(5.76)	(5.76)	"	1동 (1층)	(5.76)	(5.76)		증 5.76㎡	
	컨테이너빌리지 -MINI-9 (매점)	10-28								"	"	(5.76)	(5.76)	"	1동 (1층)	(5.76)	(5.76)		증 5.76㎡	
	컨테이너빌리지 -MINI-10 (매점)	10-29								"	"	(5.76)	(5.76)	"	1동 (1층)	(5.76)	(5.76)		증 5.76㎡	
	컨테이너빌리지 -MINI-11 (매점)	10-30								"	"	(5.76)	(5.76)	"	1동 (1층)	(5.76)	(5.76)		증 5.76㎡	
	소계			818.00	818.00	4동	747.00	1,118.00				594.15	594.15		3동	570.80	751.80	-	감 223.85㎡	
	관리시설	9	4개소	818.00	818.00	4동	747.00	1,118.00	-	11	3개소	594.15	594.15	594.15		3동	570.80	751.80		감 223.85㎡
		9-1	산69-1임	(131.00)	(131.00)	철골조	1동	(120.00)	(120.00)											삭제
									11-1	산69-1임	(228.19)	(228.19)	경량 철골조	1동 (1층)	(211.80)	(211.80)	(211.80)		증 228.19㎡ (기존 7-1 휴게음식점에서 변경)	
		9-2	"	(193.00)	라멘조	1동	(140.00)	(280.00)											(9-1로 변경)	

	변경						전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관리시설											11-2	"	(187.96)	(187.96)	철근 콘크리트조	1동 (2층)	(181.00)	(181.00)	(181.00)		증 187.96㎡ (기준 5 하브체함관 에서 변경)
	9-3	"	(316.00)	(316.00)	라멘조	1동	(309.00)	(540.00)													(8-2로 변경)
	9-4	"	(178.00)	(178.00)	연외조	1동	(178.00)	(178.00)			11-3	"	(178.00)	(178.00)	연외조	1동 (1층)	(178.00)	(178.00)	(178.00)		-
			98,915.73							103,369.90											증 4,454.17㎡
녹지 및 기타			98,915.73																		증 4,454.17㎡
			98,915.73																		증 4,454.17㎡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3,182.61	14,923.92				
변경					2,652.53	13,573.22				
당초	소계				2,024.32	12,915.30				
변경					2,173.65	12,112.47				
당초	3	1	7.0	30.17	211.19	진입로	140-4도			
폐지					-	-				
당초	3	2	3.0	34.23	102.69	연결로	소로,3-1	산57-3묘		
변경	3	2	3.0	30.91	92.42	연결로	광장,가-9	산57-3묘		
당초	3	3	7.0	149.23	1,044.61	연결로	파-2주차장	광장,7-8		
폐지					-	-				
당초	3	4	7.0	149.15	1,044.05	연결로	광장,7-8	주차장,파-5		
변경	3	4	3.0	27.03	84.01	진입로	142대	소로,1-2		
당초	3	5	7.0	336.43	2,355.01	연결로	주차장,파-2	소로,3-13		
변경	3	5	4.5	345.21	1,557.43	연결로	광장,가-9	소로,3-13		
당초	3	6	6.0	165.75	994.50	연결로	소로,3-5	광장,가-1		
변경	3	6	4.5	250.08	1,138.83	연결로	유희시설,차	광장,가-1		
당초	3	7	3.0	28.49	85.47	연결로	휴게쉼터,자-1	소로,3-6		
폐지					-	-				
당초	3	8	3.0	27.59	82.77	연결로	광장,가-1	소로,3-13		
변경	3	8	4.0	11.38	47.56	연결로	광장,가-1	광장,가-11		
당초	3	9	3.0	24.98	74.94	연결로	광장,가-1	소로,3-13		
변경	3	9	3.0	111.85	422.53	연결로	광장,가-1	일반음식점,6-2		
당초	3	10	3.0	95.85	287.55	연결로	허브원,라-2	허브원,라-2		
변경	3	10	4.0	125.73	512.76	연결로	캠핑장,나	광장,가-11		
당초	3	11	3.0	41.46	124.38	진입로	소로,3-10	산69-1임		
변경	3	11	3.0	15.29	45.38	진입로	광장,가-11	산69-1임		
당초	3	12	3.0	49.51	148.53	연결로	소로,3-13	허브원,라-2		
변경	3	12	4.0	64.78	260.93	연결로	광장,가-8	캠핑장,나		
당초	3	13	7.0	305.20	2,136.40	연결로	광장,가-3	121-1답		
변경	3	13	6.5	123.15	832.39	연결로	광장,가-3	광장,가-1		
당초	3	14	3.5	33.66	117.81	연결로	허브원,라-2	휴게쉼터,자-3		
변경	3	14	5.0	16.57	91.31	연결로	광장,가-8	광장,가-10		
당초	3	15	7.0	105.84	740.88	연결로	광장,가-5	광장,가-5	변경없음	
당초	3	16	7.0	40.16	281.12	진입로	577대	광장,가-2		
폐지					-	-				
당초	3	17	4.0	41.13	164.52	연결로	디자인전시관,3	주차장,파-6		
폐지					-	-				
당초	3	18	6.0	93.03	558.18	연결로	광장,가-4	소로,3-17		
변경	3	18	7.0	50.69	496.66	진입로	118-6도	광장,가-2		
당초	3	19	7.0	45.72	320.04	연결로	광장,가-5	121-1답		
폐지					-	-				
신설	3	20	3.0	68.20	199.17	연결로	소로, 1-2	소로, 1-2		
신설	3	21	3.0	65.70	197.46	연결로	소로 3-6	유희시설, 차		
신설	3	22	3.0	40.80	121.85	연결로	유희시설, 차	유희시설, 차		
신설	3	23	3.0	101.67	306.11	연결로	소로, 3-6	유희시설, 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2	1	9.0	131.70	1,185.30	연결로	광장,가-5	광장,가-2	
변경		2	1	8.0	139.47	1,012.84	연결로	광장,가-5	광장,가-2	
당초		2	2	9.0	95.04	855.36	연결로	광장,가-2	광장,가-3	
변경		2	2	6.0	17.63	102.46	진입로	123-3도	광장,가-2	
신설		2	3	8.0	126.10	1,009.13	연결로	광장,가-5	광장,가-8	
신설		1	1	11.8	20.12	201.23	진입로	140-3구	광장,가-9	
신설		1	2	8.0	311.77	2,503.40	연결로	광장,가-9	광장,가-3	
신설		1	3	8.0	109.52	876.61	연결로	광장,가-2	광장,가-3	
당초	산 책 로	소계			1,158.29	2,008.62				
변경					478.88	1,460.75				
당초			1	2.0	3.00	6.00	연결로	주차장,파-2	주차장,파-1	
폐지					-	-				
당초			2	2.0	116.84	233.68	연결로	휴게쉼터,자-1	소로,3-6	
폐지					-	-				
당초			3	2.0	40.79	81.58	연결로	캠핑장,아-2	광장,가-1	
폐지					-	-				
당초			4	1.5	19.18	28.77	연결로	소로,3-4	산,5	
폐지					-	-				
당초			5	2.0	128.16	256.32	연결로	휴게쉼터,자-9	주차장,파-5	
폐지					-	-				
당초			6	1.5	3.65	5.48	연결로	주차장,파-4	산,5	
폐지					-	-				
당초			7	1.5	2.98	4.47	연결로	주차장,파-4	산,5	
폐지					-	-				
당초			8	1.5	2.61	3.92	연결로	주차장,파-4	산,5	
폐지					-	-				
당초			9	1.5	4.50	6.75	연결로	주차장,파-4	산,5	
폐지					-	-				
당초			10	1.5	25.38	38.07	연결로	쉼터,㉠-3	소로,3-5	
폐지					-	-				
당초			11	1.5	39.86	59.79	연결로	주차장,파-6	소로,3-12	
폐지					-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 책 로		12	1.2	25.04	30.05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폐지					-	-				
당초			13	1.2	25.04	30.05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폐지					-	-				
당초			14	1.2	25.04	30.05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폐지					-	-				
당초			15	1.2	25.04	30.05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폐지					-	-				
당초			16	1.2	10.88	13.06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폐지					-	-				
당초			17	1.2	25.05	30.06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폐지					-	-				
당초			18	1.2	25.05	30.06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폐지					-	-				
당초			19	1.2	25.05	30.06	연결로	소로,3-14	소로,3-14	
폐지					-	-				
당초			20	2.5	20.81	52.03	연결로	소로,3-18	주차장,파-6	
폐지					-	-				
당초			21	2.0	11.96	23.92	연결로	골프연습장,2	소로,3-18	
변경			21	5.0 -3.0	25.90	99.06	연결로	소로,3-18	골프연습장,2	
당초			22	2.0	15.44	30.88	연결로	광장,가-6	골프연습장,2	
변경			22	4.5 -3.0	71.66	256.86	연결로	골프연습장,2	허브원,라-1	
당초			23	1.5	71.05	106.58	연결로	마당,마-1	휴게쉼터,자-8	
변경			23	4.0	72.84	295.36	연결로	광장,가-12	산책로,22	
당초			24	1.5	169.62	254.43	연결로	마당,마-1	마당,마-1	
변경			24	2.0	131.79	267.20	연결로	소로,3-10	광장,가-12	
당초			25	2.0	236.49	472.98	진입로	산69-508공	허브원,라-2	
변경			25	3.7	86.94	354.86	연결로	광장,가-12	산책로,26	
당초			26	2.0	59.78	119.56	연결로	광장,가-6	산,25	
변경			26	2.0	89.75	187.41	진입로	산책로,22	산69-508공	

용마도시자연공원(망우지구) 조성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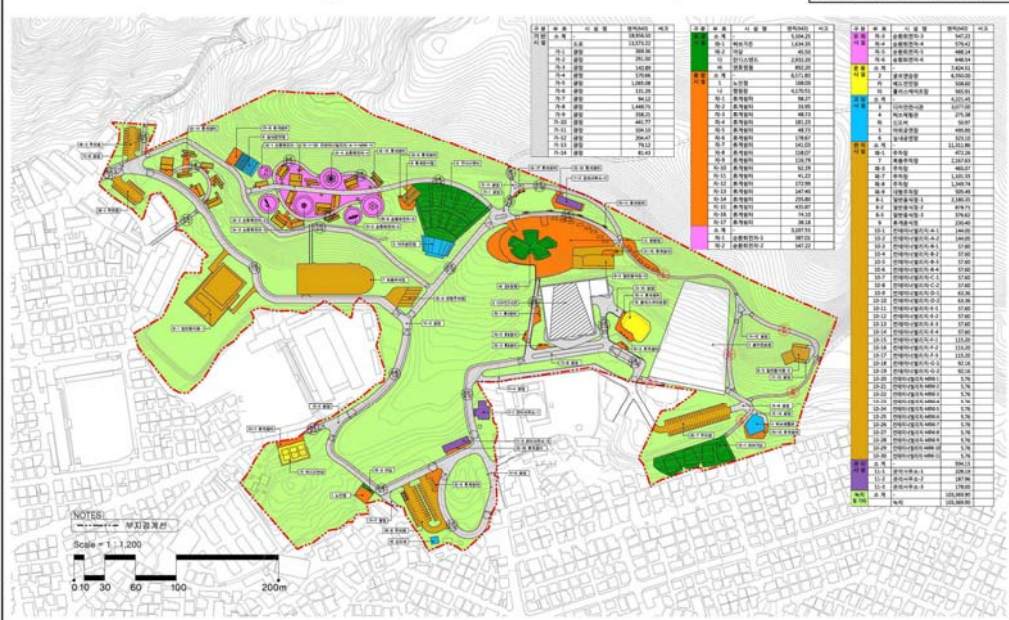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용마도시자연공원(망우지구)



조성계획도-변경후

용마도시자연공원(망우지구)



◆ 은평구공고 제2017-888호

도시계획시설(소방서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3호(2008. 5.22)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4호(2016. 5. 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3-81호(2013. 9.26)로 사업시행인가된 수색·중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라 건립되는 도시계획시설(소방서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열람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3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26-16 일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24-2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방서 및 사회복지시설)
- 2) 명 칭 : 수색119안전센터 및 사회복지시설(경로당) 신축공사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김광섭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93(수색동 서광빌딩 3층)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7. 7. ~ 2018. 4. (300일)

마. 사업규모

구분	규 모			위 치	비고
	용 도	면적(m)	설치비용(원)		
공공 청사	소방파출소	762	3,179,340,000	수색동 326-16 일대	
	소 계	762	3,179,340,000		
사회 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270	561,495,000	수색동 324-2 일대	
	소 계	270	561,495,000		
계		1,032	3,740,835,000		

바. 열람기간 : 2017. 7.13. ~ 2017. 7.28.(공고일로부터 15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명세 및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별첨
아. 건축계획변경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의제.

자. 기타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05)에 비치

◆ 서대문구공고 제2017-738호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정정)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29호(1978.8.26.)로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780호(1980.5.26.)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7-88호(2017.6.5.)로 실시계획인가고시 한 경의제2녹지에 대하여, 사업구역 면적의 변경이 발생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7-95호(2017.6.29.)로 인가고시한 사항에 행정용어 및 절차의 오류(공고 및 고시의 혼용)가 있어, 이 고시문에 대한 효력을 말소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경의제2녹지)실시계획 변경사항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이며 본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서대문구청(푸른도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할 토지 및 물건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등 3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 2) 사업의 명칭 : 경의제2녹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 당초 : 5,000m² ○ 변경 : 158.7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대문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1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조서참조
 ※ 조서상의 물건은 현황 측량한 철거될 지장물로 보상 시 물건의 종류와 면적이 조서상의 물건 및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사. 사업의 주요내용 : 토지 및 건물 보상, 녹지조성 등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71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조서

○ 토지 현황 : 4필지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 의권리내용
					성명	주소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1	서대문구 총정로3가 155-5	대	9.9	9.9	박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금호 102-1401		
2	서대문구 총정로3가 143-5	대	28.8	28.8	박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금호 102-1401		
3	서대문구 총정로3가 143-9	도로	75	66	구유지			
4	서대문구 총정로3가 129-24	도로	79.9	54	시유지			

○ 건물(지장물) 현황 : 2동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실제이용상황	건축물관리 대장면적 (㎡)	현황측량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1	서대문구 총정로3가 155-5	점포 (화집)	세멘조	점포 (자갈치화집)	39.6696	110.6	박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금호 102-1401	서울특별시서 대문구 총정로3가 155-5	세입자 (점포)
2	서대문구 총정로3가 143-2	점포 (분식집)	세멘조	점포 (칠길떡볶이)	-	39.7	허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3가 143-2		

○ 영업권 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상호	실제 이용상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서대문구 총정로3가 155-5	영업권	세멘조	점포 (음식점)	양금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3가 155-5	
2	서대문구 총정로3가 143-2	영업권	세멘조	점포 (음식점)	허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3가 143-2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주) (대표 황윤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21	- 수상 : 1,200㎡ - 육상 : 571.9㎡	유선사업장 대체건조	2017.7.1. ~ 2017.7.15.	2017. 7.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3척 (부선 3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07.03. ~ 2017.07.31.	2017. 07.0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2척 (기선1, 부선1)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07.10. ~ 2017.07.31.	2017. 07.0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골든블루마리나 (대표 김영진)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	잠실대교 ~ 행주대교	동력선 1척(17㎡) - 모터보트 1척	수상레저사업	2017.7.8. ~ 2017.10.31.	2017. 7.7.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7-15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7. 7. 13. ~ 2017. 7. 26.(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7. 7. 27. ~ 2017. 8. 9.(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승달 대상내역(제2017-157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615	이*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가길 **	지**호 (구의동)
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617	이*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	(반포동)
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619	윤*화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구의동, 대명빌라)
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624	변*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길 **	**호 (쌍문동, 광성아트빌)
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626	송*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길 **	(수유동)
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629	김*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길 **-*	**호 (용답동, 금강빌라)
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632	이*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길 **-*	(안암동*가)
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655	한*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독산동길 **-*	A동 ***호 ()
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661	이*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	***동 ***호 (내당동, 황제맨션)
1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662	차*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길 ***-	***호 (삼성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663	이*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번길 **	***동 ***호 (은행동, 현대아파트)
1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678	이*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	***동 ***호 (금호동*가, 래미안하이리버)
1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681	엄*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충로 **	***동 ***호 (탄현동, 탄현마을*단지아파트)
1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686	이*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부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	(판교동)
1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697	박*덕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가길 **	***호 (삼선동*가)
1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707	정*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길 *-*	지하도 (봉천동)
1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712	최*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	***동 ***호 (상도동, 상도엠코타운 센트럴파크)
1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4	000716	이*성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문로**길 ***-*	*층 (한남동)
1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740	장*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번길 **	***동 ***호 (신창동, 신창*차부영사랑으로아파 트)
2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742	유*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	***동 ***호 (평촌동, 푸른마을대우아파트)
2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743	유*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	***동***호 (평촌동, 푸른마을대우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748	장*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시흥시 새제로 *	***호 (정현동, 유호N PLUS빌 II(주상복합아파트))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765	이*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번길 **	***호 (효자동)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796	김*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	***-**** (암사동, 프라이어펠리스)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799	은*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길 ***-**	*호 (가산동)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856	최*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길 **	***호 (성내동, 일신빌라)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865	이*승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	***동 ***호 (마두동, 강촌마을*단지아파트)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870	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나길 **	***호 (사당동, 더하우스*차)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871	안*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	(명일동)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873	임*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	*동 ***호 (석남동, 정도빌라)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875	강*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	***동 ***호 (쌍용동, 영암마을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881	오*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하이파크로 ***	***동 ****호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일산파밀리에*단지)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895	한*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번길 **	***동 ****호 (학악동, 엑슬루타워아파트)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897	김*중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길 **	***호 (구로동)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898	유*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	****-**** (평촌동, 푸른마을대우아파트)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899	유*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	****-**** (평촌동, 푸른마을대우아파트)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03	김*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상테길**번길 **	***호 (노블리안)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16	강*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강원도 원주시 토지길 ***-	(단구동)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17	우*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23	김*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길 *	***동 ****호 (삼성동, 삼성동힐스테이트*단지아파트)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27	G*O J***U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번길 ***-	***호 (정왕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46	대**자(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중로구 인사동*길 **	**층 (관훈동, 백상빌딩)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51	김*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	***동 ***호 (행당동, 행당프라자스톤)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67	박*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	***동 ***호 (개포동, 주공아파트)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74	손*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	***동 ***호 (가좌동, 가좌마을*단지아파트)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76	윤*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평촌길 ***-***	0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81	김*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로 ***-*	***호 (신부동, 종로약국)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82	이*경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번길 ***-*	(산곡동)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83	박*창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송파로***번길 **	***동 ***호 (부곡동, 휴먼시아)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88	손*모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	***동 ***호 (신내동, 신내우디안*단지)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91	이*호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진구 아차신로***길 **	(구의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93	김*운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	***호 (성정동, 프라자음*차)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94	이*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	***동 ***호 (구수동, 서강GS아파트)
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0997	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	***동 ***호 (창우동, 부영아파트)
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02	장*훈, 김*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세로 ***	***동 ***호 (계산동, 은행마을강북.삼보아파트)
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05	권*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화로 **	***동 ***호 (갈매동, 갈매더샵나인힐스)
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16	김*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번길 ***	(가능동)
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17	박*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페신로 **	***동 ***호 (하월곡동, 월곡두산위브아파트)
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26	이*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길 *-*	(응암동)
6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30	주*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	***동 ***호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아파트)
6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33	이*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관주시 오포읍 상태길 ***	***호 ()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6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35	안*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길 *	*층 ***호 (창곡동)
6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50	김*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	***호 (천호동, 천호역 한강 푸르지오시티)
6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55	김*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호 (자곡동, 강남 지엘홈스B동)
6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61	강*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동 *****호 (신천동, 파크리오)
6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62	신*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	***호 (갈곶동, 행안빌)
6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68	여*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정계로 ***	***동 ***호 (비호아파트)
6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72	김*용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호 (구의동)
6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89	유*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	***동 *****호 (평촌동, 푸른마을대우아파트)
7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91	박*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아산시 당정면 명암길*번길 *	***호 ()
7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094	김*석, 김*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조산세귀샘길 ***-	*동 ***호 (초원빌라)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7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100	정*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신동구 경의로 **~**	***동 ***호 (백석동, 동문교모닝힐II)
7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102	이*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신로 ***	***동 ***호 (응암동, 북면역센트레빌)
7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105	김*환, 김*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	***동 ***호 (신정동, 등암신동아아파트)
7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113	이*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	***동 ***호 (상동, 반달마을 선경아파트)
7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117	홍*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길 **	***동 ***호 (공덕동, 래미안공덕*자아파트)
7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122	윤*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기로 ***	***동 ***호 (남가좌동, 삼성아파트)
7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131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길 *	***동 ***호 (삼성동, 삼성동힐스테이트*단지아 파트)
7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137	최*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	***동 ***호 (갈매동, NH갈매*단지)
8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143	박*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신동구 숲속마을로 ***	***동 ***호 (풍곡, 숲속마을*단지아파트)
8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155	박*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번길 *	(생림면)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8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158	김*곤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	***동 ***호 (옥수동, 옥수삼성아파트)
8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159	한*수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길 *	(청량리동)
8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188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길 ***	***동 ***호 (시당동, 극동아파트)
8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189	이*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로 **	***동 ***호 (기정동, 엘에이치웨스턴블루힐)
8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195	이*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	***동 ***호 (삼산동, 인천삼산백산블루밍)
8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204	송*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번길 ***	(삼송동)
8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212	민*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길 ***	***동 ***호 (서초동, 서초삼성래미안아파트)
8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215	안*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길 **~**	***호 (방배동, 호정빌라)
9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219	인*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길 ***	(역삼동)
9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229	서*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	***호 (금광동, 대원주택)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9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232	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어서매로 **	***동 ***호 (석미모닝파크아파트)
9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239	조*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	***동 ***호 (반월동, e편한세상 화성 아파트)
9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265	조*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나길 *	***동 ***호 (문래동*가, 문래 두산위브)
9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266	임*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번길 **	나동 ***호 (배편주택)
9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272	곽*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길 **	(예정동)
9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276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	*동 ***호 (문래동*가, 영등포 SK 리더스뷰)
9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284	이*규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라길 **--*	우림동 (상계동)
9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295	박*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길 *	*층 (미천동)
1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298	유*희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길 *	(자양동)
10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01	황*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번길 **	***동***호 (철산동, 광복현대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0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04	임*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길 *	(문정동)
10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05	신*익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	***동 ***호 (일산동, 신들마을*단지)
10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06	장*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길 **	***호 (삼선동*가, 청기와아파트)
10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60	최*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나길 **	(암사동)
10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62	육*묵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	(천호동)
10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65	양*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가길 **	A동 ***호 (암사동, 선진빌라트)
10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66	정*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길 **	(천호동)
10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67	오*봉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길 **	***동 ***호 (천호동, 천호*차우림루마이트)
11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70	김*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변로 **	***동 ***호 (북변동, 현대아파트)
11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78	방*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번길 *	*층 (석남동)
11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79	이*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가길 *-*	***호 (구산동, 영경그린빌)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80	김*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기좌*로 **	***동 ***호 (기좌동, 기좌마을*단지아파트)
1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82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길 **	***호 (회곡동, 한라해밀리타운)
1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91	김*지, 신*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	***호 (대흥동)
1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92	임*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	***동***호 (별내면, 동부일신아파트)
1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93	박*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상남도 거제시 장영*로**길 **	(장평동)
1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395	정*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	***동 ***호 (안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 트)
1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00	김*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	***호 (오류동, 랑데르)
1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03	김*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길 **	***호 (방이동)
1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09	이*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길 **	***호 (잠실동)
1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10	김*경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번길 ***	나동 ***호 (망포동, 롯데빌라)
1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11	김*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길 ***	***동 ***호 (청량리동, 상그레빌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14	전*훈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	***호 (안암동*가, 안암학사 행정고시동)
1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20	박*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나길 ***	***호 (수유동, 진출그랑빌)
1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23	안*열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길 **	***호 (삼성동)
1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24	최*원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번길 **	***동 ****호 (쌍용스윗닷홈아파트)
1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26	윤*숙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가길 *-**	(성수동*가)
1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28	박*진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	***호 (가락동)
1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31	정*진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	***동 ***호 (금호동*가, 벽산아파트)
1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35	김*수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	***동 ****호 (도암동,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1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36	조*복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길 ***	(자양동)
1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38	김*영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길 **	***동 ****호 (상계동, 상계주공*단지아파트)
1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39	김*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길 **	***호 (화양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3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40	채*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길 ***	(자양동, GS**)
13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41	이*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가길 ***	***호 (군동, 호수빌라트)
13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58	황*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번길 ***	*층 (하대원동)
13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65	문*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길 ***	***동 ***호 (돈암동, 현대아이파크*자아파트)
13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66	박*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길 **	***호 (쌍문동, 다온세르빌)
14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70	이*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번길 **	***호 (부평동, 베네스트수)
14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72	한*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동 ***호 (마전동, 당하*자풍림아이원아파트)
14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73	박*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길 ***	(전농동)
14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74	이*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월로 ***	(답십리동)
14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75	엄*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	***동 ***호 (역수동, 역수 파크힐스)
14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79	박*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길 ***	*층 ***호 (문정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82	김*현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길 *-**	***호 (잠실동)
1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84	김*호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길 **	****호 (상계동, 상계주공*단지아파트)
1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85	김*복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길 *-**	(자양동)
1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86	김*국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가길 *	(방학동)
1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87	정*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의왕시 내손환로 *	****호 (내손동, 래미안 에버하임아파트)
1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89	장*현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섬로**길 *	* 등 ***호 (성수동*가, 정안맨션*차)
1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96	이*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	****호 (보문동*가, 보문파크뷰자이)
1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98	이*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원로 **	****호 (잠원동, 신반포아파트)
1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499	심*순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섬로**길 **	****호 (성수동*가, 신성 노바빌 아파트)
1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501	장*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	****호 (상도동, 다음아파트)
1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509	이*만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길 *-**	****호 (자양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518	강*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길 **	***호 (중곡동)
1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525	배*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묵섬로*길 ***	***호 (자양동, 로마그린빌)
1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529	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길 **	(쌍문동)
16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539	구*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	****동 ****호 (도당동, 도렴마을 **단지)
16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548	오*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답십리로 ***	***호 (중곡동, 태원아트)
16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557	공*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	***동****호 (금호동*가, 래미안하이라버)
16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561	이*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	***호 (연수동, 태원빌딩오피스텔)
16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595	김*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길 ***	(연남동)
16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597	변*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나길 ***	***호 (역촌동)
16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01	이*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길 **	(흑석동)
16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02	심*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	***호 (가정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6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05	백*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고랑로 ***-*	(종곡동)
16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07	박*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번길 **	***동 ***호 (봉담그대가*단지아파트)
17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08	문*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평택시 송월로**번길 ***-**	***호 (신장동)
17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09	강*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길 **	***동 ***호 (쌍문동, 영광아파트)
17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10	부*화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신로 ***	(당산동*가)
17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16	김*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길 ***-*	(신림동)
17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18	전*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번길 **	***호 (이매동)
17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19	노*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가길 **	*층 ***호 (화곡동, 도화위너스빌)
17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20	이*력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	***동 ***호 (월계동, 월계정백*단지아파트)
17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21	장*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길 **	***호 ()
17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22	조*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	(동인동*가)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7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26	이*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신동구 노루목로 ***	***동 ***호 (장항동, 호수마을*단지아파트)
18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27	오*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길 ***-*	(오류동)
18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30	이*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길 **	(방배동)
18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31	송*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구의동)
18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32	김*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18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34	강*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길 *-*	*층 (공덕동)
18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35	LI YO***A 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길 ***-	(구로동)
18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38	김*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호 (종림동, 더플레이스중정로)
18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39	김*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길 ***	B**호 (봉천동)
18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47	김*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법안로 ***-***	***동 ***호 (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단지아파트)
18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50	배*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길 **	(보광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9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52	송*승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	***호 (신정동)
19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56	김*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홀트로 **	***동 ***호 (탄현동, 탄현마을*단지아파트)
19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58	구*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	***동 ***호 (도화동, 삼성아파트)
19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61	고*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일로 **	***호 (은행동, 안성빌라)
19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62	임*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동중앙로*길 **	***호 (목동, 다우레스빌)
19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71	허*경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길 **	***호 (천호동)
19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72	박*만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길 **	B**호 (석촌동)
19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75	장*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동 ***호 (잠실동, 우성아파트)
19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76	이*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호 (중곡동, 로즈시티)
19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78	주식회사 진*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번길 ***	***호 (춘궁동)
20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5	001679	박*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길 ***	(면목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0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688	박*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길 **-**-*	***호 (성내동, 위드미하우스)
20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692	이*규	비켜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20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53	황*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등대문구 신이문로**길 **	(이문동)
20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54	장*익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번길 **	(소사본동)
20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55	김*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	***호 (만원동, 동호세르빌)
20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57	최*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택지로 **	***호 ()
20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60	김*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	***동 ****호 (용암동, 중흥마을*단지부영아파트)
20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66	김*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신로**번길 **-**-*	(정발산동)
20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67	손*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번길 **	***동****호 (오목천동, 서희스타힐스아파트)
21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69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번길 ****-*	***호 (등촌동)
21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71	김*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길 **-**-*	(등교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76	이*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	***동 ***호 (빈송동, 솔빛마을신도브레뉴아파 트)
2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78	박*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로 **	***동 ***호 (빈송동, 솔빛마을신도브레뉴아파 트)
2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79	김*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남공원안길 **	***호 (부곡동, 용현세르빌A동)
2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80	이*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곡중앙로 **	***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단지아파트)
2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83	윤*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서구 베제로 ***	*동 ***호 (도마동, 경남아파트)
2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88	오*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	***동 ***호 (평창동, 평창동 롯데캐슬 로진)
2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91	김**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	(시흥동)
2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96	김*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동 ***호 (상계동, 미도아파트)
2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97	최*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가길 *	(신림동)
2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798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읍내로 **	A동 ***호 (고양동, 세종명가)
2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02	박*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가정로**가길 **	(면목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2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06	이*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상북도 문경시 새동네*길 **-*	A동동 (모전동)
22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07	이*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길 **	***동 ***호 (암사동, 삼성관나루아파트)
22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09	박*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길 *	***동 ***호 (창신동, 두산아파트)
22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19	(주)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길 **-*	***호 (인후동*가)
22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22	박*준, 정*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로 **-*	***동 ***호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아파트)
22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23	허*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로 **-*	***호 (진관동, 어드벤처힐오피스텔)
22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24	박*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번길 *	B동 ***호 (폴하우스B)
23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25	김*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	***동 ***호 (가양동, 가양*단지아파트)
23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28	윤*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길 **-*	***호 (문정동, 앤케이빌)
23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31	최*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길 ***	***동 ***호 (사당동, 극동아파트)
23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34	정*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	가인동 ***호 (화곡동, 미가채)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3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39	김*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번길 **-*	***호 (스타빌)
23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40	이*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	***동 ****호 (꽃덕천동 현대성우아파트)
23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42	양*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	***동 ***호 (청학동, 시대아파트)
23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45	박*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	***호 (홍제동)
23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48	마*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가길 *-**	*층동 ***호 (대조동)
23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52	(주)두루* ***엠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	*층 (합정동)
24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53	이*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번길 *-*	(금광동)
24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59	최*창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 **-*	(신수동)
24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60	최*창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 **-*	(신수동)
24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61	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봉교로 ***-*	(동교동)
24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63	박*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	(망원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68	김*섭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길 **	***호 (대방동)
2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69	김*근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번길 ***	()
2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71	홍*호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길 **	***호 (신림동, 강동빌라)
2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881	이*심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길 **	(상암동)
2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03	최*진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길 ***	(금호동*가)
2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06	백*미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	***동***호 (개포동, 우성아파트)
2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07	박*원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나길 **	(자양동)
2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08	김*호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레로 *	***동 ***호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
2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46	김*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길 **	(일원동)
2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48	강*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번길 **	***동 ***호 (도계동, 도계휴먼시아아파트)
2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49	고*무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길 **	***호 (용산동*가)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5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53	최*영	바뀌어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문로**길 **~**	지응동 *호 (보광동, 보광빌라)
25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54	정*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	***동 ***호 (조원동, 수원광교산스위첸)
25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58	안*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번길 *-**	*동 ***호 (가좌동, 라이프빌라)
25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64	배*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길 *	***동 ***호 (염창동, 염창현대*차아파트)
26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67	허*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길 ***~**	***호 (성내동, 성지아트빌)
26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72	이*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길 **	다동 ***호 (화곡동, 헬리치파크)
26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73	김*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길 **	***동 ***호 (번동, 주공아파트)
26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74	차*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	***호 (도내동)
26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76	한*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덕*로**번길 **	***동 ****호 (영덕동, 흥덕마을*단지호반베르디움아파트)
26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77	유*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길 ***~**	(대조동)
26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81	고*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	***동 ***호 (풍덕천동, 삼성래미안*차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6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85	유*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	(중화동, 한자중국어학원)
26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92	서*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번길 **	***호 (주교동, 신장아파트)
26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94	오*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길 **	*동 ****호 (노현동, 동현아파트)
27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95	이*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길 **	***호 (오천동)
27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98	(주)**교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양주시 관적면 부흥로***번길 ***-***	(가남리)
27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1999	서*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	*동 ***호 (본오동, 우성아파트)
27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00	에이**** *드리서* **턴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시불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길 **	*, *층 (충정로*가, 라인빌딩)
27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04	박*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평택시 세교상가*길 **	(세교동)
27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07	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율하동, 모아미레도*차이파트)
27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14	(주)**렌 트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시불명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번길 **	*층 (신북동)
27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15	김*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등성문로***길 **	***호 (등성동*가, 등성동 한양수자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7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17	송*옥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	***동 ***호 (금동*가, 금호동 대우아파트)
27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22	J*N Rl***N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마길 ***	(북아현동)
28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23	차*응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	(성수동*가)
28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24	오*수, 오*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부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남로**번길 *-**	(수내동)
28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26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번길 *-**	(경인동)
28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28	함*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호 (송파동)
28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29	김*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	***동 ***호 (도촌동, 휴먼시아삼마을*단지아파트)
28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36	백*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번길 **	F동 ***호 (영통동, 디지털엠퍼리어빌딩)
28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37	이*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길 **	(군자동)
28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38	김*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길 **	***동***호 (수서동, 강남대시앙포레)
28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41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	***호 (마천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8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46	설*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길 ***	***호 (기락동)
29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47	김*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정로***번길 ****	마동 B**호 (행신동, 대호빌라)
29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49	S***K BEN*** IN ST***E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길 *	*층 ***호 (정릉동, 리치빌리지)
29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50	최*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길 ***	***호 (정릉동, 우성빌라)
29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54	박*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길 ***	(서빙고동)
29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55	원*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길 **	***호 (대치동, 대우 아이빌멤버스)
29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58	C**I J**N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길 ***	***호 (상봉동, 미래하이츠 *차)
29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59	전*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인천광역시 중구 선녀바위로**번길 **	(을왕동)
29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60	고*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신로**길 *	(독산동)
29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62	김*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길 **	가동지하층***호 (서초동, 신우빌라)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9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64	박*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장지호수길 ***	***동 ***호 (토평동, 토평마을e편한세상아파트)
30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72	박*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시불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	***호 (역촌동)
30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73	송*원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길 **	***호 (신사동)
30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74	박*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번길 **	***동 ***호 (갈곶동, 동부아파트)
30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78	박*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	***동 ***호 (행당동, 행당 한진타운)
30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79	이*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길 **	(양평동*가)
30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80	홍*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길 ***	***호 (양재동, 양재빌리지)
30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82	배*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진구 능동로*길 ***	(자양동)
30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84	이*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원로***길 **	***호 (노원동)
30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86	정*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길 *-*	지하*호 (봉천동)
30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87	한*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길 **	***호 (봉천동, 로즈빌*)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31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88	이*수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길 **	(반포동)
31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89	은*영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가길 **	B**호 (상도동)
31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92	이*호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길 **	***동***호 (독산동, 신도브레뉴아파트)
31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93	이*규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호 (신림동, 한아름마을)
31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94	김*민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마길 *-*	(영등포동)
31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98	박*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길 **	(면목동)
31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099	류*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	***동 ***호 (화곡동, 우장산SKVIEW)
31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02	진*영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길 ***-*	(서초동, 프라임하우스)
31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05	조*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	***동 ***호 (갈매동, 갈매더샵나인힐스)
31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06	김*태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가길 **	(독산동)
32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08	서*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	C동 ***호 (상원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32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15	이*영, 민*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호 (역삼동)
32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17	이*성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라길 **	(상도동)
32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18	김*숙	비취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길 **	가동지하층***호 (서초동, 신우빌라)
32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25	송*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	***동 ***호 (개포동, 주공아파트)
32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29	남*희, 박*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운로 ***-**	***동 ***호 (두산위브아파트)
32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34	이*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호 (삼전동, 마이빌)
32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36	최*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	***동 ***호 (영통동, 백산삼익아파트)
32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39	이*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	***호 (화정동)
32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40	박*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관교중앙로**번길 **	***호 (원천동)
33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41	장*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호 (삼전동)
33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42	송*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개목*길 **	***호 (봉명동, 로즈빌)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3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45	강*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역*길 *	가동 ***호 (성내동, 코끼리빌라)
3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46	강*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번길 **	***호 (가좌동, 한화미리움아파트)
3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47	백*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	***동 ***호 (상대원동, 성지아파트)
3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48	조*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	***동 ***호 (성내동, 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
3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49	박*래, 최*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문로**길 **~**	***호 (석촌동)
3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51	정*관, 김*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길 **	***호 (한남동, 금강빌딩)
3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55	나*연, 송*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	***동 ***호 (금호동*가, 금호자이*차)
3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58	김*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섬로*길 *	***동 ***호 (성수동*가, 성수현대그린아파트)
3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61	조*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	***호 (성산동, 한강지오빌)
3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63	배*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릉*라길 **	***호 (상도동, 상도빌라)
3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65	박*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	***동 ***호 (만월동, 미사강변파밀리에)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34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75	김*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길 ***-	(동빙고동)
34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79	김*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길 **	비동 ***호 (상도동)
34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83	한*만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길 ***-	***호 (응봉동, 현대빌라)
34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185	김*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길 **	(용산동*가)
34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216	데*(이* 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길 **	(신사동)
34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226	한*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길 **	***동 ***호 (번동, 한진아파트)
34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296	안*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길 *	***동***호 (마장동, 푸른마을*차)
35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297	류*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	***동***호 (일산동, 후곡마을)
35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427	윤*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시불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	(성남동)
35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432	이*규 (자*성)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길 **	*층 ***호 (여의도동, 가든빌딩)
35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7-06	002434	이*규 (자*성)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길 **	*층 ***호 (여의도동, 가든빌딩)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7-15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7.7.13. ~ 2017.7.26.(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7.7.27. ~ 2017.8.9.(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공시충달 대상내역(제2017-158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87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희	주소불명	서울 마포구 상암동	**** *-----****호
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877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오*희	이시불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	***호 (송내동, 청주빌딩)
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881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 하는 행위	50,000	이*원	수취인불명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술로*길 *-*	***동 ***호 (소흘읍, 원일산호*차이파트)
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87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하*안	주소불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	(반림동, 트리비앙아파트)
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88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 하는 행위	50,000	김*선	이시불명	서울 관진구 자양동	****-*
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87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엄*준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번길 **	***호 (역동, 금호빌라)
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87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카**** 이크발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길 **	(이태원동)
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87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서*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길 **	***호 (후암동, 노블리스빌)
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87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호 (삼전동)
1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887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권*균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88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운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길 *	(풍납동)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885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최*규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길 ***	*동 ***호 (성수동*가)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88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	*층 ***호 (신림동)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893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김*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	*동 ***호 (응암동, 기동하이츠)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899	이륜이상 동력장치출입	50,000	김*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	***동 ***호 (하왕신리동, 청계백산아파트)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1059	이륜이상 동력장치출입	50,000	오*련	주소불명	서울 중랑구 망우동	***-***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102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정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길 **	(망원동)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97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이*영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동 ***호 (잠실동, 잠실엘스)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103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한*욱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길 **	***동 ***호 (방화동, 방화**단지아파트)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098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한*민	수취인부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번길 **	***호 (안양동, 은성빌리지)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6	00104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장*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	***동 ***호 (강일동, 강일리버파크*단지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편위반과태료	2017-06	001048	이륜이상 동력장치출입	25,000	한*준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	가동 ***호 (계산동, 팬더아파트)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편위반과태료	2017-06	00093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정*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신로 ***	*/ (하월곡동)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편위반과태료	2017-06	00100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김*준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	***동 ***호 (문정동)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편위반과태료	2017-06	000947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구*희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길 ***-***	(사당동)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편위반과태료	2017-06	00095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손*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길 ***-***	***동 ***호 (신정동, 우성*차이파크)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편위반과태료	2017-06	00102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장*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	***동 ***호 (강일동, 강일리버파크*단지아파트)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편위반과태료	2017-06	00097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김*권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신로**길 ***-***	(면목동)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편위반과태료	2017-06	00103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안*은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길 **	***호 (길동)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40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서울경전철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51, 6층(신대방동, 롯데타워)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6번지 등 13필지
 - 면 적 : 영구 4,287㎡, 일시 1,20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도미부인 설화 조형물 설치 등
 - 내 역 :
 - 경전철 터널 340m, 경전철 정거장 1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영구(허가일 ~ 2022.01.31.)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